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録番号 則 第1251号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81年 12月 1日 毎月 1回発行 通巻 第159号

1981 12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초호화 고급내장재

〈발명특허 제7983호〉

耐水  
耐火  
防音  
保温



응접실 : 정맥017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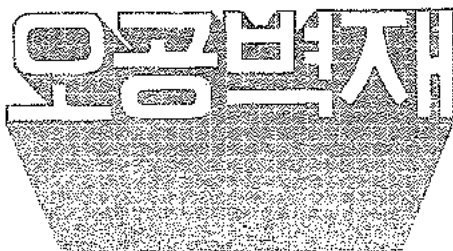
## 특 장

- 강화, 내화, 내수성으로 방음, 보온 등 효과가 다양함.
- 공해나 독성이 전혀 없고, 금이 가거나 벗겨지지 않고, 변색이 없음.
- 벽면이 자연스러운 요철을 형성하고 질감이 좋아 종래 벽지의 평면성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없애고, 방음의 효과가 큼.
- 시공에 있어 초배공정이 필요치 않아 전 문기 또는 숙련공이 필요없고 재료의 손실이 없음.
- 간조후 단단한 피막이 형성되어 마모가 없으며 습기에 강함.

- 종래 벽지와 같은 이물새가 없기 때문에 실내전체가 한결한 청결한 느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 안정되고 아늑한 분위기를 형성함.
- 우단과 분탄을 또는 조각모양의 판체, 자연스러운 무늬와 유취유 약제의 벽이 형성되며 골재나 원석면과의 뛰어난 장식력으로 화재발생시 쉽게 점화되지 않는 내화성을 지님.
- 보통은 특수주조에 의해 생산된 접착제이므로 공해가 발생없고 오래가면 그 원형을 보전하고 가격이 저렴함.

## 施工方法

- ① 벽면에 기름이나 물이 묻어 있는,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비를 것.
- ② 본품에 농축된 유액을 물과 함께 섞을 것.
- ③ 물의 양은 미장하기에 좋은 반죽형태가 되도록 서서히 조절하며 충분히 섞어줄 것.
- ④ 반죽후 약30분쯤 경과후에 시공할 것.
- ⑤ 시공후 반죽이 남으면 반죽상태에서는 오래가면 놓아두 후 다시 쓸수 없으므로 적당량을 선택하여 재료의 손실을 줄일 것.



**百忍企業株式会社**  
BAEKIN ENTERPRISE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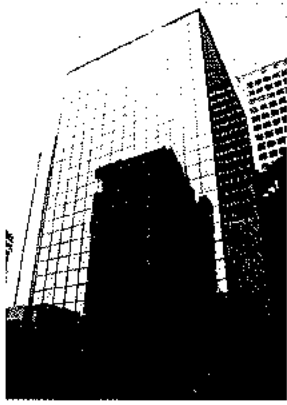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 산75-6

☎ (52) 1651 (555) 5076 (상단B/D2층)

공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7-42 ☎ (444) 0506



전국총판 : 서울 영등포 793-3107, 강남 591-9462, 전주 2-1550, 광주 32-2220, 진주 2-8483, 제주 2-5979.



表紙說明 / 삼화빌딩  
設計 / 李承雨

|                 |                                                                                    |
|-----------------|------------------------------------------------------------------------------------|
| 刊 物 別 号         | 建 築 士 誌                                                                            |
| 도 서 번 호         | 통권 제 153 호                                                                         |
| 구입년월일           |  |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

# 月刊 建築士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 目 次

通卷153号 **1981. 12**

送年詩 / “우리의 땅이 世界의 廣場이 되게 하자.”…朴商浩……2

論 文 / 大丘邑城과 嶺南第一關(南門)重創에 對한  
小考……………徐正男……20  
建築構造解析의 有限要素法에 의한  
応用과 展望……………權宅鎭……24  
우리나라 집에 關한 민속<Ⅰ>……………김광연……29  
住宅行政 突態와 對策에 關한 研究……………秋永守……57

評 論 / 建築評論의 基本方向(完)……………宋攸求譯……37

特 輯 / 노인복지시설 / 養老院의 現住所……………朴勇煥……14

會員作品 / ……………43

- |                                 |                         |
|---------------------------------|-------------------------|
| <input type="checkbox"/> 삼화빌딩   | ● 주·종합건축설계……………李承雨……44  |
| <input type="checkbox"/> 동명여고강당 | ● 신신건축연구소……………金奉勲……46   |
| <input type="checkbox"/> 오천감리교회 | ● 건축연구소 원건사……………尹鳳源……48 |
| <input type="checkbox"/> 군포읍 청사 | ● 합성건축기술공사……………朴成圭……50  |
| <input type="checkbox"/> 정일학원   | ● 종합건축설계공사(충북)……吳世炯……52 |
| <input type="checkbox"/> 삼영아파트  | ● “ ” ( “ ” )……尹榮在……54  |

支部巡訪 / 서울지부편……………55

- |                                            |                                           |
|--------------------------------------------|-------------------------------------------|
| <input type="checkbox"/> 協會消息……………3        | <input type="checkbox"/> 건축계 뉴스……………9     |
| <input type="checkbox"/> 올림픽 바람이 분다……………28 | <input type="checkbox"/> 무엇이 궁극한가?……………80 |
| <input type="checkbox"/> 건축행정상단……………66     | <input type="checkbox"/> 우수건축자재……………77    |
| <input type="checkbox"/> 월간건축정보……………62     | <input type="checkbox"/> 회원동정……………96      |
| <input type="checkbox"/> 전국 건축허가 통계……………95 | <input type="checkbox"/> 개정 소방법시행령……………82 |
| <input type="checkbox"/> 정부노임단가……………93     | <input type="checkbox"/> 땅값 천차만별……………70   |

建築講座 / 建築積算資料……………曹浚鉉……68

海外作品 / A+U……………71

淨化를 위한 提言 / “淨化運動은 意識改革으로부터”…尹鉦……36

### 編 纂 委 員 會

委員長 朴 商 浩  
委 員 金 奉 勲  
“ 吳 昌 熙  
“ 尹 道 根  
“ 尹 鳳 源  
“ 李 文 輔  
“ 張 錫 雄  
“ 洪 淳 寅  
“ 黃 一 仁

☐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遞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2, 723-4287, 724-1045  
☐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玠 會 ☐ 登錄番号 第라-1251 ☐ 登錄 1967.3.23  
☐ 發行 1981.12.1 ☐ 非売品 ☐ 印刷人 郭 得 龍 / 三文印刷所 / 261-7676

## “우리의 땅이 세계의 廣場이 되게 하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두뇌로  
우리의 빛깔과 냄새를 풍기게 하자

맑고 밝은 하늘 아래  
붉고 푸른 수를 놓아  
太極의 原点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는 國風이 일게 하자

韓屋의 추녀와 창살에서  
草家와 돌담, 山河와 海岸線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自然과  
固有의 傳統과 現代가 調和되게 하자….

우리의 風土文化….

우리의 뉘와 얼이 담긴  
韓國의 멋을 선택이자

머지않아 닥아올 '88년의 祝祭에  
世界의 손님들에게  
우리의 땅에서  
世界의 젊은이가 춤추게 하자

그러한 마음 가짐으로  
나의 周辺과 우리의 마을  
우리 모두의 都市를 淨化하고  
정성껏 손질하여

世界의 廣場이 되게 하자.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朴 商 浩

## 定期理事會 개최

17회 이사회와 18회 이사회가 지난달 16일과 지난 2일 각각 본회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7일 이사회에서는 정화추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등을 비롯한 편찬위원장 보선의 건, 강제위원회구성,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입,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그밖에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개정 대상 규정으로는 건축위원회 규정과 편찬위원회 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제규정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18회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업무보고로 인천 및 대구직할시지부 창립총회 승인을 비롯 정관 변경인가 통보, 강제위원회 개최, 편찬위원회 개최등 20여건이 보고 되었으며 부의 안건으로는 예산외 목장전용 승인의 건등과 예비비 사용건, '82서울국



제 무역박람회전시장 가건물에 대한 보수요율 적용건등이 상정논의 되었으며 그밖에 협회당면 문제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있었다.

### 建築研究委員長에 宋鶴祚理事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安箕泰이사가 주관해 왔던 建築研究委員會를 新任 宋鶴祚이사가 委員長職을 맡도록 결의했다.

새로 위원장을 맞이하게된 건축연구위는 건축에 관계되는 법령, 규정, 기술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

제등을 연구심의해서 협회업무 및 정책 방향제시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위원회인 것이다.

### 신임任員들 건설부禮訪

具琬會회장은 지난 23일 신임임원들을 대동하고 건설부 金報根 주택국장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지난 16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朴商浩이사를 비롯 宋鶴祚·金一榮이사와 李康植감사등 본회 신임 임원의 취임인사차 이날 건설부를 방문하고 金국장과 건축과 관계관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 편찬위원장에 朴商浩理事

본지 편찬위원장에 朴商浩이사가 선임되었다.

지난 17회 본회 정기이사회에서 金正澈 前 본지 편찬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장직 사임으로 공석중이었던 위원장에 朴商浩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따라서朴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본지 편찬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주재하며 본지 발간에 주력하게 되었다.

앞서의 편찬위원장이었던 金이사가 지난 11월호를 마감으로 사임함에 따라 이번호(12월)부터 새 위원장의 편찬계획에 따라 발간케



된다.

한편 새 편찬위원장에 선임된朴위원장은 처음으로 지난 1일 편찬위원회를 주재하고 12월 송년호 편찬계획과 82년도 기본 편찬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朴위원장은취임인사를 통해 "보다 신경을 써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지제작

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특히 82년도 편찬계획을 심의했는데 기본 방향을 ① 기사 및 회원작품의 질적향상과 ② 기사원의 광역화 ③ 레이·아웃의 쇄신 ④ 인쇄의 색도화 ⑤ 편집요원의 정예화에 두고 회원에 의한 회원의 회지로 제작할 방침을 세웠다.

# 각 市道支部 定期總會개최

## 仁川·大邱市支部는 創立總會

지난 10월29일 본회 제16회 정기총회에 이어 각 시도지부별 정기총회가 열려 81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은 각 시도 지부별 정기총회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서울지부** :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겸해 개최된 서울시지부 제16회 정기 총회는 중정로에 있는 종근당빌딩 14층 회의실에서 재석회원 8백 8명중 3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달 27일 오전10시 金枝泰 지부장의 개회사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남세조합설립의 건을 비롯한 의료보험가입, 주차장 정비지구 재조정건의, 정화조 완화 건의, 임원개선, 대의원개선건등이 의결에 부쳐져 처리되었다.

이 가운데 임원개선에 있어서는 임기만료된 간사 5명에 대한 개선권을 지부장에게 위임. △金亨仁(유임·세한 종합건축) △李永熙(유임·전화사) △金得洙(신임·삼미건축) △金榮洙(신임·김영수 건축) △李文雨(신임·한국환경계획)씨 등이 유임 및 새로 선임되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자율정화결의 대회에서는 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구호제창이 있었다.

**부산지부** :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겸한 동 文滸 제16회 정기총회는 시내 조선비치호텔 회의실에서 총 2백46명의 회원가운데 1백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張起秀지부장의 개회로 시작된 지난 26일의 총회에서는 본회 具疏會회장을 대신한 朴商浩이사의 회장격려사 대독과 전회 회의록승인, 업무보고, 82년에 산안보고, 부의안진동 순

으로 진행됐다.

동지부 총회에서도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이 있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卞京烈(간사·대의원·동원건축 설계사) △李相夫(〃·원건축연구소)  
△金伸宰(〃·서강건축 설계사)  
△鄭煥鎬(대의원·미래건축 연구소)  
△潘米太(대의원·의신건축설계사)

**대구지부** :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경북지부에서 분리, 창립총회가 된 이번 총회에는 모두 1백4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경북지부장이었던 金在佑씨를 새로 발족된 대구지부장으로 선출해서 새출발을 시작했다.

성원보고와 개회사, 회장치사, 예산보고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으로 진행된 동지부 창립총회는 지부의 새 살림을 꾸려나갈 임원 선출이 큰 골격을 이루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在佑(지부장·한남건축) △權泰植(간사·합동건축) △林斗炫(간사·정림건축) △李鍾萬(간사·하림건축) △金重培(대의원·서부건축) △李秀一(대의원·동명건축) △鄭賢洙(대의원·고려건축) △河在浩(대의원·삼아건축) △朴海龍(대의원·도심거림건축) △白鳳祥(대의원·보림건축) △李東根(대의원·동진건축) △張基雄(대의원·대우건축)



□ 서울지부



□ 대구지부



□ 경기지부



□ 전북지부



□ 전남지부



□ 경북지부

인천지부 : 지난 21일 인천시내 동보성에서 열린 인천시지부 총회는 인천시가 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중전에 경기지부에 속해있던 인천시소속 회원들이 독립되어 동지부를 새로 발족시킨 창립총회로 뜻깊은 모임이었다.

따라서 새살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및 사업보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새로 탄생한지부를 이끌어 나갈 지부장에는 金晶洙씨가 선출되었다.

역시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함께 연 이날 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본회具 회장의 격려사와 예산보고 임원개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金晶洙(지부장·시대극동 건축)  
△李秉武(간사·동양현대합동) △金榮培(간사·인천북구건축) △高永昌(대의원·인천중구건축) △高宗旭(대의원·남구신도건축)

경기지부 : 11월 26일에 개최된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본회具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공로패 및 표창패 수여와 주요업무 보고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81년도 예산집행 보고와 82년도 예산보고를 끝으로 부의안전으로 들어갔다 부의안전으로는 임원개선과 분소장 선출이 있었으며 그밖에 기타사항등이 있었다. 임원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閔丙微(간사·동원민합동) △林龍洙(간사·한성종합건설) △鄭桓喆(간사·현대문화합동) △李



□ 경남지부

鍾股(광명분소장·영신남양 건축) △白仁基(의정부 분소장·의정부건축사) △禹善命(평택분소장·원영종합건축) △車周福(안양 분소장·제일기우건축) △徐洛奎(부천분소장·내외건축)

강원지부 : 강원도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동支部 정기총회는 19일 오전 10시에 李国男지부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총회원 39명중 30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정화 결의문 채택과 실천구호 제창에 이어 격려사와 추대회원 추대증서 전달을 비롯 전 회 회의록승인, 업무보고 82년도 수지예산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부의 안전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전, 분소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조정, 임원개선전 등이 의결되었다.

임원개선에서는 대의원 1명, 간사 2명, 각분소, 각분소장 5명등이 유임 또는 개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朴鍾三(대의원·신임·속초건축사무소) △崔炳郁(간사·신임·환경건축) △襄基雄(간사·신임·속초건축사무소) △元鎬昌(원주분소장·신임·종합건축연구소) △閔丙協(강릉 분소장·유임·관동건축 설계사무소) △朴鍾三(속초분소장·신임·속초건축사무소) △金吉昌(삼척분소장·유임·길건축연구소) △朴容仁(영월분소장·유임·동진건축 설계사무소)



□ 제주지부

충북지부 : 동支部회의실에서 2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전 회 회의록승인과 업무보고 그리고 신년도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임원 개선이 있었다.

△李鍾萬(간사·녹야건축) △洪祿杓(간사·대한동구건축) △朴五均(제천분소장·신화합동) △金利九(충주분소장·예성건축) △姜桂植(옥천분소장·강계식건축)

충남지부 :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충남지부(지부장 柳根烈) 총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었다.

대전 중앙관광호텔 회의실에서 막을 올린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자율정화 결의대회에 이어 개회사와 본회회장 격려사, 전 회 회의록승인, 82년도 예산안보고, 감사패수여와 부의안전 처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선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卓光鎬(간사·미도건축)

전북지부 : 지난 9일 열린 동支部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본회회장의 격려사와 15회 총회 회의록승인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부의안전으로 임원 선거와 기타사항 등으로 막을 내렸다.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全炯直(간사·유임·동서종합) △朴玉奎(〃·군산합동) △曹載鉉(〃·상호건축) △文俊英(〃·도시동인합동)

**전남지부** :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광주건축사 회관 강당에서 86명의 회원(재적회원 1백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 회는 역시 자율성화 결의대회를 겸해 서 진행되었다.

金暎植지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 安箕泰총무이사사의 격려사와 文淵洙전 남도 부지사의 축사등에 이어 82년도 사업계획승인, 건축사보조원 관리요 령 규정안등이 의결된데 이어 임원개 선이 있었다.

개선된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은 다 음과 같다.

△宋良漸(간사·대의원·국제·한 미·성하건축) △朴武吉(“·대광건축) △崔秀一(“·백제·우주 종합설계) △吳龍甲(목포분소장·건설건축) △姜寅秀(순천분소장·순천합동설계) △具天模(여수분소장·제일 종합건축) △林在植(대의원·금성 종합설계)

**경북지부** :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됨에 따라 동지부도 대구와 경북지부 로 나누면서 개최된 지난 28일의 정 기총회에서는 孫在守(경주제일 건축 사무소)씨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모두 45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 회는 결산보고, 수지에산안보고, 임 원 및 대의원 선출로 진행되었으며, 총회에 앞서 회원 자율성화 실천결의 문 채택과 구호제창이 있었다.

개선된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은 다 음과 같다.

△孫在守(지부장·경주제일건축사 무소) △金聲鍾(간사·합동건축설계 사무소) △崔種培(간사·포항 세진 건축설계사무소) △梁壬洙(포항분소 장·포항세진 건축설계사무소) △權寧久(경주분소장·경주 제일 건축사 무소) 金泳哲(김천분소장·김천 건축 설계 사무소) △曹文煥(안동분소장·합 동건축) △金聲鍾(영주분소장·합 동건축) △朴在光(구미분소장·동신 건축) △張相賢(문경분소장·영림건

축) △金斗河(대의원·신진 두산 건 축) △全星八(대의원·경산건축) △ 都正基(대의원·김천건축)

**경남지부** : 재적회원 85명중 68명이 참석한 동지부(지부장 曹台和) 총회 는 부곡관광호텔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지난 19일 11시부터 연 이날 총회 는 지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82년도 예 산안보고, 전회회의록승인, 업무보고, 부의안건등이 의결되었다.

특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에서는 5 개분소의 분소장과 대의원 1명이 개 선되었다.

△金榮福(울산분소장·울산건축) △金相烈(진주분소장·태성건축) △李正浩(충무분소장·이정호 건축연구 소) △金純宅(밀양분소장·밀양합동 설계) △李泰昱(거창분소장·거창합 동건축) △李路熙(대의원·동광건축 설계)

**제주지부** : 27일 지부회의실에서 열 린 동지부 정기총회에는 재적회원 18 명중 16명이 참석했다.

자율성화 결의대회에 이어 진행된 동지부 16회정기총회는 주요 업무보 고와 명년도 수지에산안보고, 사업제 획안 승인을 비롯한 기타 사항등이 논 의되었다.

金守賢지부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 에서는 특기할만한 사항없이 순조롭 게 진행, 2시간여만에 막을 내렸다.

## 全任員 支部총회 참석 19일부터 支部別로

지난 10월 29일 본회 정기총회에 이어 각 시도 지부 정기총회 및 창 립총회가 지난 11월 19일 강원지부 와 경남지부를 필두로 13개 지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具琬會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진은 시도지부총회에 참석

## 全衡대비 교육비 전달

忠南會員 22명이  
2백20만원 마련

건축사 전형시험에 합격한 회원 들이 격려금을 모아 차기 전형에 대비하고 있는 동료회원들의 교육 비로 기탁,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충남支部(지부장 柳根洙) 소속 회원 가운데 지난 80년과 금년에 각각 건축사 전형시험에 합격한 22 명의 회원들은 동료회원 가운데 차 기 전형에 대비하고 있는 회원들 을 위한 교육비에 사용해달라고모 두 2백20만원을 支部에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동 지부 제16회 정 기총회에서 지부장에게 전달된 격려금은 일인당 10만원씩 각출한것 으로 회원 상호간의 단순한 친목 도모를 뛰어넘어 깊은 정을 일깨 우게 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평판 이 자자하다.

동 지부는 이 성금을 바탕으로 전형대비에 여념이 없는 회원들을 위한 교육기금으로 뜻깊게 사용할 예정이다.

키워해 각각 지역별로 나누어 지 난달 30일에 충북지부를 마지막으로 끝난 총회에 참석해서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위한 전국 회 원들의 뜻을 새물게 했다.

특히 금년도 총회에서는 대구시 와 인천시가 각각 직할시로 승격 됨에 따라 새로 2개의 지부가 생 겨, 창립총회를 겸함으로써 종래 의 11개 지부에서 13개 시도 지부 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회회장은 19일의 경남지부 와 20일의 충남지부 21일인천, 26 일 경기, 27일 서울, 28일경북· 대구시지부에 각각 참석, 격려사 를 했으며, 그밖에 전임원들도 지 부별로 나누어 참석, 회장을 대신 한 격려사를 했다.



## 部署別 담당理事制 사무처, 總務理事制 변경

본회는 지금까지 사무처 업무를 총괄해서 관장했던 총무이사 제도를 바꿔 부서별(업무별) 담당이사 제도를 채택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제18회 이사회결의에 따라 실시키로한 담당이사 제도는 종래의 기본정책 의결기구로서의 이사회역할에서 벗어나 이사 각자가 사무처 실무를 분담 책임맡아 업무자제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조치이다.

담당이사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서별 담당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총무부=安箕泰이사
- 기획부=金一榮이사
- 기술부=宋鶴祚이사
- 출판사업부=朴商浩이사

## 住公·「덴마크」주최 세미나 참석 具희장, 만찬회에도

덴마크 건축기술에 관한 세미나가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지난달 23일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많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초청으로 내한한 덴마크 건설성장관 일행이 自國의 건축기술을 소개하고 이에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 본회 具琬會회장과 朴商浩이사가 참석했다.

건축물의 모듈화에 의한 자재와 설계등을 보급하기 위해 기술제휴 방안등을 모색한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관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具희장은 이날 오후 金周南 건설부장관이 주최한 덴마크건설성장관 일행 환영을 위해 한국의 집에서 배운 만찬회에 참석했다.

## 3 團體 조찬회

3단체 월례 조찬회가 지난10일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이날 조찬회에는 李海成건축가협회장과 李沘雨 부회장을 비롯해서 본회 具琬會회장, 朴商浩 이사, 宋鶴祚이사, 金一榮이사와 서울지부 金枝泰지부장이 참석했다.

또 건축학회에서는 金貞一, 김근덕, 金昌集부회장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의 건축계 동향을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 「特定建物 정리特措法」공청회

任仁憐처장 公述人으로 国会 참석

민정당이 영세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国会建設委 공청회에 본회 任仁憐사무처장이 公述人으로 참석, 의견을 開陳했다.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49만여동의 무허가 건축물들을 새로 마련한 법에 따라 양성화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련부처,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련업체 및 해당시민의 의견을들어 이를 법 성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장에는 丁米赫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2 백여명

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7명의 공술인들의 의견을 관심깊게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본회 任처장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영세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은 특혜를 주고 반대로 법을 준수하다가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차별은 법이론상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任처장은 전제조건으로 ① 무허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대비와 재개발지역 및 상습재해지역등 특수지역내의 건물은 제외 할 것과 ② 위반 건축물을 관계부서에서 고의

적인 것과 선의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③ 차후의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위반사항을 세목별로 명시하고 벌과금을 대폭 강화(위반 건축주에게 대지와 위반건축면적을 합한 현시가를 벌과금으로 한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나 장장 7시간동안 참석, 공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충분한 법성안 자료를 얻어냈다.

국회 건설위에서 선정, 이날 공청회에 본회 任처장을 제외한 참석 공술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報根(건설부 주택국장) △羅相紀(弘益大 환경대학원장) △金成斗(조선일보 논설위원) △孫智烈(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南德鉉(일반시민) △張益鎬(양성화 대상시민)

## 建設技術 教育院 방문

### 具회장 任員등과 함께

具院會會長은 지난달 4일 建設技術教育院을 방문하고 安秉旭원장과 건축계 전반에 관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본회 安箕泰총무이사, 金枝泰서울지부장, 그리고 任仁樸사무처장등을 대동하고 동 教育院을 방문한 具회장은 安원장을 비롯한 교육원사무처장, 교학처장등과 함께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넓혀 유대를 다졌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건축기술자, 기술사, 기사와 보수교육을전담하는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차 동양굴지의 건축 기술대학으로 승격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 教育院의 安원장은 건축공학을 전공한 군장성 출신으로 우리나라 건축기술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수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安원장은 具회장과 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두 團體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아끼지 말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具회장은 安원장의 직접안내로 강의실을 비롯한 어학실, 오락실, 기숙사등을 일일히 안내 받고 특히 기술자 교육에 필요한 서적등을 기증받기도 했다.

## 11월 淨化委 개최

11월중 淨化추진위원회 (위원장 具院會本회회장)가 지난달말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회의에서는 淨化업무보고와 12월중 활동과제선정 그리고 82년도 건축사업계 淨化활성화 세부방안, 특별 감사활동 세부계획, 사무처 淨化위원임명 건 등을 중점 논의했다.

한편 동 위원회가 선정한 12월중 활동과제 선정으로는 ① 거리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사무처 직원등이 직접 참여키로 했으며 ② 연말년시를 맞아 허례허식 추방을 위한 분수지키기 교육 실시 ③ 회원정화이념 고취를 위해 회지에 그 내용을 게재키로 했다.

또 82년도 세부계획으로는 윤리 규약준수와 위원회 운용강화방안, 자질향상교육, 지도사업, 지도반 구성, 제도개선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사무처 淨化위원 임명에서는 임인혁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진택 이해운 이상운 권희용 최금규등 5명의 위원과 간사 권오성등 모두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 淨化운동 철저화 청탁배격운동도 활발

지난 11월에도 본회를 비롯한 각 시도支部에서는 청탁배격과 淨化운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교육, 교육내용전달, 관계회의 개최, 결의대회 개최등을 열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서울支部는 27일 회원 3백5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자리에서 벌어진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건축사업무를 통한 부조리근절과 회원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해서 동 운동의 의의를 새겼다.

그밖에 지부장과 사무국장 주재로 임직원에 대한 淨化추진 실천요령과 이념교육, 또 자율정화의 토착화의 기본방향 교육 등을 각각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支部는 본 운동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거리질서지키기, 자연보호운동, 淨化추진위원회개최등 폭넓은 활동을 폈다.

특히 12월에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각 분소 등을 순회, 비위회원등을 색출키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전남支部는 11월중 추진 방향을

사전 예방에 두고 설계 수탁 이전  
에 제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했  
으며 계약체결의 이행 제반서류완  
비, 시공, 감리, 준공불실 방지등  
에 최선을 다해 정화와 관련된 제  
반 부조리의 근원적 발생을 막고  
자 힘썼다.

경남지부의 경우 전전한 사회기  
풍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자율정  
화결의대회를 지난 19일 부곡관광  
호텔에서 회원 및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결의문 채택  
과 구호를 제창해서 의의를 다지  
기도 했다. 또 직원 및 회원에 대  
한 교육을 며 정화이념의 체질화  
에 힘쓰기도 했다.

이러한 정화운동의 광역화 내지  
활성화에 결들여 정착화를 꾀하기  
위해 지부별로 정화업무추진 계몽  
교육을 실시하기도 해서 서울지부  
에서는 대상인원 19명에 대한 정  
화추진 실천요령과 이념 및 방향,  
목표설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산지부도 지난 16일과 17일 그  
리고 18일에 계몽교육을 실시해서  
사정회의 결과 교육, 실천요령, 방  
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마쳤  
다. 경기지부에서도 회원 및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  
본 운동의 정신적 정착에 주력했  
다.

강원지부도 43명을 대상으로 같  
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생활화 정착에 힘썼다. 충북지부,  
전북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제  
주지부등도 본운동의 적극적인 실  
천을 위해 계몽교육을 실시했다

이상과 같은 정화운동의 실천화  
외에 청탁배격운동도 병행하여 실  
시해서 각 지부별로 정신교육, 결  
의대회등으로 그 열기를 더 했고  
이의 발본색원을 위한 자체감사기  
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다짐하  
기도 했다.

## 仁川支部 건축행정실무교육

각종 건축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교육이 지난달 24일 仁川支部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  
다.

인천직할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소속회원을 비롯한  
건축담당실무 공무원 전원이 참석  
해서 개정된 건축관계 법령에 따  
른 실무내용을 익혔다.

인천직할시 총영길 건축과장이  
담당한 이날 교육의 중점 사항은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서 주택축진법, 소방법시행  
령, 보전위생법등 전반에 걸친 관  
계법 해설과 이에따른 질의응답등  
을 실시했다.

특히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  
와 응답을 통해 건축사와 실무공  
무원들간의 업무적 협조를 도모하  
기도 했다.

## 建築界뉴스

### 내년 公共工事 조기집행

정부는 82년도에 시행할 公共기  
관 시설공사의 60%이상을 82년 1.  
4 分期중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南惠祐국무총리는 공공기관시설  
공사 早期發注에 관한 지시에서  
『土期를 단축하고 경기회복추세를  
加速化하기위해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각  
종공사의 60%이상을 82년 3월 이  
내에 앞당겨 집행하라』고 강조했  
다.

이 지시는 또 시설공사의 원활  
한 早期執行을 위해 ▲ 재무부와  
건설부는 82년도 勞賃單價와 표준  
품셈을 오는 12월10일까지 확정하  
고 ▲공사발주기관은 시설공사조  
기집행 계약 요청을 12월10일부터

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조  
기집행에 따른 예산과 자금배정을  
適期에 하도록 했다.

이 지시는 또 시설공사 조기집  
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설공  
사 집행계획서를 12월10일까지 제  
출하고 先給金이 계약 1주일이내  
에 만드시 지급되도록 조치하는한  
편 조달청은 조기집행추진 현황을  
매달 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末에도 금년도 공  
공시설공사를 1·4 분기내에 發  
注하도록 조치했었으며 현재 전반  
적인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건설경기는 제자  
리 걸음을 하고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올림픽大橋 건립키로

서울시는 江東區遁村洞 국립경

기장과 도심권을 직접 연결하는 올  
림픽大橋(風納橋)를 건설키로 했  
다.

서울시는 내년에산에 3억 원의  
설계비를 제상, 올림픽 대교의 기  
본설계 및 세부설계를 끝내고 오  
는 83년에착공, 86년까지 4년동  
안 5백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이교  
량을 완공키로 했다.

올림픽대교는 기존 천호대교와  
지하철 2호선 잠실교 사이에 놓이  
게되는데 이 다리가 완공되면 올  
림픽타운과 도심권이 곧바로 연결  
되게 된다.

### 해외건설 1백억불 넘어

해외건설 受注실적이 올해 들어 1  
백 1억달러를 기록, 해외건설진출  
사상 최초의 1백억달러대를 돌파  
했다.

총 受注액은 이로써 지난 66년 해외에 첫 진출한 이래 16년동안 4백 3억 달러를 실현했고 入金베이스로는 1백억 달러(9월말 현재 92억 7천 6백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금년 海外건설수주 실적은 98억 7천 5백만 달러였으나 18일 現代建設이 말레이시아에서 2억 3천 5백만 달러(실질수주액)에 달하는 페낭교량공사를 계약함으로써 1백억 달러대를 넘어섰다.

이 규모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해외건설 受注실적을 보였던 지난 78년의 81억 4천 5백만 달러와 80년의 82억 5천 9백만 달러보다 24.6%, 22.2%나 많은 것이며 올해 목표 70억 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44.2%나 초과달성한 실적이다.

해외건설受注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中東국가들의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사규모가 커지고 건설시장이 아프리카 東南亞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 11월 2개월 동안 해외공사수주가 활발, 약 33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따냈는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1백1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도별 海外建設受注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달러)

▲ 66년 11,003 ▲ 67년 15,604  
▲ 68년 20,578 ▲ 69년 14,400 ▲  
70년 47,989 ▲ 71년 55,719 ▲ 72년 83,159 ▲ 73년 174,258 ▲ 74년 260,572 ▲ 75년 814,786 ▲ 76년 2,501,739 ▲ 77년 3,516,236 ▲ 78년 8,145,022 ▲ 79년 6,351,336 ▲ 80년 8,259,374

### 新築物에 速成樹 심도록..

서울시는 내년초부터 건축물을 치올때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심어

야하는 나무의 수종과 식재방법 등을 건축허가와 함께 시 당국이 직접 지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주들이 건축물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심어온 나무들이 대부분 사철나무, 소나무등 성장속도가 느린 나무들로 조경효과가 적었다고 분석, 내년부터는 건축허가때부터 플라타너스, 아카시아, 현사시나무등 큰키의 속성활엽수로 수종을 지정, 식재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또 식재방법도 지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정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배규정을 강화, ▲ 연전평 2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 1천~2천평방미터 건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 1천평미만의 건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각각 의무 조경면적으로 정하고 10평방미터에 3그루 이상의 교목과 5그루이상의 관목을 심도록한다는 것. 또 교목의 경우는 키 3m 이상, 밑둥의 직경 5cm 이상으로 반드시 시에서 지정하는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건축주에 대해 식재방법까지도 지정할 방침인데 가로변,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식재량의 대부분을 가로변에 심도록 식수위치, 배열까지도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건축을 허가할때 조경공사비를 예치시켜놓고, 건축주가 준공검사때까지 조경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시가 이에 처급으로 해당 건축물주변에 나무를 심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88서울 올림픽에 대비, 내년부터 시민식수를 적극 유도하고 관공서, 학교등 각급기관 건물주변은 해당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할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 신축건물에 맹인용 블록

서울시는 내년에 중앙청·시청등 공공기관과 터미널등 입구에는 맹인용 점자보도블록을 깔고 지체부자유자의 휠체어가 쉽게 다니도록 횡단보도의 경계석 높이를 현재의 25~30cm에서 5cm 이하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권장하며 어린이 대공원에 장애자를 위한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다.

점자보도블록은 높이 2cm의 凹凸블록으로 각 공공기관, 터미널 근처 횡단보도, 육교전입로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특수 화장실·특수 손잡이 등을 갖추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2억 원을 들여 鍾路 18개소, 淸溪路 27개소등 45개소의 횡단보도를 개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현재 26개인 맹인용 신호기를 점차 늘리고 지체부자유자용 공중전화박스를 번두리에도 설치하는 한편 은행에 맹인전용창구를 확대토록할 방침이다.

### 規格은돌로 시 공토록

서울시는 부실한 온돌에 의한 연탄가스중독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앞으로 주택은 온돌을 규격에 맞게 시공한 경우에 한해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온돌의 시공상태를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키로했는데 내년부터 ▲ 온돌은 반드시 온돌기능사가 시공토록 하고 ▲ 온돌이 표준온돌기준에 맞을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

온돌기능사는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기술시험을 거

## 建築界뉴스

쳐 면허를 얻게 되는데 서울에는 약 2백50명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번두리 5천49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종합가옥진단을 실시했는데 이중 35.6%에 해당하는 1천 8백 1가구가 아궁이 방바닥 굴뚝부분에서 모두 3천 6백75건의 연탄사고 발생요인을 안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요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궁이 부문은 ▲연소통이 균열되거나 파손이 심하며 ▲습기가 많거나 공기공급상태가 불량해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방바닥은 갈라져 연기가 새고 ▲창틀벽체전 기콘센트의 틈으로 가스가 내뿜고 있었고, 굴뚝의 경우 ▲용량이 부족하거나 ▲PVC로 제조 보온이 불량하며 ▲굴뚝으로 역풍이 몰아치는 등 불량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

이 조사에 따르면 특히 한옥의 경우 조사대상 2천 3백53동중 40.2%에 달하는 9백47동이 온돌이 불량해 사고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

### 容積率서 地下室은 제외

서울시는 건축물 용적률 산정기준을 완화, 지하층의 연면적은 용적률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실중 사람이 살지않은 기계실 주차장등은 용적률에서 제외시키고 다방 음식점, 사무실 방등은 이에 포함시켰다.

### 50개市 재개발區域 축소

정부는 내년중에 전국 50개市 5級지역의 재개발구역울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도시재개발에따른주민들의 불만을 되도록 줄이는 한편 재개발사업이 주택사정을 날로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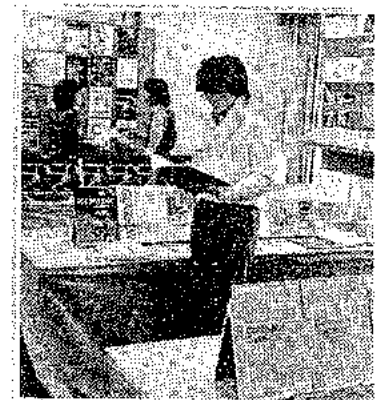
건설부는 이에따라 내년중에 있을 5년주기의 전국 50개시급지역 도시계획 재조정 작업을 계기로 재개발구역울 가능한한 많이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전체주택의 약 2%에 해당하는 10만호 안팎의 주택이 滅失되고 있으며 이같은 주택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도시 재개발사업에 의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내년중에 있을 50개도시의 도시계획 재조정을 위한 기본자침을 마련, 연내에 각 도시에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邑級이하 지역의 도시계획은 82년중에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 英, 카탈로그展示會



영국건축자재 카탈로그전시회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영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영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축자재 수출그룹 소속의 26개 업체가 출품한 여러가지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飛階에서부터 가정용 전기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자재에 대한 새기술이 선보였다.

현장에서 새기술에 관한 소개와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해서 영국의 건축자재에 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 회현·마포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17일 會賢구역 및 麻浦路 주변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계획울 확정했다.

南山 3호터널 양쪽의 무질서한 주택밀집지역인 會賢구역은 79년 11월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지난 9월30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이날 사업계획이 결정됐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대지 1만 4천 9백77평을 대지 1만 1천56평 (73.8%) 도로 2천 6백95평 (18%) 주차장 7백81평 (5.2%) 녹지 68평(0.5%) 공공용지 3백 77평 (2.5%)으로 각각 확보, 공공용지율울 현재의 7.9%에서 26.3%로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대지는 1~5지구로 나누었는데 이중 1지구 2천 6백50평에는 상온이 24층이하의 본점건물, 제 5지구 1천 2백14평에는 30여명의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18층 이하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물을 각각 건립키로 했다.

이들 2개사업지구는 내년초 건물 세부계획을 결정, 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업시행기간은 약 3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 시영아파트 大規模 건립

서울시는 내년도에 모두 8천세대분의 시영아파트를 건립,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에 ▲江東區 高德洞 9만평부지에 5천가 구분 ▲城北區 月溪洞 846일대 1만 6천 5백평 부지에 8백 가구분 ▲江東區 開浦洞 247일대 4만여평부지에 2천 2백 가구분등 모두 8천세대분의 시영아파트를 건설키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건설하게 될 시영아파트도 7평, 13평, 15평등 3종으로하고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년도처럼 실제, 시공일괄 입찰방식 으로 계약키로 했다.

## 建築士の領域

—金某씨의波紋—

1.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論難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建築設計圖 無許作成 혐의로 法廷에 섰던 어느 建築士」 또는 「無許 建築士 營業 싸고 論難」 등으로 都下 각 新聞은 免許와 無免許에 관한 내용에 상당한 紙面을 割愛하였다.

法廷시비로 번진 그 事件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問題가 제기된 그 建築家は 建築士 免許가 없다. 그러면서도 建築設計事務所를 運營해 오면서 建築主로부터 建築設計를 受任하였으며, 建築士 免許도 없이 住宅를 設計했다는 혐의로 檢察에 입건되었고 약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宣告받았다.

그러나 그 建築家は 이에 不服, 정식 재판을 請求하였고, 1審재판부는 「建築士法을 위반한 것이 認定된다」하여 실형(징역 6월)을 宣告하였으나 2審인 서울 형사지법 항소 5부는 「建築의 기본 構想을 제공한 것은 建築士法에 저촉되지 않

는다」라고 판결하여 無罪를 宣告하였다.

實際에 있어서 官庁에 제출된 設計圖面은 建築士에 의해 作成되어 정상적인 許可節次를 밟은 것이었고 그 建築家와 建築士는 전혀 무관한 關係이며 許可官庁은 그 建築家を 建築士法 위반 혐의로 告發한 것이었다. 해서 이 事件은 1·2審 엇갈린 판결로서 지금은 大法院의 판결이 그 열쇠로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問題點은 앞에서 지적된 것 처럼 그 建築家が 建築士도 아니면서 建築士業務를 취급했다는 사실에 注目한다.

3. 여기에서 建築士를 規定하고 있는 法의事項을 살펴보면 쉽게 그 建築家の 문제된 事實을 파악할 수 있다.

① 建築士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建築物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이며, 建築士가 아닌자는 建築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건축사법 제12조)로 규정하고 있다.

|       |                                                               |              |
|-------|---------------------------------------------------------------|--------------|
| 설계    |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 설계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해산서 및 시방서 | 건축법 제2조 제21호 |
| 설계자   |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 건축법 제2조 제20호 |
| 공사감리자 |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                                     | 건축법 제2조 제22호 |

② 따라서 建築士는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할 수 있으며

|               |                                                                             |
|---------------|-----------------------------------------------------------------------------|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건축사법 제25조     | 건축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한 建築士는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                |
|-----------|----------------|
| 건축법 제6조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
| 건축사법 제4조  | 설계 또는 공사감리     |
| 건축사법 제26조 | 업무의 보수         |

④ 이와같은 規定에 위반한 경우의 罰則規定은 변도로 있다.

4. 관련 法令에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 建築設計 및 工事監理 등의 業務는 바로 建築士 固有의 業務이며, 建築士 免許를 소지한 建築士일지라도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 등록을 必하지 아니한 建築士는 業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報酬를 받고 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해 볼 때 법에 의한 일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林正義 建築寫眞研究所 서울시 중구 중무로 3가 58-1 ☎ 260-3363

## 朴學在 교수 別世

지난달 27일 숙환으로  
한양工大에서 장례식거행



원로건축인이며 한양대학교공과대학교  
수인 朴學在교수가 지난달 27일 새벽.

숙환으로 別世했다. 향년 64세.

일본 大阪工大건축과와 재직중이던 한양대공과대학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박교수는 한양대공과대학장을 비롯 서울시 文化委員會건축분과위원과 國展초대작가, 미국 SAH정회원, 건축가협회 명예이사, 건축학회建築史分科위원등을 역임 한 바 있다.

충무공기념사업전설총합계획, 남대문시장전설계획, 한양대학교 대강당과 중앙도서관, 모나리자 빌딩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바 있는 박교수는 저술에도 힘써 西洋建築史精論, 建築哲學으로서의 意匠論등 다수의 저서를 남겨 후학지도의 지침서를 남기기도 했다.

별세후 5일후인 지난 1일 한양대공과대학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과 후학들이 참석, 고고한人品과 고결한 생을 살다가는 박교수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한편 본회 具琬會회장은 장례식전에 故人의 명복을 비는 卍辭로 애도의 뜻을 기렸다.

- 1917년 8월 6일생
- 日本 大阪工業大學建築工學科卒.
- 漢陽大學校 工科大學建築工學科卒.
- 漢陽大學校 工科大學教授.
- 大韓建築學會理事 研究部長歷任.
- 서울특별시 文化委員會 建築分科委員.
- 韓國建築家協會 創立發起委員.
- 文敎部主管 科學技術 用語制定委員.
- 國展招待作家.
- 政府廳舍懸賞設計審査委員.
- 보티카노 敎皇廳招待 謚福式參席.
- 美國 SAH 正會員.
- 韓國建築家協會名譽理事.
- 大韓建築學會建築史分科委員.
- 韓國인테리어 디자인協會 常任顧問.
- 建築哲學으로서의 意匠論.
- 西洋建築史精論.
- 增補版 西洋建築史精論.

### “빛나는 遺德을 남기시고...”

다음은 지난 1일 朴學在교수 영결식전에서 본회 具琬會회장이 행한 卍辭를 옮긴 것이다.

남달리 불평하신 몸으로 오랜시일 동안 병석에서 呻吟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先生님의 訃音이 전하여지자 이 비보를 들은 모든 建築人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追慕와 哀悼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南坡先生님께서 천성이 강직하시고 志氣가 高潔하시어 漢陽大學校 開校 이래 漢陽工大 建築科의 대변자로서 장래의 韓國建築界를 이끌어오신바 같은 人材의 양성에 큰 뜻을 품으시고 한平生을 教育의 場에서 헌신적으로 活動하시었으니, 이는 우리 등들이 항상 南坡先生님을 잊지 못하고 추앙해왔던 연유였으며 漢陽大學校 校史에 길이 빛날 일일 것입니다.

더우기 南坡先生님께서 우리 建築界에 길 이남을 불후의 명저인 “西洋 建築史精論”과 “建築哲學으로서의 건축의 장론”을 가난과 병고의 시련속에서 출판하셨다는 事實하나만으로도 선생님의 學問에 대한 숭고한 哲學과 思想을 느낄 수 있으며 權力과 금전과 명예에 대한 유혹과 욕망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오로지 國家의 百年大計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젊은 建築人을 育成하는 것이 至上의 최고 명예라고 여기셨던 南坡先生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은 우리 漢陽大學의 자랑이요, 건축과 同門들의 긍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先生님의 유해를 한양大學校工科大學葬으로 모시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부정과 안일에 타협할 줄 전혀 모르셨을 것입니다.

不義에 굴종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大義와 명분을 굳게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부추린 학자로 여기시고 잠시도 쉬지않고 저술과 教育을 평생의 業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늘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편견속에서 고독하게 살게 되셨으나, 그런 가운에도 항상 先生님의 대쪽같은 直言과 正論은 늘 제자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언제나 學問의 표상이요, 우리 建築界의 지도자로서 사회의 호탁한 功조에 대하여 비판하는 양심을 끝내 잃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建築界가 선생님께 각별한 조의를 표해 올리는 것도 선생님의 크신 뜻과 학자로써의 절조가 지고하신 까닭이며 이는 한양대학교 동문뿐만 아니라 韓國建築人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전승되어야 할 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先生님은 일제의 文化말살과 6.25전란으로 황폐해진 우리 건축계의 여명기를 위하여 고심분투 하심도 온 世上이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처럼 고결하시고 굳은신 선생님의 학자로써의 소명감은 이제 불모의 이 땅위에 한 떨기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 꽃은 곧 선생님의 훌륭한 인격의 全部를 말하는 것이며 그 꽃에서 풍기는 그 고결한 향기는 우리건축계에 영원한 建築教育의 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듯 꽃다운신 이들을 만세에 남기시고 한 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선생님의 몸은 비록 萬年の 유택에서 잠이 드신다고 할 지라도 그 불은신 유덕만은 천추가 지나도록 고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그 유덕이 우리 한양大學의 아니, 우리 韓國建築界의 밝은 교훈과 근거로써 우리 建築人들에게 두고두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조상에 대신하면서 삼가 故 南坡 朴學在 선생님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漢陽大學校工科大學建築科 졸업생  
代表 具琬會

# 노인복지시설 / 養老院의 現住所

朴 勇 煥

(漢陽大 建築科 教授・建築計劃研究室)



## I. 머리말

「老人 福祉 分野의 發展 與否는 한 나라의 文明의 程度를 가늠케 한다」英國의 「윈스턴·처칠」은 언젠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오늘날 社會 諸分野의 發達과 함께 그 重要性이 強調되어 온 福祉政策은 原來 共產主義 思想의 시작과 함께 그 概念이 形成되었다. 卽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正립된 共產主義는 그들의 一目瞭然한 理論으로 西方世界에 膨大해 있었던 既存 資本主義를 일대 窮地에 몰아 넣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그들의 最大 弱點인 貧富의 隔差에 대한 補完策으로 社會福祉라는 概念을만 들어낸 것이다.

社會福祉가 이렇게 思想的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老人福祉分野는 古代「하무라비 法典」의 epilogue에 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다만 19세기 産業革命을 起點으로 하여 社會가 점차 産業化, 機能化함에 따라 家族 構成등의 傳統的인 秩序가 무너지고, 老人들이 그들의 役割을 喪失하게 되어 社會의 低辺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또한 醫學的인 面 등 諸分野의 發達로 人間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人口의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問題가 점차 深刻해졌을 따름이다.

本稿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關心度가 높아지고 있는 老人 福祉 分野中 養老院에 關한 것으로, 여러 關係 文獻과 關係者의 意見을 參照하여 記述한 것이며 特別 養老院의 實態에 關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을 中心으로 실제 養老院을 訪問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한 것으로 간혹, 偏見에 의해 事實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理解를 바라며, 本稿가 다소나마 이 方面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養老院의 沿革

「80歲 以上으로서 篤疾 廢疾로 인해 能히 自存할 수 없는 者는 그 所屬함에 따라 親戚를 勿論하고 한 사람의 役을 免除하여 護養하도록 許하고 만약 親戚中 護養할 사람이 없을 때는 마땅히 東西大 悲院으로 하여금 모아 安息시키고 公에서 口糧을 支給하고 官員을 보내어 提調토록 하라」 이는 高麗史에 記錄된 것으로 忠烈王 34年 11월에 不遇老人에 對한 施設保護에 該當하는 部分을 一部 拔萃한 것이다.



歷史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老人에 對한 對策은 비록 君主에 의한 仁心惠政의 하나로 施惠된 措置에 불과하기는 하나 古代 및 中世에서 이미 그 形態를 찾아볼 수 있으며 高句麗의 故國川王 16年(西紀 194年)에 을파소에 의해 이루어졌던 救恤制度인 賑貸法, 統一新羅時代의 丁田制度등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具體적으로 오늘날의 養老院의 起原이 될 수 있는 保護施設에 關한 記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李朝時代의 世宗大王때에는 養老事業이 매우 發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世宗大王實錄에 의하면 世宗 8年 7月 17日에 養老院에 關한 發想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養老法의 立法을 下命하였다. 하며, 또한 救護行政에 關한 制度가 經國大典에 集大成되어 體系化 되었고 依託할 수 없는 老人의 收容에 關한 規定도 두었다고 한다.

韓日合併 以後 우리나라는 日本의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老人福祉事業도 역시 朝鮮總督府 施政 二十五年史에 의하면 「1910년에 兩班 儒生의 耆老와 孝子, 節婦의 鄉堂의 模範者와 寡孤獨의 憐愍한 者에게 臨時恩賜金을 授與하였고 1916년에는, 恩賜賑恤資金을 給與하였다」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1929年 朝鮮貴族保護施設로서 財團法人 昌福會를 設立하여 朝鮮貴族을 救濟하고 年齡 60才 以上の 勞働 能力이 없는 老人 貴族을 待接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貴族, 兩班에 局限된 救濟事業은 人道主義思想을 바탕으로 實施하였다고 보다는 當時 激化되고 있던 民族 運動을 緩和시키려는 一種의 撫摩策으로 評價하는 것이 더욱 妥當하리라 생각된다.

1944年 3月에는 近代의 老人福祉事業의 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朝鮮 救護令이 公布, 實施되어 極貧者와 無依託者를 救護하려 했으나 解放과 함께 그다지 實效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救護活動이 一時에 始作되었으나, 持續적으로 계속되었던, 貧困과 人力의 不足으로 인해 이것 또한 成果가 없었으며 當時 國家적으로 當面한 많은 問題들로 인해 制度的인 體系化도 갖추지 못한 채 散漫한 民間活動으로 그치고 말았다.

6·25動亂을 起點으로 하여 수 많은 戰爭 災害民, 以北으로 부터의 避難民, 戰爭 孤兒들의 發生으로 老人에 對한 關心은 거의 等閑視 되다가 朝鮮救護令을

根幹으로 한 生活保護法이 5·16 革命 直後인 1961年 12月 30日 公布되고 1969年 11月 10日에 그 施行令이 制定됨으로써 老人들을 위한 保護施設인 全國의 養老院들도 이를 根據로 運營되게 되었다.

또한 最近인 1981年 6月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되어 오던 老人福祉法案이 비로소 制定됨으로써 施設 保護의 形態도 多角的인 面으로 推進된 展望이 다.

한편 1921년에는 一般的으로 養老院의 嚆矢이라 일컬어지는 聖家 養老院이 天主教 財團에 의해 設立되었고, 以後 1925年 基督教 系統의 愛隣 養老院, 그리고 1927年에 불교계통의 靑雲養老院이 設立되었으며, 1933年 現在 全國의 6個 施設에 58名이 收容되었음이 記錄으로 알려져 있는데 大部分의 施設들이 宗教 團體에 의해 運營되었다고 한다. 그 후 매년 0.8個所 程度의 增加率을 보여 1981年 4月 現在 全國에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公立 3個所 사회복지단체에 의한 사립 45개소로 都合 48個 養老院에 3,136名이 收容되어 있는 實情이다.

### Ⅲ. 養老院의 實能

#### -서울 地方을 中心으로-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福祉 國家 建設」이니 또는 「老人 福祉」니 하여 한창 요란하나 이들 養老院에 起居하는 老人들은 그러한 巨創한 외침을 듣기에는 너무나 외진 곳에 있는 듯 하다.

그들이 어떻게 養老院 生活를 하고 있는지, 生活保護法이 대체 무엇이며 老人福祉法이 制定되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關心을 갖거나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다만 「人生의 마무리」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다가 가야할 이 조그마한 울타리 속의 하루 하루가 너무나도 지루하고 덧없이 느껴질 뿐이다.

養老院을 한번 訪問하려면 보통 市內에서 버스를 한두시간씩 타고, 게다가 20~30分씩 걸어 들어가야 비로소 老人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개가 中心地에서 벗어나 外廓地帶과 周邊에 人家가 드물고 空氣가 맑아 一見 老人들이 지내기에 매우 適當한 곳일것 같으나 이러한 周邊環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苦痛인 孤獨感을 불러 일으키는 原因이란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 社

會에서 罪를 犯한 경우 犯罪者라하여 一定 期間을 社會와 隔離, 服役을 시키게 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罪의 댓가가 바로 孤立이라는 점을 理解한다면 이들 養老院들을 社會와 隔離되어 陰蔽된 곳에 둠으로써 收容 老人들에게 「社會的인 죽음」「心理的인 죽음」을 가져다준다는 것 또한 理解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에게 있어 現實的인 悲哀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 老人들의 하루 日課를 살펴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단조로운 生活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하루 세번씩의 食事時間, 그리고 누구나 손수 해야만 하는 빨래, 바느질, 소품정리 등의 늘 반복하는 것 以外에 남은 時間은 방 안에서 출근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누워 지낸다거나 바깥에 나와 無限定 앉아서 보내는 게 全部이다. 老人들 끼리 모여 앉아 있노라면 별로 할 얘깃거리가 없다. 생각나는 것이라곤 몇번씩 해버린 것 뿐이고 귀담아 들어 줄 만한 새로운 相對者도 없어 그저 묵묵히 지낼 따름이다. 視線을 잃은 채 表情없이 앉아 있는 아들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노라면 영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늙음이란 日體에 새로운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지난 歲月을 그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아온 이들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6·25事變으로 헤어져야만 했던 血肉에 대한 그리움, 급가야는 이들을 이곳까지 오게 했던 子息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 과거의 뼈아픈 記憶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살아남아 이들을 아리게 하며, 또한 죽음에 對한 이런저런 생각들도 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아직도 20年前에 헤어진 딸을 찾겠노라 熱望하는 주름무성이의 노파, 老夫婦가 各各 別途의 養老院에 收容되어 離別 아닌 離別을 하고 있는 老人들 여기 養老院에는 아픈 傷處들로 가득하다.

養老院 老人들에게 있어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용돈이다. 용돈이라야 그리 많은 額數를 必要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달에 한두번 정도 市內 구경갈 때의 零錢이나, 가끔씩 먹고 싶은 別食 정도, 그리고 할아버지 들인 경우는 담배가 支給되나 할머니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吸煙을 하는 老人들은 담배 몇 갑을 사피울 정도면 되는 것이다. 그나마 가까운 親知가 있는 경우에는 가끔씩 찾아와서 한방 食口들을 같이 불러

내 준비해 온 음식을 待接하고 용돈을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大部分의 老人들은 이러한 同僚 老人들이 마냥 부러운 모양이다. 오랜만에 바깥 바람이나 쐬려 나가려 해도 이들을 주저 앉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용돈 問題 때문이다. 「어디서 잔잔한 일거리만 가져다 준다면 消遣도 되고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老人들도 더러 있지만 대개의 老人들이 젊어서 힘든 勞動으로 인해 慢性病人 神經痛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약 40%가량이 中風, 老衰, 結核, 肢體障礙 등으로 苦痛을 받고 있고 生活에 대한 意慾을 喪失하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이들이 居處하는 各급의 방안에는 여러 形態의 身心障礙 老人들이 正常 老人들과 混入 收容되어 있어 소위 責任制라고 하여 비교적 健康한 老人들이 이들의 身邊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돌보아 줄 일손의 不足, 人件費의 不足 등으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게 施設側의 얘기이다. 하여간 이러한 混入 收容 形態는 健康한 老人이나 障礙 老人 兩者에 모두가 매우 不便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특히 全体 老人中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結核 老人들과 죽음을 앞두고 전혀 起動할 수 없는 老人들을 위하여 隔離室 정도는 따로 마련해 줘야 할 現實이며 일단 老人이 死亡할 時에 따로 安置할 靈安室 등이 없이 이들이 起居하는 방에 며칠씩 같이 두어야 하는 점을 勘案할 때 靈安室 또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院內에는 아주 基本的인 醫藥品을 除外하고는 醫療施設이나 看護員을 두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 항상 治療를 받아야 할 一般 慢性病 患者들은 웬만 하면 참고 견뎌야 할 형편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醫療 service는 있다. 定期的으로 該當 保健所에서 찾아와 檢診을 해 주고 있으며, 일단 病이 나면 소위 1.2次 診療 施設이라 하여 指定 病院을 利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醫療 惠澤도 事實上 이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이 病院을 利用할 경우 現實적으로 너무 낮게 配當된 政府의 이들에 대한 治療費로 인해, 病院側 으로부터 매우 浮대접을 받게 되며, 또한 이들 老人들 입장에서 指定 病院을 利用하려면 많이 交通費 등 其他 經費가 오려 많이 들어 차라리 現實적으로 거의 未備한 狀態인 院內의 醫療 施設을 充實히 갖춰 可能的한 自體의 治療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施設側의 얘기이다.

所謂「敬老優待制度」라 하여 이들 收容 老人들도 理髮料, 沐浴費 등을 割引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老人들이 隣近 沐浴湯을 실제 利用하려면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것은 이러한「敬老優待制度」가 收容 老人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自體가 法的으로 明文化 되지 않은 勸奨事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公共 施設 이외의 民間 施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施設側의 外面으로 인해 몇십명의 老人들이 몇군데씩 돌아 다녀야 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우선 이들 收容 老人들에게라도 實質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措置가 아쉽다.

養老院 老人들의 특징중의 하나는 이들의 거의가 宗教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S 養老院의 경우는 아예 院內에 佛堂을 마련해 놓고 老人들이 利用하게 하



고 있는데, 이들 老人들이 信仰을 바탕으로 한 超越의 價値觀을 가짐으로서 現實生活의 어려움을 克服하려는 心理로 理解할 수 있으나, 事實上 그렇게까지 절실히 宗教에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별로 많지 않으며 相當數가 入所後에 단순히 單調로운 生活의 무료함을 메꾸기 위한 餘暇 善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主目할만 하다. 이들에게 좀더 깊은 信仰心을 갖게 함으로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이 다소나마 心的 위안을 받아 毎事에 좀더 意慾적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老人들은 入所前의 비교적 어려운 環境과 거칠은 生活, 그리고 낮은 學力 수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障礙 要素도 많은 것 같다.

우선 意慾의 喪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健康上的 理由 때문이기도 하나 獨自의 生活을 하다가 團體 生活

로 바뀔으로써 해서 생기는 他人에 對한 依賴心, 養老院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해서 「人生의 落伍者」라고 느끼는 심한 劣等感 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느껴진다. 또한 그들이 自體의 可能的한 動物飼育, 植物栽培, 讀書 등의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등에도 關心을 갖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理由에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入所前에 生活的인 餘裕를 누린 적이 있었거나, 學力 수준이 比較的 높은 몇몇 特定 老人들만이 항상 이러한 周邊의 소일거리에 關心을 두고 있다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共同 生活에 대한 適應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團體 生活에 있어서 私小한 理解關係로 인하여 다름이 잦은 편이고 同僚 老人에 대한 不滿이 相當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며 一般的으로 느껴지는 心理的인 特性은 보통 老人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으나 한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人情 많은 老人像」과는 좀 거리가 있는, 同僚들 간에 극히 利己的인 思考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우선 自己 自身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방 食口들, 그리고 비로소 自身들이 속해 있는 養老院 全体 食口를 생각하는 式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自身들을 扶養해 줄 家族이 없음으로 해서 自身은 自身이 지켜야 한다는 觀念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때문인 것 같으며, 事實上 이들이 病이나 기타 理由로 해서 어려운 일에 逢着했을 때 이들을 情誼적으로도 줄 수 없는 現實 또한 이를 充分히 納得하게 한 만한 것이다. 그들 뒤엔 自己 自身조차 가누기 힘든 보통 75~6才의 나약한 同僚 老人들과 항상 돈에 꼬달려 마음뿐인 施設長을 비롯하여 쥐꼬리만한 薄俸에 항상 마음을 두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몇몇 施設 從事者들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역시 이들 老人들만이 生活하고 있는 單層社會에 멀다 않고 찾아오는 異邦人(?)을 맞이하는 일이다. 우선 自身들을 위해 이곳까지 용케 찾아 준 것이 고맙고 同僚, 老人들이 지켜워서 들려주지 않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相對者를 찾아서 좋은 것이다. 이럴때면 이들은 한동안 잃었던 話氣를 되찾고 얼마간의 술렁임이 있다. 이곳을 찾는 訪問客의 類型은 여러 種類여서 일일이 꼽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確然히 예년에 비

해 作數가 많이 늘었나 보다. 이것을 순전히 現在 社會 全般에 걸쳐 造成되고 있는 社會福祉에 대한 關心의 部分的인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는 孤兒院이나 기타 收容 施設에서 흔히 볼수 있는 大學生 씨클들의 結緣 關係에 의한 定期的인 訪問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나 사흘마다 한번씩 꼭꼭 찾아와 이들을 無料로 보살펴 주는 鍼術師, 매달 한번씩 이들에게 푼돈이나 마 일일이 老人들의 손에 쥐어주고 가는 50代 영감님들 단골도 세법 있다. 대개의 이러한 이들은 餘裕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暇한 生活의 한 部分을 이곳 老人들을 위해 힘겹게 善事하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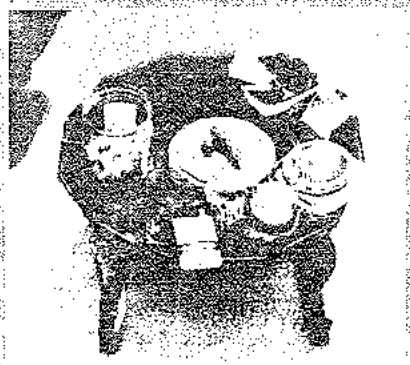
訪問客들 중에는 原來的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에게 累를 끼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가령 힘들여 마련한 善物 구려미와 함께 몇시간짜리 發表會를 計劃하거나 또는 젊은이 위주의 힘든 作業을 준비하여 이들을 금기야는 괴로하게 하고 귀찮은 感情조차 불러 일으키게 하는, 마치「慰問한다는 名目으로 自身들이 慰勞를 받고 싶어함」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의 一方的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로 어떤 施設에서는 이 같은 일들을 防止하기 위해 심지어 訪問時間까지 定해 놓은 곳도 있다.

年末年始가 되면 訪問客 러쉬가 일어난다. 매스콤들은 그동안 닫혔던 입들을 일제히 열어「不遇한 이웃을 돕자」라고 외쳐대며 또한 이때가 되면 社會 여러 團體들이 그들이 訪問할 만한 곳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施設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때에 많이 찾아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몰려와 그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한다. 이럴 때에 제일 바쁜 사람은 역시 老人들로서 社會 團體, 學生들, 婦人會들 그들이 만나고 또 같이 즐겨줘야 할 各樣色의 사람들로 인해 차라리 방안에 누워 편히 쉬고 싶은 마음조차 생길 지경이다.

名節이나 年末이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듯 人蹟이 뜸해지고 예나 다름없는 靜寂이 찾아오면 이들 老人들은 새로운 쓸쓸함에 젖게 된다. 「꼭 이런 것이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 分明一年에 한번씩 찾아오는 季節性 流行은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다. 不遇 이웃 돕기 제철이란 따로 없다. 언제 어느 때고 이들에게 關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情이 아쉬운 것이다.

이들과 이웃해 사는 隣近 住民들의 無關心한 態度 또한 理解하기 힘들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도대체 養老院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許多하니 말이다. 결코 이웃일 수 없는 이웃들이 養老院 周邊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가끔씩 特別한 訪問客들이 찾아 온다. 여기 사는 老人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院長을 봐드려 오는 白髮이 성성한 老人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들, 딸, 며느리의 구박에 못이겨 차라리 남은 餘生을 이곳에서 보내겠노라고 며칠씩 찾아 오지만 入所하려면 어렵도 없다. 養老院의 現實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餘裕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보다 못한 수많은 無依託 保護對象 老人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그 入所 節次가 무척 까다로운 이들을 簡素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現



在의 規定을 보면 生活保護法에 의해 만 65才 以上の 老人들로서 養老院에 入所하려면 事由가 記載된 戶籍謄本과 住民登錄 謄·抄本, 無依無託 證明書나 要保護對象 證明書를 添附하여 市, 郡, 邑, 面의 社會係나 福祉係에 養老院 入院申請書를 提出하여 措置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過程이 까다로운 것을 事實이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節次는 限定된 施設內에서 「꼭 들어와야 할 사람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關係者의 立場과 또한 너무나도 目的으로 모자라는 現在 既存 施設들의 收容 能力을 勘案할 때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간다. 節次도 까다롭지만 일단 이러한 節次를 거치더라도 금방 入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年씩 걸린다고 한다.

養老院의 入退所라는 것이 育兒 施設과는 달리 一定 期間을 지나면 入所者들이 外部로 排出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게 되면 변일 없는 한 삶을 마칠

때까지 老人들이 지내게 되므로, 한 사람이 死亡해야만 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묘한 雙曲線 關係가 이루어 지는 것이 특색이다.

대개 한 養老院마다 年間 십여명 以上, 많으면 定員의 30%를 넘게 老人들이 새로운 環境에 對한 適應度가 낮아 施設入所하는 해에 死亡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단 死亡하고 나면 몇장의 書類와 一人當 20,000원씩의 政府 補助의 葬禮費와 함께 이들의 지루하고 힘찬 人生 旅程은 모두 끝나고 指定 墓地에 얼마동안 假埋葬 形式으로 묻혀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緣故者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老人들의 心情은 슬픔에 앞서 이미 죽음이라는 한고비를 넘긴 同僚에 대해 漠然한 부러움같은 것을 느낀다고 한다. 그들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것은 어차피면 同僚들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을 고생시켜주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들을 收容하여 保護하고 있는 施設側의 苦衷 또는 한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公立인 경우는 全額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補助에 의해 運營되고 있으며, 私立 또한 40~60% 정도를 政府 豫算에서 補助받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들 養老院 運營者들이 政府 補助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을 담당할 特別한 수입원이 없이 一般 篤志家에 依存하는 실정이라 하며, 따라서 이러한 依存度에 따라 財政 狀態가 施設別로 차이가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施設들이 資金에 허덕임에 따라 이들은 項目別로 支給되는 政府 補助金を 變則的으로 運用하고 있는 實情으로, 쌀이나 야채 購入費를 施設 修理費로 쓰

는 등의 現象이 불가피하다는 한 關係者의 얘기이다. 여하는「不遇 老人을 돕겠다」는 犧牲者의 精神으로 施設을 運營해 온 이들도 時間이 흐름에 따라 金錢적으로 부닥치는 苦衷으로 인해 애당초의 意慾을 喪失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慈善事業家가 아닌 社會事業家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그들에 대한 社會의 재인식을 當付하며, 「政府에서도 언제까지이고 慈善에 미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現實的인 財政補助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筆者가 S 養老院을 訪問하였을 때 다른 養老院과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財政 狀態가 良好한 편으로 住居 環境이나 食事, 娛樂 施設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管理者

側에서 얘기하듯, 웬만한 中流 家庭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施設 老人들의 不滿은 자못 심각한 편이었다. 「여기 老人들은 自己들이 市民 稅金 稅款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고마와 하기는 커녕 무슨 不滿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며 이들 老人들의 염치없음을 탓하고 「얼마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면 敬老 思想같은 것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한 實務者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施設 老人들을 無感覺하게 대하는 말투며, 그들이 이곳을 하나의 쉬어가는 직장 정도로 여기는 思考方式, 그리고, 乞人行脚이나 行方不明등의 不作用 등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老人들의 바깥 出入을 統制해 버리는 등의 無事安逸主義에 치우친 극히 事務的인 態度, 단순히 衣食住만 잘 解決해주면 되리라는 따뜻한 보살핌이 缺如된 생각들이 바로 이곳 老人들을 不滿스럽게 하는 까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老人들에게 따뜻한 人情이 必要한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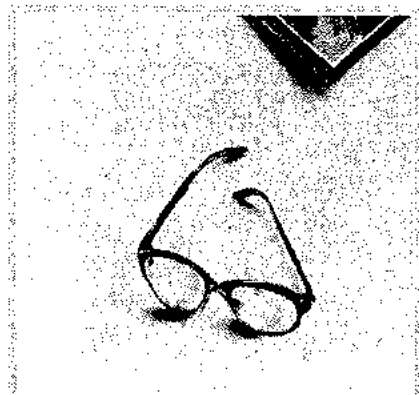
이들은 새로운 環境이나 施設에 대한 適應度가 매우 낮은 편이라 養老院 入所 當時에는 애로事項이 많으나 일단 適應이 되면 점점 滿足度가 높아지는 모양이다. 특히 이들이 生活하고 있는 老朽하고 不合理的인 住居環境에 이들이 그다지 不滿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住居環境의 問題點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施設 自体의 老朽함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 말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선 이들에게 時急한 것은 安全 事故에 對備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發生하는 대부분의 事故가 넘어지거나 혹은 떨어져서 생기는 것들이다. 문턱등의 하찮은 障礙物에 의해서도 이들은 生命에 危險을 받기도 하며 더더구나 번두리의 산기슭의 傾斜地에 位置한 경우, 地面의 高低差로 인해 생긴 급한 傾斜路, 계단, 난간없이 세워진 築臺등 無計劃하게 만들어진 通路 部分에는 언제나 이들 老人들을 威脅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現在 한 방에 7~8名様, 많으면 10여 명이 기거하고 있는 收容室도 매우 狹小하고 人員이 많은 것 같다. 老人들이나 施設側의 얘기로는 대체로 서너명씩으로 生活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한다. 이들이 集團生活에서 서로 상대방을 認識하고 紐帶感을 가져 그를 나름대로의 家族感을 느낄 수 있는 알맞는 規模

의 人員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다. 外國의 경우에 現在 한 施設當 50~60명으로 人員數를 配定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00~120명 정도의 收容은 매우 無理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現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綜合하여 記述하였다. 이외에도 言及하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으나 省略하기로 하며 다만, 우리 社會에서 이들에게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기를 바라고 싶다. 이들은 울타리 밖의 다른 老人들과 特別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둘러싼 周邊 環境의 압박으로 인해 이곳까지 들어 왔을 뿐 그들은 自身은 극히 正常的이며, 따라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正常的인 生活를 영위하게 하느냐가 重要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이러한 생각으로 對處해 나 갈 때, 그들의 고질적인 問題인 孤立感의 解消가 어느 정도 可能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이들 養老院들도 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단순한 收容形態에서 벗어나 文化的인 要素를 갖춘 保護의 形態로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IV. 養老院 — 그 問題點과 對策

養老院의 當面한 果題로서는 우선 施設의 收容 能力의 不足, 老朽化, 障礙 老人과의 混合 收容의 解決 專門 從事者의 不足 醫療的인 施設의 未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施設의 不足에 대하여 알아보면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施設 保護를 해 줘야 할 老人數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正確한 調査나 統計가 없는 實情이므로, 1977年 保健社會部 統計資料를 빌리자면, 總老人 人口數의 0.6%를 施設 保護의 基準으로 잡고 있어 이 數置를 換算하면 現在 65才 以上の 老人을 146萬名으로 볼 때 8,760名이란 계산이 된

다. 그러나 現段階에서 사실상 施設保護를 해줘야 할 在家保護對象者, 零細民 老人등 現在 國家에 의해 生計保護를 받고 있는 老人들을 합치면 全体 老人의 11.6%에 該當하는 170,000여명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現在 收容率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1981年 現在 48個 施設에 3,136名으로 全体 老人의 0.22%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5.3% 정도이며, 스웨덴이 4.5%,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8.6%정도로 대단히 높은 收容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까운 日本의 경우 1.4%정도로 비교적 낮은 收容率을 보이고 있으나 韓國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G.N.P 1,000~1,500 수준의 1~1.5%를 適正線으로 잡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施設 收容 能力의 擴張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 수 있다.

施設의 增加狀態를 보면, 1921年 以後 지금까지 60年 동안 48個所가 設立 되어 매년 1個所에도 못 미치는 특히 最近10년간을 볼 때 1971年의 46個所의 收容人數 2,529名에 비해 施設數는 그동안 2個所가 增加한 반면 收容人數는 600名 정도가 늘어나 相對的으로 1施設當 定員數가 늘었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1980年 現在 託兒施設을 제외한 全國의 兒童 施設이 327個所는 28,191名을 收容하고 있으며, 더구나 全体 兒童의 數가 總人口數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반면 老人 人口의 數가 增加 추세임을 감안할 때, 老人 施設의 擴張은 시급한 과제이다.

養老院들은 認可를 받을 當時 特性에 適合하게 建築한게 아니라 대개가 一般 家庭집을 利用하여 施設 認可를 받았기 때문에, 近來에 세워진 몇몇 施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老人들이 居住하기에 不適合하여, 또한 集團 生活에 대한 考慮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最高 60年에서 20년이 지난 것들이 全体의 半數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각 部分的인 老朽와 問題點들을 일일이 열거 하기 힘든 형편이다.

現在 施設에 대한 法的인 根據는 1961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25條 및 27條와 1969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 施設設置基準令에 두고 있으나, 사실상 이 自体가 有名無實한 실정이며, 老人福祉 收容施設에 관한 獨自의인 施設基準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現視點에서 그것이 잘 지켜질지가 의문시 된다. 여하튼 政府의 補助에 의해 部分的인 補修를 하고 있으나

令後의 建築에 있어서 老人의 特性을 考慮한 充分히 根據있는 基準을 研究, 마련하여 全体 施設에 대하여 一貫性 있는 補修 및 新築, 増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無依無託한 老人들로서 65才 以上の 貧困한 者를 對象으로 養老院에 收容하고 있는 實定이나 健康狀態에 따른 施設의 分類는 無視되고 있다. 따라서 分体 老人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障得老人의 分離收容이 시급히 解決되어야 하며, 특히 各 施設當 平均 3~5名씩 차지하고 있는 結核患者들은 保健所에서 定期的으로 投藥을 하고는 있으나 이들을 隔離, 收容할 隔離室이 없음으로 해서 점차 結核患者가 늘어나는 點은 빨리 解決해야 할 問題인 것 같다.

한편, 養老院 老人들의 現實의인 面에서의 가장 問題視 되는 點이 社會的 孤立에 따른 孤獨感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解決策이나 論難이 한번도 提起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養老院에 대한 기존 政策과 一般의 認識이 이들을 구식진 곳에 隔離시켜야 한다는 收容所의인 性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當然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1960年 以後 外國에서는 이들 養老院을 住宅地 內에 設置하도록 許可 基準을 定하여 實施하고 있다고 하며, 그 主要한 意圖는 收容老人에 對해 隔離狀態가 아닌 地域 住民과의 交流를 勸奨함으로 해서 이들 老人들에게 社會의 落伍者라는 劣等感에서 탈피하게 하여 그들이 住民의 一部라는 意識을 갖게해서 이발소, 목욕탕, 식당, 진료소 등 一部 施設들을 低廉한 價格으로 利用하게 함으로 해서 相互 "give and take"에 立脚한 共感帶를 形成하는 所謂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care"가 바로 그것이다. 여하튼 關係者들은 老人들의 孤獨感을 解消시킬 수 있는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해 봐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社會福祉, 특히 老人福祉施設 從事者에 있어 전문가가 全無한 狀態이다. 短期間의 教育을 통해서 「社會福祉從事者資格證」이란 것을 發給하고 있는 형편인데, 現在 全体 養老院에 總 288名의 從事者가 근무하여 收容人 10.8名當 1名꼴이 되며, 그 중 이들 有資格者는 從事者의 10% 미만에 그치는 셈이다. 日本이 1977年 現在 施設當 下物 從事員이 18.9名이며 收容者 2.8名當 1名인 것에 비교하면 施設從事者

의 確保에 關한 問題가 얼마나 急한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收容老人에 대한 醫療惠澤 問題인데, 1977年 1月 1日부터 實施된 醫療保險制度로 收容老人들도 醫療保護 對象者로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生活保護法, 醫療保護등에 根據한 수 있으나 現實의으로 불 便 施設의 地域的인 問題, 다시 말해서 病院이나 保健所의 거리가 너무 멀어 交通費나 醫師 往診料등이 治療費보다 오히려 더 들게 되고 老人들이 慢性病이 많아 지속적인 治療를 要함으로 해서 現在로서는 全無狀態인 施設內의 醫療設備을 갖춰 可能한 한 院內에서 解決하는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以上에서 現在 當面한 몇가지 問題點을 들어 보았으나 보다 根本的인 것은 現實의 諸問題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財政的인 補助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껏 老人福祉에 投資한 政府의 比重은 全國 48個 養老院에 대한 運營資金 補助와 生活保護法에 依據하여 住宅保護 對象者中 老人들에 대한 生計 유지비 정도가 全部인 實情으로, 이것은 G. N. P의 0.7%에 해당하는 社會福祉 分野의 一部인 것이다. 그나마 老人福祉 分野는 타分野에 비해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老人들이 이미 經濟的 役割 喪失로 非生産的 部類에 속한다는 認識으로 인해 나타나는 政策的인 結果로 여겨진다. 자라나는 兒童들이 장차 社會에 充分히 기여할 수 있으므로 保護 育成되어야 한다면, 老人들 또한 이미 社會에 기여한 댓가로 의당 國家로부터 保護를 받아야 할 權利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老人에 대한 恭敬의 美德을 들어 老人 問題에 있어 별 問題가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政策上으로도 家宅保護에 重點을 두어, 施設保護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번에 制定된 老人福祉法案에 老人들의 財政과 健康에 따라 나눈 몇가지 保護施設의 明文化에도 매우 苦衷이 많았다는 關係者의 뒷얘기이다.

오늘날 이러한 保護施設이 多樣化 된 先進國에서도 과거에 뿌리 깊었던 傳統的 秩序가 産業化의 여파로 인해 점차 變質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나 傳統의인 美德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老人福祉 行政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行政組織이 分化되어 老人만을 위한 全體 機構가 設置되어야 한다. 日本

에서는 厚生省 산하에 社會局이 있어 여기에는 老人福祉課와 老人保健課가 各各 分化되어 있으며, 美國에서도 1965年 老人福祉法에 의하여 保健, 教育 福祉 省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內에 "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機構를 두고 老人福祉에 대한 問題를 全擔시키고 있는 反面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行政上의 分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結果로 責任所在의 不明確性, 責任 回避性, 責任 轉嫁 傾向등 여러가지 矛盾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福祉 行政 要員들에 있어서도 이 分野를 專攻한 전문가를 養成하여 實務를 담당하게 해야겠으며, 經濟的 安定策으로 國民 福祉 年金 制度가 조속히 實現되어야 하며 停年制度에 適用되지 않는 老人들을 위한 就業을 앞선해 중으로서 生計 保障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老人들에 알맞는 老人住宅의 標準 模型을 研究하여 이를 권장해야 하며, 教育, 文化, 娛樂등에 대한 多樣한 program의 開發을 서두를 것이며, 이러한 諸分野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研究機關을 育成을 補助해 줘야 한다. 日本에서는 最近 10年間 老人問題에 대해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1978년 한해동안에 이와 關連한 200여편의 主要한 論文들이 發表된 바 있으며, 東京老人問題研究所에서는 1975年度 研究費支出額이 80億엔에 달하였다고 한다. 美國의 國立 老人研究所의 研究費 豫算 또한 1978年度에 3,700萬弗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으며, 英國이 國家 財政 狀態가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世界에서 가장 모범적인 老人福祉 國家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1940年度부터 老後 保障制度의 確立을 위해 꾸준한 研究를 해온 덕분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現在 몇몇 學者들이나 民間團體에 의해 간헐적인 研究로 그치지는 現實을 생각할 때 심한 格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老人福祉에 關한 問題點들은 이 외에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國家의 老人福祉에 대한 意志와 老人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겠다.

끝으로 老人問題는 特定 部類에 局限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씩 부딪칠 必然的인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 大丘邑城과 嶺南第一関(南門) 重創에 對한 小考

徐 正 男  
(大亞建築設計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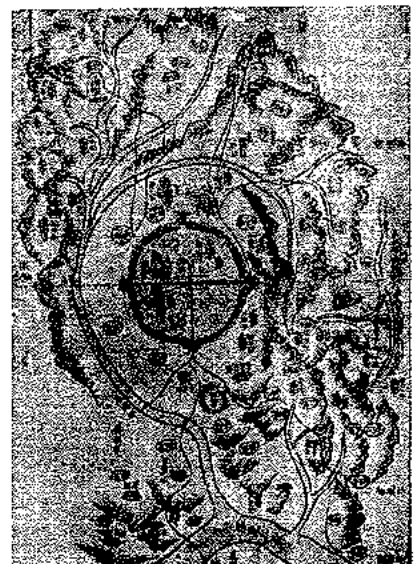
## 1. 大丘邑城(土城)의 築造

우리나라에는 古來로 山城을 防守의 要衝으로 重視하고 平地에도 府邑에 城池를 築造한 例가 있다. 大丘에 城이 築造된것은 山城에 속하는 達城은 三國時代以來 여러차례 加築된 바 있지만 邑城이 築造된것은 壬辰倭亂 直前의 일이다. 宣祖二十三年(1590)에 이르러 倭寇의 患을 우려하여 土城을 당시 大丘府使 尹峴이 善山 軍城 仁同의 三個 邑民을 徵集하여 大丘府民과 더불어 築城(土城)을 完了했다고 大丘府邑誌는 記錄하고 있다. 特히 慶尙道는 日本에 直面하는 要衝인 까닭으로 城池 修築이 가장 많아 釜山 東萊, 密陽, 金海, 多大浦, 昌原 咸安 등의 諸城을 增築하였고 大丘府城과 더불어 築城된것은 淸道, 星州, 三嘉, 永川 慶山, 河陽, 安東 등의 邑城이 있다. 大丘 土城築造 年代에 關係서는 大丘府邑誌 營先生 尹峴條에서는 宣祖二十三年에 完功한 것 처럼 記錄되어 있고 한편 宣祖 實錄二十六年 閏十一月十四日條에 실린 原任 領議政 鄭澈등의 陳情文에는 淸道, 星州, 三嘉, 永川, 慶山, 河陽, 安東, 尙州의 邑城과 한가지로 宣祖二十四년에 築城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大丘邑城의 築造는 宣祖二十三年(1590)에 着工하여 翌二十四년에 完工한 것으로 推測해 둠이 옳을 것 같다. 宣祖二十五年(1592)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四月二十一日 大丘에 맨 먼저 侵攻한 倭將 小西行長의 軍에 의하여 毀破되었다. 이후 140餘년이 지난 英祖때 土城을 石城으로 새로 築造한 後의 築城碑에 府治의 北쪽에 土城遺址가 있으나 언제 創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壞滅되고 말았을 뿐 아니라 具體的인 規模에 關係서는 지금 알길이 없다.

## 2. 大丘邑城(石城)의 築造및 規模

宣祖三十四年(1601) 慶尙道 監營이 大丘府로 移置된후 大丘의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重要性이 認識되었으나 朝鮮王朝 後期 社會의 無力으로 英祖때까지 百數十年이 지나도록 大丘府城의 築造가 實現되지 않았으며 그간 東萊에서 大丘에 이르기까지 城池가 없어 東萊, 密陽, 慶州, 永川, 大丘등에 城鎮을 만들어 倭賊에 對한 防備의 必要性을 수차례 主張하였으나 朝臣들간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여 築城의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英祖十一年에 大丘로 到任한 慶尙道 觀察使 兼 大丘都護府使 閔應洙의 建議를 朝廷에서 받아들여 英祖의 允許를 얻어 築城의 實現을 보게 되었다. 築城碑에 의하면 英祖十二年(1736) 四月八日(癸卯)에 伐石을 시작하고 四日後인 十二日(丁未)에 開基하여 四月二十五日에 休城을 이룩하고 六月初六일에 女堞을 完功하였다 한다. 石城의 規模에 關한 數値는 築城碑 大丘府邑誌의 營先生條 府城條 및 大丘府 事例등 忠料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諸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周遭: 2124步(築城碑 大丘府邑誌府城條 同營先生條)



□ 大丘邑城 地圖

2122步(大丘府事例城堞条)

城高: 11尺(營先生) 24尺(府城)

10尺(城堞) 西南 18尺 東北 17尺(築城碑)

女堞: 955 (營先生 府城 城堞)

819 (築城碑)

上記 規模를 現行 미터法으로 換算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周週: 2124步를 周尺으로 使用한 것으로 換算했을때

$2,124\text{步} \times 6\text{ (周尺)} \times 20.81\text{ (cm)}$

$= 265,202.64\text{cm} \approx 2,600\text{m}$

營造尺으로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2,124\text{ (步)} \times 3.8\text{ (營造尺)} \times 31.22\text{cm}$

$= 251,982.864\text{cm} \approx 2,500\text{m}$

城高: 18尺

周尺을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18\text{尺} \times 20.81\text{cm} \approx 374.58\text{cm} \approx 3.8\text{m}$

營造尺을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18\text{尺} \times 31.22\text{cm} \approx 561.96\text{cm} \approx 5.6\text{m}$

上記 數値를 검토해볼때 당시 周尺을 適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周週는 약 2.6km 西南側 城高는 약 3.8m 정도로서 추정할 수 있다. 이 城에는 東西南北 四正門이 있었고 門에는 譙樓(門樓)를 세웠는데 東에는 鎮東門 西側에는 達西門 北側에는 拱北門이라 稱하고 특히 南門에는 嶺南第一閤이라는 扁額이 걸려 있었다. 이밖에 東西에 東小門 西小門 두개의 暗門과 望樓로서 東將台, 南將台, 北將台, 望京樓가 있었다. 築城의 完功에는 約 5個月의 時日이 걸렸고 動員된 延人員은 78,584人이었다. 全体 城壁을 100牌로 나누고 各牌에 牌將 1人을 두어 各其 分擔 築城한 것으로 觀察使 自身이 率領하고 있다. 그리고 守城에 必要한 各種 機械를 具備한 修城倉을 세우고 不意의 事態와 後日의 修城에 對備하였다. 이듬해인 英祖十三年(1737) 二月 上院에 嶺營築城牌를 建立하였다. 現存 築城牌는 甲子年 高宗五年(1864)경 겨울에 重修한 것으로서 旧觀 德亭址에서 旧達成郡庁(大邱市 中區 東城路二街) 附近에 옮겨졌다가 다시 南山洞 大邱鄉校에서 壽城區 忘憂公園內에 保存되어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었다. 以後 百三十余年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雉堞은 把毀하고 門樓는 朽傾하여 嶺南 雄藩의 體貌가 凋弊하였음으로 이에 興宣大院君 摠政下인 高宗七年(1870) 大邱府城의 一人修理가 斷行되었다. 修築時 工事 內容을 修城牌에 의해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體城: 新築97步 改築118步 補 1,409步

雉堞: 新築 2,680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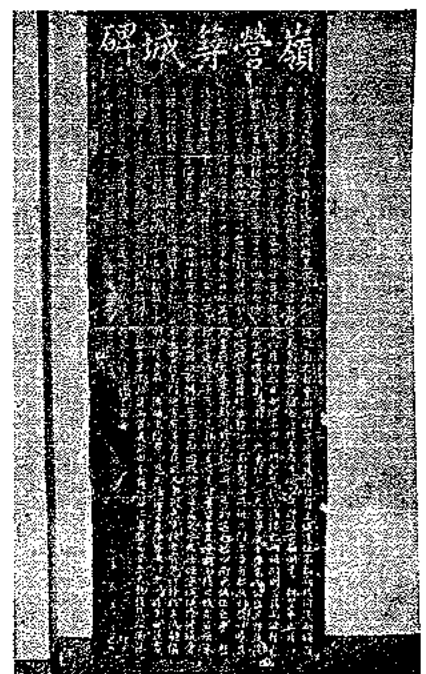
門樓公廡: 新築72門 重建37門 重修517門

公廡各處: 修補 256門

以外 東西南北 四門의 譙樓(門樓) 望樓를 重建 乃至 重修하고 標樓(望台)를 東은 定海 西는 壽勝 南은 宣恩 北은 望京이라 改名하였다. 이중 望京樓는 達城公園에 保存되어 오다가 철거후 사진만 保存되고 있다. 修城工事が 完工하자 觀察使 金世鎬 撰文의 修城牌가 忘憂公園內 築城牌와 나란히 現存하고 있다.

### 3. 邑城의 撤去動機와 現在의 位置

邑城의 撤去는 1906年(光武 10年) 10月 當時 慶尙北道 觀察使署理兼 大邱君守였던 朴重陽은 大邱의 日人居留民會의 請에 따라 大邱府城撤去에 對한 報告書를 中央政府에 올렸으나 不許可 返送되었고 別써 城壁撤去가 상당히 進行되고 있었다. 大邱居留民會에서는 東門 西門 南門 北門으로 区分하여 담당자를 결정하고 作業을 分擔시켜 撤去를 推進케 했다. 1907年 2月 日人이 大邱城壁 改修請願書



嶺營築城碑原本 (1737年 建立)



를 提出했으며 朴君守는 이에 同調하여 大邱 全域의 洞民을 動員 公役으로서 撤去를 完了케하고 3月 1日부로 政府에 報告했던 것이다.

#### 〈報告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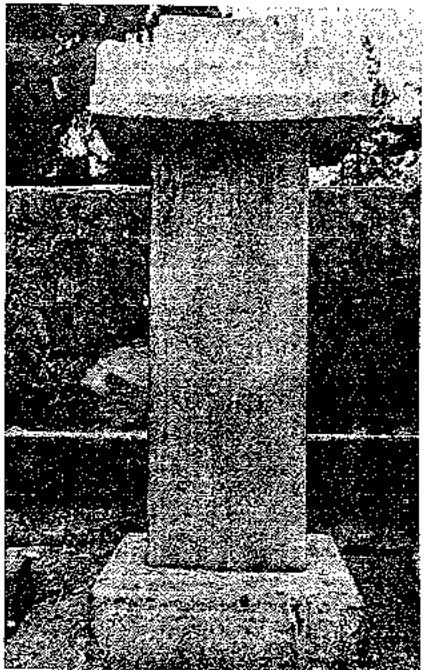
城壁撤去事 内部指令內開城壁基址樓門을 請與外人은 是何筆措인지 甚不妥當 하나 決不可認許이고 從他方針을 研究하여 道路를 開拓하여 人民에 便宜와 道郡에 公共利用할 計劃을 該道觀察使에게 報明하여 自道로 轉報 本部케할事 이시온바 各門과 望樓를 從長 利用하며 城堞 基址에 道路를 開拓하를 方略은 次第 報明 請願하오려니와 至於土塊하야는 基所危險은 不可 暫時拋置 이온대 西將台에서 西門外 지난 土石을 除去하와 交通에 防障은 免하였사오며 西門에서 西小門을 徑하야 望京樓까지 一帶에 上壁은 自三月五日 為始하야 三週日內에 土沙를 一個人에 所用으로 無遺 撤去하갓사오며 望京樓에서 北門을 徑하야 東將台가 지난 既成坦地이온나 東將台에서 東門及 東小門을 徑하야 南將台가 지난 土塊는 撤去할 費用이 無할 뿐더러 別無 措処之方故로 大邱市(三十八個洞)民에게 命令하야 自前走役例에 依하야 市民에 義務로 每一個洞에 土壁幾間式을 副定擔任하야 撤去케함이 如何하을는지 此是 大邱市民에 義務의事業일 뿐더러 大邱市民에게는 春秋等戶布錢을 徵收치 아니하는 故로 市民은 自前으로 公役에 赴參하는 慣例가 有하음기에 各洞에 分定한 伴記를 粘連하와 茲에 報告함. 光武十一年三月一日

英祖十二年에 石築으로 改築된 城堞은 高宗七年 觀察使 金世鎬 赴任時에 修築이 있었을 뿐 穩全했던것이 光武十年九月부터 同十一年四月사이에 完全 毀破되었다. 이와같이 撤去動機는 道路開設과 市街改修라는 目的을 떠나 日人들 間의 利益問題와 大邱의 護國牧民을 위해 築城된 邑城이 韓日人 사이로 區劃하는 障壁의 役割을 하고 排日의 象徵으로 存在하였기 때문에 反對로 日人에게는 經濟的 支配擴張과 排日의 象徵物로 障害되었으므로 排日의 象徵인 城堞을 毀破 하고 城內의 經濟權을 掌握하기 위해 謀議하여 永久保存되여야 할 固有의 遺蹟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邑城에 構築物로서 四個의 門樓와 二個의 暗門城堞 四隅에 望樓四個가 있었으나 이들중 四大門의 現位價는 다음과 같다.

- ◎ 北門(拱北門) — 大邱警察署에서 北으로 뻗은 길과 北城路가 交叉되는 現 中部 保健所앞 네거리상이고,
- ◎ 西門(達西門) — 大邱警察署에서 西쪽으로 뻗은 길과 西城路가 交叉되는 네거리이며,
- ◎ 東門(鎮東門) — 旧東城路派出所앞 네거리로서 現在 韓一劇場건너편 地下道入口이다.
- ◎ 南門(嶺南第一関) — 大邱警察署에서 南쪽으로 뻗은 鍾路와 南城路가 交叉되는 네거리상에 있다.



□ 망경루(望京樓)  
1969년 건물이 남아  
해체하기 전에 찍은 望京樓.



大丘邑城修城碑 (1870年 建立)

#### 4. 南門(嶺南第一関) 規模와 重創 意議

南門의 規模는 아무런 記錄이 없어서 알길이 없으나 철거 당시의 南門사진과 南門의 位置상의 地籍規模와 당시 建物인 宣化堂(지방유형문화재 1호)과 全州豊南門 및 朝鮮後期의 官衙建物들과 比較해 볼때 지붕 기와꼴로서 대충 推定할 수 있다.

첫째: 南門址로 思慮되는 鍾路区域이 南城路쪽으로 小方形으로 突出되어 있어서 이는 道路区副理때 당분간 남아 있어서 門地가 公的인 것이어서 旧区域 그대로 放置해둔 것이라 생각되며 突出한 部分의 幅이 약 13m 이므로 全州豊南門의 規模와 비슷하다.

둘째: 豊南門一層 정면의 기와꼴수가 61條 二層 정면의 기와꼴수가 51條인데 南門의 경우 一層 57-60條 二層이 47-49條이므로 비슷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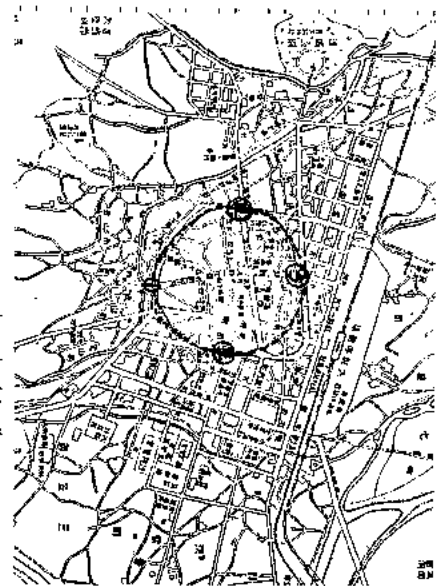
셋째: 南門해체 당시 촬영한 宣化堂建物과 比較해볼때 柱間 18.2m에 기와꼴 57條이므로  $18.2 \div 57 = 0.319m$  이어서 交互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計算하면 다음과



같다.

| 柱 間 | 기와골수 | 1 条의 길이 | 柱 間 隔   |
|-----|------|---------|---------|
| 협 간 | 12   | 0.319   | 3.828m  |
| 정 간 | 17   | 0.319   | 5.423m  |
| 협 간 | 12   | 0.319   | 3.828m  |
| 계   | 41   |         | 13.079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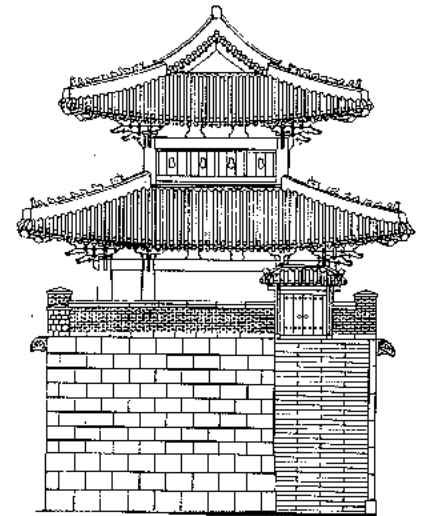
以上과 같이 몇가지를 綜合해볼때 南門의 規模를 추정해볼 수 있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乱後 大邱의 護國牧民을 위해 築城된 大邱邑城을 대표할 수 있는 護樓로서 南門을 들수 있겠다. 이같은 邑城이 韓民族의 文化傳統과 自主의 獨立의 象徵으로만 保存되어 오면서 民族에 對한 認識을 새로이 하고 自主獨立의 國權維持를 祈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城堞이 外勢및 外勢同調者로 말미암아 깨끗이 毀破당하고 말았으며 國權의 마음과 文化傳統의 象徵을 잃은 大邱의 市民은 團結을 위한 求心を 잃고 被壓迫民族으로서 서러움을 받아왔다. 八一五光復 自主獨立의 回復된 우리 民族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 大邱市民은 많은 文化 유적을 잃었으며 國力培養과 外侵의 苦痛을 격지 않기 위해 마음의 求心を 再建設하고자 1977年 大邱市長인 鄭埰鎭이 주관하여 重創計劃을 수립 1980年 준공하게 되었다. 비록 大邱府城 全体를 복원치 못하고 記念碑的으로 南門만 重創을 보게 되었으나 破壞 당시 일어난 諸般情勢를 거울삼아 國權回復과 더불어 護國牧民의 文化傳統思想을 실려 정신 文化開發에 寄與하고 이로 하여금 嶺南離都의 市民意識을 涵養함으로 未來 發展의 象徵으로 市民의 求心を 具現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본다. 〈\*〉



□ 1924年度 大邱市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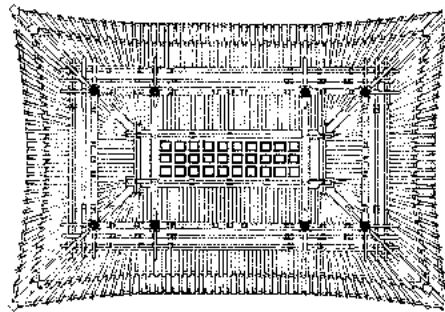
.....點線이 城廓址인.

① 南門址 ② 東門址 ③ 北門址 ④ 西門址



#### 〈參考文獻〉

1. 嶺南築城碑
2. 修 城 碑
3. 大丘府邑地
4. 宣祖實錄 卷四十四와 卷四十五
5. 顯宗實錄 卷九
6. 英祖實錄 卷四十
7. 日 省 錄
8. 懲 忠 錄



#### 南門(嶺南第一閤) 重創設計概要

設計 大亞建築設計事務所

徐 正 男

設計담당 韓運吉 張錫河 田相根

位 置 大邱市 壽城區 晚村洞 (忘憂公園內)

대지면적 4000坪

연 면 적 門樓 一層 135.42m<sup>2</sup>

二層 62.16m<sup>2</sup>

計 197.58m<sup>2</sup>

城廓 694.2m<sup>2</sup> (門數포함)

층수 지상 3층 (城廓포함)

구조 철근콘크리트 한식구조

마감 城廓 화장석 門樓 단청

최고 높이 20.51m



# 建築構造解析의 有限要素法에 의한 応用과 展望

權 宅 鎮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 1. 서 언

유한요소법(有限要素法: Finite element method, FEM)이라고하면 우리 나라의 구조해석분야에서도 자주 듣고는 있는 구조물 해석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건축구조해석의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서 전문적인 학문의 이론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될수있는 대로 쉽게 그 개론을 서술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즉, 유한요소법이란 어떠한 것이며, 구상하는 방법, 그리고 건축구조물을 해석하는 자세와 유한요소법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것이 이 분야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2. 유한요소법이란

유한요소법은 1956년 미국의 터너(Turner), 크루프(Crough), 마틴(Martin) 등이 복잡한 항공기 구조체의 해석에 사용한 구조해석법으로서 개발한 이래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근년에는 각종 구조물의 해법으로 각광을 받아, 구조물 해석상 극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sup>1)</sup> 또한 대형범용 전자계산기의 발달은 이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근후에도 구조해석의 주류를 이루는 해법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유한요소법은 그 이용범위가 넓어서 골조구조(트러스, 라멘등)뿐만 아니라, 평판(plate) shell, 3차원탄성체 등 거의 모든 구조물해석에 응용되고, 더욱 최근에는 유체역학, 전기, 화학 및 의학 등의 비구조(非構造) 분야의 응용에도 주목을 끌고있다.<sup>2)(3)</sup> 그 해석범위도 탄성, 탄소성, 기하학적비선형, 진동해석등 다방면에 걸쳐서 행하여지고 있다. 유한요소법은 극치문제의 근사해법(변분법)에 기초를 둔 일반적인 방법이고, 근연에는 더욱 발전하여 무게 불인 잔차법(무게 불인 殘差法: Method of weighted residual: MWR)을 적용하여 정식화(定式化)함에 따라 구조물 이외의 문제에 까지 확장되고 있다.<sup>4)</sup>

또 이는 매트릭스표시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의 사용에 적합하다. 따라서, 유한요소법은 구조물을 해석하거나 그현상을 해석하거나 일관된 수법을 적

용할 수 있는 간결함과, 복잡한 공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解)가 실제로 주어지게 되는 실용성(實用性)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도 연구면과 실용면 혹은 공학과 공업의 각 분야에서 크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데사이(Desai)는 유한요소법을 응용한 예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sup>5)</sup>

이웃 일본에서는 1960년대초에 이분야의 학문이 도입되어 그동안 이방법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많은 논문이 쏟아져나왔고, 많은 강습회등이 각분야에서 개최되었으며, 또한 이에 관한 교과서의 출판, 국제회의나 심포 지엄의 논문보고집등이 수없이 출판되었다. 현재에는 실용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초에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도입되었고<sup>6)</sup>, 그간에 학계에서도 연구발표가 나오게 되었으며<sup>7)</sup>, 그뒤에 각계에서 차츰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지방에서는 대한건축학회 경북지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경북지부의 공동주최로 사협회 여러분을 위하여 1976년경부터 여러차례 강연회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 약간 침체된것은 없지 않으나, 이러한 강연회를 자주 갖게하여, 건축구조해석의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될줄 믿는다.

지금은 많은 외국서적이 들어왔고 또 복사판도 많이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이름만 듣고있는 형편이고 이 해석법의 보급은 미진한 형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반드시 실용화 되리라 믿는 바이다.

## 3. 유한요소법의 해석방법

### 3. 1 해석과정

유한요소법의 기본적인 생각방법은 연속체(連續體)를 유한개(有限個)의 요소(要素: Element)로 분할하고 유한개의 점에서 결합한 연속체모델을 구조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방법은 크게 나누어 변위(變位: Displacement)를 미지수로하여 기본방정식을 유도하는 변위법(變位法: Displacement method)과 힘을 미지수로해서 기본방정식을 유도하는 응력법(應力法: Force method)으로 나뉘어진다.

이하에서는 변위를 미지수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변위법의 해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i) 요소분할 : 연속체를 가상인 점(點), 선(線) 또는 면(面)에 따라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한다.

(ii) 요소결합의 가정 : 요소는 유한개의 점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절점변위는 일반적으로 미지의 파라미터(parameter)이다.

(iii) 변위함수의 선정 : 절점변위를 이용하여, 각 요소내의 변위가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함수(변위함수)를 선택한다.

이상은 유한요소법의 모델화 과정이다.

(iv) 변형도 및 응력도의 표현 : 변위함수를 이용하여 요소내의 변형도 및 응력도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재료특성의 모델화가 필요하게 된다.

(v) 요소특성의 표현 : 요소의 특성을 각 요소에 대하여 나타낸다.

(vi) 연속체(모델)의 특성의 표현 : 각 요소를 모아서 연속체(모델)의 특성을 나타낸다.

(viii) 절점변위의 결정 : 주어진 경계조건하에서 (vi)에서 얻어진 식을 풀고, 절점변위를 결정한다.

(viii) 응력도 및 변형도의 결정 : (iv)로부터 응력도 및 변형도를 구한다.

유한요소법의 모델화 과정에서는 실제의 연속체를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인접한 요소 사이에 변위나 기울기 등의 적합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변위함수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평형조건에 관해서도 요소의 경계에 작용하는 힘을 그것과 등가(等價)인 절점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소적조건(局所的條件) : 예를들면, 인접한 요소간의 경계부근의 조건은 생각대로 만족하지 않는 점이 많다.

이와같이 요소의 모양이나 변위함수의 선택방법에 임의성(任意性)이 있고, 여기에 따라 해(解)의 정도(精度)가 좌우되며 또 국소적인 적합조건 혹은 평형조건의 일부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인 변위나 응력의 정도(精度)는 저하된다는 사실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 3.2 요소의 특성과 연속체의 특성

상술한 변위형유한요소법의 과정을, 식을 이용하여 표현해보자.

그림 3.1에서 나타낸바와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 구조물은 직관적으로 그림과 같은 요소(要素 : Element)로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내에는 요소를 ①, ②...로 나타내고, 절점(節點 : Node)을 ①, ②...로 나타내었다. 또 좌표계는 그림과 같이 잡고, 절점①에 작용하는 힘(節點力)  $F_i$ 의 x 및 y 방향의 성분을 각각  $F_{ix}$ ,  $F_{iy}$ 라고하고, 절점의 변위(節點變位)  $d_i$ 의 x 및 y 방향의 성분을 각각  $d_{ix}$ ,  $d_{iy}$ 라고 쓰기로 한다.

요소④의 절점력  $\{F\}$  및 절점변위  $\{d\}$ 는 매트릭스표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 = \begin{Bmatrix} F_1 \\ F_2 \\ F_3 \end{Bmatrix} = \begin{Bmatrix} F_{5x} \\ F_{5y} \\ F_{6x} \\ F_{6y} \\ F_{7x} \\ F_{7y} \end{Bmatrix} \quad (3.1) \quad \{d\} = \begin{Bmatrix} d_1 \\ d_2 \\ d_3 \end{Bmatrix} = \begin{Bmatrix} d_{5x} \\ d_{5y} \\ d_{6x} \\ d_{6y} \\ d_{7x} \\ d_{7y} \end{Bmatrix} \quad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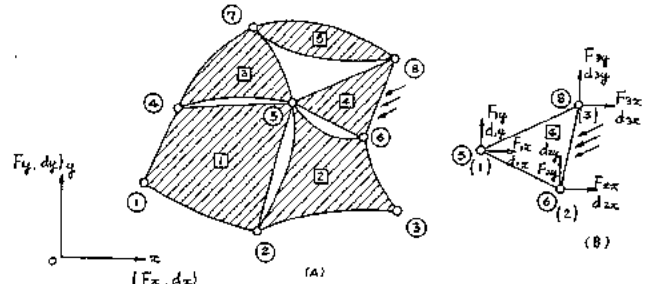


그림 3.1 구조물과 그 요소

(i), (ii)의 과정 : 연속체를 요소로 분할한 예를 그림 3.1 (b)에 나타낸다. 전형적인 요소로서, 요소④를 생각한다.

(iii)의 과정 : 변위함수로서 다음식을 선택한다.

$$\{f\} = [N] \{d\}^e = \begin{bmatrix} N_1 & 0 & N_1 & 0 & N_2 & 0 \\ 0 & N_1 & 0 & N_2 & 0 & N_3 \end{bmatrix} \begin{Bmatrix} d_1 \\ d_2 \\ d_3 \end{Bmatrix} \quad \{d\} = \begin{Bmatrix} d_{ix} \\ d_{iy} \end{Bmatrix} \quad (3.3)$$

여기에서,  $[N]$ 은 형상함수(形狀函數 : Shape function)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관한 함수이고,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N_i(x_i, y_i) = 1, \quad N_i(x_i, y_i) = N_i(x_m, y_m) = 0, \quad (i \neq j, i \neq m)$$

(iv)의 과정 : 변형도  $\{\epsilon\}$  및 응력도  $\{\sigma\}$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begin{aligned} \{\epsilon\} &= [B] \{d\}^e \quad (3.4) \\ \{\sigma\} &= [D] (\{\epsilon\} - \{\epsilon_0\}) + \{\sigma_0\} \\ &= [D] ([B] \{d\}^e - \{\epsilon_0\}) + \{\sigma_0\} \\ &= [S] \{d\}^e - [D] \{\epsilon_0\} + \{\sigma_0\} \quad (3.5) \end{aligned}$$

여기에서  $\{\epsilon_0\}$  및  $\{\sigma_0\}$ 는 각각 초기변형도(初期變形度 : Initial strain)를 나타낸다.  $[B]$ 는 변형도 매트릭스(Strain matrix),  $[D]$ 는 재료의 특성매트릭스(Property matrix)이다.  $[S]$ 는 응력매트릭스(Stress matrix)이다.

(v)의 과정 : 요소의 경계상에 분포하는 하중 및 경계상의 응력에 등가인 절점력을 다음과 같이 쓴다.

$$\{F\}^e = \begin{Bmatrix} F_1 \\ F_2 \\ F_3 \end{Bmatrix} \quad (3.6)$$

절점력과 절점변위와의 관계를 구한다. 절점력이 절점의 가상변위에 대해서 이루는 외력의 가상일은 내력의 가상일과 같다는 이론을 이용하면 다음과같이 얻어진다. 외력이 하는 가상일은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elta \{d\})^T \{F\}^e + \delta \{f\}^T \{p\} = (\delta \{d\})^T \{F\}^e + (\delta \{d\})^T [N]^T \{p\}$$

여기에서,  $\{p\}$ 는 단위체적당의 분포하중으로  $\{f\}$ 와 같은 방향의 성분을 갖는 것으로 한다.

한편, 단위체적당 내력의 가상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elta\{a\}^e)^T \{\sigma\} = (\delta\{d\}^e)^T [B]^T \{\sigma\}$$

외력의 가상일은 내력의 가상일과 같기때문에

$$(\delta\{d\}^e)^T \{F\}^e = (\delta\{d\}^e)^T \left( \int [B]^T \{\sigma\} dv - \int [N]^T \{p\} dv \right)$$

를 얻고,  $\delta\{d\}$ 는 임의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식(3.4), 식(3.5)를 이용하면 다음식을 얻는다.

$$\{F\}^e = \left( \int [B]^T [D] [B] dv \right) \{d\}^e - \int [B]^T [D] \{\epsilon_0\} dv + \int [B]^T \{\sigma_0\} dv - \int [N]^T \{P\} dv \quad (3.7)$$

우변의 제 1 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식을 요소의 강성 매트릭스(剛性매트릭스: Stiffness matrix)라고 부른다.

$$[K]^e = \int [B]^T [D] [B] dv \quad (3.8)$$

(vi)의 과정: 요소의 특성을 전체구조물에 대해서 조립하여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을 만든다.

(vii), (viii)의 과정: 변위는 (vi)에서 얻은 식을 풀면 얻어진다. 변형도와 응력은 식(3.4), (3.5)를 풀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4. 건축구조와 비선형해석

3 장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의 기본적인 생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선형해석(線形解析)에 관한 한, 그 작업은 상식적인 일에 불과한 오늘날, 연구자의 눈은 오로지 비선형해석(非線形解析)으로 향하게 되고, 유한요소법의 세제는 지금까지 닦아온 소성역학(塑性力學) 및 유한변형탄성역학(有限變形彈性力學)과 끊임 없는 전진의 발전에 뒷받침되어 본격적인 비선형시대를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주로 건축구조의 비선형해석에 초점을 두어 간단히 서술해볼까 한다.

건축구조는 그 공간구성으로 보면 소위 단일공간(單空間)과 적층공간(積層空間)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두 종류의 공간을 대표하고 있는, 현대건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스트럭처(Space structure)와 고층건축으로 좁혀서 그 비선형해석을 설명한다.

먼저 간단하게 비선형문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한다. 비선형문제(非線形問題)는 첫째로 구조재료에 대하여 응력·변형도관계의 비선형성(非線形性)에 의한 재료의 비선형문제, 둘째로 구조물의 기하형상(幾何形狀)의 변화, 혹은, 변형도성분이 유한이라는 기하학적비선형문제(幾何學的非線形問題), 셋째로 그들이 결합된 복합비선형문제(複合非線形問題)의 3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재료의 비선형 문제는 소성역학(塑性力學)분야에서, 또 기하학적비선형은 유한변형이론(有限變形理論)으로서 탄성역학의 분야에서 이미 연구되어온 과제이다. 오늘날 유한요소법 연구자들은 세제번의 복합비선형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 4.1 단일공간에 대한 비선형 해석

단일공간의 대표인 스페이스·스트럭처는 거대한 공간을 기둥없이 덮기위하여 만든 구조형식이고, 이것은 다시 텐션구조(Tension structure)와 스페이스·후레임(Space frame)으로 나누어진다. 텐션구조로는 적(吊) 지붕구조(Cable net)와 막구조(膜構造)가 있다. 적지붕은 토목구조에 있어서 적교(吊橋)와 같이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

기쉬운 성질을 갖고있기 때문에 진동과 대변형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 해석에는 기하학적비선형을 취급한 동적(動的)·정적(靜的)해석법이 필요하게 된다.

막구조는 Expo'70(특히 미국관)이래로 널리 알려진 구조이고, 그 이론은 본질적으로는 막막(薄膜)설의 유한변이론이다. 단지 이 구조는 하중의 증대에 따라 「주름」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점이 다른구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주름」이 생기더라도 힘이 재분배되는 것 뿐 내력(耐力)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막구조에서는 이 「주름」의 조건을 넣은 기하학적비선형해석이 필요로 된다. 하여간 텐션구조에서는 대변형을 전제로 한 정도(精度)높은 비선형해석법의 개발연구가 필요하고 유한요소법의 이방면의 기여가 기대되는 바이다.

스페이스·후레임은 입체골조를 이용한 매스캔 구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구조는 편평(偏平)하게 될수록 구조전체로서의 좌굴이 문제로 되고 볼록모양(凸形)이 될수록 비이현상(飛移現象)이 문제로 된다. 또 부정(不整)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정(初期不整)을 해석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페이스·후레임의 기동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도입한 해석법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 최근의 연구로부터, 예를들면 H·P셀(Hyper-bolic paraboloid shell)과 같은 경우에는 좌굴한 후에도 충분한 내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H·P셀에 있어서는 그 종국내력(終局耐力)을 알기위해 좌굴후의 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연구는 금년도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 발표회에서도 특별초청강연에서 동경대학 항가이(半谷裕彦: Hangai, Yasuhiko)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복합비선형을 고려한 유한요소법이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한다.

##### 4.2 적층공간에 대한 비선형 해석

적층공간(積層空間)을 구성하는 것으로서는 벽식구조와 (壁式構造)와 라멘구조가 있다. 벽식구조는 저층건축에 많고, 또 그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것이다. 라멘구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는 저층건축에,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중층건축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철골 조는 저층으로부터 초고층(超高層)에 이르기 까지 모든 라멘구조에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철골고층라멘을 인식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전술한 스페이스·스트럭처의 경우는 주로 바람에 대해서 건물을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구조설계의 기본으로 되어으나, 철골고층원들의 경우는 바람과 동시에 지진(地震)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있다. 지진의 외란(地震外亂)은 지금도 불확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내진적(耐震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별없이 큰안전율을 갖고 건물의 강도를 높이기 보다도, 적당한 강도와 충분한 변형능력을 건물에 부여하여, 건물전체적인 의미에서 인성(韌性), 즉 구조인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같은 사정으로부터, 건물의 탄성역(彈性域)은 물론 최대 내력점을 다시

넘은 상태에서 정적 혹은 동적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변형 영역에 있어서 탄소성 거동의 해석은 복합비선형성을 고려한 해석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5. 결 언

이상으로 유한요소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건축구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가지 대표적인, 即 스페이스·스트럭처 분야와 벽식(壁式) 및 라멘구조분야에 대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기에서 연구되어야 할 학문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구조계서 구조설계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계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계산문제는 컴퓨터에게 맡기고 진정 구조가 해야 할 일은 건축계획에 참가해야 하고 계산에서 보다는 구조계획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될것이다. 또 구조연구가는 구조발전을 위한, 4 장에서 설명한 학문인이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될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아직 우리나라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외국에서는 구조실무가들도 이러한 연구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연구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에는 차츰 진도되고 있긴하나, 선진국에 비해서 연구환경이 너무나도 나쁜 현실이다. 첫째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다. 연구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빚어지는 잡무에 시간이 너무 소비된다. 둘째로 연구시설 부족이다. 셋째로 연구가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다. 이를 해결하는데는 진정한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건설회사나 산업체에서는 눈앞의 이익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그 훗날에 있을 발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담당할 연구

소들을 병설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 두뇌를 개발하는 고급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실질적인 산학협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무자 역시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충실해야 될 줄 믿는다. 만약 학문의 연구개발을 담당해야 될 연구자가 연구지도를 외면하고 업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본래의 사명을 되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도 많은 젊은 학자나 구조기술자가 배출되어 이를 깊이 연구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져서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또 기대하는 바이다. 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을 적어보았을 뿐이다. 「건축사」잡지의 지면이 허락한다면 구조기술자를 위하여 유한요소법의 기초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유한요소법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 <\*>

## <참고 문헌>

- (1) Zienkiewicz, O. C. and Cheung, Y. K., "The Finite Element Method in Structural and Continuum Mechanics," Mc-Graw-Hill, 1967. (吉藏雅夫監訳, マトリックス 有限要素法, 培風館, 1970)
- (2) Zienkiewicz, O. C., "The Finite Element Method in Engineering Science," Mc-Graw-Hill, 1971.
- (3) Zienkiewicz, O. C., "The Finite Element Method," Mc-Graw-Hill, 1977.
- (4) Finlayson, B. A., "The Method of Weighted Residuals and Variational Principles," Academic Press, 1972. (鷲津久一郎外共訳, 重みつき残差法と変分原理, 培風館, 1974.)
- (5) Desai, C. S. and Abel, J. E., "Introduction to the Finite Element Method," Van Nostrand Reinhold Co, 1972.
- (6) Proceedings of the 1973 Tokyo Seminar on Finite Element Analysis,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3. P. 139 (신영기, 유철수)
- (7) 大韓建築学会30周年 紀念論文集, 1975. 9. P. 155 (권택진), P. 227 (최창근)

## 製品案内

## 오랄(알미늄제) 샷터·오랄파이프샷터

장점: 장수명, 고강도, 불변체, 무고장, 강탄력

大韓非鉄販売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76-2      전화: 445-2932

안정위에 다진도약 이룩되는 자주외교

## “「올림픽」바람이 분다.”

### 한국형 디즈니랜드 건설붐

디즈니랜드 건설붐이 불고있다. 최근 일기시작한 레저산업붐을 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디즈니랜드 구상은 88올림픽 서울개최결정을 전후해 표면화되기 시작, 4~5개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임을 강조하는 이 디즈니랜드붐에 대해 관광업계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이나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세워졌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은 「기존 관광자원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디즈니랜드가 한꺼번에 여러개 생기는 일은 선후가 뒤바뀐 느낌이다」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현재까지 표면화된 것은 극동건설이 경기도 城南市에 서울패밀리랜드를 명성그룹이 경기도 陽平에 올림피레저타운을, 慶州관광개발 공사와 三洲개발이 합작으로 普門단지 부근에 普門대공원, 미룡건설이 강원도 襄陽에 南淮랜드를 각각 건설한다는 것

이들 기업들은 모두 부지를 확보,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당국의 사업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인가가 나면 내년부터 일제히 착공할태세다.

이같은 기업들의 대단위 레저타운 건설붐은 80년대 관광산업을 성부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정부의 방침과 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패밀리랜드 극동건설이 경기도 城南市 石雲洞일대(果川 부근) 부지 43만평을 확보, 2백50억~3백억원을 들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을 꾸민다. 사업승인이면 82년 6월께 착공, 87년까지 3차사업으로 나누어 완공할 계획.

시설내용은 민속촌, 동·식물원, 청소년회관, 3천명 수용능력의 수

영장, 수중발레관, 파도썰, 회전극장, 루프코스터(원심회전케도열차), 제트코스터(공중회전열차), 패러슈트타워(낙하산타기) 등 30여가지의 유기사설을 갖춘다. 수용인원은 10만여명.

□ 普門대공원 慶州 普門 호수부근의 三洲도투락목장 일대 60만평에 三洲개발과 慶州관광개발공사 합작으로 3백50억원을 투자, 건설한다. 82년에 착공, 8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예산도 자기자본 60%, 용자 및 외자도입 40%로 충당된다.

가족단위 공원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얼과 선조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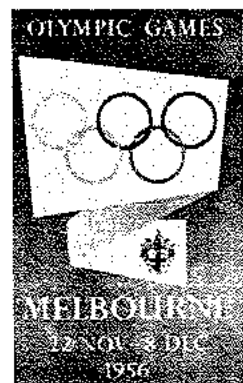
만드는 한편 꿈과 낭만을 심어주는 유기사설을 갖추는데에 역점을 둔다는 것.

□ 올림피레저타운 明星그룹이 경기도 楊平일대(용문산과 北漢江邊) 4백만평의 부지를 매입, 대단위 레저타운을 건설할 계획.

시설규모는 대규모민속촌(60만평), 민속도예촌, 민속관동을 건립,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태종열차, 폭풍열차, 회전목마등 타는시설 14종, 요술의집, 명작속의 집, 万国村(세계각국의 동물소개) 등 보는 시설도 15종을 갖춘다.

□ 雪嶽레저타운 明星그룹이 東草市 長砂洞일대 52만평에 종합관광지를 꾸미기 위해 지난 5월23일 착공, 오는 12월 1차사업을 완공한다. 투자액은 콘데미니엄 2백10억, 호텔98억, 휴양지시설 78억, 골프장 32억원등 4백여억원. 휴양지에는 스키장, 민속도예촌(10만평), 각종 모노레일열차 청소년대공원, 행글라이더 활강장, 요트장등이 들어선다.

□ 南淮랜드 미룡건설이 강원도 襄陽郡 현남면 南淮里에 있는 현재南淮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백 50만평에 바다를 끼 국제적인 레저타운을 세운다. 〈\*〉



# 우리나라 집에 관한 민속<I>

김 광 언

(인하대 부교수)

## 1. 건축의례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집을 지을 때, 문복장(文복장)에게 날을 받는 것(擇日)에서 시작하여 텃고사(土神祭), 개공(開工)고사, 모탕고사, 성주운보기, 상량고사, 집들이고사, 성주고사 등의 의례를 치루었다. 우리의 세시풍속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건축의례들도 제의(祭儀)적인 성격 외에,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매듭을 짓고 다음일로 넘어 가는 시점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휴식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건축의례들 중에는 지역에 따라 어떤 것은 생략되고 어떤 것은 더욱 보강되는 등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근래에 와서 자취를 감춘 의례도 많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 중에도 내용이 크게 간소화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에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의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집지를 재목이 준비되면 우선 주인은 문복장(文復長)에게 가서 집터 택는 날과 주춧돌을 놓는 날, 상량 올리는 날 그리고 입주할 날들을 미리 받아 온다. 목수는 이들 중에 상량올리는 날만은 어김없이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상량은 날뿐만 아니라 그시(時)까지도 맞추어야 하므로 목수는 재목 중에 먼저 돌보감을 골라서 다듬어 둔다. 재목의 반입 등이 순조롭지 못하여 준비가 덜되었을 때라도 우선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돌보를 올려놓는 시늉을 하여 상량식을 제 때에 마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날을 받을 때 문복장은 주전물(酒)을

내문, 곡간, 헛간, 변소와 심지어는 상하수도의 방위까지도 지정해 주는 일이 있다.

텃고사(土神祭)는 집터의신(土地神)에게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놀라지 말고 또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지내는 제사이다.

이 때에는 집터 가운데에 흙을 적당히 모아놓고 주위에는 원새끼를 둘러친다. 고사가 끝나면 집터의 네 귀에 흙을 조금씩 부어 사방의 신들을 풀어 먹이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팔 때에는 주인의 운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의 흙을 먼저 다룬다. 그런데 토신제는 묘지를 잡을 때에도 행하였다. 백제의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는 지신에게 묘지로 쓸 땅을 매입하는 형식을 밟고 그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돌에 새긴 것이 발견되었고 수원 성곽을 쌓을 때에도 팔달산주(八達山主 處士 李皇)에게 제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집터를 양택(陽宅), 무덤을 음택(陰宅)이라하여 한 가지로 생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개공고사는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올리는 제사로 텃고사가 지신을 위한 것임에 비해 이 고사는 가신(家神)을 위한 제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텃고사는 사람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나 이 고사는 반드시 지낸다. 만약 받아둔 날에 개공고사를 올릴 수 없을 때에는 동근 나무 두 개의 끝을 묶어 X자 모양이 되도록 벌린 것을

마주 세우고 이 위에 긴 나무를 가로 걸쳐놓는 것으로 고사에 대신한다 또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허공에 대고 “아무곳 아무개가 아무시에 개공을 하였고”하고 세 번 소리치기도 한다.

개공고사에 대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역사를 시작하는 날 제사가 끝나면 주인은 목수들에게 마름질한 들보 아래에(뿌리 부분)통을 넣어놓게 하고 가신에게 제례를 올린다. 이 뒤에는 붉은 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고 써서 돌보의 미리에 붙이며

따로 황색 종이에 강태공 재차(姜太公在此)라는 글씨를 붉은 글씨로 써서 처음 손질할 나무에 붙여두며 이 부적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더럽히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① 조선조의 실학자 홍만선(洪萬善 1643 - 1715)이 지음.

모탕고사는 목수들이 일을 할 때 연장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모탕 주위에 연장과 간략한 제물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이다.

집을 지을 사람의 운수와 앞으로 그 집을 지켜줄 신령인 성주의 운이 서로 맞는가를 문복장(文復長)에게 알아보는 것이 성주운 보기이며 양쪽의 운이 좋을 때, 이를 “성주운이 닿는다”고 한다.

운이 닿지 않을 때에는 그의 아들이나 손자의 운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가족 중(남자)에 운이 맞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운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 이 때에 집주인은 상량식에도 절을 올리지 않으며 상량문에는 운을 빌린 사람의 이름을 써 놓는다. 집이 완성되면 앞의 사람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원주인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량고사는 기둥 위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루대를 얹을 때에 올리는 제사로 가장 성대하게 지낸다. 제물은 일정하지 않으나 있는 집에서는 통돼지 서너마리에 쌀을 가마니째로 마련하여 돈을 수북하게 쌓아놓기도 한다.

목수들은 이러한 제물 외에 주인이나 구경꾼들에게 돈을 받아낸 욕심으로 “그네 태우기”를 하는 일이 있

나. 상량대의 좌우 양끝에 광목을 감아서 1m쯤 붕중에 꿰우고 주인을 이에 태운 다음, 소리 잘하는 목수가 덕담(德談)을 늘어놓으며, 주인은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돈을 내는 것이다.

이 날을 목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제물이 많이 생기는 때문이며(설상량을 올릴 때에는 신도들이 다투어 돈을 던진다) 노느매기에 있어서는 도편수가 전체의 반을, 그리고 나머지를 목수의 수대로 균등하게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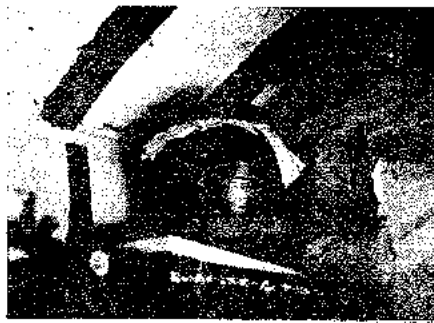
한편 상량목의 머리, 즉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쪽에는 쌀 한줌 가량이 담긴 백지와 북어, 실타래, 돈 등을 부명자두라로 내어두며 이 중의 북어는 뒤에 토역쟁이나 기와쟁이가 술 안주로 삼는다. 일반 가옥의 상량문에는 용(龍)자와 구(龜)자가 마주 대하도록 위 아래에 쓰고 그 가운데에 상량을 한 해, 달, 날, 시 등을 적어두며 어떤 집에서는 개기일과 집의 좌향을 함께 적기도 한다.② 용과 거북이는 수신(水神)이므로 이렇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집들이고사는 새로 지은 집으로 처음 들어가거나 이사를 할 때 지내는 제례이다. 이 때에 먼저 집에서 쓰던 화로나 아궁이의 불은 죽이지 않고 가져가며 불동지도 불이 담긴 그대로 옮긴다. 요즈음 대도시에서 이사를 할 때에도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트럭에 싣고 간다. 이렇게해야 먼저 집에서 누리던 복락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믿는 때문이다.

② 보기: 龜甲寅陰潤五月十九日午 舊壁柱上 標龍 (경북 월성군 장동면 양동리 이희태씨집 문간계 상량문)

이사를 한 날 저녁에 집 주인은 바를 사람들과 일가친척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데 이를 집들이라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마을의 농악대가 합세하여 밤늦도록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산림경제에는 집들이고사에 대하여 “제물과 정화수를 마련하고 가신이나 조왕신(竈王神)을 위한 제례를 올린 뒤에는 성화수를 버드나무 가지로



① 안방 선반 위에 모신 성주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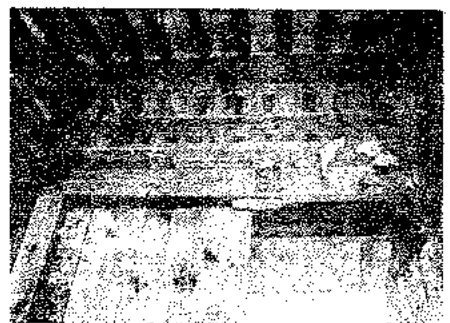
찍어서 분이나 기둥, 방구석, 부엌, 변소 등에 뿌리면서” 천지의 음양이며 일월성광이며 삼귀를 물리치고 굿은 일이 좋은 일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 배상노군 위하듯이 술술이 풀어지게 하소서(天地陰陽日月星光凡有魔魅俱變吉祥齊奉太上老君急急如律令) 하고 외운다”고 설명되어 있다.

성주는 집을 지켜주는 으뜸가는 신으로 집을 새로 지었거나 이사를 하였을 경우, 주인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보기 37세, 47세...) 시월 상달에 날을 받아 이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성주고사 또는 성주굿이라고 한다.

이 고사는 무당이 밤중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을 맞아들여 자리에 모시고 “천석(千石) 만석(萬石) 불러줍소서”하고 축원한다. 이 뒤에 술씨를 뿌린 것이 재목으로 성장하고 이것으로 집을 지으며 집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과거에 급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의 성주풀이를 읊는다.

성주신의 신체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사 때 걸어두었던 백지에 실과 물을 등글게 묻쳐서 대청의 들보 밑이나 안방 옷목 벽 상부에 붙인 것. 둘째, 앞의 백지를 모 지게 여러겹으로 겹고 왕돈 한닢을 꿸 다 음 안방쪽으로 향한 대들보에 붙이고 쌀을 뿌려 붙게 한 것. 셋째, 쌀을 넣고 백지로 봉한 향아리(또는 작은 단지)를 대청 뒷벽 아래나 안방의 선반 위에 올려 놓은 것 등이며, 특히 마지막의 향아리에는 매년 햅쌀을 갈아 넣는다.

이 성주신에는 집안의 제사 날이나



② 구례 유씨집 대문 위에 달아놓은 말 뼈

명절에 제일 먼저 상을 차리며 가족 중에 혼인을 하거나 하는 등의 비일상적인 일이 있을 때 먼저 이에 고하여 알리기도 한다.

## 2. 가신신앙(家神信仰)

우리네의 전통적 가신(家神)에는 앞에서 설명한 성주와에 조왕신과 조상신이 있으며 이외에 업왕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의 신(火神)인 조왕은 부엌의 부뚜막 가운데에 모시며 신체는 작은 종지에 담긴 깨끗한 불이다. 주부는 새벽마다 샘에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새로 부으면서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의 신의 신체가 물이 된 것은 불이나 물이 모든 것을 깨끗이 해 준다는 관념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기독교의 세례, 올림픽의 성화, 굿을 할 때 부정물이므로 정화수에 재를 넣어 구석 구석에 뿌리는 것도 모두 이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조왕신앙은 전국에 퍼져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소멸되었으며 남아 있어도 대부분은 신체를 모시지 않은 건궁 조왕이다.

조상신은 세준단지, 제석오가리, 삼신등으로 불려지며 안방의 시렁 위에 얹혀진 단지속의 곡식(쌀이나 보리)이 신체이다. 이 단지는 장손집에 모셔지는 것이 보통이며 안의 곡식이 불어 난다든가 빛이 변한다든가에 따라 그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하며 전북 부안 같은 때에는 며느리가 어린 아이를 낳을 때 시어머니가 이 단지 앞에 미역과 쌀을 차려놓고 “명도 많고 복도 많고 젖도 많고 순산하게 해 줍소서”하면서 “헛심(힘) 주지말고 된 심수어서 헛치마에 외 빠지듯 얼른 낳



도록 도와 줌으로써"하고 안산을 기원하는 일이 있다.

임은 집안의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업, 구렁이업, 족제비업 등이 있으나 이 중에 구렁이업이 제일 흔하며 울안의 구렁이가 나가면 가운이 쇠된다고 믿어진다. 경기도나 충청도에서는 작은 단지안에 곡식을 넣고 주저리로 덮은것을 뒷걸의 장독대 위에 놓고 업으로 섬기기도 한다.

전남 영광의 김석주씨 집에서는 곡간의 들보 위에 남자의 옷저고리를 걸쳐놓고 이것을 업으로 생각한다. 명절이나 조상의 기일에는 업에 상을 차려 놓고 재수를 빈다. 업은 사오년마다 한번씩 날을 받아 주부가 새옷을 지어 바꾸어 놓는다.

이 외에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하여 지붕 마루끝에 귀면(鬼面)의 망와를 엮기도하고 때문에 가시나무 가지를 묶어서 매달아 두는 일도 있다.

그런데 전남 구례의 유증교씨집 솥을 대문에는 말머리뼈를 달아놓았다. 주인에 의하면 원래 잡귀의 침입을 막기위해 호랑이 머리뼈를 달아 매었으나 이를 누가 떼어가 버려서 하는 수 없이 말뼈로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말은 원래 북방의 유목민족 사이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있다. 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탄생에 말이 큰 역할을 하며 경주의 135호 고분에서 흰 말을 그린 자작나무 널판이 나와서 이를 천마총(天馬塚)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또 여러 곳의 제당에서는 철마(鉄馬)나 목마(木馬)를 모셔놓고 신으로 받들고 있다. 유씨집의 말뼈와 이러한 신앙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3. 풍수설

중국에서 전국시대 말기에 싹트기 시작한 풍수사상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삼국유사에 신라 제 4대 임금인 탈해왕(脫解王? ~80)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이 사상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탈해가 왕이 되기 전에 토함산에 올라가 내려다 보니 호공(弧公)의 집터가 삼일월형(三日月形)으로 된 길지(吉地)인지라 남몰래 그의 집뜰에 숲을 파묻고 탈하기를 “옛날 나의 조상이 이곳에서 대장간을 하며 살았으나 중년에 집을 빼앗겼다”고 거짓 소송하여 그 집터를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삼일월은 초승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초승달은 날마다 조금씩 커져 가므로 가운의 융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탈해가 왕이된 것도 호공의 삼일형 택지를 빼앗은 결과라는 풍수적 설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풍수사상은 후세에 이르면서 위로는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데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이 집터를 잡고 집을 짓는 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깊고도 넓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 중에 집터에 관계된 풍수설은 동물형, 식물형, 문자형, 물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물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풍수설은 주로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뿌리 깊게 믿어지며 특히 호남지방에서는 신앙에 가까운 정도로 신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제가(朴齊家, 1750~?)는 일찍이 “전라도 일대가 우심하게 나쁜 버릇에 물들어서 열 집이면 아홉 사람이 지관 노릇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에 집터를 둘러싼 풍수설의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다.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의 뒷쪽에는 문장봉(文丈峰, 높이 150여m)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이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는 물(勿)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향조(入鄕祖)인 손 소(1433~1484)가 집터를 고를 때 풍수는 비옥한 땅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산의 중턱을 지정해 주었다.

그는 이 터에 문장봉의 혈맥(血脈)이 뭉쳐서 삼혈식군자지처(三血食君子之處)를 이루었으므로 이 집(현재의 소유자는 손 소의 19 대손인 손동만씨이며 이 집은 중요민속자료 23호

로 지정되었다)에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 셋이 태어나리라 고 예언하였는바, 그 첫째 인물이 손 중돈(孫仲墩)<sup>③</sup> 이요 두번째 인물이 이 언적(李彦迪, 1495~1533)<sup>④</sup>이다. 그런데 손 씨 집에 사는 이 언적이 외손(그는 손 중돈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다)으로 태어나 이 씨네 사람이 되었으므로 결국 세 사람 중에 한 인물을 남의 집에 빼앗긴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출가한 딸이 해산을 위해 친가에 와도 해산만은 반드시 마을의 다른 집에서 하도록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오면서 세 번째로 태어날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sup>③</sup> 그는 도승지를 세 번, 대사간을 네 번 지낸 뒤 우참찬이 되었음.

<sup>④</sup> 중종때에 청백리로 뿔쳐 경주의 동강서원(東江書院)과 상주의 숙수서원(洙水書院)에서 재향을 받들고 있다.

전북 정읍군 산외면 오공리의 김동수 씨 집(중요민속자료 26호)에도 집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얹혀 있다.

김 씨의 육대조인 김 명관(金命寬, 1755~1822)이 현재의 집터에서 사십여리 떨어진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청석골에 좋은 집터가 있다하여 가본즉 마침 그 자리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었으므로 이곳은 강(姜) 씨네 터라고 생각하고 단념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집터(당시는 잡목의 숲)에서 밤이면 북이 세 번씩 울리면서 도깨비가 “한 말... 두 말...”하고 곡식을 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옛부터 북소리가 울리는 데에서는 큰 부자가 난다고 하고, 또 도깨비는 곧 김 씨를 가리키는 것 <sup>⑤</sup> 이므로 이 곳에 집을 짓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sup>⑤</sup> 전북 해안지방의 어민들은 뱃고사를 지낼 때 도깨비를 향해 “물위의 김서방, 물아래 김서방...”하고 축원한다.

그런데 오공리의 주민 들은 산외면 주위의 산봉우리 들이 이른바 평사낙안(平沙落雁)의 형세를 이루고 있어서 이 곳에서 반드시 큰 부자가 나오

리라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근래에 까지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았으며 제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터에 그 혈(穴)이 뭉쳐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앞의 김 동수씨는 그 혈이 바로 자기 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마을에서 북으로 11km 떨어진 상두산(象頭山, 해발 575m)에서 비롯된 혈맥(穴脈)이 물레봉(마을 북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음, 해발 380m)과 비봉산(飛鳳山, 서북쪽으로 6km 높이 300m)을 거쳐 집 위의 지네산으로 해서 자기집 사당터로 흘러들어 뭉쳐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의 증거로 자기 집은 지네산 주둥이에서 100여 m쯤 떨어진 안쪽에 위치하며 이 산에서 흘러 내린 물매가 일단 낮아졌다가 그의 집터에 이르러 다시 솟아서 넓은 평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공리(五公里)는 원래 지네를 가리키는 오공리(蜈蚣里)로 표기되었고 자연부락명도 공동(蚣洞)이었으나 일정 때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 김 씨네 뒷산이 지네산이므로 김씨 집 전면 왼편에는 남북(17m)에 비해 동서(32m)가 거의 배나 되는 장방형의 못(깊이 3m)이 있다. 못을 이렇게 기형으로 판 것은 지네가 지렁이를 좋아하므로 일부러 지렁이의 모양을 본떠서 판 때문이다.

앞의 김 명관은 집을 지을 때 대문을 중심으로 왼편으로 40그루, 오른편으로 26그루의 느티나무를 반달형으로 벌려 세웠으며 특히 왼편은 지네산에까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나무 들은 현재 40여 그루 밖에는 남아있지않으나 그 무성한 잎으로 장판을 이루며 온 마을은 이 숲속에 파묻히고 만다. 그가 이렇게 온 마을이 숲에 파묻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은 까닭은 풍광을 돕기위한 목적보다도, 지네는 습지(濕地)에서 사는 동물 이므로 이를 숲으로 가려 주어야한다는 풍수적인 관념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풍수사상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었던가는 다음의 이야기가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그는 뒤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심은 나무를 베어내면 자비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심은 터까지도 자기 집안의 것으로 하기위해 한 그루의 터마다 당시 하루 임금의 열 배씩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영산 신(辛)씨 들이 모여사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동(校洞)은 소리개(솔개의 사투리)터라고 전한다. 마을 뒤 영취산(靈鷲山, 해발 681m) 꼭대기의 큰 바위는 솔개의 머리이고 양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은 어깨죽지이다. 그리고 신씨네의 종가인 신 용문씨 집터는 바로 솔개의 똥구멍에 해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20여 년전까지 우물을 파지 못하고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을 길어다 먹었다. 땅을 파면 솔개의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이 된다고하여 신씨네에서 이를 금해왔던 때문이다. 또 신 씨네 집에서는 마을양쪽 능선에 부지런히 나무를 심었으며 아무도 이를 베지못하도록 엄중한 감시를 해왔다. 이 능선의 나무가 솔개의 날개짓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를 보호하지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집터에 동물이 관계를 맺고 있는 예는 이 외에도 남원 김씨<sup>⑥</sup> 집과 의성 단촌의 김동주씨 집의 호랑이 그리고 나주 홍씨<sup>⑦</sup>집을 들수 있으며 이중 김동주 씨 집터에 관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 씨 집 뒤에 있는 무등재(해발 200여m)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호랑이 산이라고도 부르며 김씨 집터는 호랑이의 앞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⑥ 내굴, 전북지방의 가옥.

⑦ 내굴, 전남지방의 가옥. ⑧ 남원지역, 현국문화 인류학 11집, 1979 ⑨ 나주, 영암지역, 마한 백제문화

또 어떤 이는 호랑이가 이 집에 발을 딛고 전너산으로 뛰어가는 형국이어서 호혈(虎穴)터라고도 하며 집터가 이처럼 호랑이와 관련이 깊어서 집에서 개를 기르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군 용성면에 있는 최 해근씨 집은 매(鷹), 용, 그리고 쌀을 이는 조리와 연관되어 있다. 최 씨 집 앞의 용산(龍山, 해발 435m)은 원래 모양이 매와 비슷해서 매봉으로 불려왔으나 이 산에 살던 구렁이가 승천한 위로는 용산으로 바뀌었다. 이 산이 이 곳에 있게된 것은 조선조 때에 어떤 이가 교창이 끝에 산을 깨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이 산이 걸어간다고 소리치자 놀라서 떨어뜨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산의 줄기가 최 씨 집터를 향해 뻗어 내려왔는바 이 능선이 조리의 자루이고 집터는 조리의 바닥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리는 어떤 물질을 전질 때에는 한 번에 모두 건지나 얹어 놓으면 다 쏟아지게 되므로 최 씨 집에서 한 대에서는 재산을 모으고 다음 대에서는 그 재산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집터에 식물형 풍수설이 연관되어 있는 예는 경북 영천군 임고면 삼매동의 정 재영 씨 집(중요 민속자료 24호)으로 이 집의 뒷산이 매화낙지(梅花落地)의 형국을 이루고 있으며 앞 산은 이 매화를 찾아드는 나비의 모습이고 집터는 매화의 꽃술에 해당된다고 한다. 물질형 풍수 설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유증교씨 집과 전남 영안군 군서면 도갑리의 최 일석 씨 집을 들수 있다. 앞의 집은 금반지가 떨어진 땅(金環落地)이라 하고 뒤의 집은 터가 달 모양을 이루었다고도 하고 터가 반반하다하여 옛부터 금반지처(金盤之處)로 불려왔다고 한다.

#### 4. 지붕

우리나라의 집의 지붕을 덮는 재료에는 새, 굴피, 너와, 돌기와, 짚, 기와 등이 있으며 이를 따라 새집, 굴피집, 너와집, 초가집, 기와집으로 부르기도 한다.

새는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야생의 풀로써 잘마다 제각기 베어서 지붕을 덮기도 하나 이것이 많지않은 데에서 일정한 지역에 이것을 가꾸어 보

존해 가면서 일 년에 한 두 번만 날을 정하여 베어낸다. 제주도에서는 밭이 메말라져서 농사를 이 삼년 쉬게 될 때 그 곳에 새밭”(새밭)을 가꾸기도 한다.

새로 지붕을 덮을 때에는 밑둥이 외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삼층을 이루도록 덮어 나가며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센 곳에서는 새끼줄을 그물처럼 엮어 덮어서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는다. 새는 짙고 달라서 틈이 많이 벌어지므로 매우 두껍게 덮어야 하며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붕의 물매를 되게 잡는다. 강우량이 많은 일본의 새지붕은 보통 3m 가량된다.

굴피는 상수리 나무의 껍질로, 산간 지대에서는 이것을 벗겨서 지붕을 덮기도 한다. 이 십여년 이상 자란 나무의 껍질이지만 크기를 일정하게 벗겨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덮은 지붕을 보면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굴피는 애기가 건조해지면 바짝 오무라 늘어서 군데 군데 하늘이 보일 정도가 되지만 비가 내리든지하여 습도가 높아지면 이내 늘어나서 틈을 매우며 이음새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지질러 둔다. 굴피지붕의 수명은 매우 긴편(약 5년)이어서 “기와 만년에 굴피 천년”이라는 말이 전한다.

너와를 강원도에서는 느에, 또는 능에라고도 하는데, 200년 이상 자란 소나무(赤松)토막을 길이로 세워놓고 돌끼로 조개 작은 널판이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가로 20~30cm, 세로 40~60cm이며 두께는 5cm 내외이다. 지붕의 용마루쪽에서부터 끝을 조금씩 물러나가면서 덮어 나가며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에 돌을 얹어둔다.

너와는 70 장을 한 동이라고 하며 한 간 넓이의 지붕에는 보통 한 동반에서 두 동 가량이 소요된다. 너와 한 장의 수명은 5년 가량이며 기와 지붕을 수리할 때처럼 그때 그때 필요에



③ 너와 지붕

따라 썩은 것을 갈아내고 새것으로 바꾸어 끼운다. 이것으로 지붕을 덮을 때 방천정에는 판판한 나무를 30cm쯤의 너비로 가로 놓고 이를 의지해서 잔나무를 촘촘하게 붙여 천정으로 삼으나 정자나 마구 등에는 천정 시설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는 굴뚝으로 빠지지 못한 연기가 너와 사이로 뿜어져 나오므로 지붕이 불에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산간지대에서는 오지굴뚝 대신 반으로 쪼개 얇은 참나무의 속을 길이로 파낸뒤에 다시 마주 붙여서 굴뚝으로 쓰는 일이 많다.

돌기와는 얇은 판석(板石) 조각을 이르는 말이며 이것이 생산되는 충청도의 보은 근처에서 돌기와집을 더러 볼 수 있다. 보통은 돌조각의 생김새로 이어 덮으나 어떤 데에서는 마치 수공지를 가위로 오려내듯이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하여 덮기도 한다.

벚짚을 인제부터 지붕에 덮기 시작하였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비농사가 시작된 삼국시대에 이미 이것을 사용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벚짚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가 여름철에는 내려오는 햇볕을 감소시키고 겨울에는 집안의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겉이 비교적 매끄러워서 빗물이 잘 흘러 내리므로 두껍게 덮지 않아도(보통 30cm내외이나 이보다 얇아도 지장이 없다) 비가 새지 않으며 누구든지 이를 쉽게 덮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초가지붕은 짚 지체가 지닌 성질 때문에 따스하고 부드럽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



④강원도 평창군의 까치구멍집

주므로 집에 특별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거의 언제나 밝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지붕의 물매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농가의 마당이 좁을 때에는 고추 등속의 농작물을 널어말리며 천둥호박이나 바가지의 넝쿨을 올려서 지붕을 밭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짚으로 지붕을 잇는 방법에는 비늘이영법과 사슬이영법의 두 가지가 있다. 앞의 이름은 그 모양이 물고기의 비늘을 닮은 데에서 온 것으로 짚의 수냉이(뿌리)를 한뼘 정도 밖으로 내어서 엮는 방법이다. 길게 엮은 난개 두 장을이영꼬챙이로 꿰어 올린 다음 지붕의 앞뒤를 덮고 남은 부분으로 좌우 양측을 가려주며, 두 장이 마주치는 등마루에는 골새를 덮는다. 사슬이영보다 오래가며 벽도 가릴 수 있다.

사슬이영은 수냉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일정한 크기로 엮은 난개 수십 장을 둥글게 말아서 지붕 위로 올린 뒤에 멍석을 퍼듯이 퍼나가면서 지붕을 덮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수냉이가 처마밑으로 오도록 깔고 다음에는 이와 반대로하여 덮어 나간다. 사슬이영으로 이으면 지붕의 표면이 매끈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새끼를 늘이어 서까래 끝에 잡아맨다. 우리 나라의 서북 지방에서는 주로 비늘이영을,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슬이영으로 덮는다.

초가지붕은 대체로 모임지붕의 형태를 이루나 겹집인 경우 이른바 까치구멍이라고 하여 용마루를 짧게하고 좌우 양끝의 짚을 안으로 옥여 넣

어서 까지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내어 두는 일이 있다. 이 구멍으로 집안에 햇볕이 들어오고 연기가 빠져나가기 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멍은 초가 집 뿐만 아니라 너와집이나 굴피집에 서도 볼 수 있다. 또 기와집에는 양 합각에 창을 달거나 구멍에 덮개를 장치하고 집안에서 여닫는다.

그런데 어떤 기와집에서는 복문(福門)이라고 하여 적새 위에 솟기와를 엮을 때 한 가운데의 두 장을 서로 어 스러지게 팔자(八字) 모양으로 바 주 새워두는 일이 있다. 이를 세울 때 주인은 기와장이에게 술과 음식을 대 접하므로 상량을 올리는 날이 목수의 생일이라고 하듯이 이 날을 기와쟁이 의 생일이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이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내 생 각에는 까치구멍처럼 원래는 채광이 나 배연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남의 장흥, 강진, 보성 등지의 초가지붕 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유지기라는 것이 있다. 이들 지 역에서는 초가지붕의 용마루에 굵은 통대나무나 통나무를 가로 지르고 이 위에 곱새를 덮는데, 나무와 나무의 이음새나 좌우 양측에 벗꼴 한 단 가 량을 단단히 묶어매고 수명이쪽을 낮 으므로 잘라서 가르런히한 다음 이것을 거꾸로 용마루에 잡아매어서 마치 상 투를 틀어올린 모양을 이룬다. 유지 기는 한 지붕에 하나만 세우기도 하나 두 세개를 세운 집도 있다. ⑧ 그런데 제주읍 지에 인용된 風土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새를 엮지않고 지 붕 위에 고루 퍼서 덮은 다음 긴 나무 를 가로대고 묶어서 눌러둔다(人居階茅茨不編鋪積屋上以長木橫結壓之瓦屋絕少)”고 하였는 바, 앞의 지역에서 용마루에 엮는 장대나 나무도 이와 유 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⑧ 風土錄은 조선조 중종때 대사헌과 형조 판서를 지내고 조광조 등과 함께 기묘사 화에 화를 입어 제주도에 정배, 그곳에서 죽은 金淨(1486-1521)의 저작이다.

물론 제주도는 바람이 센 곳이므 로 나무를 사다리 모양으로 서너 개 나란히 늘어놓았을 터이지만, 전 남 해안과 제주도는 거리상으로도 최 단거리이고, 용마루 위에 긴 나무를 걸쳐놓는 원래의 목적도 바람에 날리 는 짚을 눌러주기위한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기와를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8세기~3세기)에 사용하였다 고하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분명 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마니사금(祇麻尼師今) 11 년(기원후 122년)조에 “큰 바람이 불 어서 나무가 꺾이고 기와장이 날렸다” 고 적혀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궁궐이나 큰 건물에 기와를 덮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 의하면 세 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하 는 법릉사(法隆寺)를 지을 때(607년) 백제에서 기와박사 네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기와를 구해주었다고 하므 로 7세기 경에는 기와를 굽는 기술 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었던 듯 하다.

#### 5 온돌, 마루, 봉덕화투, 고굴

우리나라의 가옥에 유입된 외래의 문화요소 중에 가장 대조를 이루는 것 이 온돌과 마루의 시설이다. 다 아는 것과 같이 온돌은 매우 추운 곳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난방 시설이고 마 루는 덥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지내 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이러한 문화 요소 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에 는 무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대륙 성 기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용, 발전되어온 것이다.

구체적인 지명을 대기는 어려우나 온돌은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그리고 마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원하 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우리 문화 의 근원을 따질 때 앞의 것을 북방적 인 요소의 하나로, 뒤의 것을 남방적 인 요소로 손꼽는다. 이러한 사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추위가 심한 함



⑤ 전남 장흥지방의 유지기

경도 지방의 가옥에는 마루가 없으며 제주도의 집에는 근래에까지 온돌이 시설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의 가옥에는 온돌방과 마루 가 균형있게 배치되어서 여름에는 주 로 마루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 양식으 로 되어있다.

한편 함경도 지방의 가옥에 마루가 없는 대신 이와 비슷한 종합적인 기 능을 하는 온돌구조의 정주간이 있으 며 제주도의 마루 한 가운데에는 불 을 피우는 봉덕(이를 부엌이라고도한 다)이 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 금 더 늘어 놓기로 하자.

온돌은 두만강 유역의 신석기시대 움집 자리에서 그 원형이라고 생각되 는 것이 발견 되었으며 그의 관한 기 록으로는 구당서(旧唐書) 동이전(東夷傳) 고려조(高麗朝를 발한)에 “장 경(長坑)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때 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 (冬月階作長坑坑下燃煖火以取煖)”고 한 것이 가 장 오랜 것이다. 이 글의 장경은 곧 온돌을 이르는 것이며 이로써 늦어도 7세기 경에는 우리나라 북부에 온돌 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 장경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방 전체에 시설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만주 지역의 갱처럼 방의 한 쪽에만 시설되었다가 점차 오늘의 온 돌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돌은 매우 완 만한 속도로 남쪽으로 전파되었다. 12세기 초에 이 규보(李信報, 1168~1241)가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제5권에 “이 학사가 새로운 온돌 방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

을 보면 이 때에도 온돌은 매우 드문 시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익(李翼, 1579~1624)이 성호새설 유차에서 “일찍이 늙은 이들에게서 들으니 백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재상 귀족 들의 넓은 집도 온돌은 한 두칸에 불과 하였으며 높고 병든 사람이나 기거하는 방으로 되었다 그 외는 다 판자를 깔고 마루방에서 머물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17 세기에 이르러도 온돌이 일반 민가에 널리 시설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에 온돌이 보급된 것은 극히 최초의 일이라 하겠다. 앞의 이 익도 같은 책에서 “제주의 풍습이 ... 판자를 깔아 마루방으로 하고 온돌이 없으며 다만 초석을 깔고 온기를 취한다”하였지만 16 세기에 쓰여진 동국여지승람이나 17 세기의 탐라지에 도 이곳에 온돌이 없음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에 이처럼 온돌이 더디게 이용된 것은 그 원인이 온돌 시설의 전파 속도가 느린 때문이라고하기 보다는 이 곳의 자연환경이 온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을만큼 따뜻한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주에서는 근래에까지 여름철에 음식을 만들 때 생기는 열기가 방안에 흠뻑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엌을 별채에 따로 마련하였으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구들과는 반대쪽에 한테부엌을 걸어서 불을 때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봉덕은 주로 겨울철에 이용하는 난방구였다. 이곳에 불을 피우고 천정에서 늘어진 줄에 손이나 냄비를 걸어 음식을 조리하고 이에 젖은 옷을 말리기도 하였다. 또 봉덕불은 조명구의 구실도 겸하였고 겨울철에는 남자들이 어린이와 더불어 이 주위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있었다. 발화구가 불완전했던 당시에는 봉덕이 불씨를 갈무리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제주의 봉덕은 일본가옥의 이토리(囲炉裏)와 그

기능이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북쪽의 전자형(田字型) 가옥에서는 마루의 기능을 정주간이라는 공간이 전담하고 있다. 정주간과 부엌과의 사이에는 벽이 없이 터졌고 정주간의 바닥은 지면에서 1m가량 높아져 있으며 그 아래에 구들이 시설되어 부엌쪽의 아궁이로 불을 댈다. 가족들은 이곳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며 손님을 접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주간에서 부엌으로 내려가는 한쪽 끝에는 등퇴가 시설되었으며 이를 등퇴간이라고 하였다. 등퇴에는 아궁이의 불을 떠서 옮겨놓고 음식을 끓였으며 이곳의 온기로 집안이 더워지기도 하고 또 관솔불을 밝혀서 조명을 삼기도 하였다. 등퇴에는 잔나무가지로 우산처럼 엮은 것을 덮고(이를 표준탈로는 어리라고하나 개성에서는 기배, 함경도에서는 어롱



⑥ 부뚜막 옆에 만든 화투

태라고 한다)

이 위에 불을 피울 관솔이나 젖은 옷가지등을 말린다. 등퇴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화로불에 어리를 씌우고 이와같이 한다. ⑨

강원도의 화투는 등퇴의 한 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지역의 화투는 부뚜막 귀퉁이에, 진흙을 이겨서 화로 모양으로 쌓은 것으로(높이 70~80cm) 상부는 작은 솥을 걸수 있도록 우묵하게 뚫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래쪽에 한변이 20cm쯤되는 사각형의 구멍을 내었다. 상하부는 차단되어 있으며 윗구멍에는 불을 피워서 조명에 대신하거나 음식을 끓이는 데에 쓰나 아래구멍은 단지 불씨를 묻어두기 위한 것이다. 원시적인 발화기구 밖에 없었던 예전에는 이에 고장이 생기면 난

파를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씨를 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 하였으며 이것은 주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젊은 주부가 불씨를 꺼뜨린 죄로 시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불씨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새벽,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시아버지의 눈에, 불씨를 얻어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아버지가 매우 꾸짖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르자 그 며느리는 “이 불씨는 어제 이웃집에 빌려주었다가 오늘 찾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이다.

⑩ 내관 “강원도 산간가옥 배동”문화인류학 5집, 1972.

이리저리한 이유가 겹쳐져서 불씨를 죽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신까지 생겨나고 이러한 관념은 요즈음에도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앞서서도 이러한 것처럼 대도시에서 이사를 할 때 연탄불을 꺼뜨리지않고이사장과 함께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다.

역시 강원도 산간가옥에서 볼 수 있는 고물(이를 코쿨, 코쿠리라고도 한다)도 등퇴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이것은 방의 벽과벽이 마주치는귀퉁이에 진흙을원추형으로 쌓아올리고 하 부에 사각형의 아가리(한 변의 길이20cm)를 붙였으며(방바닥에서 아가리까지의 높이는 40~50cm) 꼭 대기에서는벽에 구멍을 뚫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에 이곳에 관솔불을 피워서 방을 밝히며 추운 때에는 난 방에도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긴긴 겨울밤에 이 불에 감자를 구어먹기도 한다. (\*)

## “淨化運動은 意識改革으로부터”

大韓建築士協會 監事 尹 鉉

**正** 直·秩序·創造의 三大目標 아래 社會淨化運動이 시작된지 만 1년이 되었다.

近代化 推進 과정에서 不作用으로 나타난 惡習 非理와 退弊, 物質萬能과 出世至上主義를 지양하고 正義 社會 具現이라는 새시대의 이념을 우리 社會에 定着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온 사회정화 운동은 지난 1년동안 非違 不條理의 적절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汎國民의 意識革命의 次元으로 심화 발전시킬 단계에 이르렀다.

權類型 不條理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政治風土의 刷新, 公職者 社會의 肅清, 課外授業과 不良羣을 비롯한 각종 사회악의 추방, 거리질서를 비롯한 사회질서의 확립, 청탁풍조의 배격, 허세허식의 추방 등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사회정화 운동은 國民 各階各層과 사회 구성구석에 까지 共感帶를 形成하였다.

淨化과정에서 社會淨化運動은 推進의 主体도 變化해 왔다. 初期의 官主導의 改革작업에서 官民이 함께 參與하는 汎國民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지역, 직장, 학교등으로 組織이 擴大 되었다.

그러나 意識革命이 수반되지 않는 外 的인 社會淨化는 砂上樓閣과 같은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성적 비리와 폐습은 근절되지 않으며 잠복 상태에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淨化 以前의 상태로 환원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이야말로 겨레의 運命을

左右하는 歷史的 大課業이며 밝고 정의로운 民主福祉國家의 굳건한 터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숭선하는 한편 우리 건축사들도 투철한 준법의식과 건전한 市民精神을 體質化하며 淨化 三大 理念을 生活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建築士 業界의 自律的인 淨化推進과 잔존부조리의 지속적인 제거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책임회피, 역부조리제거, 나아가 의식개혁을 위한 정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다같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사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보수의 부당한 할인 및 부당한 경쟁, 명의대여 및 금품수수행위 등은 회원 스스로가 근절해야 할 행동인 것이다.

우리 建築士 業界 淨化運動이 成就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회원의 意志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淨化運動이야말로 一時的인 운동이 아니며 全國民의 意識改革의 長期的인 運動으로 알고 다같이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淨化의 意味는 前時代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그야말로 이치대로 행하는 것만이 곧 利益이라는 等式이 成立되는 社會의 造成인 것이다.

規則과 準則대로 행하면 손해가 아닌 이익이 반드시 돌아오고 각자가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어느때건 반드시 자기 몫과 차례가 오게 돼 있다는 보장이 설 때

다른方法에 신경을 쓰거나 남을 넘보고 것밖으려는 생각을 안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法制上的의 개혁이나 캠페인 단속 홍보 계몽도 필요하지만 社會에서의 반복 敎育과 훈련만이 의식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非理와 無理가 잠시도 묵인될 수 없도록 우리 회원도 눈과 입이 활발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會員들은 社會淨化 運動을 推進함에 있어 正義感을 가지고 時代的 使命을 遂行하는 각오로 임해 나갈 때 建築士 業界 風土는 確立되며 正義社會 具現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確信하는 바이다.

만약 많은 회원 및 任職員들이 입으로만 정화를 외치고 실천 行動이 다르지 못한다면 社會淨化가 이루어질지 만무하며 會員 各者가 正義社會의 具現을 바라면서도 정화와 改革의 대상은 자기 아닌 정부나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自家障着이 될 것이다.

81년을 보내면서 우리 會員一同은 正化, 개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責任感과 主人 意識을 발휘하여 正義社會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다.

82년도부터 社會淨化의 結實은 建築界의 積極的인 參與로 꽃피워질길 기대하는 바 우리 會員들의 막중한 責任感과 活動으로 社會改革에 先驅者가 될 것을 다짐해야 할 줄 믿는다. \*

## 建築評論의 基本方向 (完)

Bush Brown 著

宋 旼 求 譯

(宋旼求建築研究所)

c) Vierzehnheiligen의 Baroque式 教会는 円과 楕圓의 組合으로써 간명한 空間을 유지하는데 그 空間에서는 倍數的으로 波動치는 것과 부분적으로 칸막이한 것이 連結되고 重複되어서, 幾何學的인 것이 對立되는 軸으로 이루어진 空間에 予期치 않은 焦點을 形成하게 된다.

4. 樣式이라는 것은 그것이 由來됨을 가르키는 指標인데, 그것은 모든 空間이 지닌 暗喩는 그것을 創造한 人間을 유일하게 表現하기 때문이다.

### B. 表現으로서의 樣式

1. 가장 個人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樣式이라는 것은 霧困氣를 呼訴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Ruskin이 Gothic에서 찾아내었고 Geoffrey Scott가 Renaissance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빠리에서는 곱추가 gargyle뒤마다 숨어 있었고, 劍闘士의 심한 惡臭가 나는 피묻은 것이 Colosseum에 걸려 있는가하면; Petit Trian에서는 不運의 女王 Venus가 Mars와 비밀히 만나는 장소로 밤을 타 미끄러지듯 가기도 한 것이다.

또 그동안에 Sphinx는 아무도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한 수수께끼를 계속 곱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주 먼날의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은 도깨비불을 뒤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表現에 관해서 한층 더 客觀的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樣式이 內包하고 있는 意味에서 知的인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同一한 時代性이라는 것은 공통된 觀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그 原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Hegel流의 命題로서 의심스러우나 그에 입각하여 그

렇게 생각하여 본 것이다. (註: 空間과 時間에 관한 20世紀 美學은 Einstein과 類似性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譯者註/

위 註는 S. Giedion을 批判한 글이다.

a) Romanesque 建築이 各樣各色이라는 것은 강한 教派를 초월한 기독교적 政府와 教会의 缺如를 나타내며, Versailles는 Louis 14世의 專制政府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政治的 解釋을 말하는 것이다.

b) 宗教的 解釋: 예를 들면 Todi에 있는 Sta. Maria della Consolazione와 같이 16世紀 이탈리아에서 盛行한 円形이 理想을 象徵한다고 생각한 円形的 教会같은 것은 Palladio, Michelangelo 其他 여러사람들에 의해서 적용된 新프라토닉思想을 反映하는 것이다.

c) 數學的 解釋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즉 Euclid幾何學이 Olympia에 있는 Zeus 神殿에서 쓰여졌다면, 1425년 Brunelleschi의 透視画法의 發見은 그의 建築의 成熟과 같이 이루어졌다면, Guarini의 画法幾何學은 Turin에 있는 그의 作品 San Lorenzo에서 반영되었던 것을 말한다. 또 Vierzehnheil과 Versailles에 있는 Orangery는 微分積分學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d) 經濟的 解釋은 New York의 스카이라인이 放任된 資本主義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집트프의 pyramid는 노예 社會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한다.

e) 技術的 解釋은 그리스建築의 trabeation의 構造的 限界를 說明할 것이며, Byzantine에서 發達된 Vault 및 dome, Gothic에서 完成된 stained-glass, 鉄 및 콘크리트의 現代的 利用을 說明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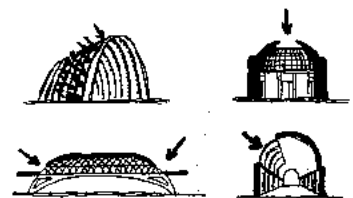
f) 風土的 解釋은 地中海 田園建築에는 많은 微風잡이 장치가 붙어있음을 指摘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Haute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Savoie의 農家は 부드러운 角度로 된 지붕밑에 모든 要素가 固定되어 溫氣를 얻고, 눈이 높이 쌓였다가 흘러내릴 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譯者註/ Haute Savoie는 Geneva남쪽에 있는 프랑스의 高山地域의 하나이다.

3. 이상과 같은 解釋은, 社會가 암암리에 또는 명백하게 建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a) 社會는 建築에서 必要와 欲求를 實現하고 他를 除去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이다.

b) 建物形態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機能이 作用하게 되는가를 이루게 한다.

c) 利用할 수 있는 材料와 構造技術을 규정한다.

d) 建築에 치러야 할 代價를 정하고, 象徵性 또는 美보다는 얼마간은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여부를 정한다.

e) 恒久的인 것이냐, 融通性이 있는 것이냐, 또는 擴張을 고려한 것이냐에 따라 支拂하여야 할 代價를 정한다.

f) 말할 수 없이 優雅함, 材料의 우선, 또는 솔직하게 表現된 構造 등이 火災 및 災害에 관한 法律때문에 designer의 팔레트에서 除去될 때 建築의 範圍는 制限되듯이 社會는 作用하는 것이다.

g) 社會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建築을 破壞할 수도 있다. 즉 급격한 타격으로 因習打破를 한다던가, 退化의 느린 速度의 屬性, 土地利用의 變更, 技術改善, 또는 信念의 變化등이 그러한 것이다.

h) 傳統과 革新, 또 原形이 찾아질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에다 둔 評價에 社會는 영향을 미친다. 비록 完全하였던 作品이 없어질 것이라는 경우에서조차도 그러하다.

i) 어떤 水準까지의 숨겨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社會는 部分적으로 정한다. 環境造成에서 公衆은 庶民의인 技法을 意圖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에 고심한다.

j) 建築이 宗教的인것, 政治的인 것을 表現하는데 있어 어떤 方法으로 할 것인가, 또 한층 더 넓은 뜻에서 社會의 哲學的 觀念,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뿌리 뽑는 것을 社會는 規定한다.

4. 建築은 또 社會와 더불어 作用한다.

a) 建築家라는 職業에 대해서 대단히 행복된 일은, 偉大한 建築만이 社會에 利益이 되는 變革에 責任이 있음을 立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立証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이미 인식된 바와 같이 建築이라는 것은 本質에서 必要에 대한 応答이라야 되기 때문이다.

b) 趣向이라는 것은 連帶努力이다.

企業과 흡사 같은 것으로, 때로는 生産을 위하여 市場을 조성하며, 그리하여 建築의 改革이 触媒가 되어 작용하고, 장차 가능한 變更도 이루게 하며, 變更을 바라기조차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建築家は 그의 藝術을 통하여 趣向을 增進시키는 것이다.

c) 建築은 社會와 더불어 象徵的인 것들을 創造하며, 때로는 機能을 象徵하는 것, 때로는 순수한 人工的인 記号들, 또 때로는 이데올로기의인 것들을 創造한다.

d) 社會와 더불어 建築은 基本的인 哲學的 觀念을 表現하기 위해 작용한다.

모든 建物은 부분적으로는 長点的 하나가 되기도 하며, 知的 社會的 目的을 伝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하는 것이다.

社會的 目的이라 함은 企業主와 建築家가 結婚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에는, 混成되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베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形而上學的 觀念이 建築에 反映되고 있다.

i) 形式主義: 삼라만상은 정확한 形態와 理想, 抽象的인 관계, 數學的으로 完結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그의 機能의 效率性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신조.

예를 들면 Palladio의 Villa Capra (그림 13), Mies의 I. I. T. Crown Hall

ii) 浪漫主義: 個人至上이라는 信念. 특수한 것, 생생하고 특이한 것, 粗野하고 자연스런 것, 그러한 것들의 차이와 變則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며, 合理的인 形式主義에 의하여 억제되어서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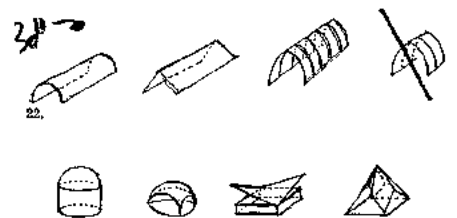
때로는 浪漫主義者는 먼 곳의 社會라든가 過去를 想起시킴으로써 想像力을 刺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먼 社會라든가 過去라는 것은 Gothic, 古典, 廢墟, 原始的인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것 및 東洋의 것들을 말한다.

예로써, Versailles에 있는 Petit Hameau, Oklahoma의 Norman에 있는 Goff의 Eavinger House가 그러하다. (그림 14)

iii) 機械主義: 活性력이 없는 物質로서 그것들의 相互作用이 不變이고 普遍的인 物理化學的 法則에 의하여 統計적으로 表現되어 記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物質의 優位性에 대한 信條.

높은 優先權이 機械美學에 주어지는데, 이것은 形式主義의 現代的 脚色이다.

예로써, 水晶宮, Corbusier의 Savoye邸(그림 15)

/譯者註/ 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活性력이 없는 物質 云云이라 하는 것은 유리, 鉄筋콘크리트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機械美學을 信條로 하였음을 새로운 形式主義라고 할까로운 批判을 Brown이 가한 것이다.

iv) 有機主義: 生命體의 形態 및 生物學的 法則, 그 예는 삶의 터전, 材料와 構造의 適應性도 포함되어 그의 優位性을 信條로 하는것.

이것은 浪漫主義의 現代的 脚色이다.

예를 들면, Sullivan의 Buffalo에 있는 Prudential Building, Wright의 Pauson Hause (그림 16) 및 落水莊

e) 많은 建物이 자석과 같이 分散하기도 하며 核을 形成하는 것을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가지 制度를 풍성하게 한다면 消滅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f) 建築은 社會가 지니고 있는 保守主義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면 또는 모험같은 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g) 物理的 環境은 交流를 용이하게 하기도 하며 저해 하기도 한다.

h) 그러나 무엇보다도 建築과 社會의 共生的 관계는 풍족한 生活에 도움이 되도록 環境問題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룩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Palo에 있는 行動科學研究所는 Alto를 學者로서 研究所에 모셨던 것이다.

### C. 樣式에 관한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 몇가지 原理

1. '偉大한 建築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의 일부 또는 전체를 表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때로는 잘못 断定되었었다.

즉, 用途, 材料, 構造, 形而上學的 바탕, 依頼人, 建築家, 垓地, 國家, 宗教, 風土, 技術, 그리고 그것이 세워진 時代 등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이 現代建築을 위하여 逆說한 1人役 멘드의 部品들이었던 것이다.

/譯者註/ 1人役 멘드라는 것은 Corbusier를 指稱한 것이다.

2.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 樣式上的 모든 原理인 것이다.

그것들은 樣式에 대해 변하기 쉬운 指標이지 質에 대한 것은 아니다.

르네 상스와 아카데미한 建築家들은,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하지는 않았으며 消極的인 表現으로 이루었던 것이다.

聖 피터寺院의 돔은, 自体가 지닌 mass가 強健하고 힘찬 構造的인 외형인데도 감추어진 쇠사슬로 보강되어 있다고 하여 正直性에 대한 違背라고 할 것인가.

Palladio의 우아한 scale, 순수한 比例關係, 또 정교한 細部가 스타코로써 덮어진 벽돌로 代替되어 있다고 하여 혹 우리들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할 것인가.

Gothic 彫刻家들이 그들의 石像에 칠을 하는 것을 배우는데 몸서리치기라도 하여야 할 것인가.

Parthenon이 内部空間을 表現하는데 失敗하였으며 形態와 機能과의 사이에 差異가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Parthenon을 보다 덜 讚美하였는가.

3. 위에서 말한 모든 原理를 表現할 수 있는 '建物'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社會的 記錄일 수 있을망정 藝術作品은 아닌 것이다.

a) 많은 建物이 藝術作品이 아니면서도 材料, 構造, 垓地, 社會 및 時代를 表現한 것이다.

b) 가장 훌륭한 形而上學的, 政治的 및 倫理的 觀念의 表現조차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Ruskin 한 사람만이 美德으로서의 '正直함'을 호소한 것은 아니다.

問題는 무엇에 관하여 正直하여야 하며 무엇을 目的으로 함인가에 있는 것이다.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c) 바꾸어 말하면, 不道德한 觀念의 表現, 또는 不道德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觀念의 表現조차도 形式上的 결함은 아닌 것이다.

4.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 原理들에 따르는 樣式的 表現은 偏愛와 偏見의 競技場과도 같은 것이다. — 요약하면 趣向에 관한 것이며 — 趣向이 評論을 構成하는데 필요한 것의 하나라고 하는한, 形態에 관한 美學的 判斷은, 要素의 組織 — 이튼데면, mass와 平面 — 심지어 樣式上으로 短命으로 끝난 것조차도 言及할 수 없다.

### III. 要素의 組織으로서의 構成

유효한 空間과 mass가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律動的인 Pattern이 形成되도록 하는 것이 建築家에게는 그의 藝術의 基本的인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름다운 空間의 繼起를 찾아낸 연후에는, 幾何學的인 것, 光線, scale 등을 調整하며, 空間, mass, 모든 것이 굳게 結合될 때까지 그 속에 內包된 모든 變化를 批判的으로 檢証하여 建物の 内部 外部의 모양을 가다듬는 것이다.

여기서 建築의 주요 要素인 空間의 形態形成이 動的 構成에 따르며, 制限된 것인가 또는 靜的 構成에서 그러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A. 空間의 認知

樣式과는 관계 없이, 建物の 最初와 最後에 주는 강한 効果는 空間과 mass의 質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空間創造의 過程'은 '抽出 또는 密着'에 의한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다. (그림 17) 西歐의 思考方式에서는 空間生成이 第2形式과 共通의로 되어 있다.

2. 크기에 대한 絶對的 및 相對的 制約은, 눈으로 보는 空間과 거기서 느끼는 反應에 영향을 미친다.

a) 公衆電話室의 크기는 快適한 經驗을 느끼는 점에서 絶對最小限 이하의 것이다.

b) 工場建築의 굴뚝의 크기는 實質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相對的인 것은 建築空間의 領域으로부터 除外된다.

c) 만일 복도의 相對的인 크기가 굴뚝과 흡사하다면, 복도는 成功的인 建築空間의 秩序로부터 除外될 수 있다.

복이 라든가 길이를 넓힘으로써 복도는 建築的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d) 같은 條件이라면, 다른 부분의 크기와 비교하여 매우 얇을 때 그 空間에 관계되는 것을 圧倒한다.

#### 3. 空間의 生成要因 (그림 18)

a) 建築空間은 面이 實質的으로 있던 畝연중에 나타나던 2個 또는 그 이상의 수의 面으로써 生成될 수 있다.

b) 生成要因이 단순한 變化를 복잡한 空間形成에 병용할 수 있다.

c) 建築空間은 生成要因이 지니는 幾何學的인 性質에서 나타나게 되는 方向性을 지니게 된다.

i) 方向軸은 基本的으로 水平性, 垂直性 또는 이들에서 派生된 斜線成分을 띠게 된다.

ii) 空間이 그의 主軸을 강조하지 못하였을 때, 특징을 잃게 되며, 분리된 狀態에서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와는 달리 일관된 空間의 繼起에서는 結合된 要素들이 中性的인 價值를 지니게 된다.

#### B. 光線에 의한 露出

우리들의 空間感覺은 質感, 聽覺, 嗅覺에 의함과 같이 분위기와 기억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게 되나, 근본적으로는 構成의 形態와 分節의 形態를 드러내는 光線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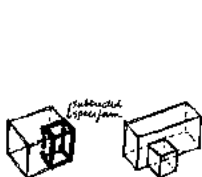
1. 光線은 空間의 性格 및 有機的인 統一性を 유지하며 밝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19)

a) 雙曲線形의 vault가 지닌 水平性의 秩序는 律動的이고 길며 가느다란 光線에 의해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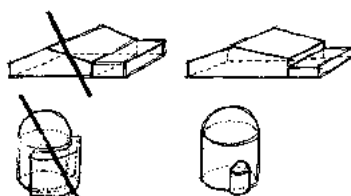
b) 円筒形의 vault는 그것이 지닌 水平性에 의한 統一性 때문에 그 水平性에 따라 長辺으로 光線帶를 도입하면 統一性이 깨어진다.

c) Pantheon과 같은 경우의 光線이 찬란한 天窗은 그 空間이 지니고 있는 垂直性의 軸과 조화를 이루어 크라이막스에 이르게 한다.

d) 우아한 構造는, 여러 경우 一貫性있게 조성된 空間을 光線導入에 의해 一貫性이 흐트러져 망쳐버리게 된다.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2. 光線이 空間의 性格을 修飾한다. (그림 20)

a) 높이 솟은 垂直性 空間에서는, 天窓이 明確한 光線을 이룩하고 마루와 壁에서 全体에 拡散되는 光線으로 써 均등한 밝음이 이루어진다.

b) 동일한 空間에서의 高窓이라든가 側窓은 basilica 에서와 같이 儀式的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회칠 天井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c) 얇은 窓은 視界를 制限하는데, 空間上部는 어둡 속으로 물러나게 하며 神秘的인 萎縮性을 띠기도 한다.

### C. 지붕과 空間形態

1. 평지붕은 幾何學的 性質을 흐트리지 않고 또 항상 과장함이 없으며, 幾何學的 性質을 명확하게 한이 없이 空間을 에워싼다.

평지붕은 空間이 方向性을 지니지 않게 하고 둘러쌓는 것이다. (그림 21)

2. 方向性을 지닌 空間形態는 方向性을 지닌 지붕에 의해서 고도로 分節된다. 즉, 水平性 여부(그림 22) 또는 垂直性 여부를 (그림 23) 軸이 지닌 同一性을 요구하는 것이다.

垂直軸이 支配的인 空間은, 遠心性 또는 求心性을 지닌 幾何學的 性質로 구성된 中央에 자리잡는 식의 지붕 또는 水平性을 지닌 지붕形態가 서로 交叉하는 식의 지붕으로 써 가장 잘 分節된다. (그림 23)

3. 중요한 지붕形態는 크고 명백한 volume이 필요하게 되나, 크기가 작으면 연약하고 추악하게 된다. (그림 24)

4. 벽, 마루, 지붕면이 서로 만나 이루어지는 交線이 명확하게 表現이 될 때, 그것이 空間의 視覺的 및 幾何學的 決定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交叉가 분명치 않다면 省略되었을 때는 그것들의 性格이 흐트러진다.

지붕 또는 벽이 空間을 支配할 때는 그러한 뚜렷한 表現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림 24)

### D. 空間構成

空間構成에는 세가지 形式만이 있다. 모든 空間構成은

連結, 区分 및 繼起의 範疇속에 귀착된다.

#### 1. 空間의 連結

a) 空間이라는 것은, 큰 Volume에서 한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관계지어지며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單位 전체가 限定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 26)

b) 한 空間이 그보다 작은 空間을 支配하여야 되는데 그러함에는 큰 空間에서 擴張되었음이 명확히 認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림 27)

c) 중심을 이루는 形態에서 부속된 부분은 결정적으로 從屬的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主된 mass의 scale에 해당하는 그러한 크기는 피하여야 한다. (그림 27)

d) 左右對稱的인 構成에서 側面에 붙은 空間은 굳게 從屬되어야 組織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28)

#### 2. 空間의 区分: 例 gallery

a) 세로方向으로 된 空間形態에서의 gallery

i) 区分할 때는 支配的인 空間形態를 反映하여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ii) 支配的인 空間形態가 認知될 수 있도록 남겨져야 하는데, 主空間보다 작게 副空間을 만들어 組織되어야 한다. (그림 29)

iii) 区分이 강한 느낌으로 된 곳은 일반적으로 分割하여서 연결된 空間으로 이용함이 더욱 좋은 결과가 된다. (그림 30)

b) 中心을 形成하는 空間形態에서의 gallery

i) 区分할 때는 空間形態에 따라야 한다. 즉 從屬되어 있다던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ii) 복잡한 空間形態에서는 組織할 때 主된 性格을 강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면, 적절치 못한 것 또는 쓸데없는 論争꺼리가 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그림 31)

#### 3. 空間의 繼起

a) 동일하게 중요한 個體를 重複시킨다든가 한 묶음으로 하여 空間은 隣接시켜 관계지어져야 될 것이다. (그림 32)

b) 空間은 空間과 空間사이의 差異點을 명확히 表現하여 강조함으로써 價值가 다른 空間을 隣接시켜 관계지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을 수 있다. (그림 33) 즉 긴것과 짧은 것, 높은것과 낮은 것, 水平性和 垂直性, 큰것과 작은 것, 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對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 E. 空間組織에 관하여 決論이 맺어진 몇가지 通則

空間組織에 있어서 네가지 종류의 誤謬가 現代建築에 있어서 때때로 나타난다.

그 예는 수없이 많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原則과 可能性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던 소극적으로 이용을 하던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無視되었기 때문이다.

1. '空間과 그것을 감싸는 mass와의 사이의 관계가 명쾌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이 原則의 중요한 것의 하나는, 平面에서 모든 주된 높이의 差는 斷面에서 그에 對應하여 變化를 지니게 함으로써 명확함이 表現될 것이라는 것이다.

#### /譯者註/

平面에서 모든 주된 높이의 差 云云은, 중요한 부분의 바닥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내려가거나 올라 가는 design을 했을 경우를 말함이며, 이에 對應하여 天井高度 높이거나 낮게 하여 内部空間 또는 外部空間이 명확히 表現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曖昧한 점은 除去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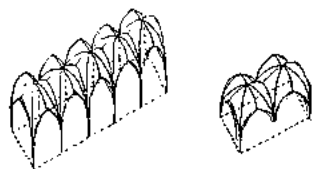
b) 幾何學的으로 生成되는 形態에서는 모든 2重의 傾向性을 띤 것, 비틀림은 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凹角진 것을 凸角진 것 위에 놓을 때 일어나는 古典的인 問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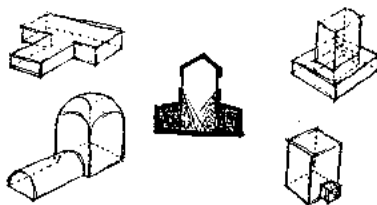
2. 空間의 連結 또는 繼起는 mass의 連結 또는 繼起에서도 명확하여야 한다. 이외는 달리 区分은 주된 形態를 지녀야 하며 内部칸막이를 外部에까지 表現할 필요는 없다.

3. 명확한 組織은 階層(hierarchy)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rhythm과 scale의 建築言語를 內包하게 된다.

人間이 建築에 접근하여감에 따라 그 階層이 정연하게 펼쳐지게 함에는 建築이 複雜한 모습을 지녀도 된다. (그림 34)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4. 内部라는 것은 外部에서 予期되어야 하는 것이지 外部에서 완전히 予示되어서는 안된다. 接近하여서 觀察하게 하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며 지나치게 添加하여서는 안된다.

진주조개를 보라. 바깥은 지극히 거친 겉질에 속은 진주라는 것이다.

이 抄稿에서는 評論의 序頭를 화려한 말로 썼을뿐이다.

空間, mass 및 平面 — 다시말하여 建築의 要素 — 의 美學的 判斷은 構成의 原則에 立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歴史的, 個人的 評價는 文體論的 表現으로서 建築을 考察함으로써 육성될 것이다.

또 兩者는 좋은 評論에서 다 필요로하는 것이다.

#### /譯者註/

建築을 文體論的으로 考察한다는 것은 言語學에서 말하는 統辭論的, 修辭論的(rhetorics)에 접근하자는 뜻이며, 構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나, 構成이라는 것은 要素의 組織인 이상 形式의 측면이며 內容의 측면에서 建築을 考察 하자는 것은 아니다.

直接的이고 広範圍한 考察은 우리로하여금 均衡, 比例, scale, rythm 및 調和를 연구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러한 研究에서 分節에 관한 것도 除外하지는 않을 것이다. 分節이라는 用語는 建築言語에서 모든 變化를 變調라고 限定되어야 함을 要하게 되는데, 그것은 땅에서 建築에 이르는 관계, 하늘에 대한 것 (譯者註, 스카이라인), 모서리를 돌아갈 때의 관계, level의 差, 들어가고 나가는 관계, 어떤 空間에서 다른 空間으로 移動할 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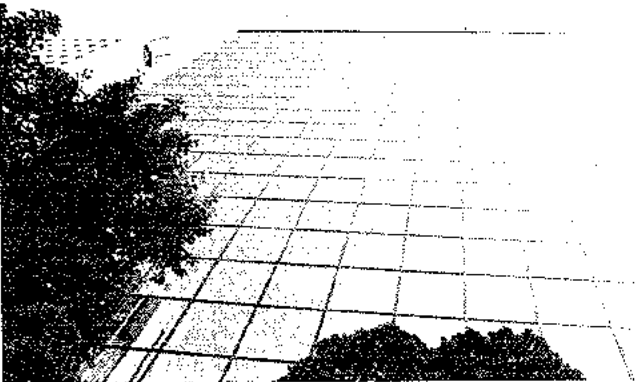
그뿐만아니라, 분명히 Augustine은 우리들이 다루고자 하는 非統一性에 대하여 비난할 것이나, 그러한 問題도 除外되어서는 안된다.

그 問題는 다음 論文에서 取扱되는 主題인 것이다.

#### /譯者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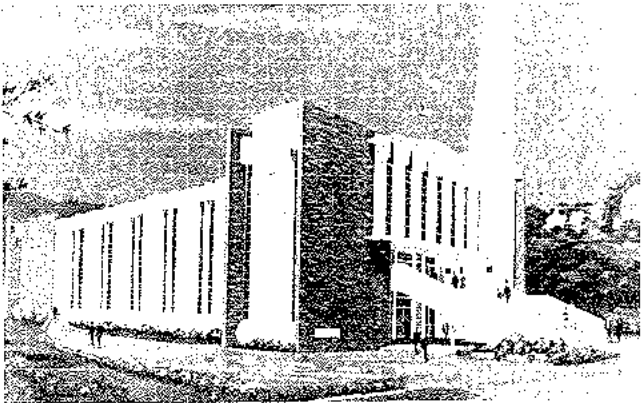
Brown은 分節의 概念을 本文에서는 形態生成관계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데, Louis Kahn의 경우는 機能에서까지 master area와 servant area로 명확히 区分하여 分節시킨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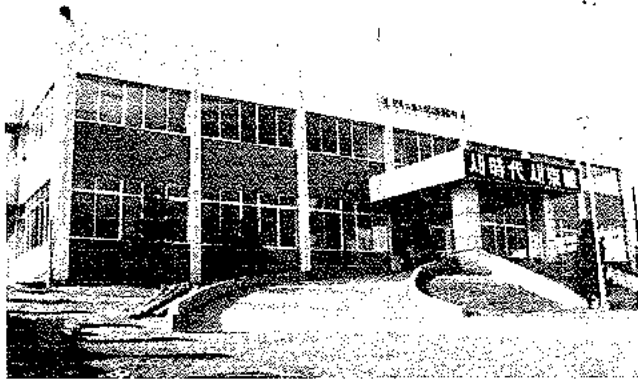
빌딩

李承均



教會

尹鳳源



庁舎

朴成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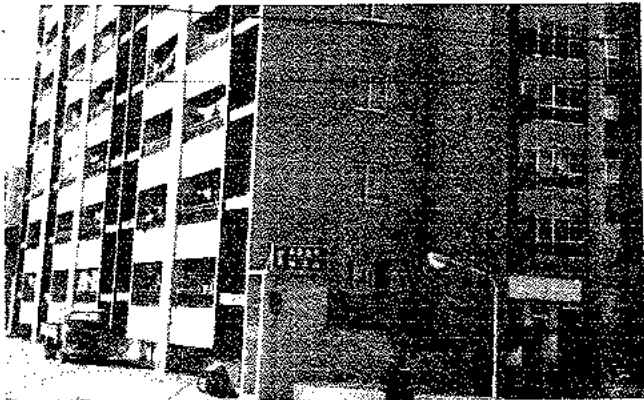
学院

吳世炯



講堂

金奉勲



아파트

尹榮在



## 삼 화 빌딩

李 丞 雨  
(주·종합건축설계)

소재지/서울 중구 소공동 대지면적/1,256.02㎡ 건축면적/629.08㎡ 연면적/10,757.74㎡ (지하4층, 지상1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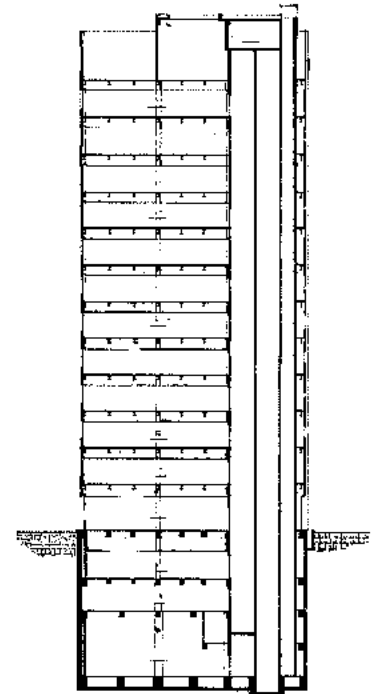
주어진 대지는 도심지 재개발 사업지구로서 조선호텔, 호텔 롯데, 롯데쇼핑센터, 한일은행등 고밀도 매머드 건물군에 싸여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용적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현대적인 감각의 신축 건물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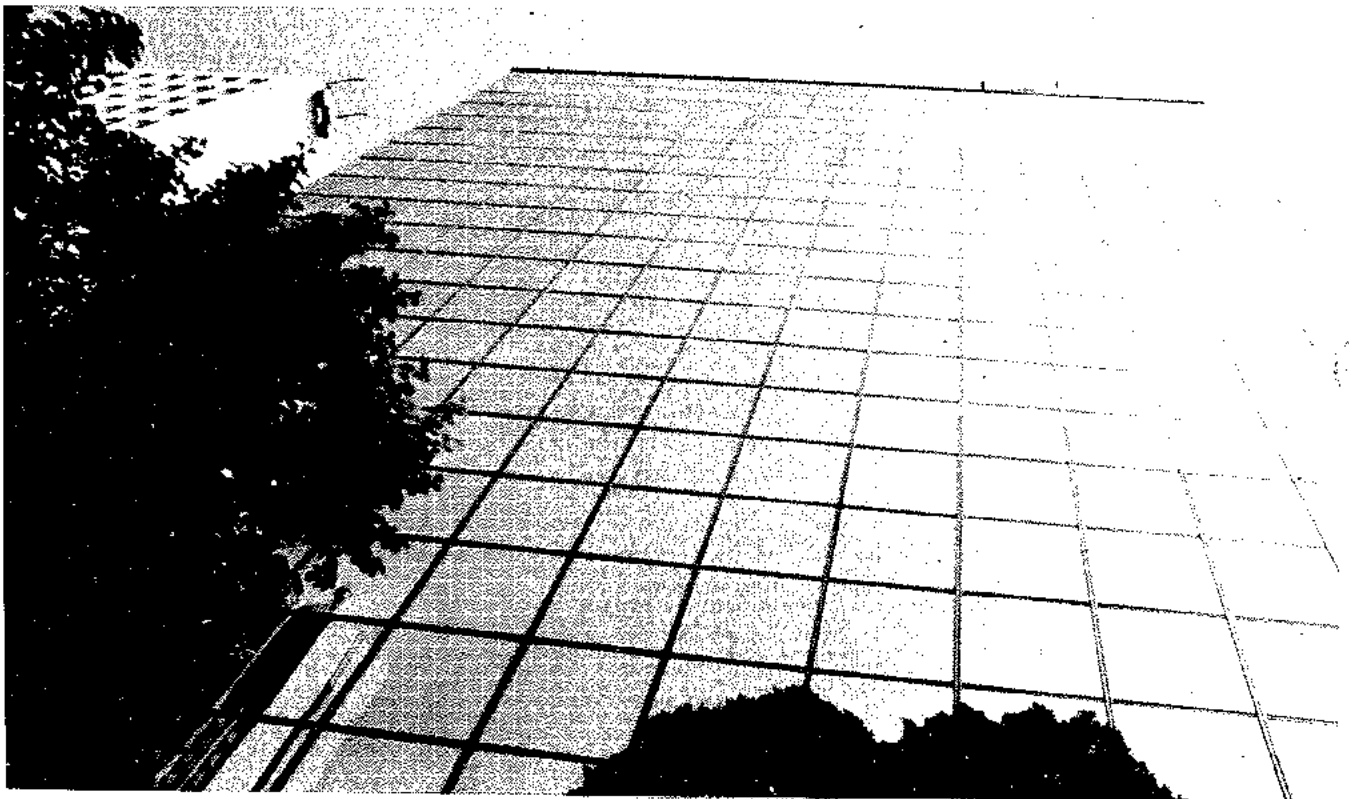
건물용도는 임대사무실이고 주위 건물의 크기에 비해 왜소하므로 강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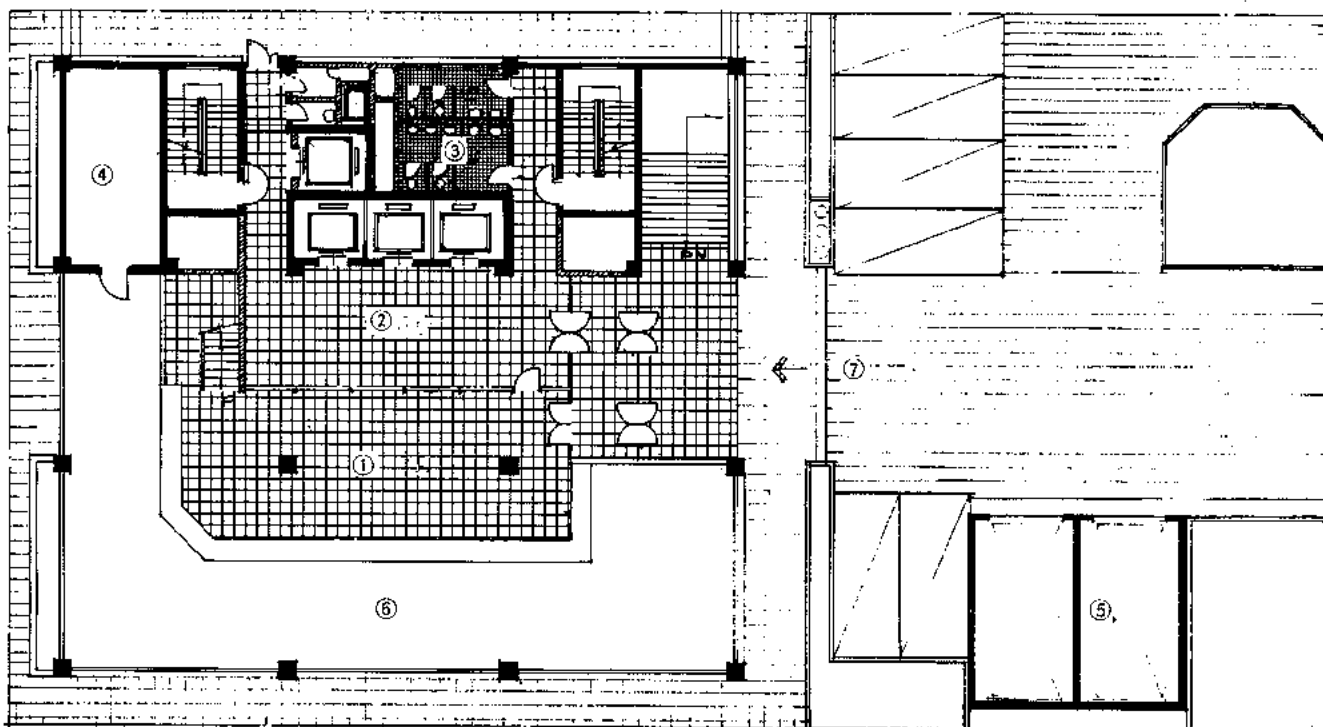
그러나 이질적인 것이 아닌 기존건물들과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융화속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고 따라서 외장은 단순 명쾌한 Mirror glass를 썼으며 그중에서도 반사율이 낮은 것을 사용하여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

주차장은 좁은 대지 때문에 CAR LIFT를 이용한 지하주차 시설을 이용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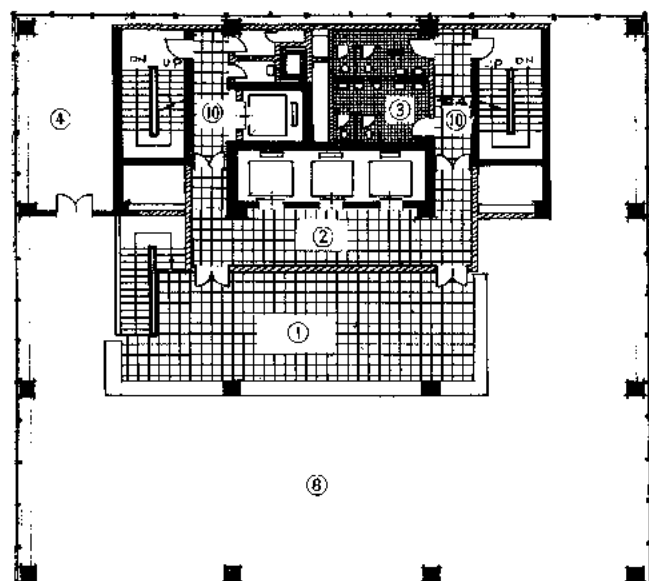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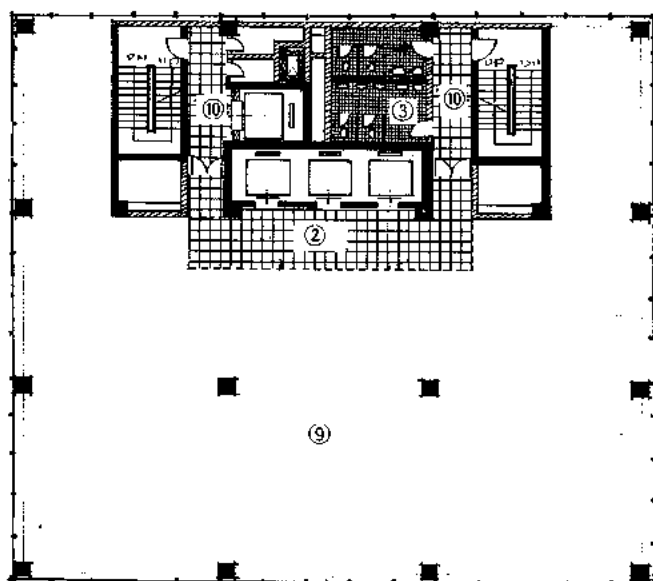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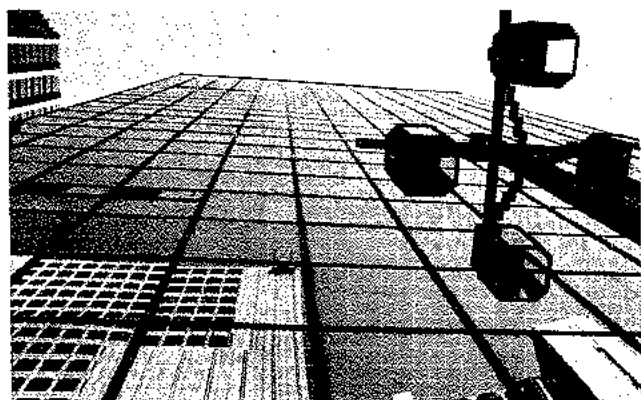


2층평면도



기존3층평면도

- |       |        |        |       |
|-------|--------|--------|-------|
| ① 객장  | ④ 금고   | ⑦ 주출입구 | ⑩ 전기실 |
| ② 로비  | ⑤ 카리포트 | ⑧ 영업장  |       |
| ③ 화장실 | ⑥ 영업장  | ⑨ 사무실  |       |





## 동명여고 강당

金 奉 勳  
(신선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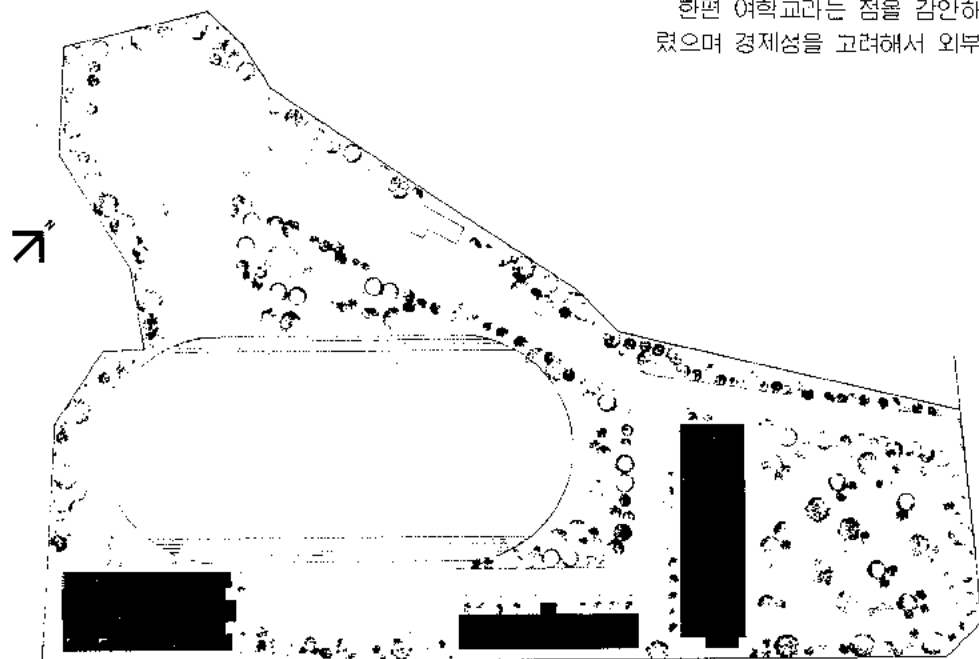
소재지/서대문구 대조동 대지면적/28,134㎡ 건물면적/1  
층 1,007㎡ 2층 263.42㎡ 지하층 638.92㎡ 연면적/1,910.  
18㎡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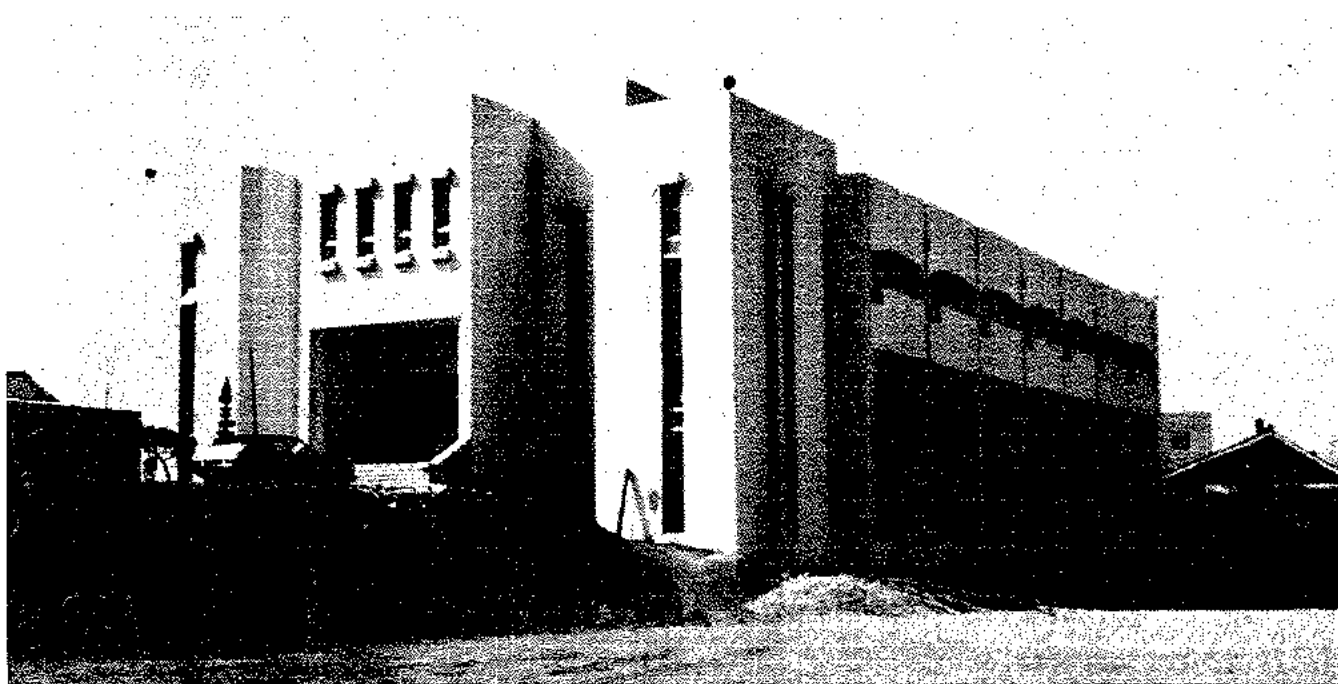
은평구 대조동에 자리잡은 동명여고의 강당 겸 체육관으로  
설계된 본 건물은 대지가 경사지로 되어있다.

이 경사지를 그대로 살려 일부 지하실을 두고 여기에 특별  
교실과 운동장에서 필요한 용구창고로 했다. 또 1층은 강당  
겸 체육관, 2층에는 관람석으로 꾸몄다.

한편 여학교라는 점을 감안해서 입면을 변화있게 모양을 살  
렸으며 경제성을 고려해서 외부를 수성페인트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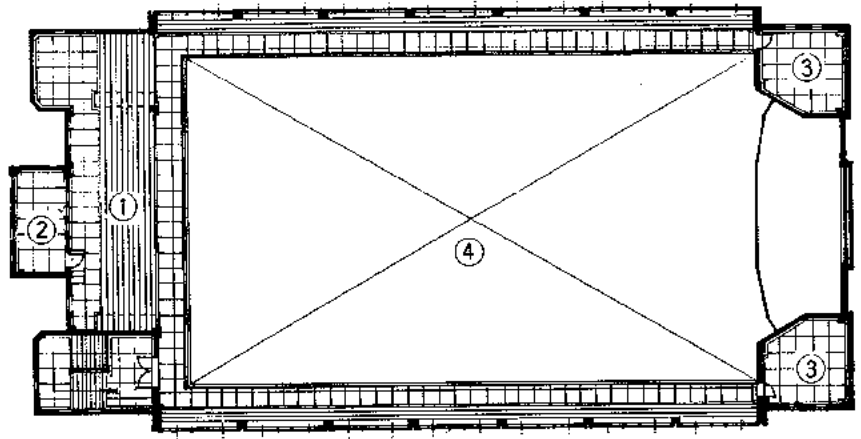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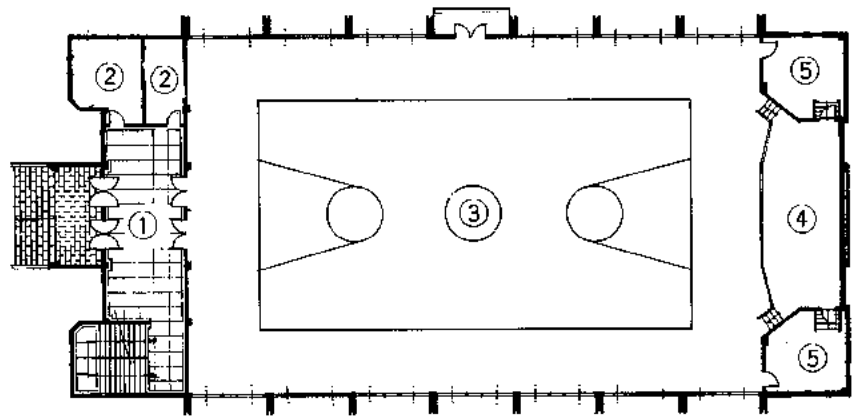


- ① 관람석
- ② 영사실
- ③ 장 고
- ④ 강당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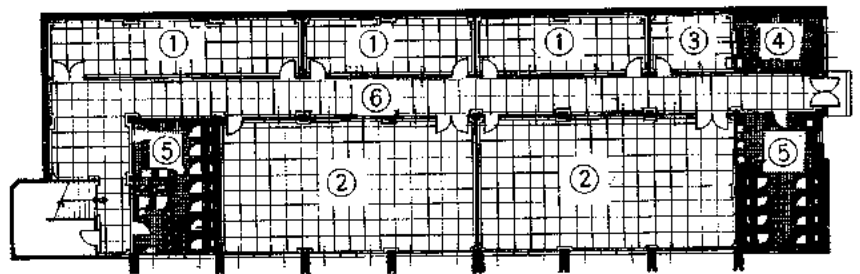
2층평면도

- ① 현관홀
- ② 사무실
- ③ 강당겸 체육관
- ④ 무 대
- ⑤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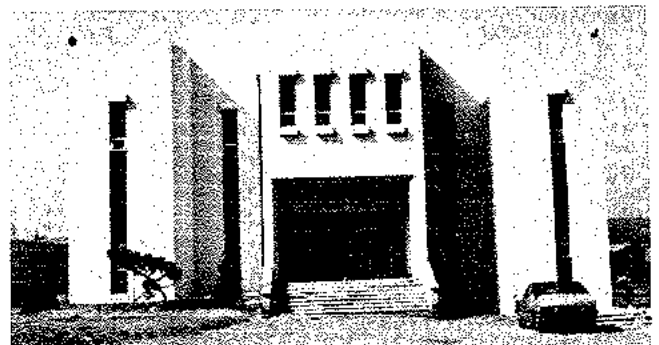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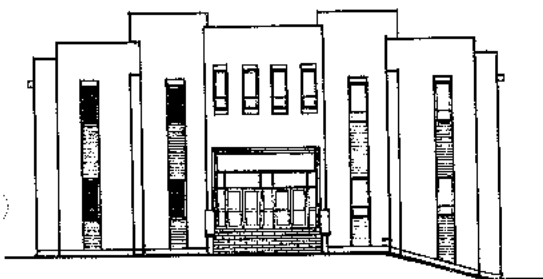


1층평면도

- ① 창 고
- ② 특별교실
- ③ 강의실
- ④ 사원실
- ⑤ 변 소
- ⑥ 독 도



지하층평면도





## 오천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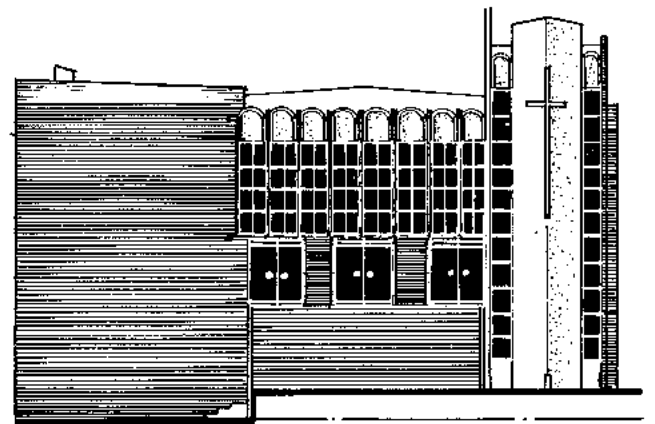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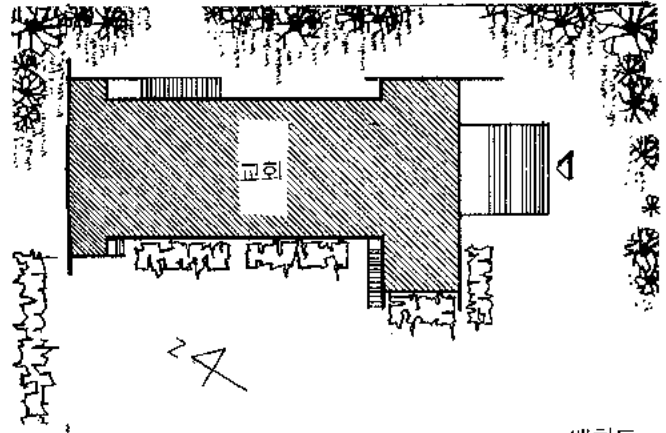
尹 鳳 源  
(건축연구소 원장사)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대지면적 / 3139㎡  
(950평) 연면적 / 1,483.20㎡ (449.45PY) 지하 - 200.59㎡  
(60.8PY) 1층 - 523.38㎡ (158.6PY) 2층 - 523.38㎡ (158.6PY)  
중구층 - 200.59㎡ (60.8평) 옥탑 - 35.26㎡ (10.6PY)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마감 / 외장용 자기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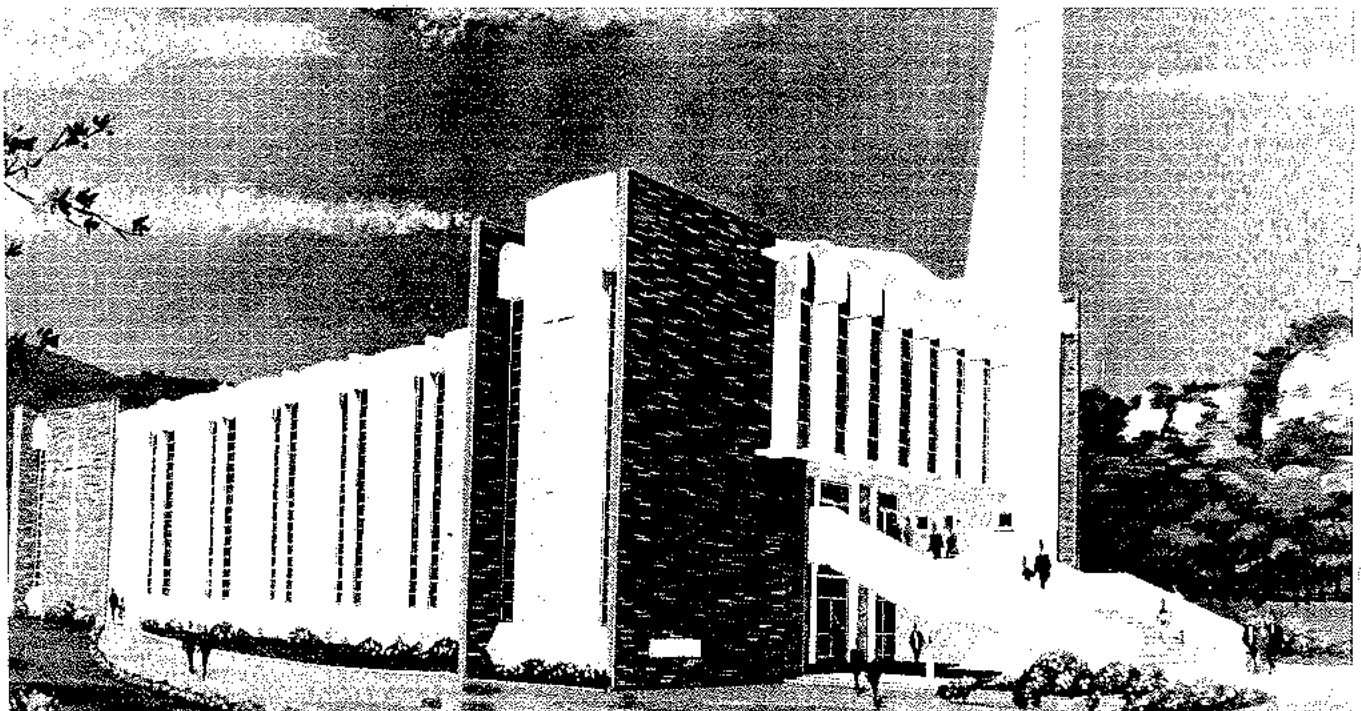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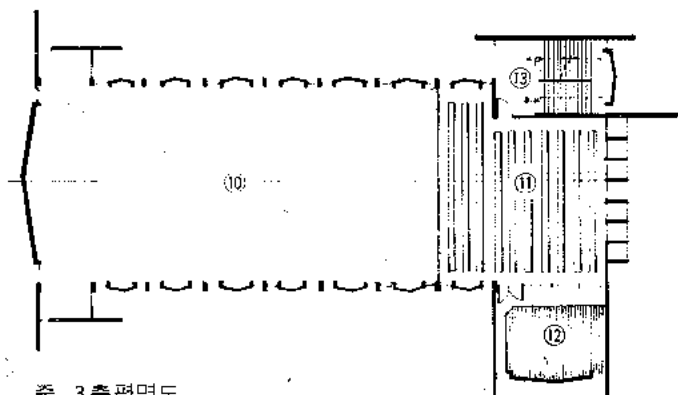
教会建築은 그 기능이나 藝術的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問題가 많이 있다. 누가 어디서 보아도 宗教建築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表示機能과 内部的 기능중에 禮拜·敎會·生活機能등의 배분과 動線등의 처리에 신경이 간다. 單一建物內에 여러 기능을 부여하려니 충분한 空間의 마련이 어렵다. 本 건물은 지방의 面所在地 敎會로서 그 지방 環境에 적응하면서 宗教建築으로서의 堂堂함을 표시하려 努力하였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모로 애써 보았다.

특히 現代 敎會가 内部空間中 자모실과 탁아실에 대한 계획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한다. 예배 분위기도 해결해야 되겠기에 문제가 따른다. 예배실과 자모실사이, 자모실과 탁아실사이를 유리칸막이(방음용)로 구획했으며 탁아실의 위치는 자모실 옆에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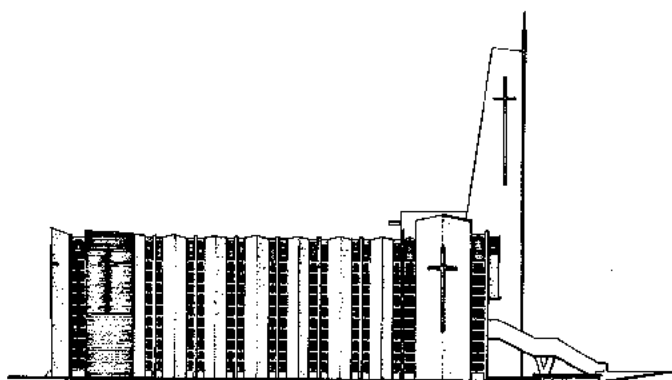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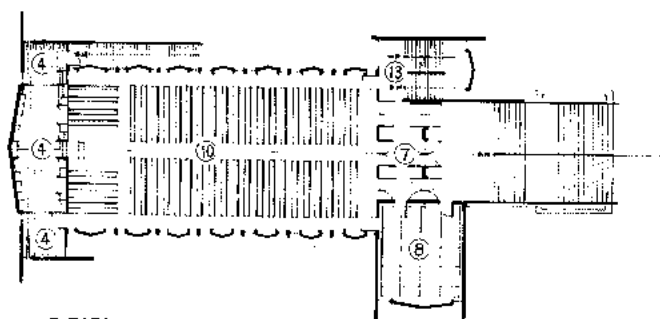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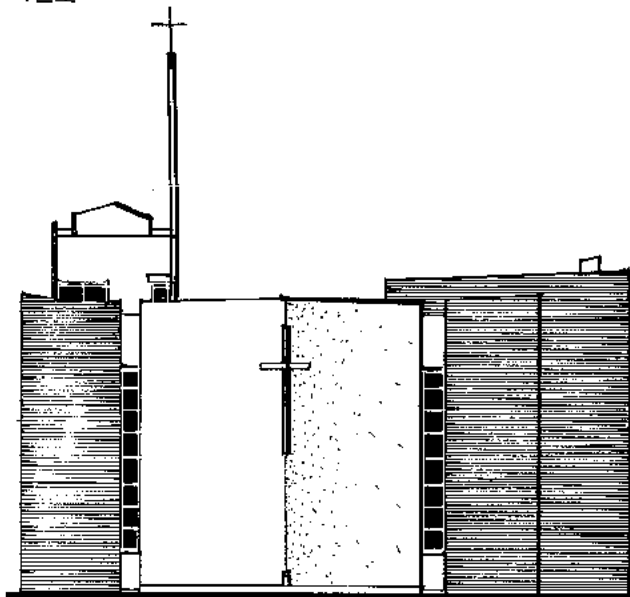
중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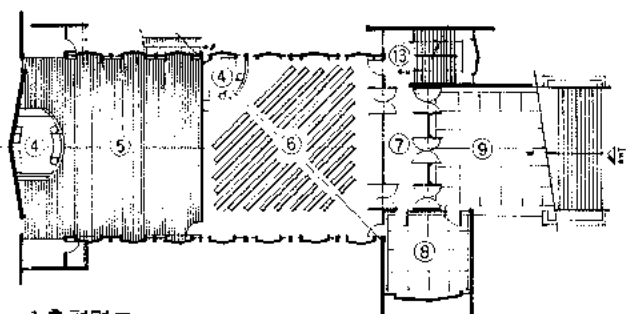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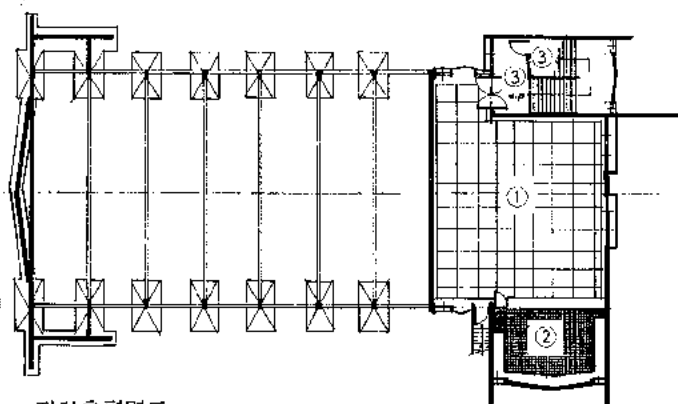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후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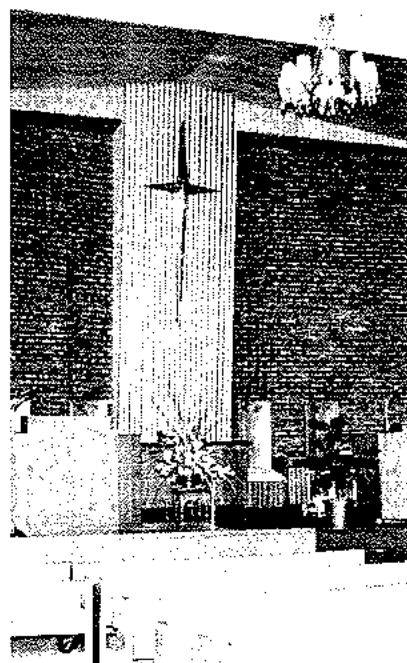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① 식당 · 다용도실
- ② 주 방
- ③ 창 고
- ④ 강 단
- ⑤ 유년부
- ⑥ 초등부
- ⑦ 현관홀
- ⑧ 사무실
- ⑨ 현 관
- ⑩ 대예배실
- ⑪ 자모실
- ⑫ 탁아실
- ⑬ 계단실





## 군 포 읍 청 사

朴 成 圭  
(합성건축기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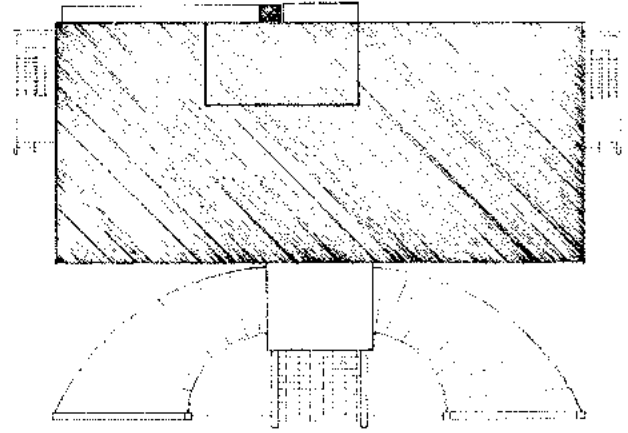
소재지/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23의 1 / 대지면적 741평 /  
지하층 158.25 1층496.46 2층496 옥탑48.45 연면적 1196.70  
설비/온수난방 구조/철근콘크리트조.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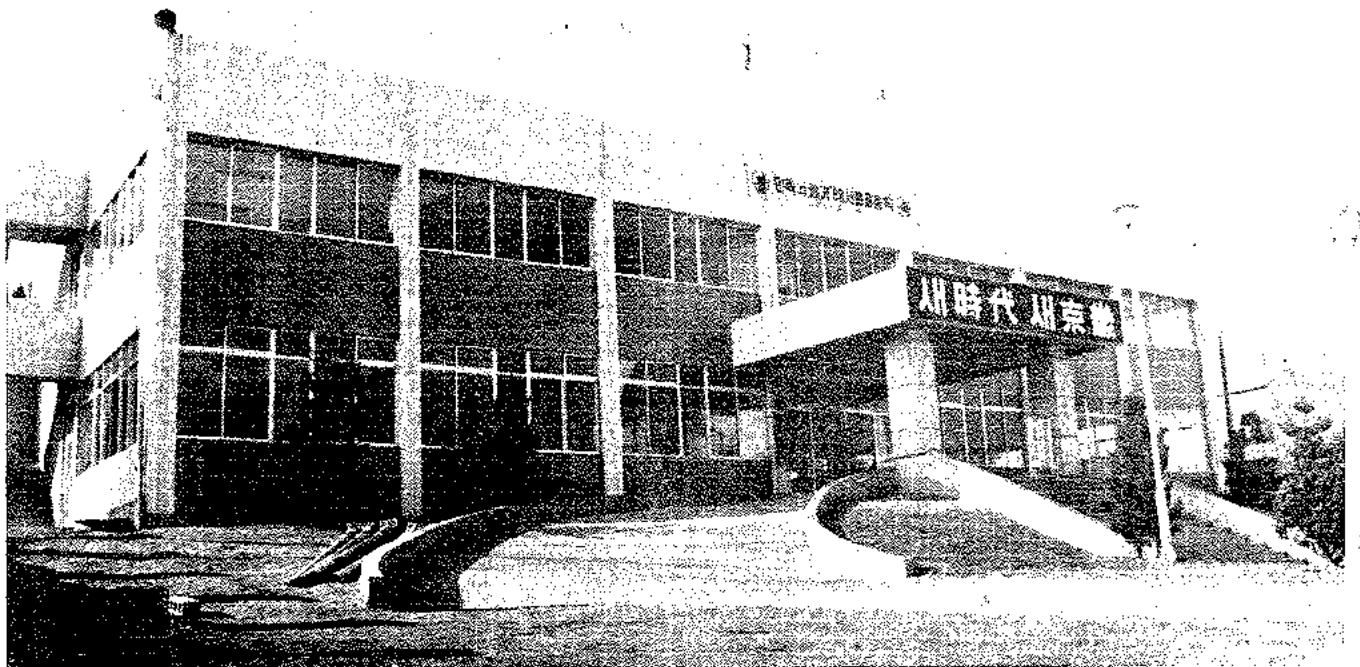
군포읍 청사의 위치가 경기도 관내의 공업지구로 앞으로 발전할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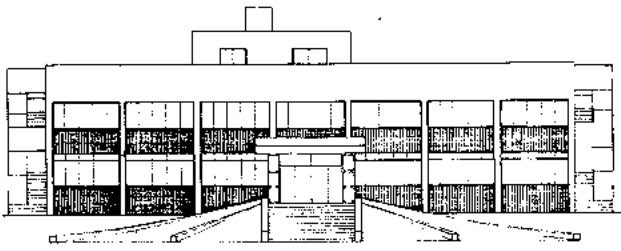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의 대폭적인 수요에 대처해서, 확대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기능성이 요구되는 행정관사인 것이다.

때문에 기본설계의 주안점을 미래지향적인 구성에 두고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성새고에 힘썼다. 주변환경과 잘차 들어설 각종 건물들과의 조화를 위해 품위를 샅렸으며 특히 청사로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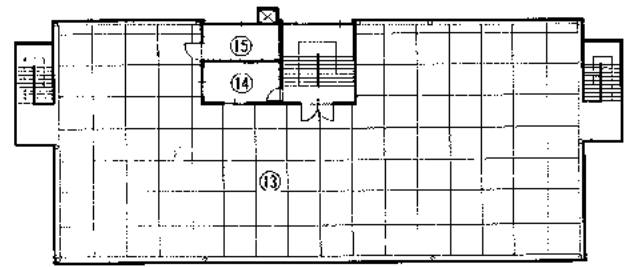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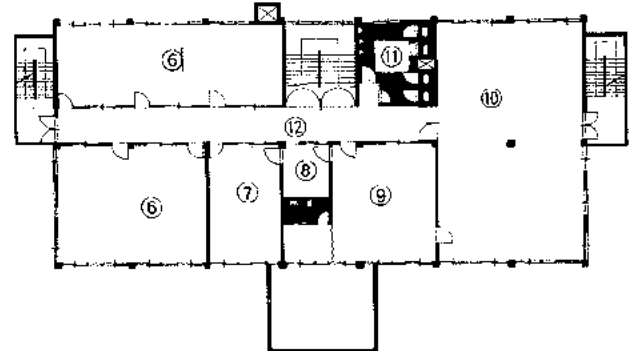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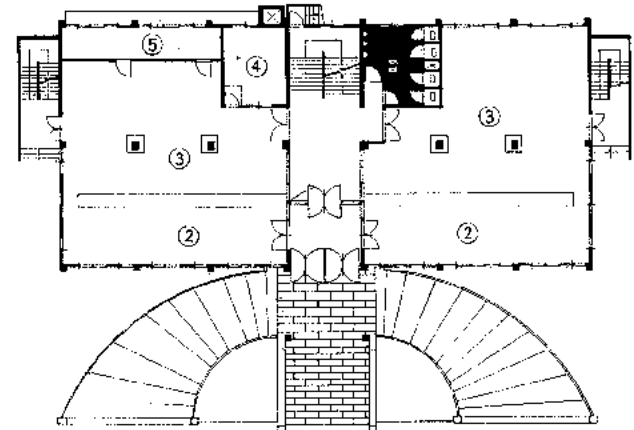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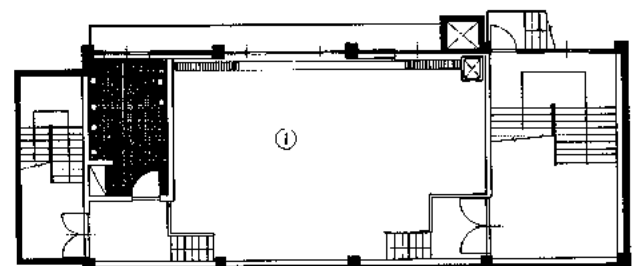
옥탑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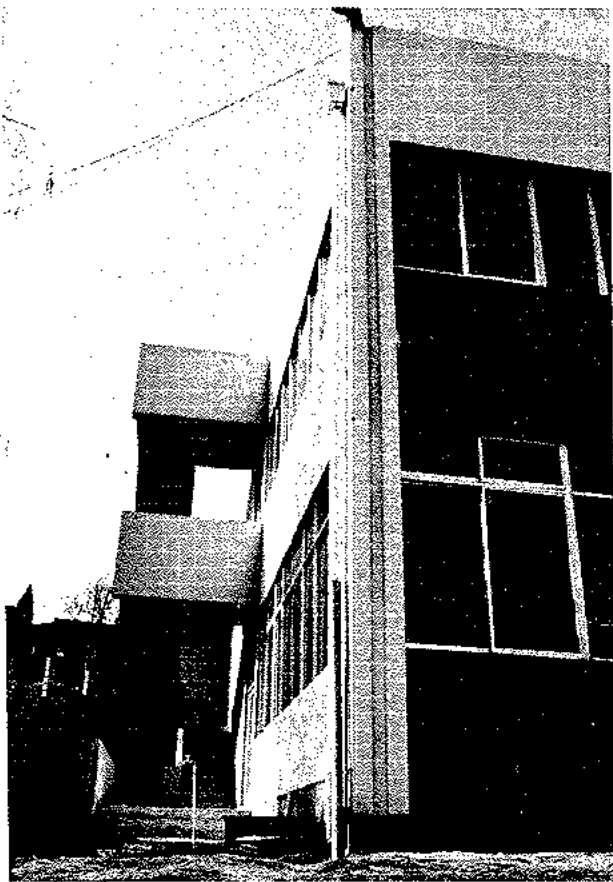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평면도

- |         |       |
|---------|-------|
| ① 보일러실  | ⑨ 음장실 |
| ② 대기실   | ⑩ 회의실 |
| ③ 민원봉사실 | ⑪ 화장실 |
| ④ 숙직실   | ⑫ 복도  |
| ⑤ 지적창고  | ⑬ 옥상  |
| ⑥ 사무실   | ⑭ 보관실 |
| ⑦ 부음장실  | ⑮ 은행  |
| ⑧ 부속실   |       |





## 청 일 학 원

吳世煥  
(종합건축설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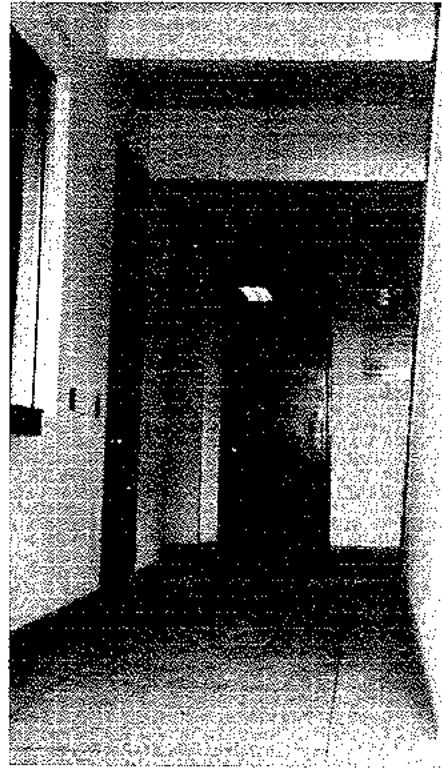
소재지/청주시 사직동6~100/대지면적/858㎡ 건축면적 /  
433.413㎡ 연면적/1,350.54㎡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  
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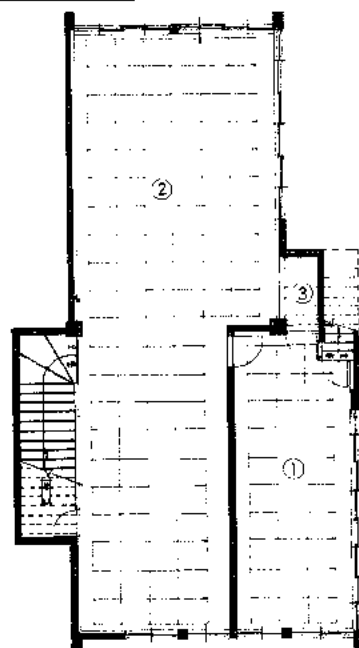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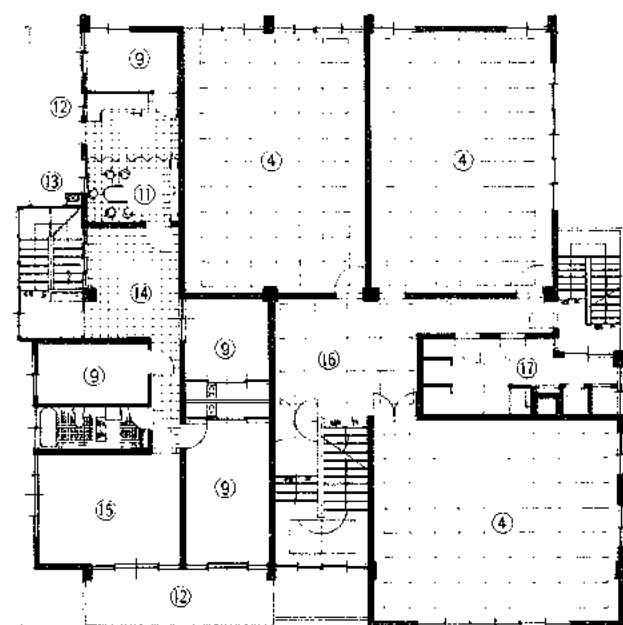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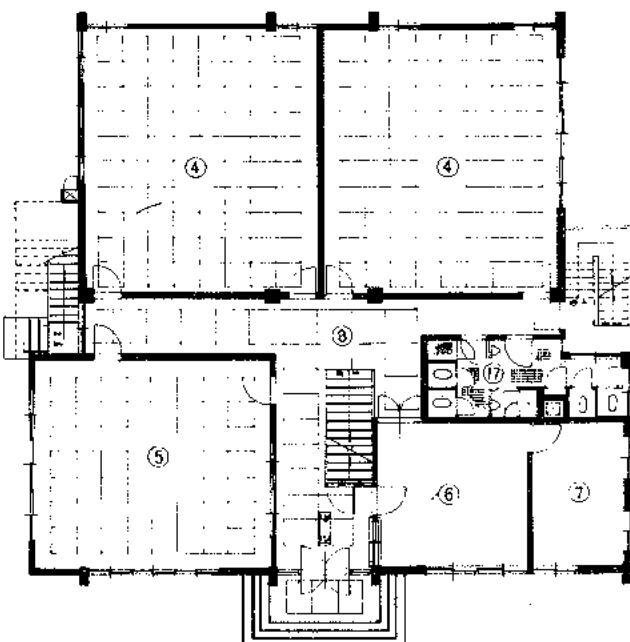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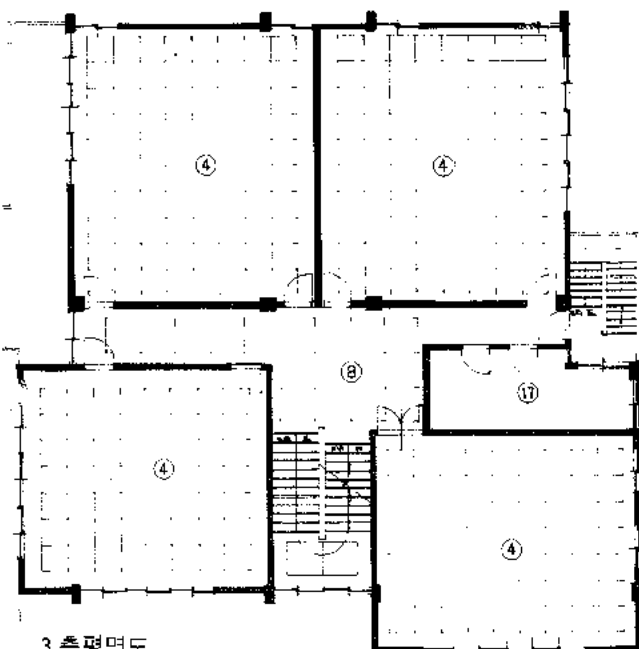
### ■ 설계개요

준하주동 경관이 아름다운 무섬천변에 위치한 청일학원은 건물을 이용하는 대상이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충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맞췄다.

이와 동시에 3층에는 원장사택을 뒀아 하기 때문에 이의 독립성을 감안한 두가지 효과를 살리고자 했다.

따라서 계단실을 중앙홀에 배치해서 동선을 짧게하고자 힘썼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신적인 안정감속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배치에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 |        |         |
|--------|---------|
| ① 보일러실 | ⑩ 주방    |
| ② 대피소  | ⑪ 식당    |
| ③ 창고   | ⑫ 발코니   |
| ④ 강의실  | ⑬ 창복대   |
| ⑤ 교무실  | ⑭ 거실    |
| ⑥ 사무실  | ⑮ 내실    |
| ⑦ 원장실  | ⑯ 김중방화문 |
| ⑧ 홀    | ⑰ 화장실   |
| ⑨ 방    |         |





## 삼 영 아 파 트

尹 榮 在  
(종합건축설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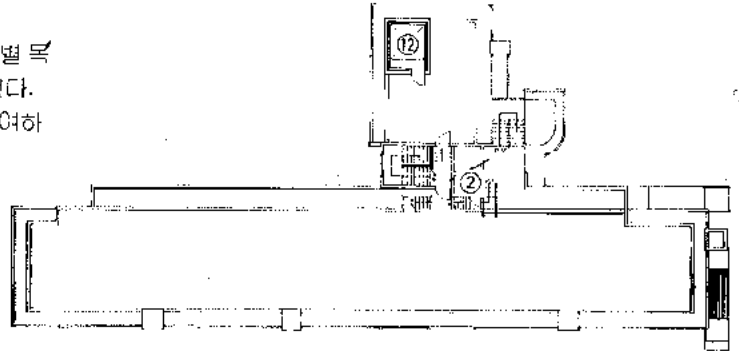
소재지/청주시 사직동668-1 대지면적/2,583㎡ 건축면적/526.66㎡ 연면적/4,054.5㎡ (지상8층) 구조/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 ■ 설계개요

아파트가 갖는 특성가운데, 공동주거환경으로서의 가구별 독립성 내지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설계에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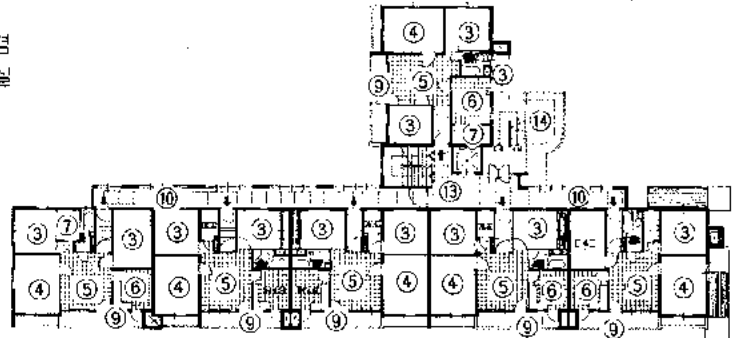
또한 동선과 연관되는 기동성내지 기능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했다.

따라서 편복도형을 채택하는 동시에 각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낮게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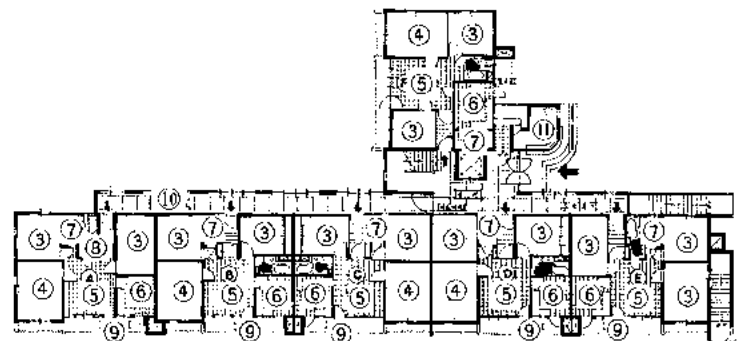


옥탑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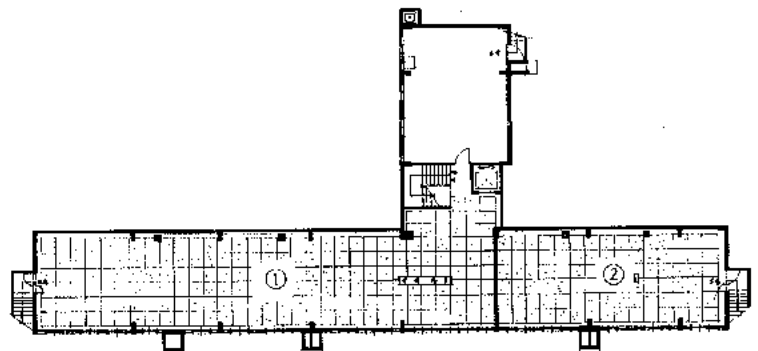
- ① 지하점포 ② 기계실 ③ 방 ④ 내실 ⑤ 거실 ⑥ 주방겸 식당 ⑦ 창고 ⑧ 욕실 ⑨ 발코니 ⑩ 공용복도 ⑪ 경비실 ⑫ 물탱크 ⑬ 자동폐쇄문 ⑭ 국기게양대



2~8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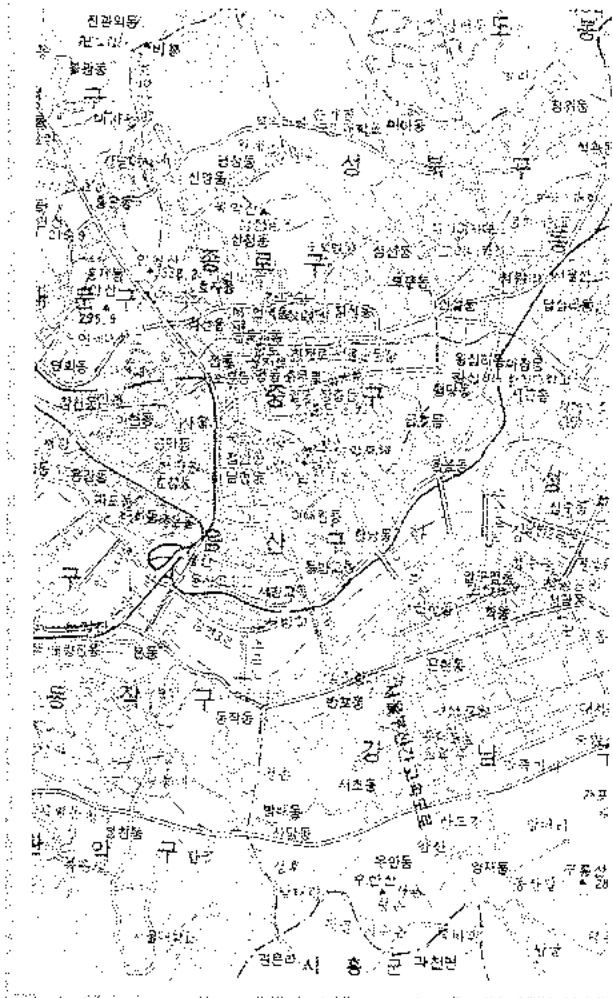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 서울특별시 지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히 건축부문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시청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본 것이다.



문 1 :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건축행정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답 :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제도에 대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키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개선 시행한 것입니다.

建築許可 및 竣工検査 制度改善

| 区号   | 現 行                                                                                                             | 改 善                                                                                                                                                   | 備 註 記 號                                                                                                  |
|------|-----------------------------------------------------------------------------------------------------------------|-------------------------------------------------------------------------------------------------------------------------------------------------------|----------------------------------------------------------------------------------------------------------|
| 建築許可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事前協議後許可</li> <li>協議部署 : 11 (本庁) 11 (支庁)</li> <li>別荘許可 : 8 個事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許可基準時建築許可時一括処理</li> <li>存 置 - 3 個處 (200世帯以上 共同住宅 10,000㎡以上建築物除外)</li> <li>3 個事項一括</li> <li>5 個 ~ 存置</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関係法令整備</li> <li>事務分掌規則 및 委任専決規定改正</li> <li>関係基準 및 図面作成</li> </ul> |
| 竣工検査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別途検査要請 添付竣工検査</li> <li>8 個事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竣工検査時一括処理</li> <li>4 個事項一括</li> <li>存置</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関係法令改正</li> <li>事務分掌規則 및 委任専決規定改正</li> </ul>                      |

문 2 : 서울시에서 79년도에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건축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79년도 제 1회 건축상 시상제도가 있었으나 그후 예산상의 문제등 여러 여건으로 중단 되었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에 기여하고 광적이 현저한 건축물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사명감 고취 및 소양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본 제도를 부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 3 : 최근 국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무허가 건물 양성과 및 위법 건축물의 구제책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물론 장기위법 건축물에 대한 기초 대상건물수와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서울시는 80년도 장기 미준공 처리지침에 의거 많이 구제 되었으나 아직 구제되지 않은 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계법이 공포가 되면 8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구제등의 방향으로 단계별로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의 정리대상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합하여 약 23,700여동 있습니다.

문 4 : 화제를 바꾸어 이번에는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부터 말씀 드린다면 수도 서울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상징적인 가로화를 도모하며 88년도 올림픽대회에 도시미관 확보와 SKY-LINE을 도모해서 주차장 공원과 도시공간을 확대하여 도시기능에 적합하게 브러변 건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 기본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추진방침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설계등의 전문 단체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 운영하므로써 도시설계를 작성코자 합니다.

문 5 : 도시미관의 일익이 될 수 있는 도시 광고물 정비제 은 어떠한지요.

답 : 서울시는 수도인동시 88년 올림픽을 치를 대도시로써 세계의 이목을 한국에 집중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곧 올것에 대비 광고물 정비 정돈에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물이 88,800여 광고물중 정비 대상물이 약절박인 49,000가 있으며 금년에 8천여 광고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 6 :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광고물 정비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못지 않게 가로정비도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어떠 한지요.

답 : 가로정비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 시에서는 가로정비 경진대회를 실시하므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경쟁 정비 의욕을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므로써 우수구(區) 및 우수시민에게 표창을 주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 선정된 시범 가로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示範街路

| 區 分 | 街 路 名                 | 延 長    | 區 別   | 街 路 名                  | 延 長    |
|-----|-----------------------|--------|-------|------------------------|--------|
| 鍾 路 | 황 산 로<br>(동매문~선설동)    | 1,300m | 廓 前   | 서 강 로<br>(공덕동~선촌로타리)   | 2,000m |
| 中 區 | 청 계 로<br>(청교~청계1가)    | 2,600  | 江 西   | 공 항 로<br>(공향입구~한양)     | 2,500m |
| 龍 山 | 침 파 대 로<br>(서부역~래미안역) | 1,900  | 九 老   | 경 수 로<br>(삼립식물~한양아파트)  | 2,900  |
| 城 東 | 교 산 로<br>(야장동~성수교)    | 2,150  | 永 德 洞 | 오 목 로<br>(도모광원~대시주유소)  | 1,500  |
| 東大門 | 황 산산 로<br>(선설동~오스카극장) | 1,570  | 銅 雀   | 동 작 로<br>(동양중~국립묘지)    | 1,100  |
| 城 北 | 난 계 로<br>(경동고~선설동)    | 1,150  | 冠 岳   | 광 약 로<br>(봉천4거리~서울대)   | 1,500  |
| 道 峽 | 장 수 로<br>(구창~본동4거리)   | 700    | 江 南   | 장 남 대 로<br>(논현4거리~봉운동) | 750    |
| 恩 平 | 응 암 로<br>(구창~서부병원)    | 600    | 江 東   | 강 실 로<br>(서울대학교~잠실3단지) | 820    |
| 西大門 | (선촌로타리~연대앞)           | 400    | 總     | 17개 가로                 | 25,440 |

문 7 : 서울시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 이고 이에 따라 주차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특히 도심지 주차장 확보는 큰문제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 : 현재 서울시는 도심지에 주차장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도심에 주차전용 건물을 확보토록 대지주에게 유도하므로써 도심 주차 부족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 한 예로 도심

지 건축물에 대한 도심지 유입 인구의 억제방안으로 도심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강화시켰으며 주차정비지구의 강화로 주차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 8 : 서울시 건축물 SKY-LINE 계획 및 용도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서울시 SKY-LINE의 기본원칙을 도심경관을 살필 수 있는 남산을 거점으로 북악산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고 고궁 및 사직공원의 환경보존과 서울 중심지 고층건물인 롯데와 3, 1 빌딩을 정점으로 본 계획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를 지정 하므로써 기존도시 건축물에 대한 조화를 이루고 도시공원의 증대와 조화있는 도시기능을 살리므로써 수도 서울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건축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용도문제에 대하여는 도심의 유입인구를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도심지 기능을 원활케하고 가 급적 많은 유입인구의 요인이 되는 백화점, 예식장 도매시장 카바레등 교통유발이 심한 용도를 계속 규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 9 : 서울시에서 한옥보존을 위한 지구를 지정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우리 고유문화를 보존하므로써 사라져가는 한옥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콘크리트 빌딩숲속에서도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위하여 당사에서 한옥 보존지구를 책정했습니다. 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주변 한옥군을 집단 보존지구로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하여 신축 개축시 외형을 한식으로 보존 하고 재산세를 감면하여 좁은 물론 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10 : 한옥지구를 지정하여 보존 등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 하시는데 서울시 문화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답 : 서울시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경계에서 27도 이내의 엇각 문화재와 건축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27도선 이내의 엇각 문화재를 정 하므로써 문화재 주변에 인정하여 고층건축물이 건립되므로써 문화재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문화재 주변 사선제한 지역을 지정 하게 된 것입니다.

문11 : 앞서 장시간 본 협회 회지에 기고한 서울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울시 건축사회원에 대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답 : 그동안 당시 건축행정적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당시 건축행정발 전을 위하여 계속지도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住宅行政 實態와 對策에 關한 研究

秋 永 守

(弘益大學 教授)

## 第1章 序 論

### 第1節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核家族化의 速渡는 놀랍다.

家口當 平均이 75年의 5名에서 80年에는 4.6名으로 0.4名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核家族의 進行으로 옛날의 家族制渡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家族關係가 생겨났다. 家族와 家庭의 形態바꿈, 構造의 變動은 人口의 都市 集中과 核家族의 進行이 겹쳐서 住宅事情은 더욱 惡化되어 自家保有率은 63.1%에서 57.9%로 떨어지고 있고 都市의 그것은 44.4%에 不過하다.

上民의 生活環境은 極度로 惡化하여 傳賃人口가 17.3%에서 23.3%로 늘고 大都市일수록 單間房 家口가 많아 서울은 43.7%, 釜山은 40.9%가 單間살이로 나타났다. 家族構成과 家口構造의 近代化는 人口와 產業의 都市集中을 人爲의로 規制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든 都市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갖춰가는 일이 重要하다. 이 연구 논문은 核家族化의 進行으로 人口는 都市集中과 住宅難의 境向에 對한 對策을 問題의 提起로 삼았다.

### 第2節 研究의 目的

本 論文의 研究 目的은 都市의 低所得家計를 爲한 住宅의 供給을 促進할 수 있는 住宅行政 實態의 方向을 提示함으로써 經濟發展의 活力素를 提供하고 社會福祉의 增大를 期하며 社會衡平(Social Equity)을 住宅行政의 樹立過程에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最適配合(Optimum Combination)을 찾는 데 寄與(Contribution)할 農村家口(郡部)가 平均 4.8名인데 비해 都市(市部)는 4.5名, 家口當 使用하는 房의 數는 平均 2.2個, 全体家口의 67.8%가 2個以下の 房을 使用中이고 單間房家口도 2,624,000家口로 全体의 32.9%나 되므로 住宅供給에 있어서의 低所得層을 爲한 住宅의 供給不足이 住宅行政에 對策을 研究코져 한다.

### 第3節 研究의 方法

本 論禮의 研究 目的의 量的分析(Quantitative Approach)에 依한 具體的인 行政의 提示보다는 人口, 住宅 系統에 나타난 變數에 資料를 基礎로 하여 우리나라의 家口構造는 核家族化의 進行, 人口는 都市集中과 住宅難의 境向이 더욱 深化해가고 있는 것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人間行動의 方向과 힘, 指度性을 說明해주는 一聯의 獨立/從屬變數와 關係되며 人間 態도와 技術에 一定한 影響을 繼續 미치도록 하는 것과 關係된다. J.P. Campbell and R.D. Pritchard, "Motivation Theory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P.65

이러한 住宅行政의 實態가 過去 現在에 解決策을 囑求하고 있다.

### 第4節 研究의 範圍

本 論文의 研究 範圍는 住宅行政 態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全7章으로 構成하여 序論과 結論을 除外하면 本論部分이 5章으로 되어 있다.

本論部分中 第2章에서는 住宅行政의 實態를 檢計하였고, 다음 第3章에서는 住宅行政의 機構를 內外的으로 檢討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住宅行政의 事例를 具體的으로 檢討하므로, 第5章에서는 住宅의 需給에 對한 效果를 分析하고, 本論部分의 마지막 章인 第6章에서는 住宅行政의 對策을 檢討하였다.

## 第2章 住宅行政의 實態

오늘날 經濟가 急速渡의 成長과 發展을 經驗하면서 그 過程에 發生한 住宅問題가 重大한 行政的 課題로 擡頭되어 왔다. 過去 國土分斷과 6.25의 悲劇 때문에 發生한 심각한 住宅難을 外國援助에 依하여 解決하려던 救護性을 띤 住宅行政으로부터 漸次 脫皮하여 1960年代부터는 比重이 점점 커지기 始作하였다.

住宅이란 사람들의 隱身處(Shelter)이며, 住 集團 單位인 貫帶 또는 家口(House hold)의 「프라이버시」의 場所(Place)이므로 經濟·社會的인 立地(location)인 곳에 安爲性이 보장된 財産이라고 定義할 때 住宅問題란 바로 이와 같은 綜合的이고 複合的인 條件·機能·價値를 갖춘 住宅을 供給하는 問題이다. 住宅問題가 本質的으로 都市, 大都市의 問題이고 또한 住宅所有能力이 없는 都市低所得層의 問題이기 때문에 住宅行政 實態를 파악하고 分析하여 住宅難은 于先의로 解決되어야 할 어려운 課題中的의 하나이다.

都市의 住宅難은 量的不足과 質的不足인 것이다.

住宅의 量的不足은 住宅의 供給이 住宅需要에 未達 한

## 第2節 住宅行政의 機能

1. 美国一聯邦政府의 住宅都市開發省 以外에도 各種 住宅行政機構가 併沒되어 있는 한편 各 州政府 및 地方政府가 住宅行政을 自治의으로 執行하고 있다.

2. 브라질一國立住宅銀行(National Housing Bank)이 住宅行政에 關한 모든 權限을 가지는 強力한 住宅行政 機關의 役割을 하고 있다.

3. 칠레一8 個部, 處의 24 個에 達하는 公共機關이 住宅行政 및 住宅計劃의 樹立과 執行을 擔當하고 있다.

4. 韓國一共通目標과 共通機能을 가진다고 해서 各已 分散된 機構를 統廢合하에 하나의 核心機構로 改編한 다 기 보다는 오히려 機構의 統廢合過程에 부수되는 各種 非能率과 不作用을 考慮하여 目標과 機能이 같은 여러 行政機構를 協助와 調整이 이루어지도록 協力調整體系와 有機性 確立에 統守 行政機構가 計劃, 設計, 施工에 核一 住宅行政을 中央機構가 管掌하도록 하고 專門家의 100 年 大계를 내다보고 部處間 住宅行政을 建設部가 다 施行할 수 있도록 策政해야 한다고 본다.

## 第4章 住宅行政의 事例

### 第1節 内外 住宅行政

#### 1. 美国의 住宅行政

美国에서는 國民의 住宅問題가 1930年代의 經濟大恐慌을 타개하기 爲한 「뉴우딜」政策의 逐行과 1934年 住宅法(Housing Act)의 制政으로

1) 住宅建設의 主体는 民間企業으로 한다.

2) 政府는 民間企業들의 住宅建設을 爲한 與件을 造成하는데 役點을 둔다.

3) 住宅環境의 整備, 地域社會의 開發, 低廉한 住宅의 生産은 主로 地方自治團體事業으로 한다.

住宅行政機構는 1947年에 國民住宅廳(National Housing Agency)의 繼承인 機關으로 住宅金融廳(Housing and Home Finance Agency)이 設置되었고 그 下部機關으로 聯邦住宅局(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以外에 公共住宅局(Public Housing Authority)이 新設되었다. 1965 都市改造計劃에 關한 中央機構로서 機能을 하게 되었고 下部機關으로 聯邦住宅局(FHA), 公共住宅局(PHA), 都市改造局, 公共施設局, 聯邦低當協會(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가 있다.3) 韓圀訳,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p. 360~364

#### 2. 英國의 住宅行政

英國의 住宅行政機構로는 中央에 建設省(Ministry of works)이 있고 地方에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住宅 및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省(잉글랜드)이나 開發省(북아일랜드)과 같은 것이 있다. 住宅公社(Housing Corporation)와 그 傘下의 住宅協會(Housing Society), 新都市開發會社(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 建設組合(Building Society)

年에는 住宅金融廳이 住宅都市開發省(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로 昇格되어 住宅計劃 및 등이 있고 咨問機關으로 中央住宅諮門委員會(Central Housing Advisory Committee)와 土地委員會(Land Commission)가 있다.

住宅行政의 根據法規는

1) 住宅 및 都市計劃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 1919).

2) 住宅法(Housing Act, 1923)

3) 住宅金融法(Housing Financial Provision Act, 1924)

4) 新都市開發法(New Town Development Act, 1946)

5) 住宅修理 및 賃貸法(Housing Repairs and Rent Act, 1954)

6) 住宅賃貸法(The Rent Act, 1965)

7) 建築規制法(Building Control Act, 1966)

8) 住宅補助金法(Housing Subsidies Act, 1967)

9) 賃借改革法(Leasehold Reform Act, 1967)

이 있다.4) 韓圀訳,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 365~368.

#### 3. 日本의 住宅行政

日本 住宅行政의 基本法規로 1919年의 都市計劃法은 都市計劃基本法規로서 都市計劃 施設地域 內에서 建築制限과 土地區劃 整理地域內에서의 建築制限을 規定하였다.

1950年에 制定된 建築基準法에 団地 및 建設에 關한 許可 및 認可基準이 設定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工業 및 港口地域과 綠地帶에는 住宅建設을 禁함 (用途制限).

2) 모든 住宅은 耐火構造로 하도록 義務化함(構造制限)

3) 用途地域 따라 建坪 및 建物 높이의 基準을 定함 (容積制限).

4) 大団地建設時는 道路, 公園, 綠地, 河川 等 都市計劃施設用地의 確保를 規定한다.

(1) 公營住宅法(1951)은 國庫補助住宅으로서 公營住宅建設을 規定.

(2) 土地區劃整理法(1954)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根據法規로서 新築, 改築, 増築 等 建設行爲는 知事 및 建設大臣의 許可를 받도록 規定.

(3) 新住宅 市街地開發法(1963)은 10萬坪 以上の 住宅 団地開發을 規定.

(4) 住宅地區改良法(1960)과 住宅地域造成事業法(1964)이 있다.5) 韓圀訳,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p. 368~372.

#### 4. 韓國의 住宅行政

1966年 以前까지의 住宅行政은 消極的인 簡易救護住宅의 建設에 置重하여 住宅의 不足에 対処하는 程度였다.

1966年을 轉換點으로 從來의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住宅行政이 積極的, 能動的인 行政으로 變하여 새로운 施策이 講求되어 왔다.

住宅의 質的 需要의 要因은

- 1) 住宅構造變化에 依한 房數 및 居住面積의 增加.
- 2) 住宅의 高級化에 依한 附帶施設의 確充.
- 3) 生活 樣式의 變化, 所得 및 生活水準의 向上에 依한 文化住宅 所有慾 等을 들 수 있다.

住宅供給의 形態는

大單位 아파트 群의 建立과 獨立家屋의 建立으로 나눈다.

- 1) 實需要者 自信들에 依한 住宅建立으로서 自家住宅, 自助住宅인데 住宅供給의 最初 形態로서 가장 比重이 크다.

自助住宅은 2次大戰后 各國에서 많은 實効를 거두고, 無住宅者 等 住宅의 實需要者가 自己資本으로 또는 財力이 不足한 無住宅者들의 隣近親戚, 主民, 公私機關 等の 協助을 얻어 住宅을 建設하는 形態다.

- 2) 營利를 爲하여 分讓住宅, 賃貸住宅, 商街住宅 等を 建立하는 形態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住宅企業에 依하여 住宅事業이 遂行되어 賣却 또는 賃貸하는 形態로서 住宅産業이 發展하게 되고 또 住宅 企業은 住宅供給에도 크게 奇與한다.

① 分讓住宅—政府나 公共團體에서 建設한 公營住宅을 實需要者에게 一時拂 또는 分割拂로 分讓하여 所有權을 移轉시켜 주는 것으로 資金이 貧弱하고 物價 上昇이 激甚한 開發途上國이나 後進國에서 主로 實施하고 있는 住宅供給形態다.

② 賃貸住宅—公營住宅의 一種이긴 하나 다른 點은 使用者에게 所有權을 移轉시키지 않고 入住者의 能力에 따라 月賃나 專賃 等 低廉한 賃貸料로 使用케 하는 住宅行政政策으로서, 自家住宅 建設의 財政能力이나 融資金 惠澤을 받을 수 없는 低所得層 또는 自家住宅이 必要치 않은 特殊層을 爲한 住宅供給形態이다.

③ 商街住宅—都心地區에 住宅과 商店의 二重役割을 할 수 있는 高層住宅을 建築하는 것으로서, 都心地는 地價가 높고 人口가 過密되어 있으므로 平面住宅보다는 高層 아파트를 建築하여 上層에는 住宅을 下層은 商街로 利用함으로써 住居와 商用의 廉用으로 建築한 것인데, 住宅 難解決과 土地利用의 高層化를 同時에 期할 수 있는 住宅供給形態이다.

3) 企業住宅은 非營利的인 住宅供給形態로 企業主가 被雇傭人을 爲해 社宅, 給與住宅 等を 提供하는 것으로서 住宅供給은 産業 및 經濟 發展에 따라 可能하다.

4) 公共福利住宅은 公共福利行政의 一環으로 無住宅者에게 國家나 公共團體에서 低利賃貸 또는 融資金을 提供하여 長期低利의 好條件下에 零細民에게 住宅을 建立해 주는 形態로서 住宅行政의 主軸이다.

住宅供給은 都市化趨勢로 住宅難이 深刻하며 民間化 弄奸에 住宅難解決에 부채질하여 分讓價와 賣買價를 마음대로 調節케한 福婦人을 일으키던 不動產業者들과의 強

力한 行政 措置로서 住宅供給을 爲한 努力에는 地價의 確保와 宅地造成의 限界性, 地價의 昂騰, 土地利用의 規制, 住宅資金의 制限法, 建築期間의 長期性, 建築資材의 需給隔差와 價格 昂騰住宅價格 및 建築費의 인상, 建築技術 및 建築人力의 不足, 行政·財政力의 不足 等 여러가지 限界에 부딪쳐서 住宅價는 水平을 이루고 있다.

### 第3章 住宅行政의 機構

都市化 過程에 있는 開發途上國과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住宅行政政策은 中央政府가 調整, 統制하고 있고 大概의 境遇 各國은 住宅問題를 다루기 爲한 獨立된 部, 省이 設置되어있다.

#### 第1節 内外國 住宅行政 機構

1. 美國—聯邦政府內의 住宅都市開發省(C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이 住宅問題와 都市開發問題를 統括하여 調整하는 住宅行政 機構이다.

2. 英國—住宅 및 地方自治省(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과 같은 住宅行政 機構이다.

3. 韓國—住宅難과 住宅問題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中央政府內에 獨立部處로 設置되어 있지 않고 建設部 住宅都市局이 住宅行政의 中央機構로서 機能을 하고 있다. 道와 市에는 管轄區域內의 住宅問題를 處理하기 爲한 住宅課가 設置되어 있다.

住宅行政 執行機構로서 建設部 傘下 大韓住宅公社가 政府의 公共投資에 依한 住宅建設과 住宅團地 造成을 받고 있다. 建設部 傘下 韓國住宅銀行은 住宅의 建設과 補修 等を 爲한 住宅金融業務를 取扱하는 機關이다.

建設部가 樹立한 住宅行政政策이나 住宅建設計劃이 住宅公社나 住宅銀行과 直接的으로 相互間 有機的 連結은 組織行政體系를 多樣性, 自律性, 正體性, 還流性으로 上下의 關係가 主從的暗示的(Latent)融合的(Diffuse), 個別的(Particulistic), 情緒的(affective) 關係라면 不公平이 널리 認識될 可能性이 높다.

建設部の 住宅都市局은 住宅行政의 最高中央組織으로서 住宅行政政策 및 計劃의 樹立, 全國의 住宅現況調査와 住宅需要의 測定, 住宅事業의 監督과 增導 等이 主要業務이고, 專門化, 標準化, 單純化를 目標로 하는科學的 管理方法이 더 效果的일 것이다.

建設部, 內務部, 財務部, 서울市廳 사이의 相互關聯性 뿐만 아니라 住宅行政業務가 局部的으로 他部, 處의 所管業務인 實例도 있고 해서 住宅行政의 機構, 予算, 計劃 및 執行에 統一性和 一貫性, 効率性和 經濟性 等이 問題가 된다.

1) 經濟企劃院—住宅에 對한 投資計劃과 範圍를 策政.

2) 保健社會部—災害地區의 住宅事業에 關하여

3) 總務處—無住宅公務員의 住宅計劃을 관장

4) 援護處—無住宅軍警遺家族 및 國家有功者를 爲한 住宅業務를 取扱한다. 韓垣沢,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p. 315~316.

으로써 需要供給間의 不均衡이 發生되는 狀態이다.

住宅의 質의 不足은 住宅의 居住條件이 不良하여 住宅이 諸 機能을 발휘 할 수 없는 狀態를 말한다. 따라서 都市 住宅解決을 住宅의 量的 不足을 解決하기 爲한 住宅建設의 增加, 低所得層을 爲한 住宅供給의 増大와 老朽 또는 不良住宅의 質的改善의 接近法에 依하게 된다.

住宅은 人間生活의 基本要件이고 社會와 國家의 基礎 單位가 되는 家庭生活의 本據地이다. 住宅 狀況은 그 地域社會의 印象,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評價 基準으로 하며, 國民의 安樂한 生活據地이요, 住民의 福祉를 爲한 基本要件으로서 社會의 安定, 政治의 安定, 經濟의 安定을 爲한 政策手段이 住宅行政에 重要な 課題이다.

即,

1) 家口의 細分化, 家口의 增加, 單位家族制度 等에 따라 住宅의 新需要發生이 増加한다는 點.

2) 經濟的, 物理的, 衰退地域(Blighted area)의 擴大에 따른 老朽化 現象과 新生貧民地域의 不良住宅이 増加한다는 點.

3) 老朽 및 不良住宅의 철거, 工場移轉 等에 依한 住宅需要가 増加한다는 點.

4) 生活 水準, 文化 水準의 向上에 따라 高級住宅所有慾이 높아졌다는 點.

5) 人口暴發과 이에 따른 人口의 都市集中이 高潮되고 있다는 點.

6) 住宅難이 本質적으로 農村社會의 問題라기 보 都市社會의 問題라는 點.

7) 住宅産業은 他産業에 比해 景氣變動에 민감하고 外部資金에 對한 依存度가 높은 반면, 外部資金의 調達이 圓滑치 못하다는 點.

8) 住宅의 需要供給間의 不均衡 擴大와 過少住宅投資로 因해 新住宅建設이 完만하고 住宅市場의 彈力性이 낮다는 點.

等의 要因을 說明할 수 있다.

經濟學의 觀點에서 볼 때

1) 住宅은 資本財가 아닌 消費財일뿐만, 아니라 住宅部門의 生産에 直接 奇與하지 않는 一種의 사치적 奢侈品이다.

2) 住宅部門을 國民生産의 觀點에서 分析할 때 住宅部門에는 相對적으로 많은 資本을 必要로 하고 投入 對 產出比率에서는 製造業 等 他産業部門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經濟開發에 利用 可能한 資本이 制限되어 있는 現實下에 住宅部門의 投資는 極히 非能率의 이다.

社會福祉의 觀點에서 볼 때

1) 勤勞者의 住宅改善과 健全한 生活은 勞動生産性을 増大할 수 있다는 點.

2) 營生 資本·유휴 勞動力 等 未活用 資本을 動源할 수 있다는 點.

3) 住宅建設産業은 點製業部門의 景氣와 逆週期 現象

을 나타내므로 一般 景氣의 침체시 住宅建設部門을 지원함으로써 住宅産業은 經濟構造內에서 景氣調節機能을 할 수 있다.

4) 住宅은 所得을 창출하고 生産性에 影響을 미치는 投資이며, 住宅産業은 勞動參加率이 가장 높은 産業의 하나이므로 住宅産業은 所得效果, 生産效果, 雇傭效果가 높다는 點이다.

## 第1節 住宅行政政策

住宅難은 都市의 物理的 부패의 造狀, 實業率의 增加, 빈민地域 및 不良住宅의 增加, 交通混雜, 社會的 政治的 不安의 造成等 都市 開發이나 住民의 福祉生活에 커다란 부정적 影響을 미치게 되는 반면 住宅産業이란 行政政策을 강구함으로써 住宅供給 基本效果外에 부차적인 效果로는 就業機會의 増大, 유휴 勞動力의 吸收, 都市化 過程의 計劃, 調整, 貯蓄制度의 發展, 生産増大, 收益増大, 建設 産業의 發展으로 經濟的 效果, 建設業 및 建築資材 産業의 育成, 建築技術의 發達, 技術者 및 勞動者의 技能訓練, 地域開發 效果를 가지게 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側面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國家總資源을 經濟活動領域別로 配分함에 있어 住宅産業은 資源配分決定에 影響을 주는 主要 要因이며, 關連産業의 勞動力, 生産力, 購買力 等에 주는 波及效果때 문이다.

2) 住宅産業은 住宅技術 및 建設業 發展의 자극제가 되며 住宅建設業의 大企業化, 住宅建設의 規格化와 部品組立化(Prefabrication), 工場施設과 工場經營技術의 發展 以外에도 生活利器의 改良, 利器의 改良·燃料과 必要施設의 改良 等 住宅産業 部門의 技術發展에 奇與한다.

3) 住宅行政은 地域發展과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住宅의 需要와 供給計劃에 따라 交通, 通信, 上 水道等 地域社會의 모든 公共施設의 配置計劃이 調整된다.

4) 住宅行政의 決定과 集行은 土地開發 및 利用에 깊은 關聯을 맺고, 住宅供給을 爲한 土地埋立, 千拓事業, 都市部의 再開發事業, 不良住居地의 整備事業 等이다.

## 第2節 住宅分析 모델

住宅問題의 核心은 住宅의 需要와 供給間의 隔差는 住宅 不足을 말한다.

住宅의 量的 需要의 증대 原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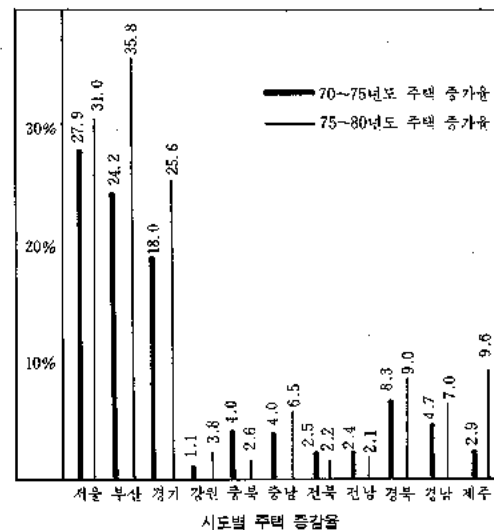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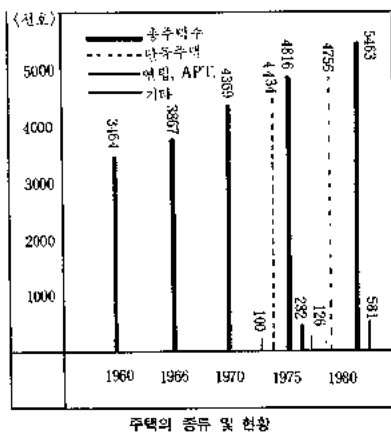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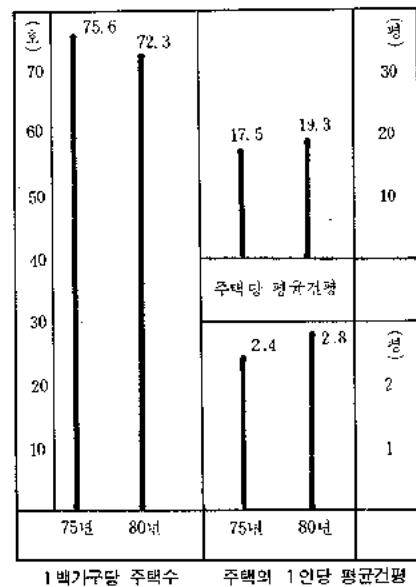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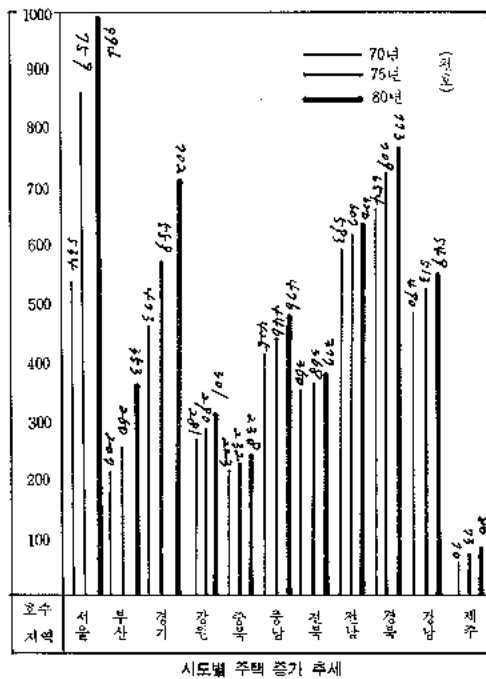
1) 人口의 增加, 人口 密度 및 家口의 增加, 機構의 細分化 人口의 都市集中 等에 依한 新需要發生.

2) 公共用地 및 社會間接施設의 確充이나 都市再開發, 都市改造 等에 依한 既存 住宅의 撤去.

3) 工場 移轉이나 不良地區改造 等에 依한 効外地域의 住宅需要增加.

4) 既存 住宅의 用途變化.

5) 投機的 埋立이나 建築 中인 未入住 建物 等에 依한 空家率의 増大 等を 들 수 있다.



## 住宅行政策은

- 1) 向上된 公營住宅의 建立.
- 2) 当局의 行政的 支援에 依한 民間資本動員으로 商·住宅兩用의 商街「아파트」建立.
- 3) 民間과 市의 合作에 依한 市民「아파트」建立.
- 4) 住宅의 新築과 並行되는 既存住宅의 改修.
- 5) 宅地造成事業의 強力한 推進
- 6) 與件造成의 一環으로 幹線道路, 電氣, 水道, 交通施設 等 行政的 支援의 強化
- 7) 副都心 및 衛星都市開發에 依한 人口分散
- 8) 撤去民 再定着地 開發과 都市整備 및 都市開發事業의 實施(例-城南市)
- 9) 高級住居地域의 開發(例-汝矣島, 盤浦)
- 10) 行政地域의 開發(例-永東, 蠶室, 千戶等 江南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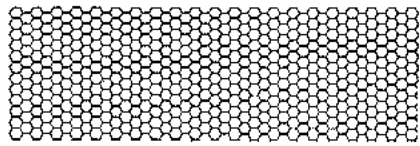
이러한 一聯의 住宅行政과 計劃은 住宅事業 刮目할 進展과 実績을 보이게 되므로 民間資本의 誘致, 不良地区의 撤去와 再整備, 庶民 및 商街「아파트」의 建立, 大單位

高層住居地域의 開發 等を 해야 한다. 6)韓垣沢, 都市行政論, 法文社, 서울, 1981, pp. 348~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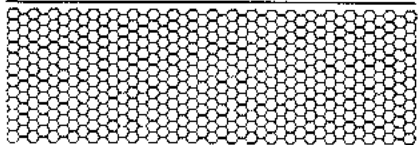
## 第2節 韓國의 住居問題

韓國의 住居問題는 75년에 비해 80년이 核家族化의 20% 増加 實態를 보이고 있으나 住宅의 増力는 늘어나는 家口數를 따르지 못하여 住宅의 供給問題가 需要에 相返하여 深刻하다는 것이 「80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에서 밝혀졌다. 住宅은 75年 보나 相當히 増加되긴 했지만 住宅의 不足率에 있어서 釜山이 48.7%로 가장 높고, 서울이 45.8%, 京畿 35.1%, 慶北 33.4%, 濟州 23.8%, 慶南 23%, 江原 19.5%, 全南 19%, 忠南北이 各各 18.2%, 全北이 16.8%로 나타나 特히 大都市의 住宅不足率이 높은 現實일을 알수 있다.

또한 建設된 住居建築의 種類別로는 聯立과 아파트 (Apart)의 建設이 活潑했으며, 單位 住居當 平均 建坪도 75년의 17.5坪에서 19.3坪으로 1人當 平均 建坪 亦時 増加되었다. \*



# 月間建築情報



## 海外자원開發사업 追加지정

政府는 信用保證基金法施行令을 一部 改正, 海外依存도가 높은 主要資源의 長期 安定的 確保를 뒷받침하기 위해 信用保證 対象範圍를 擴大 키로 했다.

財務部가 마련한 이날 열린 經濟長官會議에 올린 改正案에 의하면 技術用役事業, 設計製圖事業과 測量事業·觀光事業, 醫療保健業·修繕業등 大統領令이 定하는 信用保證 対象業種에 이같이 追加指定했는데 海外資源開發事業은 企業이 海外에서 鉅産 및 農林水産資源을 直接開發하거나 이를 開發하기 위해 单独 또는 外國人과 共同으로 投資하는 事業으로 限定시켰다.

그런데 現行 信用保證基金法上 対象業種은 鉅産業·製造業·電氣가스業·建設業·都屯業·小屯業·運輸保管業 및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등으로 되어있다.

## 서울地域건축活動 침체局面

서울地域의 建築活動이 지난 8월以後 다시 沈滯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韓建築士協會 서울支部가 集計한 올들어 지난 9월末 現在 圖書中告現況은 9천16棟에 延面積 544만 9천 73m<sup>2</sup>로 前年同期の 1만 1천721棟642만 8천459m<sup>2</sup>보다 棟數는 2천 705棟 延面積은 97만 9천386m<sup>2</sup>(15%)가 各 各 줄어들었다.

이를 月別로 보면 延面積이 前年

同期對比 △ 1월중 75% △ 2월중 31% △ 3월중 52% △ 4월중 36%가 各 各 줄어들었으나 △ 5월중에는 28%, △ 6월중 55% △ 7월중에는 無慮 80%가 各 各 늘어났다.

그러나 △ 8월중 다시 17% △ 9월중에는 10%가 各 各 줄어들었다.

## 명년도 建設시책 基本방향

建設部는 明年度 建設施策의 基本方向을 80年代 民主福祉社會에 対応하는 國土經濟를 위한 基盤構築事業에 두기로 했다.

建設部에 의하면 明年 建設 施策은 제 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을 着手하고 新都市建設事業을 繼續적으로 推進하는등 福祉社會를 겨냥한 國土政策을 推進한다는것.

또 國民住宅建設을 擴大하고 宅地開發을 擴大하며 中小都市의 生活用水 供給施設을 充實, 國民生活의 基本需要를 充足하는데 力點을 두며 重化學工業基地建設을 繼續적으로 펴나갈 力針이다.

## 建築허가때 消防署 同意절차없애 國務회의 消防法 시행령 改正 單獨주택 3層이하 共同주택등

國務會議은 消防法施行令을 고쳐 單獨住宅 및 3층이하의 共同住宅에 대해서는 建築許可過程에서 消防官署의 同意를 받지않아도 되도록하고 防災處理對象에서 工場·圖書館·市場·百貨店·學校 및 共同住宅을 除外 托록했다.

改正令은 火災危險도가 낮은 小規模消防對象物에 대해 消防施設 設置義務를 緩和하는 한편 注油 取扱所에서 自動車 등의 燃料탱크에 直接注油하는外에 突消費者에게도 販賣할 수 있도록 했다.

## 141개學校 新築키로

文敎部는 初·中等教育環境의 改善을 위해 明年에 國民學校 59개校 2

천187개 教室과 中學校48개校 1천370教室, 高等學校 34개校 1천90개教室을 新築키로 했다.

文敎部의 이같은 計劃에 따라 國民學校는 明年에 70명 以上の 學生을 收容하고 있는 學級이 完全解消되고 中學校는 收容人員 67명 以上の 學級이 解消되며 高校는 모든 學級의 人員이 59명 以下로 緩和된다.

現在 全國의 國民學校중 기명 以上을 收容하고 있는 學級은 2천25개 學級이고 中學校는 66명 以上을 收容중인 學級이 2만 3천368 學級이며 高校는 60명 以上을 收容한 學級이 3만 138學級에 이른다.

文敎部는 이와함께 明年에 100學級 以上の 過大規模 國民學校를 分離시키기 위해 서울, 釜山, 大邱, 仁川등 4大都市에 17개校 674개 教室을 新築키로 했다.

이들 4大都市의 100學級 以上을 收容하고 있는 學校數는 32개校 이다.

文敎部는 이밖에 明年에 20개校(學校當 18學級規模) 375개 教室을 新築, 國民學校 3學年 以上の 2部수업 學級 3分の1을 解消시키기로 했다.

## 庶民주택 資金늘려

住宅銀行은 明年에 庶民住宅資金을 今年보다 64.5%나 늘려 모두 9천260억원을 供給키로 했다.

住宅銀行에 의하면 同行은 庶民들의 내접마련을 積極支援키 위해 庶民住宅資金 供給規模를 今年 5천629억원 보다 3천631억원이 늘어난 9천 260억원으로 策定했다. 庶民住宅資金 가운데 住宅建設을 促進하기 위해 住宅債券, 福券등을 売出한 金額으로 지방 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에 지원하는 國民住宅資金은 을 配定 1천 709억원보다 81.5%가 增加한 4천810억원을 配定하여 住宅景氣活性化를 통한 景氣振을 金融面에서 支援키로 했다.

또 住宅銀行은 中長期賦金등 各種預金을 주로 個人이 貸出받는 民營住宅資金은 今年 3천920억원 보다 13.5%가 늘어난 4천 450억원을 策定했다.



## 푸른도시기꾸기 事業확충

大邱시는 市民들에게 보다 많은 休息처를 提供하기 위해 市費 59억 7천만원, 民資 41억 3천만원 등 모두 111억원을 投資할 푸른도시기꾸기 5개년 事業을 위한 綠化條例를 制定했다.

市에 의하면 지금까지 建設條例에 明示된 建物の 一定面積에 대한 義務植樹條項을 綠化條例에 吸收 시키고 事業 첫해인 明年度에 中東橋 ~ 黃金洞間 16.6km의 區間 등 12개 區間 6천 300그루(予算 2억 1천만원) 등 市内 232km 중 街路樹가 없는 114km의 道路邊에 常綠樹 3만 6천그루(予算 14억 7천만원)를 심는다는 것. 또 市는 앞으로 5년 동안 京釜線(32km) 大邱線(17km) 등 鐵路邊에 樹齡 10년 以上된 樹木 5천 500여 그루를 심고 泛魚로터리 ~ 어린이會館 入口까지의 切開地 2km에 5천그루, 民家에 18만그루, 아파트지역에 20만 2천그루, 市内 2천 116개, 工場에 71만그루, 107개 學校에 7만 5천 그루의 나무를 각각 심을 計劃이다.

## 명년 住宅 5만戶 建立계획

住宅公社는 明年중에 5만戶의 住宅을 지을 計劃이다.

住公에 의하면 이같은 住宅建設規模는 明年중의 全体 公共住宅 建設計劃 10만戶의 50%에 該當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所要되는 宅地는 125만 坪에 達하며 事業費는 6천 850억원이 投入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한편 住公은 83년엔 6만戶, 84년엔 6만 5천戶 85년엔 7만戶 86년엔 7만 5천戶의 住宅을 建設, 5차 5개년 計劃期間중에 모두 32만戶의 집을 지을 計劃이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이같은 住宅建設 計劃量은 公共部門 住宅建設計劃量 57만戶의 56%에 이르는 것이다.

## 서울市 九老, 京仁사업計劃변경

서울市는 九老, 京仁地區 土地區劃 整理事業計劃을 變更, 九老地區의 永

登浦市 新吉동 360一帯 1만 2천 143 坪과 京仁地區의 江西구 新月동 398一帯 21만 2천坪 등 모두 2개地區 22만 4천 143坪을 事業地區에서 除外시키기로 했다.

또 九老地區의 施設計劃중 113블록에 計劃했던 國民學校를 84블록으로, 140블록에 計劃했던 市場用地를 105블록으로 各各 變更시켰다.

이에 따라 事業面積이 九老地區는 当初 45만 8천 299坪에서 44만 6천 156坪 京仁地區는 当初 240만 4천坪에서 219만 2천坪으로 各各 줄어 總 事業面積이 263만 8천 156坪으로 縮小됐다.

九老구 九老동, 永登浦구 道林, 大林, 新吉동 一帯에 걸쳐있는 九老地區는 지난 77년 1월 事業地區로 指定된 後 79년부터 事業에 着手, 오는 83년 末까지 事業을 完了할 計劃인데 이 年에 事業地區에서 除外된 곳은 既存 住宅들이 密集한 데다 道路網 등 公共施設이 比較的 잘 돼 있어 事業地區에서 빼달라는 住民들의 民願에 따른 것이다.

또 京仁地區는 京畿도와 접해 形成되는 宅地開發을 止揚하는 代身 農耕地와 高速道路邊 景觀을 保存키 위해 따른 것이다.

서울市는 이와 함께 京仁地區內 新亭동 一帯 160만 5천坪에 대한 事業確定処分을 올해 안에 實施, 換地の增減坪 內容을 個人別로 通知해 줄 計劃이다. 九老地區는 對象面積의 55.8%를 택지化하고 57%의 減步率을 適用 받게 된다.

## 서울都心 일부 煉炭공장 移轉

정부는 오늘 83년 완공예정인 부곡 연탄團地의 무연탄기지에 서울 都心の 일부 연탄공장과 수원 및 안양의 연탄공장을 移會에 提出한 富谷煉炭團地造成計劃에 의하면 都心の 炭가루 公害제거와 輸送의 拠点化 등을 위해 서울市內 6개 연탄공장 和 수원 안양의 3개 연탄공장을 移轉 서울의 공급량중 35.4%를 그리고 수원, 안양의 공급량 100%를 이 基地에서 공급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9년 부곡 연탄단지 조성계획을 마련 오는 85년 까지 總規模 석탄 1천 坪의 석탄기지를 경기도 始興군 儀旺면 부곡리에 예산 637억 4천만원을 투입 건설키로 했는데 300만 坪規模의 無煉炭 基地를 오는 8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17개 연탄공장들이 대부분 영등포, 淸涼里 등 駅附近에 散在, 公害의 主된 要因으로 指適되어 있다.

## 서울市內 50개도로변 재개발

서울市는 都心不良住宅 再開發對象地 420地區(56만坪) 가운데 4大門안 幹線道路邊과 麻浦路邊 등 50개地區를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88年前까지 再開發하기로 하고 一般建設業者들의 事業參與을 誘導하는 등 都心再開發 事業活性化 方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市는 또 再開發事業 促進을 위해 該當地區內 土地의 3분의 2 以上을 所有한 事業施行者 또는 開發組合에 土地收用權을 주고 再開發 事業計劃과 土地利用 및 建築計劃 決定權을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市·道知事로 委任된 都市開發關係法令의 改正을 推進中이다.

서울市의 都心再開發事業現況을 보면 總 420地區가운데 19개地區(2만 7천坪)가 이미 完了됐고 15개地區(2만 6천 500坪)가 現在 工事中에 있으며 4개地區(7천 765坪)는 올해 事業認可가 나가 곧 着工段階에 있다.

서울市는 이들 地域外에도 4大門안과 麻浦路邊 등 50개地區를 88年前까지 再開發한다는 方針에 따라 우선 淸進1地區(事業計劃을 接受해 審議中에 있다.)

## 高地帶 재개발事業추진

群山市는 市內都心街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開福·松昌동 高地帶 再開發事業을 推進, 不良家屋을 整備하여 都市環境을 美化할 計劃이다.

全州圈開發事業(IBRD 借款事業)으로 總事業費 87억 2천 400만원(內資 62억 8천 700만원·外資 24억 3천 700만원)

을 들어 83년부터 85년까지推進될 이事業은 표고25m에 있는 2만4천坪內의 不良住宅650棟을 撤去하고 下水道 道路등을 開設, 아파트10棟(300世帶分)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地域은 解放後부터 小規模住宅이 密集되 住居環境이 좋지 않은데다 火災發生때 消防車가 들어갈 道路 조차 없는 形便이며 土地利用이 非合理的이어서 市街地景觀을 크게 해쳐왔다.

이 地域에는 國公有地 8천 200坪(33%)과 私理的 1만 6천600坪(67%)에 總家屋數는, 850棟중 650棟은 不良住宅, 200棟은 良好한 住宅으로 集計되고있다.

### 高德지구 新市街地개발

江東구 高德地區99만 6천坪이 人口 9만명을 收容하는 新市街地로 開發된다. 江東구 高德동, 明逸동, 上一동, 下一동, 一帶99만 6천坪(329만 2천960m<sup>2</sup>)의 開發을 맡고있는 韓國土地開發公社는 高德地區開發事業에 총768억 1천500만원의 事業費를 投入 오는82년에 造成事業을 着手하여 84年末까지 마무리 지을 方針이다.

上開公은 高德地區全體開發面積 가운데 99만 6천坪 가운데 60만坪을 宅地로 造成하고, 宅地중 30%는 低密度地域으로 50%는 中密度地域으로, 20%는 高密度地域으로 各各 指定, 低密度地域엔 單獨 住宅을, 中密度地域엔 聯立住宅및 5층規模의 아파트를, 高密度地域엔 12층 規模의 高層 아파트 團地를 建設키로 方針을 確定했다.

現在 林野로 돼있는 高德동467번지~明逸동211間 幅35m 길이 1천750m의 道路와 明逸동15番地~上一동 190間 幅25m 길이 2천350m의 道路를 各各 開設 하는 것을 비롯 幅10~20m 規模의 道路25개가 甞린다.

또 收容人口 9만各을 計劃하고있는 이곳에 初·中·高校의 新築을 위해 15개地域 6만餘坪(24만 7천 500m<sup>2</sup>)을 學校用地로 設定하는 한편 地域特性을 살린 商業地區로 全體開發

面積의5.1%에 該當하는 16만 5천 36m<sup>2</sup>에 市場등 流通團地를 造成하기로 했다.

### 住宅관련借款도입

政府는 明年중에 1억9천만弗의 住宅關聯借款은 △IBRD(世界銀行)로부터의 土地開發借款 3천만弗 △ADB(아시아開發銀行)로부터의 住宅建設借款 6천만弗등이다.

이 借款資金는 專用 面積基準 15坪以下の 庶民層用 國民住宅建設과 이를 쓰기 위해 宅地開發事業에 쓰일 예정이다. 이 借款導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導入先들과 非公式的인 合意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 換地면적 算定기준 변경

서울市는 不良住宅開發地區에서의 道路邊에 接한 接道垜地에 對한 換地面積算定基準을 變更, 12m以下 道路邊에 接한 垜地에 對해서도 當初換地面積에 一定한 面積을 加算 換地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幅12m以上道路邊에 接한 垜地에 對해서만 面積加算 方式을 適用해 왔다.

이에 따라 再開發地區內 道路邊에 接한 垜地는 位置와 여건을 甚案, 모두 「道路에 接한 길이×路幅의 25~50」만큼의 面積이 當初換地面積보다 늘어나게 된다.

幅10m 道路邊에 10m의 길이로 接해 있는 垜地의 경우 換地面積보다 7.5~15坪을 더 換地받을 수 있게 된다. 市는 이같은 接道垜地에 대한 換地面積算方式을 不良住宅再開發施行規則에 못박기로 했다.

面積加算方式은 道路邊에 接한 垜地와 一般垜地와는 土地差異가 나는 데도 똑같은 減步率을 適用하는 것이 不合理하기 때문에 그 價値差異 만큼을 面積으로 換算, 接道垜地에 더 해주는 것이다.

### 再開發사업 期間고시

서울市는 都市再開發法 제13條제1項의 規定에 대한再開發事業 武橋區域 및 清進區域에 대한 再開發事業施

行認可申請期間을 11월 5일부터 82년 12월 31일까지로 告示했다.

武橋區域의 再開發事業施行面積은 4만900m<sup>2</sup> 清進區域은 7만 7천780m<sup>2</sup>에 各各 이르고 있다.

### 건축허가기간 10일 이내로

서울시에 따르면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과 연건평 3천평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5층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할 때 본청의 급수과등 14개부서의협의를 거치던 것을 3~4개부서로 축소하는 한편 구청에서 취급하는 5층이하의 건축물도 종전11개부서의 협의제를 2~3개 부서에서 모두 처리토록 대폭 간소화 종전 30일 이상이 소요되던 건축허가를 10일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사중 별도허가를 받아야 하던 8가지의 허가사항 가운데 가설물 설치 도로점용, 정화조 설치 허가등 3개사항은 건축허가발때 함께 처리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준공검사 때 첨부되는 서류중 시멘트 제품 사용성과표, 정화조 준공검사, 구내통신선로 준공검사, 군사시설 준공검사, 등 4개사항을 없애고 상수도 소방시설 하수도 준공검사 환경오염도 검사등 4개검사 필증만 첨부토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법령개정을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함께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명목으로 공사장을 출입함으로 빚어지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공사장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건축사가 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 주택가 여관신축 불허

서울시는 명량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의 여관신축을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가에

도 여관신축을 허용해 왔다. 그후 강남지역등 신개발주택가에 여관이 대량 들어서 도시 미관은 물론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12m 이상의 대로변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는 여관신축을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로 규제해 왔으나 건축법에서는 주택가 여관신축을 제한없이 허용 행정지도의 한계성을 드러내 왔다.

올들어 강남구 삼성동, 판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는 신축건물 대부분이 여관건물로 주택가 한가운데 까지 파고드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지도만 시행되던 주택가 여관신축규제를 전설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의 건축법에 이같은 규제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당국자들이 주택가 여관신축규제를 위한 건축법개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관신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업지구라 해도 사실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등은 행정지도로서 계속 규제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5 개 재개발지역 告示

서울시는 홍은 1동 홍제 3, 4동 천호 1동 옥수 4구역등 5개 불량주택 밀집지역 9만 8천여명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다수가 재개발을 희망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서울시는 각구역마다 주민 2/3이상이 사업시행을 동의하고 건축기금을 확보하는대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진입로상·하수도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홍은 1구역(서대문구 홍은동 5번지 일대) : 9천 8백여평 가운데 6천여평이 택지로 조성되고 홍은동 5~24 및 산 1의 482일대 8백여평이 공원이 들어선다. 산 392일대 1천 3백여평이 하천이 정비되고 폭 6m의 지역도로 3개 노선 537m가 뚫린다.

△홍제 3구역(서대문구 홍제동 132

번지 일대) : 대상면적이 2만 3천 5백여평중 1만 6천여평은 택지로 조성되고 홍제동 12번지 일대 4천 3백여평은 자연공원으로 꾸며진다. 이 밖에 어린이공원 2개 쓰레기 적환장 1개소와 폭 6~8m의 지역도로 6개가 개설된다.

△홍제 4구역(서대문구 홍제동 105번지) : 3만 2천여평중 1만 8천여평이 택지로 홍제동 산 1 일대 6천 3백여평은 자연공원으로 조성된다. 2백여평 규모 어린이공원 2개소 1백여평의 쓰레기적환장을 확보하고 폭 6~8m 지역도로 1천 5백여m가 뚫린다.

△천호제 1구역(강동구 천호동 산 6~1번지 일대) : 9천 4백여평중 6천여평은 택지로 조성하고 4~6m 도로 9개 노선을 신설 또 어린이공원 노인정등 공공시설용지도 확보.

△옥수 4구역(옥수동 산 120번지 일대) : 2만 2천여평중 1만 4천여평이 택지로 조성되고 산 5의 99일대 4천 8백여평은 자연공원이 된다. 또 산 5의 120일대 등 고지대는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公共住宅10万户建設지원

建設部가 세운 住宅建設部門의 予算은 10만戶의 國民住宅建設을 支援하기 위한것.

올 10월 現在 4만 8천戶를 建設計劃比 60% 実績을 올린 公共住宅을 10만戶까지 늘리기 위해 390억원의 建設基金을 出損하게 된다.

이 基金으로 △住宅公社에서 5만戶 △地方自治團體가 3만 5천戶 △農漁村住宅 3천戶 國家機關등에서 1만 2천戶를 建設하도록 했다.

## 82년 政府勞賃單價 확정

### 건설부문 평균 8.5%인상

政府는 建設工事に 適用할 82년도 政府勞賃單價를 平均 8.5%인상, 오는 1월 1일부터 施行하도록 했다.

8일 財務部가 確定한 82년도 政府勞賃單價基準에 의하면 建設工事部門의 138개 勞賃單價를 現行 81년도 下

半期 政府勞賃單價對比 平均 8.5%인상 調整했는데 兎髻木工(터널)이 現在 6천860원에서 8천230원으로 20%인상, 가장 높게 策定됐으며 양생工이 5천820원에서 5천830원으로 0.2%올라 最低인상幅을 記錄했다.

올 下半期 市中勞賃實態調査를 토대로 策定된 이 勞賃單價는 建設工事中에서 가장 많이 活用되는 普通人의 勞賃이 4천820원에서 5.2%올라 5천70원이 됐으며 竝장은 7천850원에서 10.3%인상된 8천660원, 建築木工은 8천110원에서 8천950원으로 11%가 올랐다.

또한 鉄筋工이 7천330원에서 5%오른 8천110원, 組積工이 7천770원에서 6.7%로 8천290원, 美裝工이 8천320원에서 6.3%로 8천840원, 타일工은 6.9%가 인상돼 9천80원, 塗裝工은 9.9%올라 8천300원으로 各各 決定됐는데 施工測量士와 개와工 등 15개 職種은 現行單價에서 引上調整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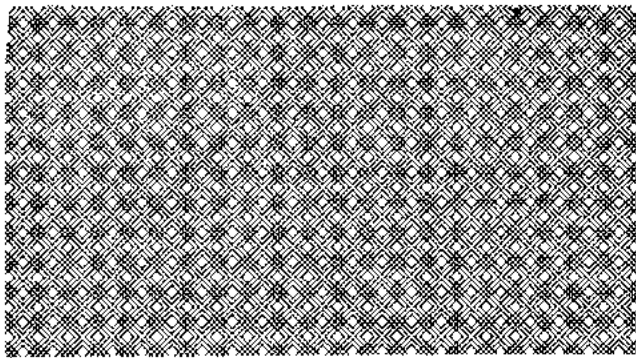
이밖에 財務部는 島嶼地域의 政府勞賃單價도 平均 10.2%인상했는데 23개 職種중 普通人勞賃이 現行 5천100원에서 20%올라 6천120원으로 가장 많이 인상됐으며 鋪裝工과 美裝工도 各各 1만210원과 1만760원으로 策定, 19.9%의 引上率을 보였다.

그러나 組積工과 防水工, 配管工등 6개 職種의 勞賃은 올해 單價와 變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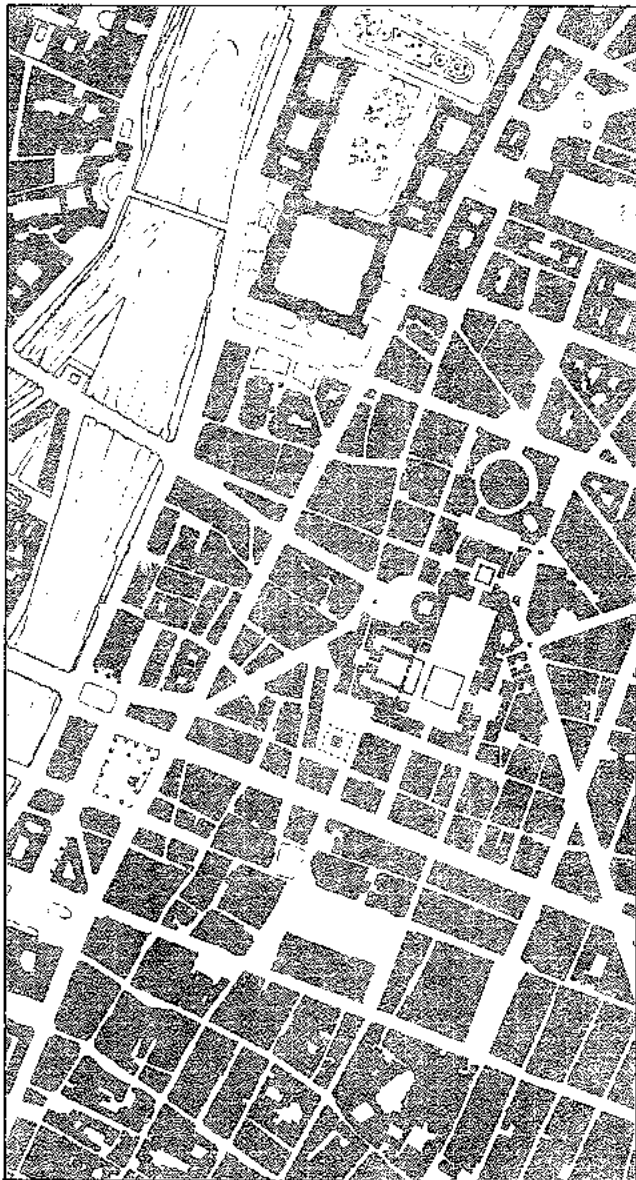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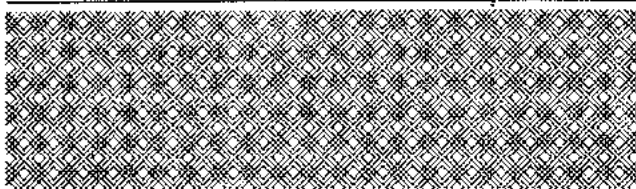
工事原價計算에 의한 予定價格作成시 適用할 勞務費의 基準金額을 設定키위한 이 勞賃單價는 그러나 勤勞基準法 제43조 및 同法施行令 제26조에 規定된 作業에 従事하는 職種은 1일 6時間을 基準으로 했다.

또 契約의 性質上 勤勞基準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諸手当 또는 退職金을 支給치 아니하고는 그 契約目的이 達成될 수 없다고 判斷될 때 이 勞賃單價를 算出根拠로한 諸手当이나 退職積立金을 別途 計上할 수 있게했다.

財務部가 確定한 「82년도 政府勞賃單價」와 現行勞賃單價는 자료편에 있음.



## 建築行政相談



### □ 건축법에 관한 사항

- 문 1 : 도로보다 대지가 낮은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건축법 제 9 조에는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나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용도의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 문 2 : 지적도상 2m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저비 적용에서는 합산할 수 있는지요?  
 답 : 후퇴된 건축선부분은 대지면적 산출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문 3 : 현행 준공신고서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란이 있는데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각각 날인하여야 하는지요?  
 답 : 건축물의 준공은 확인행위이고 건축법 제 7 조제 1 항에 건축공사의 착수 완료된 때에는 당해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가 시공자를 지도한다는 취지에서 감리자가 확인하는 경우 감리자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에 관한 사항

- 문 1 :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의 완화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도로조건은?  
 답 : 선면 도로폭이 12m 이상이고 대지와 전면도로가 접하는 길이가 대지 둘레의  $\frac{1}{6}$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문 2 : 지하층 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은?  
 답 :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전 전용되는 부분 및 창고는 지하층 면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문 3 : 대지면적이 1,400평인 경우 조경면적은 얼마를 확보하여야 합니까?  
 답 : 건축물 연면적이 2,000m<sup>2</sup>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15%, 1,000~2,000m<sup>2</sup> 미만이면 10%, 1,000m<sup>2</sup> 미만이면 5%의 비율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문 4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을 대상, 외장 변경등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 대수선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장 및 외장변경은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나 미관지구내 외장변경은 건축심의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문 5 : 아파트 건축이 도로에서 피어야 할 거리는?  
 답 : 아파트 건축시 도로에서 피어야 할 거리는  
 ① 높이에 의한 사선제한-높이의 1/2  
 ② 전북방향의 1/2 이격  
 ③ 건축선 도로에서 대지안의 공저 3.0m 이상, 처마에서는 2.0m 이상  
 ④ 12m 이상 도로에서는 도로에서 6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문 6 : 준공검지연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공고하는 구역이외에서는 가능합니다.
- 문 7 : 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 400m<sup>2</sup>와 잡화점 200m<sup>2</sup> 이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요?  
 답 : 개정된 법 시행령부표 제13호의 규정에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 문 8 : 풍치지구내의 건물과 대저경세선과 피어야 할 거리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답 : 풍치지구내 대지안에 풍지조향을 보면 건축물에서 띄우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각 부분 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바닥면적에 삽입되는 부분의 외벽선으로부터 산정합니다.

문9 : 반자놀이 산정에 있어 반자가 없을때는 슬랩바닥 또는 보밑등 어느 곳에서 산정합니까?

답 : 별도 반자가 없을때 보밑 또는 상층 슬랩 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가 있을 경우 보밑까지, 보가 없을 경우 슬랩밑까지 산정합니다.

문10 :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대지면적과 관계없이 지역내 용도에 적합하다면 가능합니다.

문11 : 79년 4월에 건축허가불 득한 후 본인사정으로 공사를 착공지 못하고 저공 착공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착공할 수 있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는 시장, 군수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지의 여부를 관할 허가청에 확인하여 보십시오.

문12 :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묘지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답 : 법 시행령 부칙 별표 4에 의한 시설, 즉 격리병원, 폐차장 동물관련시설등이며 묘지에 따른 관련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묘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13 : 주거지역내 제4종 미관지구내 주택은 가능하여 옥상의 조경설치규정은 어떠한지요?

답 : 제4종 미관지구 및 주거지역내 주택은 가능하여 옥상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2항에 의거 조경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만 삽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 □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

문1 : 20m 이상 도로로 미관지구에서 도로 양측 경계선에서 띄워야할 거리는?

답 : 서울시 건축조례 대지안의 풍지규정에 의해 후면 대지 경계에서 1.5m 이상, 건축선 도로경계선에서 3.0m를 띄워야 합니다.

문2 : 미관지구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관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 : 단독주택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는 미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별도 조례, 방침상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미관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3 : 주거지역안의 풍치지구내 대지 700평에 현재 300평의 건물 1층면적으로 120평이 있는데 증축이 가능한지요?

답 : 주거지역내 풍치지구에서 높이 12m 이하, 3층이하로 건폐율 30%이하, 용적율 90%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4 : 풍치지구내 건물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 풍치지구내 풍지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은 건축 선으로부터 2.5m, 양측면경계로부터 1.5m, 후면 경계로부터 1층일 경우 1.5m, 2층이상은 2.0m 이상 띄워야 합니다.

문5 : '81. 6. 27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미관지구내에서 높이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경우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4종 미관지구내 기존 4층병원위에 교회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요?

답 : 서울시 건축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작품상 부득이한 경우로 특별히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바 귀하의 경우 증축이나 신축의 경우에도 4층으로 구조실등 건축물이 불균형이 될 경우 불가합니다.

## □ 주차장법에 관한 사항

문1 : 지하2, 3개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 3개 층의 합계가 1,000m<sup>2</sup>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하는지요?

답 : 1개소당 바닥면적 1,000m<sup>2</sup>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문2 : 주차장 정비지구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3 : 80년 허가당시 주차대수를 400m<sup>2</sup>당 1대로 산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지하실 면적이 줄어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현행 150m<sup>2</sup>당 1대를 적용할시는 주차대수가 증가되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 지하실면적이 줄어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허가 당시 주차대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문4 : 건축물을 건축시 인근필지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조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건축물을 건축할시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문5 : 노외 주차장의 출구설치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 각호에 계기하는 부분의 도로와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교량, 터널 또는 폭 6m 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와 어린이의 전용시설등의 출구로부터 20m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규정에 관한 사항

문1 : 병용주택으로 660m<sup>2</sup> 미만 건축물로 주거용이 연면적의 1/2 이상이면 합동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하는지요?

답 : 병용주택으로 주거용이 그 연면적의 1/2 이상이면 합동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문2 : 2필지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시공자 선정대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 2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복수건축물은 150평 일반건축물은 200평이상이면 전설업법에 규정된 (토목건축)공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문3 : 2면도로인 경우 통상 전면도로는 어느쪽을 기준합니까?

답 : 주로 주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 建築積算資料

(시리즈完)

曹 浚 鉉  
(建設部技術指導課長)

## 1-3-15 假設을타리

1 m<sup>2</sup> 당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數 量            | 單 價    | 金 額 | 備 考        |
|------------------------------|-----|-----|-------|----------------|--------|-----|------------|
| 관 장 울<br>고 1.8m<br>(3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135 |     | 0.045×0.3  |
|                              | 못   |     |       | kg             | 0.15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2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56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094  |     |            |
| 관 장 울<br>고 1.8m<br>(4~6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202 |     | 0.045×0.45 |
|                              | 못   |     |       | kg             | 0.15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2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56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094  |     |            |
| 관 장 울<br>고 1.8m<br>(7~8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27  |     | 0.045×0.6  |
|                              | 못   |     |       | kg             | 0.15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2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56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094  |     |            |
| 관 장 울<br>고 1.8m<br>(9~10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337 |     | 0.045×0.75 |
|                              | 못   |     |       | kg             | 0.15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2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56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094  |     |            |
| 관 장 울<br>고 1.8m<br>(11~12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405 |     | 0.045×0.9  |
|                              | 못   |     |       | kg             | 0.15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2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56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094  |     |            |
| 관 장 울<br>고 2.7m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219 |     | 0.083×0.3  |
|                              | 못   |     |       | kg             | 0.22   |     |            |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單 價            | 金 額            | 金 額    | 備 考        |
|------------------------------|-------|-----|-------|----------------|----------------|--------|------------|
| (3개월)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8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72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12           |        |            |
|                              | 계     |     |       | 0.             |                |        |            |
|                              | 관 장 울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373 | 0.083×0.45 |
| 고 2.7m<br>(4~6개월)            | 못     |     |       | kg             | 0.22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8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72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12           |        |            |
|                              | 계     |     |       |                |                |        |            |
| 관 장 울<br>고 2.7m<br>(7~8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498         |        | 0.083×0.6  |
|                              | 못     |     |       | kg             | 0.22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8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72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12           |        |            |
| 관 장 울<br>고 2.7m<br>(9~10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522         |        | 0.083×0.75 |
|                              | 못     |     |       | kg             | 0.22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8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72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12           |        |            |
| 관 장 울<br>고 2.7m<br>(11~12개월)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747         |        | 0.083×0.9  |
|                              | 못     |     |       | kg             | 0.22           |        |            |
|                              | 코     | 울   | 탈     | ℓ              | 0.06           |        |            |
|                              | 목     | 공   | (건 축) | 인              | 0.18           |        |            |
|                              | 인     | 부   | (가 설) | 인              | 0.072          |        |            |
|                              | 인     | 부   | (철 거) | 인              | 0.12           |        |            |
| 관 장 울<br>고 2.7m              | 목     | 재   | 목 송   | m <sup>3</sup> | 0.0747         |        | 0.083×0.9  |
|                              | 못     |     |       | kg             | 0.22           |        |            |

1. 외부막 대패질할 때는 별도 가산한다.
2. 배인트칠할 경우의 재료 및 품은 도장공사원에 의거 별도 가산한다.
3. 출입구의 문을 설치한 경우 재료 및 품은 별도 가산한다.
4. 가설 을타리는 공사 현장의 관리 보안상 필요로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불필요할때는 설치하지 않음에도 있으며 재료, 구조, 미관 등에 대하여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을때는 그에 준한다.

## 1-3-16 단관 비계대기(파이프비계)

비계면적 1 m<sup>2</sup> 당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數 量   | 單 價    | 金 額    | 備 考       |
|--------|-----|-----|------------|-------|--------|--------|-----------|
| 3 個 月  | 강   | 관   | 48.6×2.4mm | m     | 0.2394 |        | 3.99×0.06 |
|        | 이   | 음   | 철 물        | 개     | 0.06   |        | 0.5×0.12  |
|        | 조   | 임   | 철 물        | 직교·가설 | 개      | 0.2496 | 2.08×0.12 |
|        | 발   | 침   | 철 물        | 앙 카 용 | 개      | 0.0036 | 0.04×0.09 |
|        | 철   | 물   | 앙 카 용      | 개     | 0.04   |        |           |
|        | 비   | 계   | 공 (조립·해체)  | 인     | 0.151  |        | A         |
|        | 기   | 구   | 손 로        | 식     | 1      | A×5%   |           |
|        | 계   |     |            |       |        |        |           |
| 6 個 月  | 강   | 관   | 48.6×2.4mm | m     | 0.399  |        | 3.99×0.1  |
|        | 이   | 음   | 철 물        | 개     | 0.1    |        | 0.5×0.2   |
|        | 조   | 임   | 철 물        | 직교·가설 | 개      | 0.416  | 2.08×0.2  |
|        | 발   | 침   | 철 물        | 앙 카 용 | 개      | 0.006  | 0.04×0.15 |
|        | 철   | 물   | 앙 카 용      | 개     | 0.04   |        |           |
|        | 비   | 계   | 공 (조립·해체)  | 인     | 0.151  |        | A         |
|        | 기   | 구   | 손 로        | 식     | 1      | A×5%   |           |
|        | 계   |     |            |       |        |        |           |
| 12 個 月 | 강   | 관   | 48.6×2.4mm | m     | 0.7581 |        | 3.99×0.19 |
|        | 이   | 음   | 철 물        | 개     | 0.19   |        | 0.5×0.38  |
|        | 조   | 임   | 철 물        | 직교·가설 | 개      | 0.7904 | 2.08×0.38 |
|        | 발   | 침   | 철 물        | 앙 카 용 | 개      | 0.0116 | 0.04×0.29 |
|        | 철   | 물   | 앙 카 용      | 개     | 0.04   |        |           |
|        | 비   | 계   | 공 (조립·해체)  | 인     | 0.151  |        | A         |
|        | 기   | 구   | 손 로        | 식     | 1      | A×5%   |           |
|        | 계   |     |            |       |        |        |           |

|       |      |            |   |        |      |           |
|-------|------|------------|---|--------|------|-----------|
| 18 個月 | 강관   | φ8.6×2.4mm | m | 1.1172 |      | 3.99×0.28 |
|       | 이음철물 |            | 개 | 0.28   |      | 0.5×0.56  |
|       | 조립철물 | 직교·가세      | 개 | 1.1648 |      | 2.08×0.56 |
|       | 받침철물 |            | 개 | 0.0168 |      | 0.04×0.42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151  |      | A         |
|       | 기구손로 |            | 식 | 1      | A×5% |           |
| 24 個月 | 강관   | φ8.6×2.4mm | m | 1.4753 |      | 3.99×0.37 |
|       | 이음철물 |            | 개 | 0.37   |      | 0.5×0.74  |
|       | 조립철물 | 직교·가세      | 개 | 1.5392 |      | 2.08×0.74 |
|       | 받침철물 |            | 개 | 0.0224 |      | 0.04×0.56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151  |      | A         |
|       | 기구손로 |            | 식 | 1      | A×5% |           |

1. 재료 할증율, 소운한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2.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 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4. 건물고 30m 이상에서 매 3.5m 증가마다 폭을 10%씩 비례 증가한다.
5. 본표는 단판복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단판비계 매가에서는 실 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본표 손율을 적용한다.
6. 단판 복식비계매기면적 30m×30m(900m<sup>2</sup>) 일때의 기준이다.
7. 본표는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8. 손율은 운반 보관에 대한 손율이 계상된 것이다.

### 1-3-17 강관을 비계매기

비계면적 1m<sup>2</sup>당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數 量    | 單 價 | 金額        | 備 考 |
|-------|-----------|----------|----|--------|-----|-----------|-----|
| 3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0216 |     | 0.36×0.06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0204 |     | 0.34×0.06 |     |
|       | 가 세       | 1.2×1.9m | 개  | 0.0408 |     | 0.68×0.06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036 |     | 0.04×0.09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0816 |     | 0.68×0.12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 6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035  |     | 0.36×0.1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031  |     | 0.34×0.1  |     |
|       | 가 세       | 1.2×1.9m | 개  | 0.068  |     | 0.68×0.1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06  |     | 0.04×0.15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135  |     | 0.68×0.2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 12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0684 |     | 0.36×0.19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0646 |     | 0.34×0.19 |     |
|       | 가 세       | 1.2×1.9m | 개  | 0.1292 |     | 0.68×0.19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116 |     | 0.04×0.29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2584 |     | 0.68×0.38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 18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1008 |     | 0.36×0.28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0952 |     | 0.34×0.28 |     |
|       | 가 세       | 1.2×1.9m | 개  | 0.1904 |     | 0.68×0.28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168 |     | 0.04×0.42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3808 |     | 0.68×0.56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       |           |          |   |        |  |           |  |
|-------|-----------|----------|---|--------|--|-----------|--|
| 24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1332 |  | 0.36×0.37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1258 |  | 0.34×0.37 |  |
|       | 가 세       | 1.2×1.9m | 개 | 0.2516 |  | 0.68×0.37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224 |  | 0.04×0.56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5032 |  | 0.68×0.74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 24 個月 | 비계기본틀(기둥) | 1.2×1.9m | 개 | 0.1332 |  | 0.36×0.37 |  |
|       | 비계강선틀     | 1.0×1.9m | 개 | 0.1258 |  | 0.34×0.37 |  |
|       | 가 세       | 1.2×1.9m | 개 | 0.2516 |  | 0.68×0.37 |  |
|       | 조절받침철물    |          | 개 | 0.0224 |  | 0.04×0.56 |  |
|       | 이음철물      | 삼입결이     | 개 | 0.5032 |  | 0.68×0.74 |  |
|       | 철물        | 알카용      | 개 | 0.04   |  |           |  |
|       |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  | A         |  |

1. 재료 할증율, 소운한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2.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높이 45m 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증량작업을 할때의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4. 건물고 30m 이상에서 매 3.5m 증가마다 폭을 10%씩 비례 증가한다.
5. 강관을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 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본표 손율을 적용한다.
6. 강관을 비계매기면적 30m×30m(900m<sup>2</sup>) 일때의 기준이다.
7. 본표는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8. 본표의 손율은 운반보관에 대한 손율이 계상된 것이다.

### 1-3-18 철골조용 비계(현장 리벳팅용)

비계발판면적 1m<sup>2</sup>당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數 量    | 單 價 | 金額         | 備 考 |
|------|-----|---------------|----|--------|-----|------------|-----|
| 3 個月 | 강관  | φ=7.2mm       | 개  | 0.07   |     | 0.28×0.25  |     |
|      | 발판  | 육층 36×250×300 | 개  | 0.243  |     | 0.972×0.25 |     |
|      | 철선  | φ 16          | kg | 0.8    |     |            |     |
|      | 철선  | 3.3mm         | kg | 0.1    |     |            |     |
|      | 비계공 |               | 인  | 0.06   |     |            |     |
|      | 비계  |               |    |        |     |            |     |
| 6 個月 | 강관  | φ=7.2mm       | 개  | 0.098  |     | 0.28×0.35  |     |
|      | 발판  | 육층 36×250×300 | 개  | 0.3402 |     | 0.972×0.35 |     |
|      | 철선  | φ 16          | kg | 0.8    |     |            |     |
|      | 철선  | 3.3mm         | kg | 0.1    |     |            |     |
|      | 비계공 |               | 인  | 0.06   |     |            |     |
|      | 비계  |               |    |        |     |            |     |
| 1 개월 | 강관  | φ=7.2mm       | 개  | 0.11   |     | 0.28×0.5   |     |
|      | 발판  | 육층 36×250×300 | 개  | 0.485  |     | 0.972×0.5  |     |
|      | 철선  | φ 16          | kg | 0.8    |     |            |     |
|      | 철선  | 3.3mm         | kg | 0.1    |     |            |     |
|      | 비계공 |               | 인  | 0.06   |     |            |     |
|      | 비계  |               |    |        |     |            |     |
|      | 비계  |               |    |        |     |            |     |

1. 가설 및 철거물이 포함되어 있다.
2. 발판의 재수율이 계산예  
 $0.036 \times 0.25 \times 3.6 \times 300 \text{ 개} \times 0.1 \text{ 매} = 0.972 \text{ 개}$

### 1-3-19 건축물 보양

보양면적 1m<sup>2</sup>당

| 區 分  | 品 名     | 規 格   | 單位             | 數 量    | 單 價 | 金額 | 備 考 |
|------|---------|-------|----------------|--------|-----|----|-----|
| 콘크리트 | 가 마 니   | (신 물) | 매              | 0.12   |     |    |     |
|      | 인 부     |       | 인              | 0.0125 |     |    |     |
|      | 비       |       |                |        |     |    |     |
| 석재면  | 화 드 롱 지 |       | m <sup>2</sup> | 1.2    |     |    |     |
|      | 물       |       | kg             | 0.06   |     |    |     |
|      | 인 부     |       | 인              | 0.01   |     |    |     |
| 선재면  | 돌       |       | φ              | 30     |     |    |     |
|      | 인 부     |       | 인              | 0.002  |     |    |     |
|      | 비       |       |                |        |     |    |     |

|         |     |   |   |       |    |       |      |
|---------|-----|---|---|-------|----|-------|------|
| 타 일 조 면 | 종   | 방 | ℓ | 30    |    |       |      |
|         | 인   | 부 | 인 | 0.002 |    |       |      |
|         | 계   |   |   |       |    |       |      |
| 타 일 면   | 종   | 방 | ℓ | 30    |    |       |      |
|         | 인   | 부 | 인 | 0.002 |    |       |      |
|         | 계   |   |   |       |    |       |      |
| 기 타 부 분 | 목   | 제 | 목 | 종     | m' | 0.007 |      |
|         | 문   |   |   |       | kg | 0.02  |      |
|         | 건 추 |   |   |       | 부  | 인     | 0.03 |
|         | 세   |   |   |       |    |       |      |

1. 석재면 모양에 있어서 벽면은 정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모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모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절거하는것까지를 말한다.
3. 본표 중 콘크리트 모양의 인부품에는 가마니 1매당 산수품(인부) 0.004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마니는 석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4. 양생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품을 계상한 경우 본 표의 콘크리트 모양품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 1-3-20 보호막 설치

| 1 m <sup>2</sup> 당 |     |    |                |      |    |    |          |
|--------------------|-----|----|----------------|------|----|----|----------|
| 區分                 | 品名  | 規格 | 單位             | 數量   | 單位 | 金額 | 備考       |
| 보호막 설치             | 보호막 |    | m <sup>2</sup> | 0.63 |    |    | 1.05×0.6 |
|                    | 바닥재 |    | 인              | 0.02 |    |    |          |

1.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2. 본 품에는 가설 및 절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3. 보호막이란 기준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비파등을 목적으로 시공 건물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

### 1-3-21 건축물 현장정리

| 연정정 1 m <sup>2</sup> 당 |      |    |    |      |    |    |    |
|------------------------|------|----|----|------|----|----|----|
| 區分                     | 品名   | 規格 | 單位 | 數量   | 單位 | 金額 | 備考 |
| 현장정리                   | 현장정리 |    | 인  | 0.15 |    |    |    |
|                        | 현장정리 |    | 인  | 0.1  |    |    |    |

1. 본품에는 공사중 매일 육내의 청소,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땅값 천차만별…….”

— 평당 10원에서 3천만원까지 —

땅 한평값이 10원, 코피 한잔값 3백원으로 30평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붐으로 땅값이 금값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땅은 평당 10원짜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설부에 따르면 시세가 평당 10원짜리인 땅은 지난 16일자(6월15일 현재 시세)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慶北 蔚珍郡 西面 前谷里 산45의 7 번지에 있는 8천 4백60평 규모의 임야다.

종전까지 기준지가가 고시된 땅 중에서 가장 싼곳은 지난 78년 8월 21일 현재 시세로 고시된 慶北 慶州부근 임야와 龜尾부근 임야로 각각 평당 20원.

기준지가는 은행의 감정 가격이나 내부부 시가표준액과는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거래예가 없을 때는 호가시세와 주변지역의 거래예를 참고자료로 하여 평가, 산출하는 것이어서 실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慶州와 龜尾지역의 임야는 이미 3년전에 20원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주변의 땅값 변동률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세는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은 현

재 전국토 9만 8천 9백66km<sup>2</sup> 중 35.93%인 3만 5천 5백62km<sup>2</sup>에 불과하고 내년(82년)중 15.76%인 1만 5천 6백km<sup>2</sup>, 오는 84년까지는 나머지 전국토에 대해 기준지가를 모두 고시할 계획이므로 더 싼땅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으나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비록 임야라 할지라도 평당 10원짜리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설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기준지가의 평가를 위해 지난 6월 현지를 다녀온 전설부 관계자와 토지평가사들은 10원짜리 땅의 소유주는 前谷里마을에 사는 개인이있으며 내부부 시가표준액상의 등급은 임야 21등급이었으나 태백산 심심산골의 오지인데다 대부분 약산이라 한만큼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 문제연구소의 鄭鎮宇씨도 蔚珍郡에 속해 있는 태백산이라면 깊은 산중에서도 바위투성이의 가파른 지역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속리산 문장대부근 忠南北과 慶北의 접경지 임야, 지리산의 慶南 및 全南 접경지 임야등도 시세가 평당 20원 내외라고 말했다.

이같은 땅은 말이 임야이지 실제로는 개발해볼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오지의 험한 산이며 특히 소유주는

門中으로 되어있거나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상태가 불분명한 곳이 많아 호가시세만 있을뿐 실제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는 鄭씨의 말.

필저당 규모는 보통 30만평~60만평에 이르며 간혹 매매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소유권 이전과정이 복잡하다고 한다.

기준지가 고시지역 중에는 이밖에도 싼땅이 많아 지난 4월 3일자로 고시된 永川市 주변임야, 太白山 주변임야도 평당 20원에 평가되었고 울림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陝川郡 내 산골의 임야는 평당 30원에 고시된 곳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4월 30일자로 고시된 楊平郡 丹月面 山陰里의 임야가 평당 50원으로 제일 싼 곳.

반면 기준지가 고시지역중가장 비싼 땅은 서울 中區 明洞의 코스모스 백화점 건너편 상가와 구 예술극장 앞 상가로 78년 8월21일 평당 1천 3백만원씩 고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재 땅값은 평당 3천만원~3천 5백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으며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최근들어 거래가 이루어진적이 없다.

이 지역의 기준지가와 실제가에 차이가 많은 것은 기준지가 자체가 3년전에 평가된 것일 뿐더러 지상건물값과 권리금등을 모두 제외하고 땅값(裸地)만 산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부지방의 집합주택  
NORTHLAND HOUSING  
Basildon, England

海外作品

Ahrends Burton and Koral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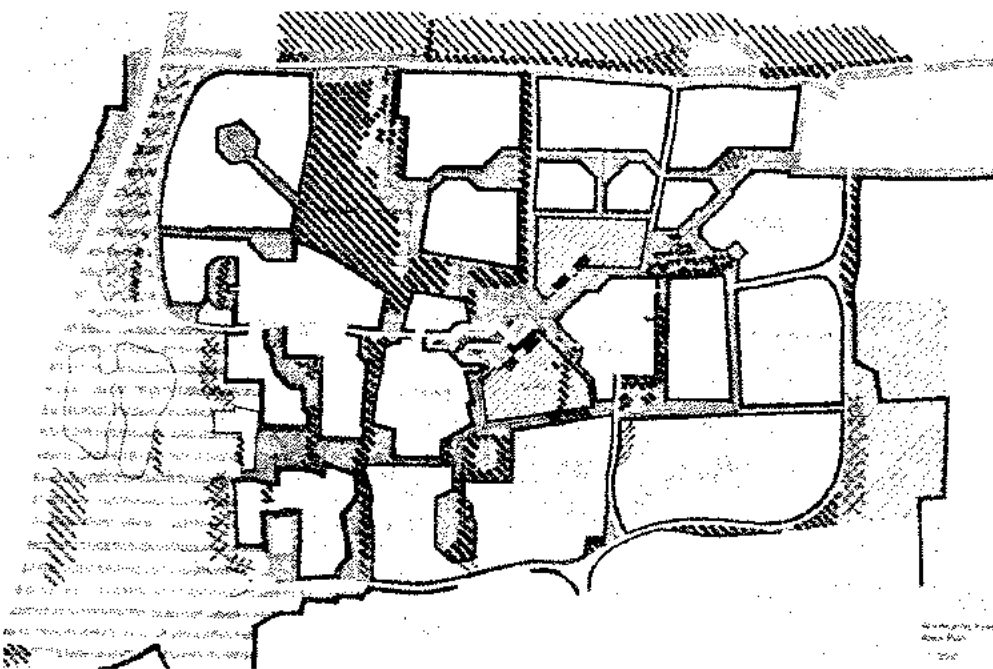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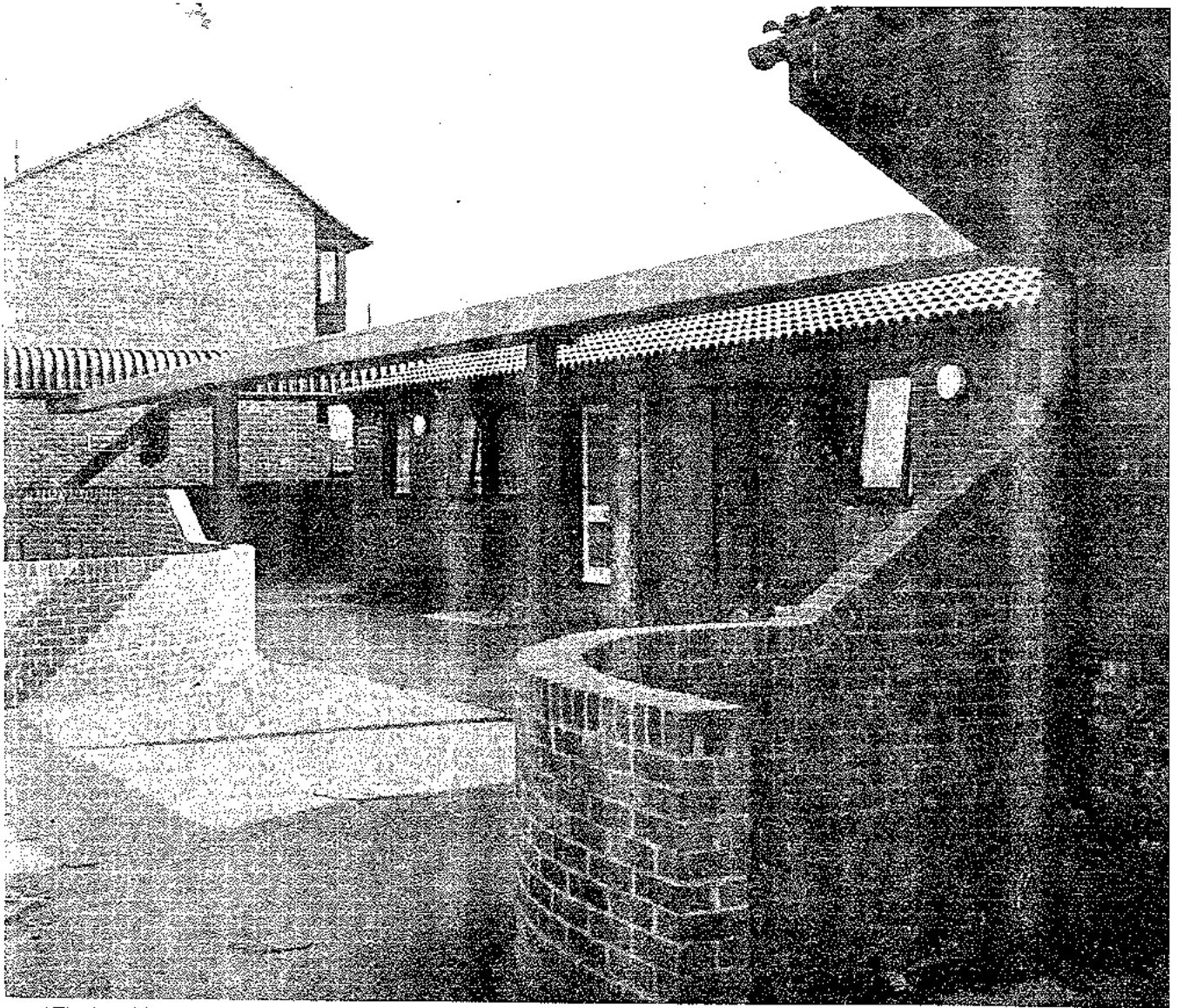
정원에서 본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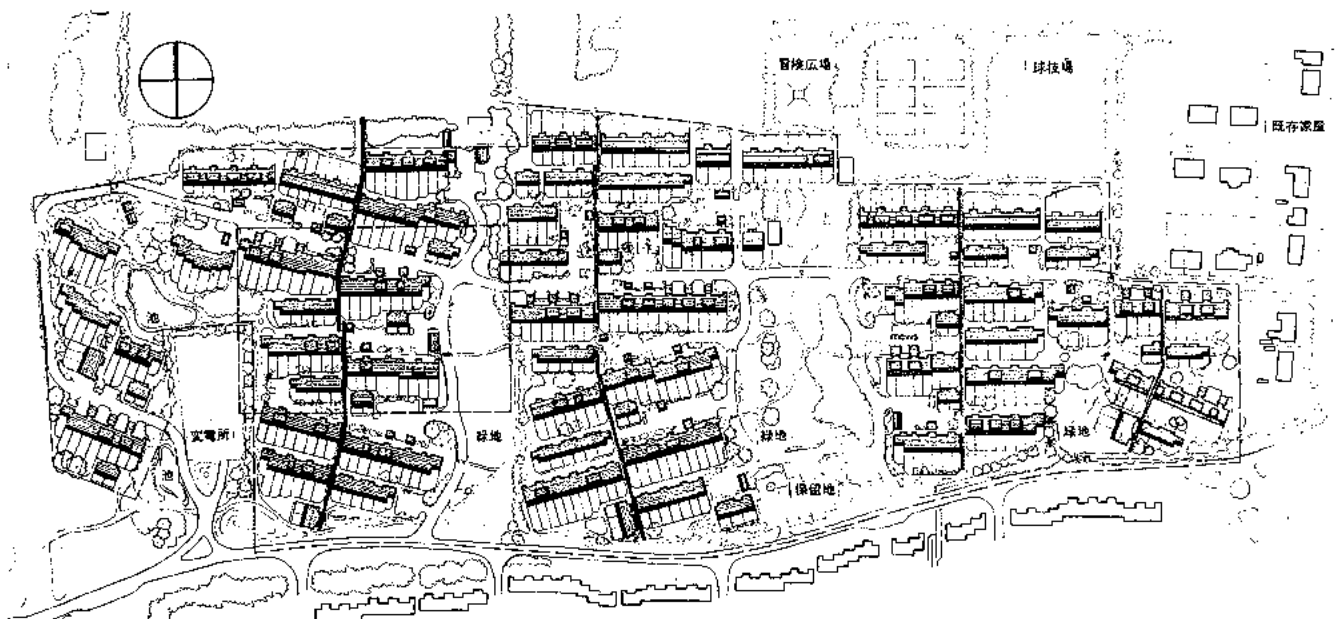
집밖의 오솔길



마스터 플랜



주차장,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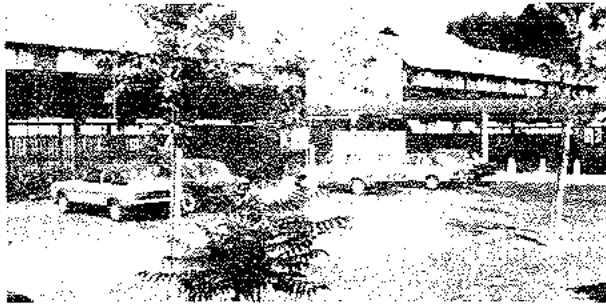
配置図, 縮尺 1/4000, Site plan, Scale 1/400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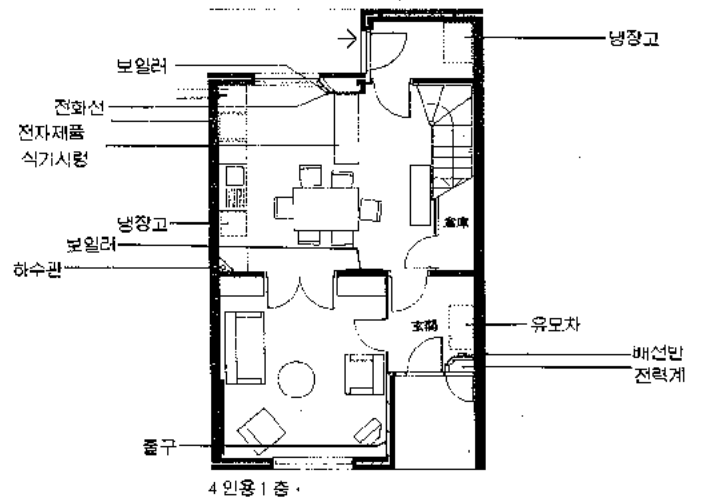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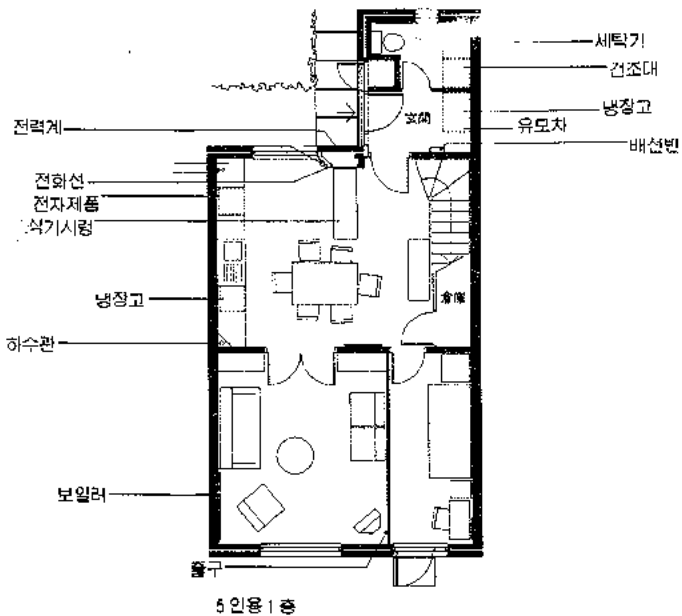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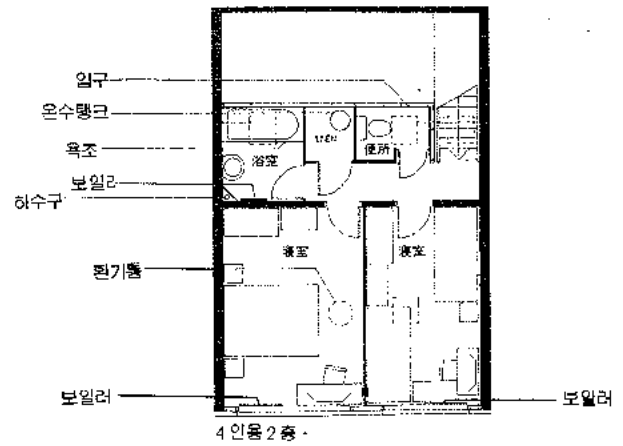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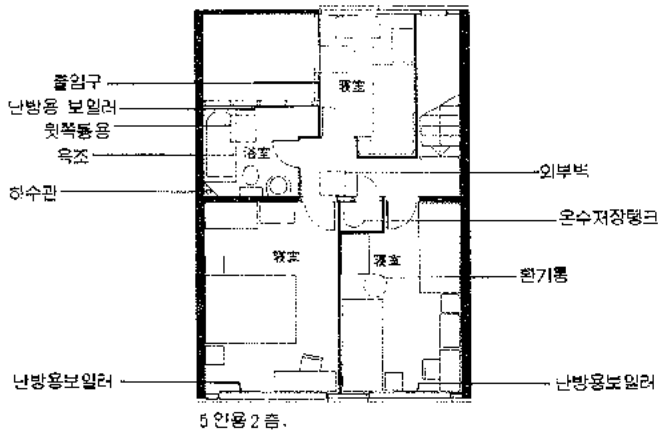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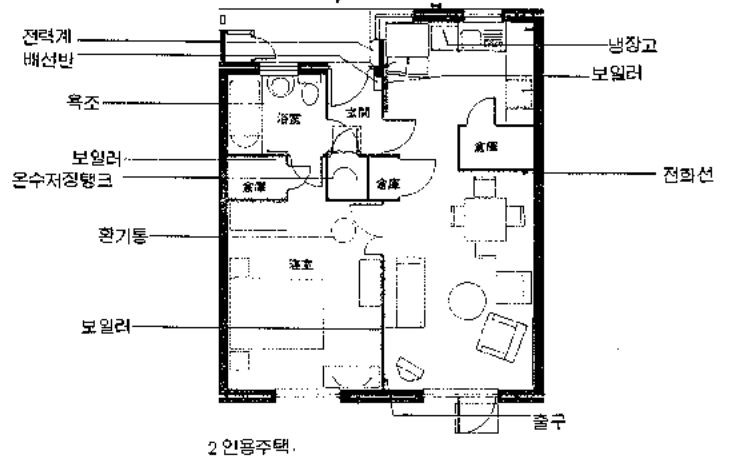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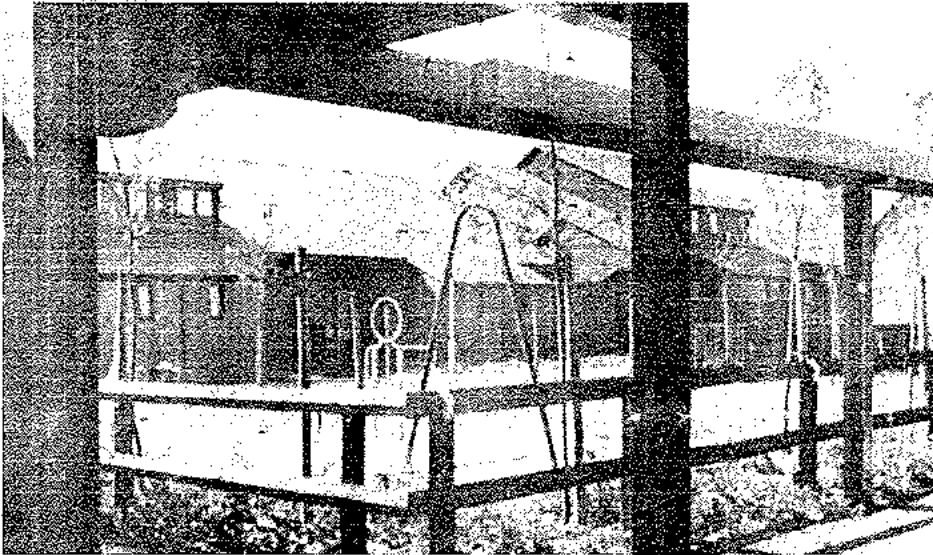
단면도



주차장







광장 주변



집사이의 통로

#### /설계의 전후관계/

북부지방의 주택은 「바실론」의 북동쪽에 위치한 「캠도어」처럼 북쪽지역의 한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땅은 해발 16미터의 평야이며, 수목이 많고, 「노스랜드」공원이 남서부의 26헥타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포괄적 계획으로 주택은 대부분의 공동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떨어져 인근의 외곽지대에 짓도록 되어 있다.

대개 250~450여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각 주택구역은 시가지의 공동건물에 연결된 주요도로에 인접해 있고 3「부락」은 단층 또는 2층 주택으로 418여채나 된다.

세계 모든 주택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실론」에서도 당초의 계획은 난방이 모든 면에서 가장 저렴하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위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몇년간의 사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난방의 필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1 주택구역에서 난방보존력이 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micro-climate나 절연과 관계된 설계, 내부 설계를 및 구조물과 같은 난방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택을 살기에 알맞도록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건축가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설계에 있어 환경공학에 대한 의견이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각 설계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 지느냐가 곧 성공에 대한 관점이 되고 있다.

#### /위치설계/

주거지역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북남쪽으로 형성되어야 동풍에서 오는 난방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쾌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주택을 북남향으로 설계하면 많은 이익이 얻어지는데 비해 동서향의 집은 14%까지 그 잇점이 감소되고 있다.

남쪽으로 22도 정도 치우친 집은 충분

한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북남향 주택은 남쪽으로 여러개의 큰 창문을 낼수 있어 거기에 차단샷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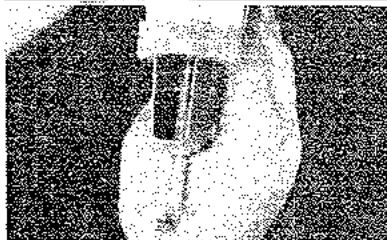
태양열을 얻도록 설계한 것의 또 다른 양상은 테라스를 그늘지게 하는 것이고 테라스가 좁은 간격으로 주택의 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열손실이 많으며 풀출벽이나 인접한 건물이 만드는 그늘은 남쪽에 있는 테라스 보다도 그 손실이 더 심각해진다.

외파로 있거나 또는 반쯤 외진 주택은 대개 에너지를 8%까지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진 면은 최소한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주택의 7할이상이 테라스가 가능한한 이와 같이 설계되어 있다.

경사진 지붕은 바람에 거의 흔들리지 않고 또 절연이 용이하도록 고안 되었으며 만약 지붕이 남쪽으로 35도 치우쳤다면 태양온수열광판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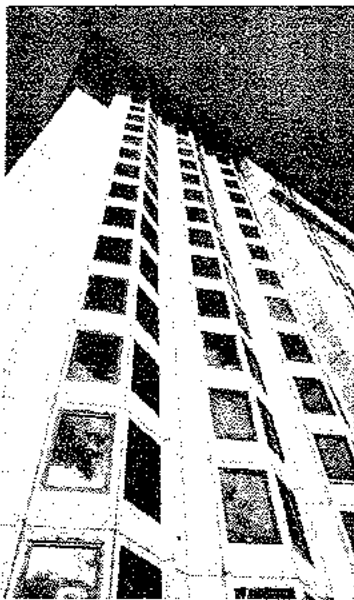
## 優秀建築資材



## 다우·코닝실리콘 실란트

제공 : 가람실업 (주)

Dow Corning Korea Agent  
& Consultant.



DOW CORNING 790

실란트로 시공된 미국 네바다주의 Harrah's Hotel  
1972~1973시공.

◎ 유기실리콘 化學은 Friedel과 Craft가 Tetraethylsilane의 合成에 成功한 1863년부터 수많은 基礎研究가 繼續되었으며, 그以後 有機化學工業계통의 DOW CHEMICAL과 실리콘의 專門知識을 갖고 있던 CORNING GLASS가 1942年工業生産에 함께 着手하고 合意하여 DOW CORNING이 탄생되었다.

실로 실리콘産業의先頭走者가 된 DOW CORNING은 現在 2,000여종의 실리콘製品을 開發하기에 이르렀다.

◎ 現在 國內에서도 建築用 실리콘의 優秀性を 認識하여 점차로 그 利用이 擴大되고 있으나 건축 種類選擇과 使用方法에 대한 認識의 不足으로 施工後 2~3년도 안되어 瑕疵가 생겨 經濟的인 損失을 초래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 실리콘의 특성

석영에서 얻어진 무기원소를 유기치환기와 결합하여 무기질과 유기질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실리콘고분자 화합물을 얻어낸다. 따라서 실리콘 실란트는 내열안전성, 내산화안전성, 내후성, 저온유연성, 물리화학적불활성, 압축성, 전기적 특성, 내방사선성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 일반실란트에 비한 다우코닝 실리콘 실란트의 장점

#### ① 내후성

경화 후 눈, 비, 오존 기후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50^{\circ}\text{C} \sim 180^{\circ}\text{C}$ 에서는 크랙, 변색, 수축, 뒤틀림이 없다.

#### ② 우수한 작업성

사계절 똑같은 물성을 유지하므로 겨울에 가열할 필요가 없으며 여름에도 시공시 흘러내리지 않는다. 일액형(one part)이므로 혼합할 필요가 없다.

#### ③ 오랜 수명

다우코닝은 10년간 물성의 품질을 보증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다우코닝 실리콘실란트로 시공된 많은 건축물이 그 이상의 월등한 제품임을 입증하고 있다.

#### ④ 경제성

실리콘 실란트의 가격이 치오콜(폴리설프화이드)이나 우레탄에 비해 다소고가 이어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2~3년내 심지어 해마다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다우코닝 실란트

가 주는 전체적인 이익은 여타실란트에 비교할 바가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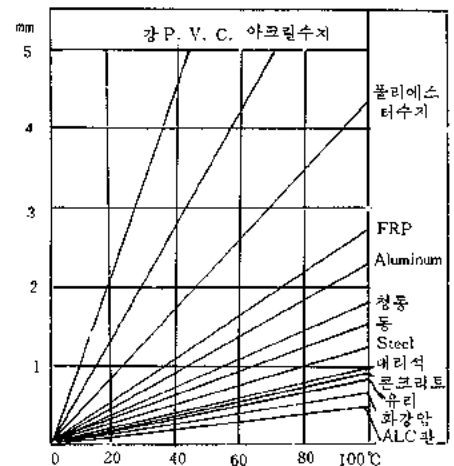
### 실란트 종류선택 및 설계

별지목록의 각종 실란트 종류와 그 특성 및 시공부위 재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종류선택과 Joint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Joint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 Joint의 간격과 크기가 문제될 것이며, 또한 심한 움직임에도 신축력과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실란트가 선택되어야 하며, 설계시 이점을 소홀히 할 경우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① 각종 건축재료의 열팽창 계수

| 분 류   | 재 질             | 열팽창계수<br>( $10^{-6}/^{\circ}\text{C}$ ) |
|-------|-----------------|-----------------------------------------|
| 금 속   | Aluminum        | 23                                      |
|       | 스테인레스 18Cr-8 Ni | 17.3                                    |
|       | 동               | 12                                      |
| 유 리   | 판 유 리           | 9.9                                     |
| 시멘트제품 | 콘크리트            | 6.8~12.7                                |
|       | ALC판 (가벼운콘크리트)  | 6.7~8.0                                 |
| 석 재   | 대 리 석           | 5~16                                    |
| 기 타   | 화 강 압           | 8.3                                     |
| 플라스틱  | FRP             | 20~34                                   |
|       | 폴리에스터 수지        | 35~50                                   |
|       | 경질염화비닐수지        | 50~1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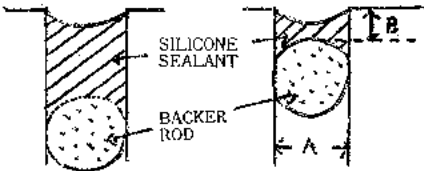
#### ② 건축 자재별 1m당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비교



### ③ 그릇된 디자인과 올바른 디자인

a. 그릇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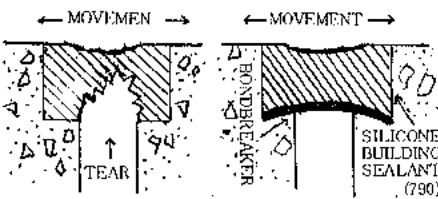
바른 디자인



폭(A)과 깊이(B)의 비율이 2:1 정도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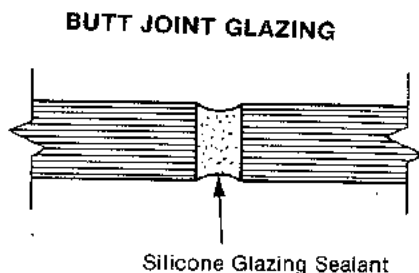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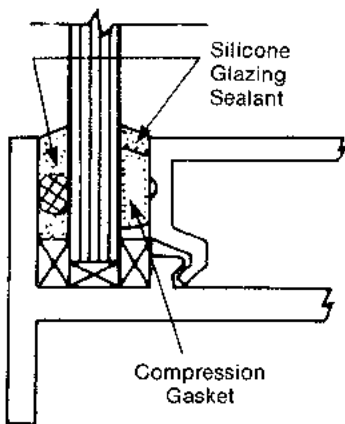
b. 그릇된 디자인

바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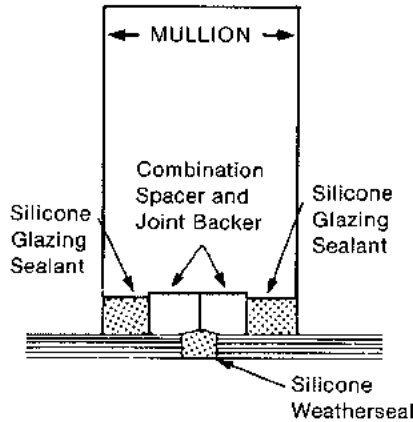


심한 움직임에 유연하게 견디기 위해서 Bondbreaker 꼭꼭 사용해야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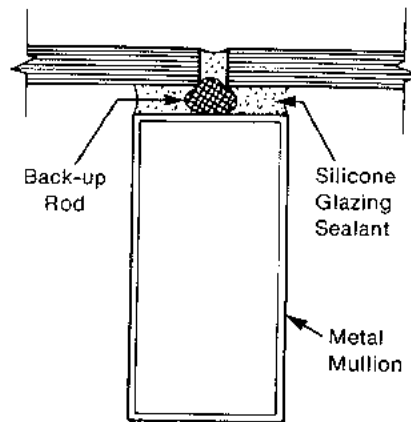
### ④ Dow Corning Silicone Rubber Sealant 시공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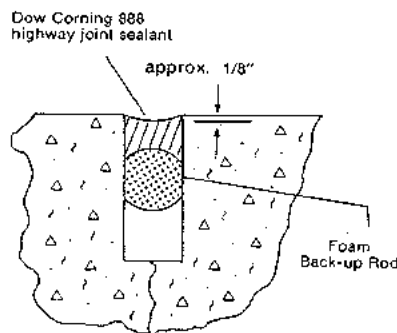
### FLUSH GLAZING



### BUTT JOINT WITH MULLIONS



### ⑤ Dow Corning® 888 highway joint sealant의 시공도 해.



### 시 공

#### ① 청소작업

좋은 접착력을 위해서는 솔벤트 (아세톤, 톨루엔)에 의한 청소작업이 바람직하다.

#### ② Back-up재, Bondbreaker (실란트)에 비접착물질) 사용

대부분의 경우 원활한 신축성과 재료의 절감을 위해 Back-up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Bond Breaker를 필히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Bond Breaker의 사용을 무시하여 크랙이 생기는 수가 많다.

#### ③ Primer (접착부위 표면처리제) 사용

다우코닝은 DC1200, DC1205, Primer D 등의 각종 Primer가 있으며, 접착부위 상태에 따라 Primer의 필요성 여부, 적합한 Primer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D.C.790 실란트의 경우 콘크리트에는 프라이머 없이도 탁월한 접착력을 발휘하나 동(銅)의 경우에는 D.C.1200 Primer를 사용해야 한다. 또 같은 알루미늄일지라도 표면처리 종류에 따라 프라이머 사용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접착 테스트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Primer는 가능한 한 아주 얇게 사용해야 하며 완전히 경화된 후에 실란트를 시공해야 한다.

#### ④ 적합한 실란트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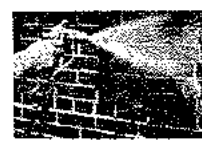
별지 부록의 종류와 특성 참조. 특기할 것은 이액형 (Two-Part)의 경우 혼합시 기포가 생기게 되고 혼합이 철저히 못할 경우 그 물질 자체에 분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Dow Corning은 일액형 (One-Part)만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Sealant Caulking에 있어서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것에 대해 다우코닝 기술진과 같이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Consultant : Mr. 나  
Mr. Keightley

☎ 778-7061~2



| DOW CORNING PRODUCT                                                                  | D. C. APPLICATION                                                                                                    | 용도                                                                                                         | 특징 및 사용이점                                                                                                                                                                                                            | SPECIFICATIONS                                                                                                                                                                                                                                                                                               | COLOR                                                      |
|--------------------------------------------------------------------------------------|----------------------------------------------------------------------------------------------------------------------|------------------------------------------------------------------------------------------------------------|----------------------------------------------------------------------------------------------------------------------------------------------------------------------------------------------------------------------|--------------------------------------------------------------------------------------------------------------------------------------------------------------------------------------------------------------------------------------------------------------------------------------------------------------|------------------------------------------------------------|
| DOW CORNING <sup>®</sup><br>Silicone Glazing Sealant<br>Part No.999 (732)            | <br>↑ D. C. 999의 Glazing            | ○유리 조인트<br>○알루미늄 조인트<br>○마리온 조인트<br>○플라스틱 조인트<br>○커튼월 조인트                                                  | ① 인액형이므로 경화제의 혼합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 및 노임의 절감.<br>② 태양광선, 눈, 비, 오존의 영향을 받지 않음.<br>③ 10년간의 물성보장으로 하자보수비 파격 절감.<br>④ 다양한 색상.<br>⑤ 경화후 -50℃~180℃에서는 크레, 변색, 수축, 뒤틀림이 전혀 없음.<br>⑥ 시공시 -37℃~60℃에서는 물성의 변화가 없으므로 국내현장 4계절 항시사용 가능. | ① Federal Spec.<br>TT-S-001543(실리콘발포실란트)<br>TT-S-00230(알액형실란트)<br>② 내후성시험 [Atlas Weatherometer]<br>로 6000시간 시험 [자연 기후에서의 19년에 해당] 단성, 색상, 접착력에 아무 변화없음.<br>③ 표면경화시간 : 30분<br>④ 완전경화시간 : 7일<br>⑤ 최대신장 및 수축 : ±25%<br>⑥ ASTM D 2240<br>탄성계수, Shore A-Points : 25<br>⑦ ASTM D 412<br>최대인장강도, Psi : 250 (1.7map) | 흰색<br>두명<br>반색<br>알루미늄색<br>검정                              |
| DOW CORNING <sup>®</sup><br>790<br>Building Sealant                                  | ← D. C. 790의 탁월한 신축성<br>            | ○한서의 심한 기온변화나 조인트의 심한 움직임으로 내열발탄으로 시공불가의 경우.<br>○P. C.조립<br>○커튼·월 조인트<br>○익스펜션 조인트<br>○태양열 집열판조인트<br>○창호공사 | ①~⑤: DC999와 동일<br>⑥ -29℃~71℃에서는 물성의 변화가 없으므로 국내현장 사계절 항시 사용 가능.<br>⑦ ±100/-50%의 높은 신장, 수축율을 갖고있어 기온의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사용적절.<br>⑧ 여타시공시 2:2와 달리 넓이, 깊이 비율 2:1로 시공되므로 재료비율을 줄이는 큰 이점.                                    | ①~⑤: DC999와 동일<br>⑥ 표면경화시간 : 1시간<br>⑦ 완전경화시간 : 7~14일<br>⑧ 최대신장 및 수축 : +100/-50%<br>⑨ ASTM D 2240<br>탄성계수, Shore A. Points : 15<br>⑩ ASTM D 412<br>최대인장강도, Psi : 100<br>(0.07 kgf/cm <sup>2</sup> )                                                                                                           | 미색 (Precast white)<br>갈색 (Natural Stone)<br>회색<br>반색<br>검정 |
| DOW CORNING <sup>®</sup><br>Silicone Rubber<br>Bathrub Caulk<br>(Part No.8640)       | ↑ D. C. 8640에 의한 세면대 및 욕조내 타일실링                                                                                      | ○싱크대, 세면대, 목욕탕, 샤워기, 변기주위<br>○타일시공<br>○목욕탕, 화장실 등 습기가 많고 곰팡이의 서식 염려되는 곳.                                   | ①~⑥: DC999와 동일<br>⑦ 욕탕의 서식방지약품함용, 배수관 유지, 악취 방지.                                                                                                                                                                     | D. C. 999의 ① 동일<br>② 완전경화 : 7일 (24℃)<br>③ ASTM D 2240<br>탄성계수, Shore A. Points : 25<br>④ ASTM D 412<br>최대인장강도, Psi: 250 (0.18 kgf/cm <sup>2</sup> )                                                                                                                                                          | 흰색                                                         |
| DOW CORNING <sup>®</sup><br>Silicone Rubber<br>Sealant (No.8644)                     |                                   | ○인테리어 벽수의.<br>○실내분과창문의후레이밍<br>○크랙등의 하자수리시 단일색상유지 필요경우.<br>○베인팅을 하거나 얼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조인트 부위.                 | ①~⑥: DC999와 동일.<br>⑦ 레인트도장 가능.<br>⑧ 나무, 콘크리트, 석조물 대부분에 시공에 프라이머 사용 불필요.                                                                                                                                              | ①~⑥: DC999와 동일.<br>⑦ 레인트도장 가능.<br>⑧ 나무, 콘크리트, 석조물 대부분에 시공에 프라이머 사용 불필요.                                                                                                                                                                                                                                      | 흰색                                                         |
| DOW CORNING <sup>®</sup><br>888<br>Highway Joint Sealant                             | <br>↑ D. C. 3-5000의 수계탄화물 스프레이 모습 | ○비행장 활주로 및 콘크리트 고속도로 익스펜션 조인트.                                                                             | ①~③: DC999와 동일.<br>④ 가연, 발각 필요없음(사용시)<br>⑤ 프라이머 사용없이 콘크리트에 강착·경화.<br>⑥ -32℃~60℃에서는 시공 항시 가능.<br>⑦ 경화후 -56℃~149℃에서는 크레, 변색, 수축, 뒤틀림이 전혀 없음.<br>⑧ ±50% 높은 신장, 수축율.                                                     | ① ASTM D 1850<br>② 표면경화시간 : 1시간 (25℃)<br>③ 완전경화시간 : 7~14일 (25℃)<br>④ ASTM D 2240<br>탄성계수, Shore A. Points : 15<br>⑤ ASTM D 412<br>최대인장강도, Psi : 100                                                                                                                                                          | 회색                                                         |
| DOW CORNING <sup>®</sup><br>3-5000<br>CONSTRUCTION<br>Coating                        |                                   | ○폴리우레탄용 지붕 및 벽 크와 닥트의인슐레이션<br>○제육관, 도음등 특수형태의 단열방수시                                                        | ① 스프레이 시공후 보호막을 형성하여 화학물질, 눈, 비, 오존, 자외선으로부터 내부물질 보호.<br>② 경화후 -62℃~177℃에서는 크레, 변색, 수축, 뒤틀림이 전혀 없음.                                                                                                                  | ① 표면경화시간 : 0.2시간<br>② 탄성계수, Shore A. Points : 45<br>③ 최대인장강도, Psi : 400                                                                                                                                                                                                                                      | 흰색<br>회색                                                   |
| Dri-Sil <sup>®</sup> 48HF<br>Dri-Sil <sup>®</sup> 78<br>DOW CORNING <sup>®</sup> 772 |                                                                                                                      | ○벽돌, 그라우팅, 석회암, 콘크리트 표면 방습시<br>○낡은 건물외 수리                                                                  | ① 스프레이로 간편하게 시공.<br>② 방습을 요하는 시공에 최적                                                                                                                                                                                 |                                                                                                                                                                                                                                                                                                              | 무색                                                         |
| DOW CORNING <sup>®</sup><br>3-6548<br>Silicone R. T. V.<br>foam                      | ↑ D. C. 772의 벽돌위 스프레이 모습                                                                                             | ○케이블공사, 콘크리트벽, 천장, 바닥의 배관, 배전 가설시 주위 실링.<br>○화재, 누수염려부위                                                    | ① 완전 불연성<br>② 알코실 카르비타일이므로 사용 편리.<br>③ 시공하기 까다로운 틈새도 주입시키면 스펀지형태로 틈새를 채워 방화, 방수 역할.                                                                                                                                  |                                                                                                                                                                                                                                                                                                              | 질은 회색                                                      |

## 무엇이 궁금한가?

(건축관계 법령에 대한 각지방위원회 및 일반인의 질의와  
본협회의 답변 요지) (기술부)

(질의1) : 설계용역 계약에 의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성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건물 외관을 변경 할 경우 보수지급 방법에 대하여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7조 제5 호에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변경 부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관 변경시의 보수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① 건물 외관 설계변경에 따른 보수액 증액 결정의 실례와 방법 및 기준이 있는지?

② 또한 보수액 결정 후 단계별 지급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건물규모는 연면적이 약 12,000평, 변경 내용은 all glass (pair glass) 를 p. c panel 로 변경할 경우입니다. (한국 주택은행)

(답변1) : 질의 ①에 있어서는,

건물 외관변경 (p. c panel) 부분에 대한 총 공사비에 의하여 설계감리 보수 요율표(별표 1) 제3종 은행 건물의 요율에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 (예: 건물 외관변경 총 공사비  $\times$  3종에 대한 요율  $\times$  70% = 설계비) 하며, 다만 총 공사비는 구조제산, 열부하제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제반 계산비용을 제외합니다.

질의 ②에 있어서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9조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의 계약시에는 선급금을 받으며 건축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업무진행 기간 중 보수의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계약체결 방식에 의하여 설계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기술부)

(질의2) : 현행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별표 1 (설계감리 보수 요율표)의 건축물 종류에 따른 종별 적용에 있어서 1동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85  $m^2$  미만(제2종)과 세대당 85  $m^2$  이상 (제3종)이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종별 적용은 비록 1동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세대당 면적에 따라 각각 당해종별을 구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건설부의 주택단지 계획 및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 1동의 공동 주택에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혼합 배치토록 지시됨에 따라 세대별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이 건축될 것이 예상됨) (부산지부)

(답변2) :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①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에 따라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종별로 전체를 적용하고 ② 각 종별 해당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요율의 종별로 전체를 적용,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3)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발주자가 입찰에 부할시 동설계도면을 내부 장치 공사 및 바닥장치(파이텍스 설치) 공사로 구분하여 낙찰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설계자의 설계 및 감리보수 요율 적용 범위에 대한 귀견 여부? (대한 무역진흥공사)

(답변3)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 제1 호에 의한 일단의 대지내에 1동의 건축물을 신축·재축하는 경우의 설계 감리 업무의 보수는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 바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2개의 구분된(기본 목공사 장치부분+바닥 파이텍스 장치부분) 낙찰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4) : 건축사법 제23조 제1, 2, 3 항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갑·을 2인중 “갑”건축사가 동법 제28조 제1 항에 의하여 행정 처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 “을”건축사는 주택 건축 업무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업무등을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경북지부)

(답변4) : 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중 그 1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 또는 폐쇄명령”으로서 합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② 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 건축사가 설계업무등을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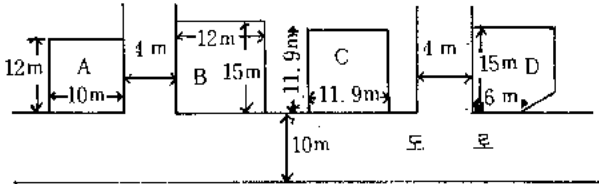
③ 건축사 사무소의 폐업은 건축사 임의로 가능한 것이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 건축사가 종전의 건축사 사무소를 폐업하고 새로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의 이전은 무방한 것입니다.

(건설부)

(질의5)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분할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은 건축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발제한 구역안의 최소 대지면적은 132  $m^2$ 와 90  $m^2$ (개축, 재축)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는 분할 기준을 각각 132  $m^2$ 와 90  $m^2$ 로 함이 가한지 아니면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의 면적 90  $m^2$ 로 하는지의 여부? (경남지부)

(답변 5)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바 동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동항 본문에서 정하는 건축법 제39조의 2〔동령 제159조 제 1항 제 5호〕의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지최소면적 132㎡와 90㎡(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시)로 하여야 합니다. (기술부)

(질의 6) : 건축법 시행령 제163조(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제1항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m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1/6 이상이 접한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에 있어서 아래 예시도 A, B, C, D 대지중 어느 것이 본조에 가능한지 여부? (경남지부)



(답변 6) : 건축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본문중 건축물의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가 대지에 12m이상으로서 대지 둘레의 1/3이상 접한 도로를 뜻하므로 귀 질의 예시도 A, B, C, D 중 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또한, 대지둘레의 1/6이상 접하고 있는)대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B”대지만 해당 됩니다. (기술부)

(질의 7) : 건축사 2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 자기사업 업무용(학교, 청사, 공장, 관사, 국민주택, 사택, 기숙사 등)에 공하는 건축물을 설계 감리 및 건축허가 절차 등이 가능한지 여부? (경남지부)

(답변 7) : ① 건축사를 고용한 개인 사업체에서의 자체업무용 건축물의 설계, 감리 및 건축허가 이행 등은 불가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포함)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재단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건축사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없이 소속기관의 건축물에 한하여 설계·감리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부)

② 건축사법 제25조의 규정중 “건축사가 건축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업무행위를 하는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사가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 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 증권거래소, 대한석탄 공사, 한국전력(주), 한국종합화학(주), 농어촌개발공사, 대한 주택공사, 산업기지 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제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감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건축사 면허증 소지자가 그 소속기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입니다. (건설부)

(질의 8) : 건축조례 부칙 3항(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라 함은 이 조례시행 직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뜻하는 것이며 조례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준공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포항 본소)

(답변 8) 질의에 대하여는 귀견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경과조치라함은 새로운 조례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행정 행위가 완료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않음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부)

(질의 9) : ① 건축주 김씨댁의 설계를 “A”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된 후에 김씨가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A”사무소가 아닌 “B”“C”“D” 등의 타설계 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여 주는지의 여부?

② 위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시 정한 금액이 있을 것이며 과당 경쟁과 덤핑 행위를 할 때의 법적규제 조치가 있는지의 여부? (한국솔라에너지)

(답변 9) : ① 질의 1은 설계변경에 있어서 전 설계자와 후 설계자가 상이할 경우 전 설계자의 설계저작권 포기 동의서를 받아 제3의 건축사에게 의뢰하여야 할 것이며

② 질의 2는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 제17조 5항에 의하면 변경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정 설계 보수액의 40% 상당액, 설계 변경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소정 설계 보수액의 30% 상당액의 금액을 최저한도하여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 이 사항을 위반할때는 윤리규약 제 5조에 의하여 3월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게 됩니다.(기술부)\*

## 개정 / 소방법시행령

②대통령령제10,619호 소방법  
시행령개정령(11·6일)

다음은 지난 11월 6일 개정 공포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령을 두번에 나누어 옮긴다.

소방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을 함에 있어 유효한 개구부가 없는 층을 말한다.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 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 1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의 특수장소중 다음의 장소

가.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여관·호텔·여인숙·기숙사·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 및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시장·4층이상 공동주택·정거장·대합실·학교·학예전시관·공중목욕장·공장·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창고·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연면적 1천 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 교회·사찰 및 사업장으로서 연면적 1천8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비행기착납고

2. 제1호 각목에 제기하는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면적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

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②건축허가청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한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3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는 별표 1의 소방대상물중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 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천평방미터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동일구내에 제5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7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

은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8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用に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자
5.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근로안전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7.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 제조소등의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8.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관리자로 선임된 자
9. 대통령령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3년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 및 과목과 강습 및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실비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시설의소방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취급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 및 피난등의 훈련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 계획
2.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통보·피난구·안전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계획
4. 방화구획, 배연 또는 방연구획, 방화내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5. 인원의 수용계획
6. 방화상 필요한 교육계획

7.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임무부여사항

8. 화재시의 소화활동·통보연락 및 피난유도등의 훈련계획

9. 증축·개축·수선 또는 구조 변경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할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대상으로 한다.

1. 고층건축물(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극장·영화관·경기장·집회장·호텔·의료원(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2. 3층이상의 여관·여인숙으로서 방 30실이상인 것.

3.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전문음식점 및 유흥음식점과 지하층에 설치된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1. 전시용 합판
2. 전시용 섬유판(식물성 섬유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3.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4. 간이간막이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카텐·암막·카페트(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기타 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 및 식모벽지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버어너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시험체가 녹아 구멍이 뚫리는 물품(카페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카페트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4호, 기타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물품의 잔염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20초 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염후에 버어너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울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 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제1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 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은 50평방센티미터이내

4. 탄화질이(제 1 호의 잔염시간 또는 제 2 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질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이내
5. 물품의 접염회수(완전히 용융될 때까지 필요한 불꽃을 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 회이상 10 회이하
- ④ 제 3 항에 규정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신청 검사방법·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①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이라 함은 별표 2 의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 물품으로서 별표 3 의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 의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 3 장 소방시설

#### 제 1 절 통 칙

**제 13 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 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
  - 가. 물양동이
  - 나. 소화수통
  - 다. 진조사
  - 라. 팽창질식 또는 팽창진주압
  - 마.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젠화물소화설비·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6. 동력소방펌프설비
- ②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사이렌·방송설비)
- ③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3. 방열복·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 ④ 소화용수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 ⑤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말한다.

**제 14 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구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 15 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별표 1 의 복합건축물은 이장(제 21 조 및 제 22 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 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무창층 또는 3 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제 16 조** (지하가의 외제) 별표 1 의 제 1 종장소(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 및 공중목욕장을 제외한다)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소방시설(소화기구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로 본다.

#### 제 2 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 17 조** (제 1 종장소) 별표 1 의 제 1 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음식점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 5 분의 1 이상의 위험물,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 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공연장·경기장·집회장의 경우에는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 류·제 2 류 또는 제 5 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 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 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공연장·경기장·집회장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시장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천평방미터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에 한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

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여관·호텔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난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제 4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발전설 및 변전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9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경우 동일대지안에 내화구조건축물·방화구조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

의 건축물로 본다.

6.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 5호의 건축물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시장 및 공중목욕장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키기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8.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내화구조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동일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 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시장·여관·호텔·여인숙 및 의료원으로서 연면적 1천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0.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 외의 층수가 3층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300인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싸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의 경우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이상)인 것.

11.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20인이상인 것.

나. 여관·호텔·여인숙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수용인이 30인이상인 것.

다.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 및 시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12. 인명구조장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것.

13.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구분                                                         | 지하층·무창층또는 11층이상의 층 | 기타의층 |
|------------------------------------------------------------|--------------------|------|
| 용도별                                                        |                    |      |
| 기숙사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 유도표지 |
| 공연장·경기장·집회장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      |
|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여인숙·의료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유치원·공중목욕장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      |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대지면적이 2만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5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만5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15.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음식점·유기장·시장·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6. 연결승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로서 10층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것으로서 연

면적 6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7.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당해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

나. 옥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다. 내화구조의 벽·바닥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에 위치하는 승강기 및 환기설비의 기계실·통신기기실·전자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라. 발전실·변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마. 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샤프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바.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

18.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제18조 (제2종장소) 별표 1의 제2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4층이상의 공동주택·공장·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의 경우에는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방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의 경우에는 3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1류·제2류 또는 제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의 경우에는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특수 수량의 1천배이상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에 한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에 한한다)의 11층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이외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물 준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4.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에 기재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 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교회·사찰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2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기 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6.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다음 각목에 기재하는 소방대상물(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천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가. 연면적 500평방미터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층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업장에 한한다)

7.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것.

8.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2) 학교·학예전시관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피난층 및 11층이상의 층을 제외한 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새기하는 것.

가. 4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것.

나. 정거장, 대합실, 교회, 사찰 및 학예전시관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것.

다. 학교, 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및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50인이상(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것.

10.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구분<br>용도별                                                                    | 지하층·무창층또<br>는 11층이상의 층 | 기타 층 |
|------------------------------------------------------------------------------|------------------------|------|
| 교회, 사찰, 4층이상의<br>공동주택, 학교, 학예전<br>시관, 정거장, 대합실,<br>공장, 영화 및 텔레비전<br>촬영소, 사업장 | 피난구유도등·통<br>로유도등       | 유도표지 |

11.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정거장·대합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12. 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 4호, 제 5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제 3 종장소) 별표 1의 제 3 종장소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 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인 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

2.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창고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류, 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이상인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만 자(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로서 연면적 2천1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의 층(주차한 제차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이상, 1층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창고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제 4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포소화설비에 한한다)

5.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제 2호 각목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 제17조제 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라.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인 것.

7.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창고(내화구조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구조의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창고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9.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인 것.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경우에는 40인 이상인 것.

10.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은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이상의 층에 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 5호·제14호·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 (지정문화재) 별표 1의 지정문화재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지하가) 별표 1의 지하가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5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준위험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연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것.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가.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사이렌 총수가 3층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800인이상인 것.
  - 나.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40인이상인 것.
6.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인 것.
8.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700평방미터이상인 것.
9.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관하여는 제17조제 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복합건축물) 별표 1의 복합건축물(제1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각 용도별 해당수치를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용도별 기준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경합하는 층에 있어서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 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①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주차장이나 별표 3의 제 1류·제 2류 또는 제 5류의 준위험물이나 별표 4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

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비상벨 또는 자동식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또는 자동식사이렌과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벨이나 자동식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기구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장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소방시설작용의 특례) ①별표 1의 제 2종장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8조(소화설비에 한한다)에 대한 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소방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3 장 제 2 절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검정

제25조 (제조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법 제34조제 1 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화기 (화학반응식 포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방염재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3. 동력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이동식중형소방펌프·이동식경형소방펌프 및 전인소방펌프를 포함한다)
4. 소방용흡수관 및 소방용호오스
5.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 및 유도등
6. 자동화재 탐지기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 및 경종) 및 가스화재탐지기
7. 비상경보기용 축전지설비
8. 자동소화기기 (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음향장치·스프링클러헤드·물분무헤드·포헤드·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9. 전기화재경보기
10. 자동화재속보기
11. 결합금속구 (소방호오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관창·송수관·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제26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범위) ①법 제3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제25조 각호의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서 그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당해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소방시설의 시공

제27조 (소방시설시공의 특례) 법 제30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소화기의 소화약제충전
2.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및 경보설비의 표시등 또는 유도등의 광원교환
3.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오스·노즐·푸우즈·나사등의 부품교환 및 소화전함·호오스격납함 등의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4. 예비전원 교환

제2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구분에 따라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종류는 별표 5 와 같다.

#### 제 6 장 화재경계지구등

제2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직할시·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①법 제4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 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법 제4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구호훈련

③제 2 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계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 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방응원요청) 소방서장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소방서장에게 소방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임무·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 7 장 위험물의 취급

##### 제 1 절 통 칙

제32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2 에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33조 (저장소의 구분)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옥내저장소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다만, 제 5호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7. 옥외저장소: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중 유황, 제 4류의 위험물중 제 2 석유류·제 3 석유류·제 4 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8. 선박탱크저장소: 선박(선박안전법 제 2조제 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며, 부선을 포함한다)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제34조 (취급소의 구분)**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2.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가. 제 1종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5 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나. 제 2종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5 배이상 20배미만(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3.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버어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제35조** (2 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 품목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각 품목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제 2 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36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청·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탱크의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은 후 제 1항의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충수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신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 제 3 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39조 (공통기준)** 법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작업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항상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함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찌꺼기등은 1일 1회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안에 온도계·습도계 기타의 계기를 비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용기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고 파손·부식·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뿜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 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여 불꽃을 발하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2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있는 과열·충격·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 에이 및 금속분 비이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2의 제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2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41조 (저장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은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

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별표2에 제기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건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미터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중 탱크의 직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위험물을 이송할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방유제의 내부에 피어있는 기름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을 결합불량, 변형 또는 주유호스의 파손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밸브는 사용시 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견인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견인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칼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을 저장하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

# 政府勞賃單價 '82. 1. 1 부터 施行

| 직종명           | 단가     | 직종명       | 단가     | 직종명         | 단가     | 직종명           | 단가     |
|---------------|--------|-----------|--------|-------------|--------|---------------|--------|
| <b>공사부문</b>   |        | 도장공       | 8,300  | 전기공사기사 1급   | 13,430 | 시험사 3급        | 8,930  |
|               |        | 계형공       | 5,960  | " 2급        | 11,600 | " 4급          | 7,330  |
| 경부            | 7,360  | 내장공       | 8,280  | 통신외선공       | 10,270 | 시험보조수         | 5,850  |
| 도목수           | 10,880 | 돛자리공      | 7,610  | " 설비공       | 9,900  | 비파괴시험사        | 9,530  |
| 조선목공          | 9,240  | 도배공       | 8,260  | " 내선공       | 9,600  | 안전관리기사 1급     | 13,860 |
| 건축목공          | 8,950  | 아스타일공     | 8,330  | " 케이블공      | 13,110 | " 2급          | 9,370  |
| 형틀목공          | 8,330  | 개와공       | 9,400  | 무선안테나공      | 11,970 | 마부(우마차포함)     | 15,400 |
| 창호목공          | 9,150  | 스베트공      | 8,210  | 통신기사 1급     | 15,330 | 제재공           | 8,790  |
| 동발목공(터널)      | 8,230  | 화약취급공     | 10,690 | " 2급        | 12,720 | 유리공           | 8,540  |
| 철골공           | 8,700  | 착암공       | 8,630  | 통신기능사       | 9,960  | 함석공           | 8,190  |
| 철공            | 8,110  | 보안공       | 6,370  | 도심장         | 10,600 | 용접공           | 8,340  |
| 철근공           | 8,210  | 포장공       | 8,560  | 심장          | 8,660  | 리벳공           | 10,280 |
| 제관공           | 8,540  | 포설공       | 8,400  | 목도          | 9,120  | 빠비도포공         | 7,470  |
| 강판공           | 8,190  | 케도공(철도)   | 9,120  | 연돌소재부       | 6,080  | 부평공           | 7,730  |
| 대장공           | 6,820  | " (일반)    | 5,750  | 숙련공의조공      | 6,010  | <b>〈도서지역〉</b> |        |
| 샷다공           | 8,710  | 보선공(철도)   | 6,770  | 특별인부        | 7,010  | 건축목공          | 11,980 |
| 샷수공           | 9,070  | 잠수부(4인조)  | 47,450 | 보통인부        | 5,070  | 형틀목공          | 10,080 |
| 결단공           | 7,460  | 잠항공       | 11,630 | 여자인부        | 3,140  | 철근공           | 9,020  |
| 석공            | 9,450  | 보링공(기질조사) | 7,990  | 중기운전기       | 9,530  | 할석공           | 9,700  |
| 할석공           | 9,400  | 우물공       | 8,000  | 운전사(운반차)    | 9,130  | 조적공           | 8,640  |
| 특수비계공(15m 이상) | 10,750 | 영원기사      | 10,180 | " (기계)      | 8,890  | 미장공           | 10,760 |
| 비계공           | 8,840  | 조원공       | 7,790  | 중기운전조수      | 6,530  | 방수공           | 8,530  |
| 동발공(터널)       | 8,160  | 벌채지도인부    | 6,490  | 고급선원        | 10,960 | 타일공           | 11,660 |
| 세철축로공         | 14,590 | 벌목부       | 6,710  | 보통선원        | 7,670  | 연마공(기계)       | 10,380 |
| 조석공           | 8,290  | 조림인부      | 7,130  | 선부          | 6,850  | 콘크리트공         | 8,460  |
| 벽돌(블록)제작공     | 7,950  | 프렌트기설치공   | 10,710 | 준설선선장       | 12,320 | 배관공           | 8,030  |
| 연돌공           | 8,350  | " 용접공     | 8,750  | " 기관장       | 11,460 | 화약취급공         | 13,330 |
| 미장공           | 8,840  | " 배관공     | 8,890  | " 기관사       | 9,310  | 착암공           | 9,720  |
| 방수공           | 7,980  | " 제관공     | 9,080  | " 운전사       | 8,590  | 포장공           | 10,210 |
| 타일공           | 9,080  | 시공측량사     | 10,290 | " 전기        | 8,430  | 잠수부(4인조)      | 40,940 |
| 줄눈공           | 7,810  | 시공측량사조수   | 6,070  | 사공(배포함)     | 10,300 | 특별인부          | 7,860  |
| 고마공(손잡기)      | 7,960  | 측량부       | 4,970  | 기계설치공       | 8,770  | 보통인부          | 6,120  |
| " (기계잡기)      | 8,680  | 검조부       | 4,190  | 기계공         | 7,830  | 여자인부          | 3,760  |
| 콘크리트공         | 7,290  | 송전전공      | 13,640 | 선반공         | 7,960  | 중기운전기         | 11,260 |
| 양생공           | 5,830  | 배전전공      | 10,980 | 정비공         | 7,770  | 운전수(운반차)      | 8,280  |
| 바이브레타공        | 7,070  | 프렌트전공     | 10,050 | 벨트콘베어작업공(남) | 5,530  | 중기운전조수        | 6,800  |
| 보이라공          | 9,590  | 내전전공      | 8,620  | " (여)       | 3,300  | 고급선원          | 9,780  |
| 냉동공           | 8,290  | 특고압케이블전공  | 16,100 | 현도사         | 10,320 | 보통선원          | 7,620  |
| 배관공           | 8,310  | 고압케이블전공   | 12,270 | 제도사         | 9,170  | <b>제조부문</b>   |        |
| 온돌공           | 8,250  | 저압케이블전공   | 10,350 | 비출사         | 6,860  | 기계설계사         | 8,180  |
| 위생공           | 7,830  | 철도신호공     | 9,930  | 시험사 1급      | 12,340 | 회로설계자         | 9,600  |
| 보온공           | 7,140  | 계장공       | 9,010  | " 2급        | 10,750 |               |        |

| 직 종 명       | 단 가   | 직 종 명         | 단 가   | 직 종 명          | 단 가   | 직 종 명         | 단 가    |
|-------------|-------|---------------|-------|----------------|-------|---------------|--------|
| 제 도 사       | 6,220 | 압 출 공         | 5,120 | 배 선 공          | 5,160 | 품질 관리 사       | 9,740  |
| 현 도 사       | 6,080 | 합 금 공         | 5,160 | 전 기 도 금 공      | 3,740 | 품질 관리 공       | 4,290  |
| 마 킹 공       | 4,700 | 세 금 공         | 4,320 | 침 척 도 금 공      | 4,170 | 다듬질 공         | 4,190  |
| 철 물 재 단 사   | 6,350 | 연 화 공         | 4,850 | 사 출 공 (인 제 선)  | 4,220 | 중 기 운 전 사     | 6,220  |
| 철 물 절 단 공   | 4,650 | 신 선 공         | 4,070 | 성 형 공 (물 탕)    | 4,170 | 컴 퓨 터 S/W 기 사 | 13,010 |
| 산 소 절 단 공   | 4,740 | 연 선 공         | 3,140 | 압 출 공 (인 스트루슨) | 4,720 | 문 선 공         | 5,120  |
| 회 전 쇠 톱 공   | 4,470 | 절 연 공         | 4,050 | 제 재 공          | 5,290 | 원 경 사         | 7,220  |
| 금 속 쇠 톱 공   | 4,290 | 연 합 공         | 4,550 | 제 재 조 공        | 3,200 | 공 판 타 자 수     | 5,360  |
| 모 형 절 단 공   | 4,290 | 대 연 공         | 4,030 | 정 척 공          | 3,270 | 프 린 트 인 쇄 공   | 4,920  |
| 가 위 절 단 공   | 3,240 | 데 이 링 공       | 4,730 | 제 재 기 계 운 전 장  | 4,600 | 교 정 사         | 6,860  |
| 단 금 절 단 공   | 3,830 | 케 이 불 전 조 공   | 3,920 | 목 재 전 조 기 계 공  | 4,410 | 지 류 재 단 공     | 4,690  |
| 초 음 파 절 공   | 3,780 | 케 이 불 제 조 공   | 3,880 | 합 판 제 조 공      | 3,160 | 직 물 재 단 사     | 8,300  |
| 방 전 절 단 공   | 5,300 | 피 복 공         | 3,860 | 가 구 공          | 5,180 | 직 불 재 단 공     | 3,820  |
| 샤 빙 공       | 4,760 | 권 취 공         | 4,010 | 목 공 및 유 리 공    | 5,220 | 상 침 공         | 3,140  |
| 프 레 스 공     | 4,430 | 구 목 공         | 4,110 | 멜트콘베어작업공(남)    | 4,650 | 하 침 공         | 2,500  |
| 프 레 스 조 공   | 3,440 | 리 넷 공         | 4,210 | " (여)          | 3,550 | 이 본 침 공       | 3,830  |
| 밀 링 공       | 4,760 | 전 기 용 접 공     | 4,690 | 부 품 조 립 공      | 3,540 | 오 바 로 그 공     | 3,000  |
| 쇄 파 공       | 5,170 | 가 스 용 접 공     | 4,700 | 전 자 제 품 조 립 공  | 2,920 | 징 짐 기 공       | 2,640  |
| 흡 빙 공       | 4,730 | 편 납 용 접 공     | 4,310 | 약 전 기 계 조 립 공  | 4,120 | 인 타 로 그 공     | 2,560  |
| 로 구 토 공     | 4,400 | 접 점 공         | 3,600 | 강 전 기 계 조 립 공  | 5,040 | 스 냅 공         | 2,470  |
| 드 릴 공       | 4,450 | 권 선 공         | 3,880 | 경 기 계 조 립 공    | 4,220 | 연 난 공         | 2,650  |
| 태 빙 공       | 4,160 | 랍 핑 공         | 3,300 | 중 기 계 조 립 공    | 5,050 | 적 로 공 (여)     | 3,280  |
| 보 링 공       | 5,260 | 레 저 광 선 공     | 6,250 | 부 품 시 험 공      | 4,890 | 침 염 공         | 3,130  |
| 자 동 선 반 공   | 5,060 | 양 극 처 리 공     | 3,080 | 제 품 시 험 공      | 4,740 | 연 사 공 (여)     | 3,150  |
| 수 동 선 반 공   | 4,950 | 합 성 수 지 피 막 공 | 4,510 | 부 품 조 정 공      | 3,880 | 정 경 공 (여)     | 3,160  |
| 프 레 나 공     | 4,980 | 진 공 침 적 합 침 공 | 3,520 | 제 불 조 정 공      | 4,330 | 염 직 공 (여)     | 4,080  |
| 스 롯 타 공     | 5,200 | 일 반 화 학 공     | 5,350 | 부 품 검 사 공      | 4,210 | 관 건 공 (여)     | 2,930  |
| 불 반 공       | 4,320 | 일 반 화 학 조 공   | 4,280 | 제 품 검 사 공      | 3,790 | 재 봉 기 제 사     | 4,740  |
| 강 판 공       | 4,510 | 조 성 화 학 공     | 5,500 | 물 품 포 장 공      | 3,490 | 방 직 기 계 보 전 공 | 5,380  |
| 판 금 공       | 4,970 | 조 성 화 학 조 공   | 3,800 | 철 강 포 장 공      | 4,570 | 편 식 공         | 3,500  |
| 합 식 공       | 5,210 | 고 무 제 품 제 도 공 | 3,930 | 도 안 공          | 7,120 | 횡 편 공         | 4,830  |
| 문 자 조 각 기 공 | 4,970 | 도 자 기 및 애 자 공 | 5,870 | 제 본 공 (남)      | 5,130 | 계 화 공         | 4,070  |
| 모 형 조 각 기 공 | 4,760 | 요 업 공         | 4,560 | " (여)          | 3,110 | 피 혁 공         | 3,120  |
| 3 본 로 라 공   | 5,200 | 유 리 제 품 제 조 공 | 5,150 | 공 판 인 쇄 공      | 5,950 | 빵과자및식품류제조공(남) | 4,270  |
| 벤 딩 머 천 공   | 4,250 | 그 라 인 다 공     | 3,840 | 음 섯 인 쇄 공      | 6,200 | " (여)         | 2,910  |
| 절 곡 공       | 4,050 | 지 석 연 마 공     | 4,060 | 환 판 인 쇄 공      | 5,600 | 조 리 사         | 4,880  |
| 수 동 교 정 공   | 4,730 | 사 지 공         | 3,150 | 사 진 조 판 공      | 6,550 | 영 양 사         | 5,700  |
| 바 란 스 머 천 공 | 4,730 | 세 척 공         | 4,010 | 인 쇄 동 판 제 조 공  | 5,160 | 남 자 인 부       | 3,890  |
| 요 철 공       | 3,460 | 빠 후 공         | 4,470 | 인 쇄 연 판 제 조 공  | 5,340 | 여 자 인 부       | 2,370  |
| 열 처 리 공     | 4,820 | 콤파운드연마공       | 4,740 | 식 자 공          | 5,300 | 컴 퓨 터 H/W 기 사 | 13,220 |
| 용 해 공       | 4,990 | 전 해 연 마 공     | 4,030 | 십 장            | 6,130 | 통 신 기 계 조 립 공 | 3,000  |
| 금 형 공       | 5,510 | 화 학 연 마 공     | 4,000 | 양 곡 처 리 공 (남)  | 5,920 | 컴 퓨 터 커 편 치 공 | 4,750  |
| 목 형 공       | 5,400 | 호 냉 공         | 4,150 | 컴 퓨 터 운 전 사    | 5,840 | 통 신 외 선 공     | 6,420  |
| 주 물 공       | 4,620 | 도 장 공 (취 부)   | 4,930 | 기 계 기 출 공      | 6,220 | 통 신 내 선 공     | 6,020  |
| 다 이 카 스 트 공 | 5,000 | 도 장 공 (붓 칠)   | 3,720 | 보 선 공          | 5,600 | 무 선 안 테 나 공   | 5,850  |
| 단 조 공       | 5,110 | 복 공 도 장 공     | 5,280 | 차 량 정 비 공      | 5,800 | 복 제 크 장 공     | 3,920  |
| 압 연 공       | 5,300 | 빠 예 도 포 공     | 4,250 | 기 계 정 비 공      | 5,640 | 양 곡 처 리 공 (여) | 3,210  |
| 인 발 공       | 4,440 | 흡 빙 공         | 3,170 | 안 전 관 리 사      | 8,990 | 목 도           | 4,510  |



## 전국허가통계

## 월별 건축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 월별 | '80    |            | '81    |            | 전년대비 |
|----|--------|------------|--------|------------|------|
|    | 동수     | 연면적        | 동수     | 연면적        |      |
| 1  | 5,998  | 1,846,698  | 2,364  | 843,447    | 45.7 |
| 2  | 6,344  | 1,851,785  | 3,536  | 1,040,968  | 56.2 |
| 3  | 13,530 | 2,883,090  | 8,123  | 1,931,949  | 67.0 |
| 4  | 14,129 | 2,906,362  | 9,875  | 2,481,179  | 85.4 |
| 5  | 11,595 | 2,803,050  | 8,401  | 2,370,273  | 84.6 |
| 6  | 9,330  | 2,094,130  | 7,866  | 1,923,246  | 91.8 |
| 7  | 8,431  | 2,055,584  | 5,817  | 1,634,202  | 79.5 |
| 8  | 8,176  | 2,066,876  | 6,692  | 1,699,811  | 82.2 |
| 9  | 8,416  | 2,178,032  | 7,114  | 2,047,516  | 94.0 |
| 10 | 8,027  | 1,887,599  | 6,937  | 1,837,442  | 97.3 |
| 계  | 93,976 | 22,573,206 | 66,725 | 17,810,033 | 78.9 |

## 구조별 건축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 구조별 | 월별  | 10월       |           |       | 1-10월      |            |      |
|-----|-----|-----------|-----------|-------|------------|------------|------|
|     |     | '80       | '81       | 대비%   | '80        | '81        | 대비%  |
| 철근  | 동수  | 1,617     | 1,532     | 94.7  | 19,618     | 15,710     | 80.1 |
|     | 연면적 | 1,133,185 | 1,236,808 | 109.1 | 13,292,426 | 11,816,593 | 88.9 |
| 조적조 | 동수  | 5,995     | 5,130     | 85.6  | 70,733     | 48,331     | 68.3 |
|     | 연면적 | 708,609   | 578,932   | 81.7  | 8,907,929  | 5,745,335  | 64.5 |
| 목조  | 동수  | 190       | 174       | 91.6  | 2,006      | 1,573      | 78.4 |
|     | 연면적 | 12,073    | 12,647    | 104.8 | 143,927    | 109,562    | 76.1 |
| 기타  | 동수  | 225       | 101       | 44.9  | 1,619      | 1,111      | 68.6 |
|     | 연면적 | 33,732    | 9,065     | 26.8  | 228,924    | 138,543    | 60.5 |
| 계   | 동수  | 8,027     | 6,937     | 86.4  | 93,979     | 66,725     | 71.0 |
|     | 연면적 | 1,887,599 | 1,837,442 | 97.3  | 22,573,206 | 17,810,033 | 78.9 |

## 시도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 시도별 | 월별  | 10월       |           |       | 1-10월      |            |      |
|-----|-----|-----------|-----------|-------|------------|------------|------|
|     |     | '80       | '81       | 대비%   | '80        | '81        | 대비%  |
| 서울  | 동수  | 1,202     | 1,509     | 125.5 | 14,616     | 10,882     | 74.5 |
|     | 연면적 | 538,744   | 617,022   | 114.5 | 5,490,581  | 5,145,782  | 93.7 |
| 부산  | 동수  | 634       | 397       | 62.6  | 7,806      | 4,037      | 51.7 |
|     | 연면적 | 175,550   | 95,844    | 54.6  | 2,240,044  | 1,348,008  | 60.2 |
| 대구  | 동수  |           | 324       |       |            | 1,249      |      |
|     | 연면적 |           | 80,566    |       |            | 307,451    |      |
| 인천  | 동수  |           | 181       |       |            | 863        |      |
|     | 연면적 |           | 62,272    |       |            | 291,273    |      |
| 경기  | 동수  | 1,311     | 1,101     | 84.0  | 18,190     | 10,717     | 58.9 |
|     | 연면적 | 293,761   | 361,282   | 122.9 | 4,387,675  | 2,876,623  | 65.6 |
| 강원  | 동수  | 364       | 293       | 80.5  | 3,642      | 3,593      | 98.7 |
|     | 연면적 | 92,365    | 52,236    | 56.6  | 899,015    | 825,313    | 91.8 |
| 충북  | 동수  | 417       | 324       | 77.7  | 4,282      | 3,765      | 87.9 |
|     | 연면적 | 59,584    | 36,920    | 61.9  | 661,224    | 557,910    | 84.4 |
| 충남  | 동수  | 692       | 587       | 84.8  | 8,800      | 6,073      | 69.0 |
|     | 연면적 | 93,950    | 100,863   | 107.4 | 1,560,638  | 1,154,586  | 74.0 |
| 전북  | 동수  | 283       | 436       | 154.1 | 5,661      | 3,647      | 64.4 |
|     | 연면적 | 29,868    | 59,910    | 200.6 | 1,019,772  | 589,582    | 57.8 |
| 전남  | 동수  | 1,084     | 712       | 65.7  | 8,406      | 6,260      | 74.5 |
|     | 연면적 | 153,197   | 96,926    | 63.3  | 1,285,377  | 1,021,560  | 79.5 |
| 경북  | 동수  | 994       | 445       | 44.8  | 11,861     | 7,038      | 59.3 |
|     | 연면적 | 241,252   | 88,905    | 36.9  | 2,878,827  | 1,677,103  | 58.3 |
| 경남  | 동수  | 743       | 884       | 119.0 | 8,170      | 6,775      | 82.9 |
|     | 연면적 | 165,553   | 196,982   | 119.0 | 1,795,667  | 1,669,693  | 93.0 |
| 제주  | 동수  | 303       | 194       | 64.0  | 2,542      | 1,779      | 70.0 |
|     | 연면적 | 43,775    | 26,714    | 61.0  | 354,386    | 345,144    | 97.4 |
| 계   | 동수  | 8,027     | 6,937     | 86.4  | 93,976     | 66,725     | 71.0 |
|     | 연면적 | 1,887,599 | 1,837,442 | 97.3  | 22,573,206 | 17,810,033 | 7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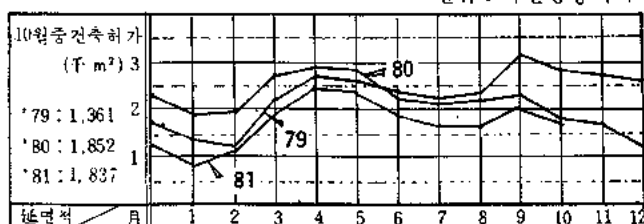
## 용도별 건축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 용도별 | 월별  | 10월       |           |       | 1-10월      |            |       |
|-----|-----|-----------|-----------|-------|------------|------------|-------|
|     |     | '80       | '81       | 대비%   | '80        | '81        | 대비%   |
| 주거용 | 동수  | 5,768     | 4,875     | 84.5  | 71,032     | 46,687     | 65.7  |
|     | 연면적 | 1,079,950 | 984,317   | 91.1  | 13,238,181 | 9,045,006  | 68.3  |
| 상업용 | 동수  | 1,376     | 1,266     | 92.0  | 14,606     | 12,656     | 86.6  |
|     | 연면적 | 386,409   | 311,376   | 80.6  | 4,941,616  | 4,326,671  | 87.6  |
| 공업용 | 동수  | 184       | 269       | 146.2 | 2,068      | 2,145      | 103.7 |
|     | 연면적 | 142,403   | 253,840   | 178.3 | 1,749,524  | 2,080,345  | 118.9 |
| 문교  | 동수  | 219       | 192       | 87.7  | 1,989      | 1,913      | 96.2  |
|     | 연면적 | 133,130   | 178,328   | 134.0 | 1,550,457  | 1,475,654  | 95.2  |
| 기타  | 동수  | 480       | 335       | 69.8  | 4,281      | 3,324      | 77.6  |
|     | 연면적 | 145,707   | 109,581   | 75.2  | 1,093,428  | 882,357    | 80.7  |
| 계   | 동수  | 8,027     | 6,937     | 86.4  | 93,976     | 66,725     | 71.0  |
|     | 연면적 | 1,887,599 | 1,837,442 | 97.3  | 22,573,206 | 17,810,033 | 78.9  |

## 건축허가전년대비도표

단위 : 백만평방미터



# 新入會員

□金哲煥/서울/21. 12. 19일생/ 동아공과학원/미건사김철환건축연구소/영등포구 당산동3가387-3/단독247.



□金自浩/서울/45. 12. 10일생/ 중앙대아공과/일양건축연구소/종로구 연건동187-1/T. 763-3003/합동281.

□鄭元瑛/서울/50. 3. 26일생/경기공전/(주)삼신헌동건축/용산구 한강로3가40-151/T. 792-2331/합동295.



□曹相田/釜山/40. 1. 12일생/동아공대/장조건축설계/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84-10/단독79

## 會員動靜

**전입** □서울支部: 김인곤, 조정상/(주)세마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1~589/합동 294 △전한권/(주)스맥크/영등포구 여의도동 1~589/용역 13.

□仁川支部: 김성은/(주)유진건축/인천 북구 부평동109/단독 8.

□京畿支部: 최영훈/경진종합건축설계/시흥군 군자단지 47블록 3동 7호/종합22/△조영석/가보건축연구소/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408/단독89.

**변경** □釜山支部: 박영순, 송국웅, 정진영/ 부산종합설계사/남구 광안동51-18/전화 72-6518, 0163/종합 5/△홍계동/홍이건축연구소/중구 중앙동 4가 82-3/전화 44-1157/단독58/△윤용준/형태종합건축연구소/동래구 명륜동596-3/전화 93-2195/종합 11/△김미해/두남건축설계사무소/부산 진구 부전동347-30/전화 88-0356/단독78.

□京畿支部: 최영석/대지건축설계사무소/화성군 오산읍 원리283-3/단독91/△남상각/김포 건축설계

사무소/김포군 김포읍 북변리375/단독19/△윤영호/미도건축설계/광명시 광명읍290-23/전화 612-6832/단독92/△정우택/신우종합건축/광명시 광명동158-91/전화 613-7680/종합28/△박종기/보양종합건축설계/평택군 평택읍 평택리34-1/전화 2-5763/종합27.

□慶北支部: 송길환/화산건축설계사무소/안동시 삼산동125-19/전화 2-3614/단독17/△김인호, 정본진/세아건축설계사무소/대구시 중구 동인 1가115-6/전화 44-3003/합동31/△송재성, 도정기, 김영철/김천건축설계사무소/ 김천시 평화동280-1/전화 2-2541/합동 3/△김두하, 박태운/신진두산건축사무소/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7-6/전화 4306/합동16/△권현태, 김봉일/영천건축설계사무소/영천시 창구동 26/전화 3006, 2781/합동17

□濱州支部: 김창우/우신건축연구소/전화 3-5544.

**재입** □서울支部: 김영기/홍진합동건축/종로구 도렴동115/합동297/△지순/일양건축연구소/종로구 연건동187-1/합동281

**휴업** □京畿支部: 한광희/가산건축연구소/10. 24/△신중완/은성건축설계공사/10. 29

**폐업** □서울支部: 오형석/전엔지니어링/10. 27/△이일남/국도건축합동/11. 2.

□京畿支部: 진한교/보양건축설계공사/10. 31.

**수연** “오래하세요” □서울지부: 이무부 회원 모친 11월 10일/

□충남지부: 임천구 회원 11월 14일

**병환** “快癒를 빕니다” □慶南支部: 염효윤회원 신병으로 자택서 요양중.

**결혼** “축하합니다” □서울支部: 박희원 회원 제 11월 7일/△이동훈 회원 장녀 11월 7일/△이준수회원 장녀 11월 7일/

□京畿支部: 박원순회원영애 11월 12일/△유성중회원영식 10월 26일/△정환철회원 3녀 10월 17일.

□忠南支部: 원동규회원 차남 10월 24일/△이백행 회원 (3남) 11월 15일/

□慶南支部: 모재기회원 매 11월 6일/△백금용회원 영애 11월 9일.

□본회사무처직원/양진석 (서무담당) 군 12월 13일 김미혜양과 화촉/△경남지부직원/한순달 (경리담당) 양 11월 22일 화촉.

**근조** “삼가명복을 빕니다” □서울지부: 김중업 회원 모친 별세 11월 15일/△강은주회원 모친 별세 11월 24일/

#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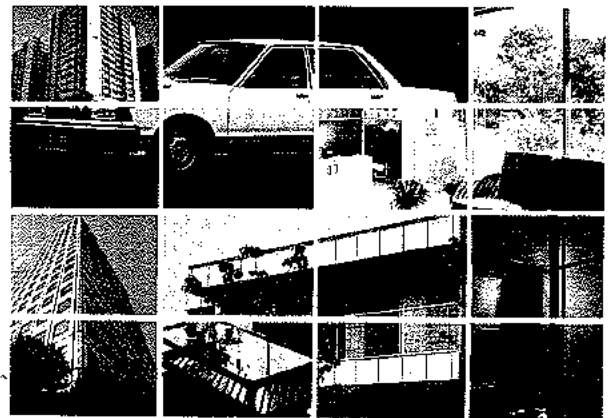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제품특성

| 두께<br>(%) | 두께 특성      |            |            |              |            | 열관류율<br>Kcal<br>m <sup>2</sup> h<br>(%) |
|-----------|------------|------------|------------|--------------|------------|-----------------------------------------|
|           | 부과율<br>(%) | 반사율<br>(%) | 흡수율<br>(%) | 직접투과율<br>(%) | 반사율<br>(%) |                                         |
| 3         | 90.1       | 8.0        | 7.4        | 84.9         | 7.7        | 5.88                                    |
| 5         | 89.1       | 7.9        | 11.5       | 81.1         | 7.4        | 5.78                                    |
| 6         | 88.6       | 7.9        | 13.5       | 79.3         | 7.2        | 5.75                                    |
| 8         | 87.6       | 7.8        | 17.2       | 75.8         | 7.0        | 5.59                                    |
| 10        | 86.7       | 7.7        | 20.6       | 72.6         | 6.8        | 5.56                                    |
| 12        | 86.7       | 7.6        | 23.8       | 69.6         | 6.6        | 5.46                                    |

## 두께별 최대규격

| 두께 (mm)    | 길이 × 폭 (mm) | 길이 × 폭 (inch) |
|------------|-------------|---------------|
| 3          | 2438 × 1220 | 96 × 48       |
| 5          | 3048 × 2134 | 120 × 84      |
| 6          | 3048 × 2438 | 120 × 96      |
| 8, 10      | 8380 × 3300 | 330 × 130     |
| 12, 15, 19 | 8380 × 3300 | 330 × 130     |

※ 15mm 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4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 750°C의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완벽한 화재예방——금강 불연 내외장재

화재는 건축물의 가장 커다란 敵——

근본적인 화재예방은 건축자재의 防火기능에 있습니다.

금강 불연 내외장재는

\*750°C의 불속에서도 타지않는 완벽한 防火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합판과 같이 톱이나 못으로 손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창고와 같이 습기찬 곳에서도 나무처럼 썩거나 썩처럼 녹슬지 않습니다.

내외장용 보-드...밤라이트

석면과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10,000톤의 강압력에서 만들어낸 단단한 일급 불연 판재입니다.

내외 장식용 미장재...나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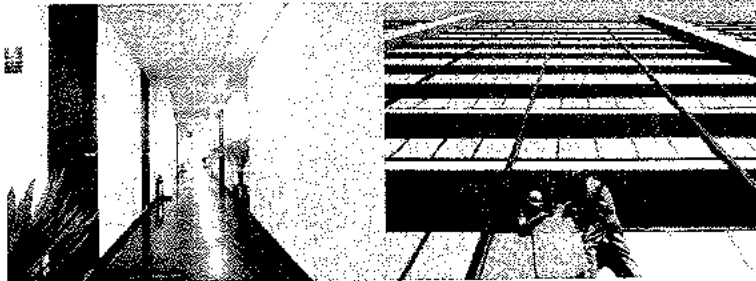
밤라이트를 아름다운 무늬와 색조로 장식한 반영구적인 내외장용 미장재입니다.

방음용 내장재...나무라이트 흡음판

기조판재인 밤라이트 위에 크고 작은 흡음구멍을 과학적으로 배열하여 뛰어난 방음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정용 내장재...이미텍스

백색의 평판면에 무늬를 넣어 천정용 내장재의 필수 기능인 단열, 흡음, 방음, 불연, 경량 효과가 우수합니다.



## 금강 불연내외장재